

2017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 복지실태조사



통계청



발 간 사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특성화된 지역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공적인 지역정책 추진을 위한 과학적인 의사결정의 기반이 되는 지역통계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직접 개발하는 지역통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에서 개발하는 통계가 조사항목의 차이와 같은 항목이라도 질문지 구성의 차이로 지역 간 비교가 어려워 통계의 활용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통계를 개발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어도, 지역통계 개발을 위한 매뉴얼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통계를 작성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통계청·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의 협업을 통해 표준매뉴얼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매뉴얼은 총 2편으로 편성하여, 제1편에서는 통계의 개요, 작성목적,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통계작성방법론을, 제2편에서는 항목정의서, 표준조사표 등을 부록으로 수록함으로써, 지역통계 개발업무를 처음으로 접하는 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매뉴얼을 발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통계청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동 매뉴얼이 지역통계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12월

통계청장 황 수 경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문의처 안내

⇒ 지역통계 표준매뉴얼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자세하게 알려 드립니다.

통계청	전화번호
지역통계총괄과	042) 481-3608~9
경인지방통계청	02) 2110-7600
동북지방통계청	053) 609-6500
호남지방통계청	062) 370-6000
동남지방통계청	051) 850-3300
충청지방통계청	042) 366-8114

⇒ 해당 지자체 관할 지방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통계청	관할 지역
경인지방통계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동북지방통계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
호남지방통계청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동남지방통계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충청지방통계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복지실태조사 표준매뉴얼 개발 현황

■ 개발목적

- ▶ 복지실태조사를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통계 작성기관에서 지역간 비교·분석 및 정책적 활용이 가능한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통계작성 전반*에 대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 조사의 배경, 연혁, 이용자 및 용도와 조사에서 이용되는 개념과 방법론 등

■ 개발 과정 및 절차

▶ 표준매뉴얼 개발 추진방안 수립

-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개발을 위한 기관간 역할, 개발일정 등을 내용으로 한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지자체 수요조사(‘16.10~11)를 실시하여 복지실태조사 시범조사지역* 선정

* 시범조사지역 : 경기도 여주시, 경상남도 양산시

▶ 표준매뉴얼 협의체(TF) 구성 및 조사항목 등 개발

- 통계청(본청, 지방청, 개발원) 담당자와 시범지역 지자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표준매뉴얼 TF를 구성하고, 정책 활용성이 높은 기본항목과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자율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표 및 결과표를 설계

표준매뉴얼 개발 실무 TF 구성

- ▶ (주관 2명) 주관 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매뉴얼 개발 총괄팀장, 담당주무관(1명)
- ▶ (필수 8명) 지원 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2명), 여주시(2명), 양산시(2명), 통계개발원 연구자(1명),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사업총괄(1명)
- ▶ (자문) 지역연구원 등 관련전문가, 표본과, 조정과
- ▶ 개최 이력 : 1차(17.1.23), 2차(17.2.17), 3차(17.3.20), 4차(17.4.24), 5차(17.11.6)

▶ 시범조사 준비

- 시범조사를 위한 종합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모집단을 포괄할 수 있는 표본 추출틀(인구주택총조사)을 활용하여 시범지역 표본설계 및 통계작성 승인 요청
- 설계된 표본규모에 맞추어 소요예산을 확정하고, 조사원 모집 및 조사표류 등을 준비

▶ 시범조사 실시

- 시범지역으로 선정 된 여주시와 양산시를 대상으로 복지실태조사 실시

▶ 자료입력 및 자료처리

- 복지실태조사 조사결과에 대한 자료입력, 비표본오차 축소를 위한 내검, 자료처리 과정 등을 거쳐 최종 결과표 작성

▶ 표준매뉴얼 작성 및 배포

- 계획수립에서 결과표 작성에 이르는 시범조사 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표준화된 통계작성을 위해 보완한 내용을 반영하여 표준매뉴얼 작성 및 배포

■ 시범조사 등 한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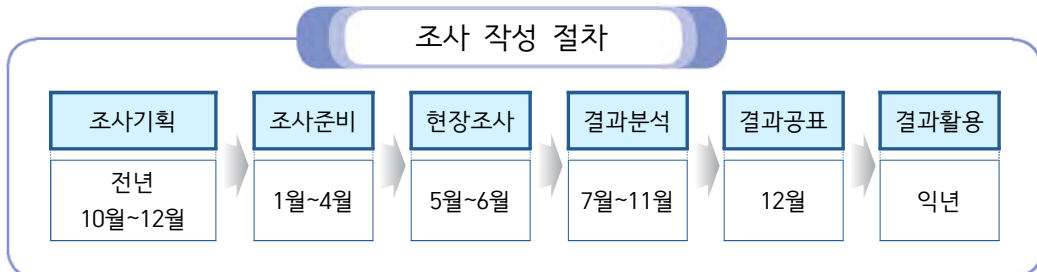
- ▶ 표준매뉴얼 작성을 위해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2개 지자체는 통계청과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조사에는 자체예산의 사전 확보가 필요함
- ▶ 시범지역의 표본규모에 따라 오차범위가 달라져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제공을 위해, 각 지역간의 공표범위에 차이가 있음
- ▶ (표본설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인구 및 가구구성에 따라 비례 배분 방식으로 표본을 선정하였지만,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와 같이 인구 구성비가 적고 가구의 분포가 균등하지 않은 하위집단의 경우 이러한 표본 설계로는 충분한 규모의 표본을 확보하기 어려움

〈 여주시 복지실태조사 조사결과 〉

가구특성	조사결과(표본가구수)	가구특성	조사결과(표본가구수)
장애인 가구	65	영유아 가구	74
다문화 가구	15	아동·청소년 가구	179
저소득층 가구	43	어르신 가구	371

❏ 활용시 유의사항

- ▶ 공통영역(5개영역)은 반드시 포함하되, 관심있는 선택영역의 일부만 조사할 수 있으며 일부선택영역 조사 시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기존의 표준 조사표에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음
- ▶ 활용하고자 하는 조사항목에 따라 지역통계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 항목을 추가 구성하여 조사에 활용할 수 있음
 - 단, 자율항목 추가시에는 조사 소요시간 및 응답자 부담 등을 고려하여, 추가하는 항목의 수를 10개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 표본규모 및 오차 등의 문제로 세부범위의 공표가 불가능한 경우, 내부 자료로는 활용이 가능하나, 외부 유출에 주의해야함
 - 여주시 복지실태조사의 경우, 표본가구에 다문화가구가 15개밖에 선정되지 않아 「IX. 다문화」 영역의 조사결과는 공표하지 않고 내부자료로만 활용
- ▶ 시의성 있는 조사결과의 정책활용을 위해 조사기간은 상반기에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원활한 조사원 확보를 위해 타 연간조사 기간을 피하도록 함





• 발간사	3
•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문의처 안내	4
• 복지실태조사 표준매뉴얼 개발 현황	5

Part I 통계작성방법 / 11

I. 통계 개요	13
1. 일반 현황	13
2. 관련통계 간 사전 검토내용	14
3. 검토 및 반영결과	17
4. 통계작성 흐름도	18
II. 통계작성 기획	19
1. 기본계획 수립	19
2. 조사표 설계	25
3. 표본설계 및 관리	35
III. 조사준비	44
1. 종합실시계획 수립	44
2. 통계작성 승인 신청	46
3. 입력 프로그램 설계	56
4. 조사표류 준비	61
5. 조사원 모집 및 교육	67
6. 홍보실시	77



IV. 자료수집	80
1. 현장조사 실시	80
2. 사후검증	86
V. 자료처리	88
1. 자료코딩	88
2. 자료입력	90
3. 자료내검	91
4. 무응답자료 처리	99
VI. 통계추정 및 분석	101
1. 통계추정	101
2. 표본오차 추정방법 및 결과	104
3. 결과분석	107
VII. 통계 공표 및 관리	111
1. 공표통계 및 해석방법	111
2. 통계의 이용자 서비스	115
3.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116
4. 비밀보호 및 보안	117
VIII. 참고자료	118
1. 통계조정제도	118
2. 통계품질관리	126



Part II 부 록 / 129

· 항목정의서	131
· 표준조사표	257
· 기본계획	289
· 표본설계보고서	297
· 종합실시계획	308
· 나라Pro 사용설명서	326
· 지역통계 표준프로세스 준수율 점검표(조사통계)	339

PART

I . 통계작성방법



제 1 장

통계 개요

■ 일반 현황

▶ 통계명 : 복지실태조사

▶ 개발 배경

- 지방자치 실시 이후 복지사업이 지방정부로 많이 이양되었으나 복지기준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제기
- 서울시는 2012년 서울시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서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발표하였음.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 복지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기초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2013년부터 격년제로 『서울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경기도는 경기도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지역간 복지격차해소를 위한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 마련을 위해 2016년 경기도 복지실태 조사를 실시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25조 규정에 의한 승인통계

▶ 작성방법 : 표본조사를 통하여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 조사하는 면접조사방법을 원칙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자기기입(응답자 기입)」 방법 병행

▶ 작성주기 및 공표주기 : 1~4년

■ 관련통계 간 사전 검토내용

▶ 지역사회복지조사

- 지역사회복지조사는 '①지역주민 복지욕구 조사'와 '②복지자원 조사'로 구성
- 지역주민 복지욕구 조사

조사 단위	- 가구 - 가구구성,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가구소득 등 복지제도의 급여조건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복지욕구 및 서비스 수요 파악의 객관성 확보									
표본 추출	- 표본크기 : 조사완료 가구 수는 시.군.구별로 최소 400가구 - 표본추출방법 (기준) 행정구역(읍면동)을 기준으로 설정 (조사구설정방법) 시.군.구 당 조사구는 13~15개로 설정 - 조사구 내에서 가급적 상가지역은 피하고,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조사									
조사 항목	- 기본항목 - 가구일반사항, 가구주거상황, 가구(가구주) 소득, 자산, 부채, 생활여건,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 총 7개영역 - 복지관련 조사항목 - 여성,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노인, 장애인 총 6개 영역 <영역별 주요 조사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주요 조사내용</th></tr> </thead> <tbody> <tr> <td>① 여성</td><td rowspan="6">관련 복지시설의 인지도, 이용경험, 향후이용의향, 불편 사항, 필요서비스 등을 조사</td></tr> <tr> <td>② 미취학 아동</td></tr> <tr> <td>③ 초등학생</td></tr> <tr> <td>④ 중·고등학생</td></tr> <tr> <td>⑤ 노인</td></tr> <tr> <td>⑥ 장애인</td></tr> </tbody> </table>	구분	주요 조사내용	① 여성	관련 복지시설의 인지도, 이용경험, 향후이용의향, 불편 사항, 필요서비스 등을 조사	② 미취학 아동	③ 초등학생	④ 중·고등학생	⑤ 노인	⑥ 장애인
구분	주요 조사내용									
① 여성	관련 복지시설의 인지도, 이용경험, 향후이용의향, 불편 사항, 필요서비스 등을 조사									
② 미취학 아동										
③ 초등학생										
④ 중·고등학생										
⑤ 노인										
⑥ 장애인										

- 지역사회복지 자원조사

조사 대상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자원관리시스템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지역단위 복지자원을 조사 - ex) 아동관련 시설(어린이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관련 시설(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지역주민 관련시설, 가족관련 시설, 노인관련시설, 장애인관련시설 총 6개 영역
조사 내용	지역 내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 프로그램과 규모 등을 조사
조사 방법	- 개별시설에 대한 복지자원* 조사, 지역단위 자원현황** 조사 항목 * 개별시설의 서비스 유형, 분류, 대상, 규모 등을 파악 ** 지역단위의 개별시설수, 규모, 이용자현황, 자격 등을 파악

▶ 한국복지패널조사

조사 대상	◦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가구									
기준 시점	◦ 2013년 8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기준시점은 2012년 - 동태(flow)의 경우 2012년 1~12월(1년)을 기준으로 함 - 정태(stock)의 경우는 201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함									
조사 방법	◦ 조사원이 조사대상 패널가구를 직접 방문 진행									
표본 추출	◦ 표본크기 : 7,312가구(최종완료) ◦ 원표본선정 - 최초 원표본 가구(7,072가구)를 선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는 '2006년 국민 생활실태조사'를 활용하였으며, 국민생활실태조사의 경우 2005년 인구센서스 자료 90% 조사구에서 조사구 규모에 따라 층화추출 ◦ 표본배분방식 - 복지욕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을 과대 표집 ◦ 표본재추출 - 복지인식 부가조사를 위한 이중추출법(double sampling)적용									
조사 항목	◦ 구성 - 조사표 구성은 크게 가구조사표, 가구원조사표, 부가조사표*로 구성 * 아동, 복지인식, 장애인에 대한 조사가 2006년부터 3년주기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순환 주기에 따라 2013년 8차 조사에서는 복지인식에 대한 세 번째 부가 조사를 수행 ◦ 기본항목 - 가구일반사항, 건강과 의료, 경제활동상태, 사회보험/퇴직/개인연금 가입, 의료, 주거, 생활비, 소득, 부채, 재산, 생활여건 총 11개 영역 ◦ 복지관련 조사항목 -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 노인, 아동, 장애인, 가족 총 6개 영역 ◦ 부가조사 - 전반적 사회/정치적 인식 및 태도, 복지자원 및 대상범위 총 2개 영역 <영역별 주요 조사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40%;">구분</th><th style="width: 60%;">주요 조사내용</th></tr> </thead> <tbody> <tr> <td>① 국민기초생활보장</td><td rowspan="6">주요사업인지도, 이용경험, 도움정도, 이용의사 등</td></tr> <tr> <td>② 가구</td></tr> <tr> <td>③ 노인</td></tr> <tr> <td>④ 아동</td></tr> <tr> <td>⑤ 장애인</td></tr> <tr> <td>⑥ 가족</td></tr> </tbody> </table>	구분	주요 조사내용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주요사업인지도, 이용경험, 도움정도, 이용의사 등	② 가구	③ 노인	④ 아동	⑤ 장애인	⑥ 가족
구분	주요 조사내용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주요사업인지도, 이용경험, 도움정도, 이용의사 등									
② 가구										
③ 노인										
④ 아동										
⑤ 장애인										
⑥ 가족										

▶ 서울복지실태조사

조사 목적	서울시 복지 기준선 마련					
조사 대상	2015년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가구					
표본 추출	- 표본크기 : 3,000가구(최종 유효표본 3,019가구) - 표본추출틀 :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서울지역 아파트, 일반조사구 - 표본배분방식 : 다단계층화비례배분 - 표본추출방법 : 계통추출법(systematic sampling) - 서울시를 총 5개 권역으로 나누고, 아파트와 일반주택가구로 조사구를 배분하여 표본추출함					
조사 항목	- 기본항목 - 가구일반사항, 경제활동, 건강과 의료이용, 가족생활, 여가 및 사회활동 총 4개 영역 - 복지관련 조사항목 - 복지서비스 이용(기초생활보장, 공용/금융서비스, 아동/청소년복지, 어르신 복지, 장애인복지, 복지전달체계 6개 중분류), 복지의식 및 욕구 총 2개 영역 <영역별 주요 조사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구분</th><th style="width: 70%;">주요 조사내용</th></tr> </thead> <tbody> <tr> <td>① 복지서비스이용</td><td rowspan="2">주요사업인지도, 이용경험, 도움정도, 이용의사 등</td></tr> <tr> <td>② 복지의식 및 욕구</td></tr> </tbody> </table>	구분	주요 조사내용	① 복지서비스이용	주요사업인지도, 이용경험, 도움정도, 이용의사 등	② 복지의식 및 욕구
구분	주요 조사내용					
① 복지서비스이용	주요사업인지도, 이용경험, 도움정도, 이용의사 등					
② 복지의식 및 욕구						

▶ 기타 유사통계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질병관리본부, 국민연금공단 포함)	여성가족부	기타 (기관명)
- 국민생활실태조사 - 사회서비스 수요, 공급 실태조사 - 아동종합실태조사 - 노인실태조사 - 보육실태조사 -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 장애인실태조사 - 지역사회건강조사 -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 한부모가족실태조사 - 성폭력실태조사 - 가정폭력실태조사 -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조사 - 다문화가족실태조사	-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고령화연구패널조사 (한국고용정보원) - 주거실태조사 (국토교통부)

검토 및 반영결과

지역사회보장지표의 반영

구분	영역	내용	반영 여부	미반영 사유
여건 지표	고용	고용률	X	지역별고용조사에서 수집가능
		장애인고용률	X	장애인을 위한 별도 표본추출의 어려움
		실업률	X	지역별고용조사에서 수집가능
	주거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	O	
		자가 점유율	O	
핵심 지표	건강	기대 여명	X	조사통계가 아닌 가공통계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O	
	주거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O	
	환경	환경에 대한 주관적 평가	X	지역사회조사에서 수집가능
	총괄	빈곤가구 가처분소득 금액 증가율	O	매년 단위 조사시 파악 가능
		빈곤인구 감소율	O	
		상대적 빈곤율	O	
		소득 5분위 배율	O	

관련 통계의 반영

- 기본적으로 관련 통계의 구분 영역을 참고하여 본 조사에 활용
- 해당 영역별로는 개인의 복지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평가를 최소화*하였고, 관련 통계들을 참조하여 복지관련 정책 및 시설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를 파악하고자 함

* 복지실태조사는 각 지역사회 전반적인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지역사회조사와 내용 및 범위가 유사함

통계작성 흐름도

업 무	추진 내용	주체
통계작성 기획		
기본계획 수립	- 통계조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추진배경, 작성개요, 소요예산 등	지자체
↓		
조사 준비		
조사항목 및 조사표 설계	- 조사표 항목 선정을 위한 협의회 개최 - 기본항목 선정 및 자율항목 개발	지자체 (대행기관)
↓		
표본추출틀 보완 및 표본설계	- 표본 설계 - 표본규모, 허용오차, 표본추출방식	지자체
↓		
종합실시계획수립	- 조사실시를 위한 종합계획수립 - 조사개요, 추진일정 및 계획, 예산 등	지자체 (대행기관)
↓		
통계조사 승인신청	- 통계작성 승인신청 자료 준비 및 의뢰 - 조사 작성개요, 지침서, 결과표 등	지자체
↓		
입력 프로그램 개발	- 입력 프로그램 개발 및 외주 제작 의뢰 - 조사항목 상관관계 검토, 내검 규칙 확인 등	지자체 (대행기관)
↓		
조사표류 인쇄 및 조사용품 제작	- 조사표류 인쇄 - 조사표, 안내장, 비밀보호용 봉투 등 인쇄 - 조사용품 제작 - 조사원 가방, 필기도구, 안정용품 등	지자체 (대행기관)
↓		
조사원 모집	- 조사원 모집 공고 및 운용 - 조사관리자, 도급조사원, 업무보조원	지자체
↓		
홍보 실시	현수막 설치, 전광판 홍보 등	지자체
↓		
자료 수집		
준비조사 및 본조사	- 준비조사(1~2일) - 본조사 기간 중 실사지도 실시 - 품질평가를 위한 사후 모니터링 실시	지자체 (대행기관)
↓		
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조사표 입력 및 내용 검토	- 조사표 입력 및 전산내검 실시 - 지침내용에 맞게 조사내용 검토	지자체 (대행기관)
↓		
조사결과 집계 및 분석	- 조사결과 집계 및 분석 - 조사 결과 단순 집계 및 데이터 정비	지자체 (대행기관)
↓		
결과공표 및 자료제공	- 분석 결과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및 발간 - KOSIS, 홈페이지를 통한 통계표 게시	지자체

제2장

통계작성 기획

제 1 절

기본계획 수립

주요내용 및 확인사항

- ④ 조사필요성, 조사목적, 조사대상 등 통계조사 기본계획을 수립
- ④ 통계조사의 전반적인 추진업무를 충분히 검토하고, 조사실시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정확한 조사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사체계를 구축해야함

■ 작성개요

▶ 작성목적

- 지역민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여 이를 지역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성과를 모니터링하는 근거자료로 활용

▶ 작성대상

- 조사시점 기준 조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13세 이상 모든 가구원
- 지역민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다른 조사와의 비교 가능성을 고려하여 13세 이상으로 선정하였으나 응답문항의 난이도 등에 따라 15세 이상으로 대상을 선정한 문항도 있음

가구원 문항	조사대상	비고
근로상태 및 일자리	15세이상	경제활동인구 대상
여성		응답문항의 난이도
건강	13세이상	다른 조사(사회조사 등)와의 비교 가능성을 고려
다문화		
여가 및 사회참여		
사회복지 인프라 및 복지의식		

- ▶ 조사주기 :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조사목적과 예산 등
기관여건에 따라 1~4년 주기를 권고

-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가 고려

제1방법	제2방법	제3방법
순환조사	선택조사	최소조사
◦ 공통영역(5개영역)은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선택영역 (8개영역)은 1~3년 주기로 순환하여 조사	◦ 공통영역(5개영역)은 반드시 포함하되, 관심있는 선택영역의 일부만 조사 ◦ 일부선택영역 조사 시 더 자세히 알아 보기 위하여 기존의 표준조사표에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가 가능하며, 특정 계층을 위해 이중추출법(double sampling)을 통한 표본 보강도 가능	◦ 5개 공통영역만 최소한으로 조사

* 공통영역 : ①주거, ②근로상태 및 일자리, ③소득 및 지출, ④건강, ⑤사회복지 인프라 및 복지의식

** 선택영역 : ①저소득, ②영유아, ③아동·청소년, ④어르신, ⑤장애인, ⑥여성, ⑦다문화, ⑧여가 및 사회참여

- ▶ 조사기간 : 타 조사와의 중복, 조사인력의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여름
휴가철 등은 피하여 조사기간 결정. 자료 처리 및 공표 시점을 고려하여
현장조사는 가급적 상반기에 실시

- 조사기준 : 조사대상, 조사항목별 기준시점을 명확히 하고 특히 소득과
관련한 항목은 연간단위(1.1.~12.31.)로 설정

▶ 조사항목

- 복지실태조사 기본항목 14개 분야 및 지자체 자율항목으로 구성

업무별 추진일정

추진 과제	주요 추진 업무	소요기간
조사 기획	조사기획서 수립 (정책활용을 위한 협의회 및 자문단 구성)	1~2 개월
조사준비	조사항목 및 조사표 설계* (조사 항목 설정 내부 협의회 및 조사표 설계 자문 실시)	2~3 개월
	표본설계 및 표본조사구 추출	1 개월
	표본 조사구 현장 확인	1 개월
	결과표, 조사지침서, 내검요령서 등 작성	1 개월
	통계조사 승인신청	1~2 개월
	세부실시계획 수립	1 개월
	입력 프로그램 개발 및 수정	2~3 개월
	조사표류 인쇄 및 조사용품 제작	1 개월
	조사관리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모집 공고, 면접, 모집 완료)	1 개월
	조사실시 홍보	1 개월
	조사담당 공무원 및 조사원 교육	1 일
현장조사 실시	준비조사	1~2 일
	본조사	14 일
	현장조사 실사지도	조사기간 중 실시
자료 처리	조사표 입력 및 내용검토	14 일
	데이터 정비	1 개월
결과 분석 및 공표	조사결과 집계 및 분석	2~3 개월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1~2 개월
	결과공표 및 자료제공 (보고서 발간, 마이크로데이터 자료정비)	

* 기본항목(공통, 선택) 활용으로 조사표 설계 소요기간 단축 가능

소요예산 산출

소요예산 산출 검토내역을 참고하여 소요예산 산출

- 아래 소요예산 산출 내역은 통계청 및 자체 개발 수행시를 고려한 사항으로, 외부기관(통계청 포함)에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연구비(표본설계, 결과 분석 등)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

〈 소요예산 산출 검토내역 〉

구분		내용	검토내역	비고
조사준비	조사표 및 지침서 작성	운영비	전문가 자문료, 간담회 비용	
		국내여비	전문가 자문 회의 여비	외부 대행
		업무추진비	전문가 자문 간담회 비용	
본조사	표본설계	운영비	표본추출명부 구입비	요도, 명부
	조사물품준비	운영비	조사표, 지침서, 안내장 등	인쇄단가×인쇄부수
		운영비	필수품 구매	필수품단가×표본수
			조사물품(가방, 필기구 등) 구매	조사원+관리자
		운영비	물품이송비	이송단가×이송지역수
	현장조사	일용임금	관리자, 업무보조원	모집인원×운용일수
		운영비	도급조사원 예비조사원	모집인원×운용일수
		민간이전	산재·고용보험	일용임금×3%
		운영비	사무실 PC 및 복합기 임차	관리자+업무보조원
		업무추진비	조사원 간담회	조사원+관리자+업무담당
		운영비	기타 운영비	생수 및 기타물품
	교육 및 현장실사지도	국내여비	교육출장	지침서교육+입력교육
			현장조사 실사지도	실사지도원×출장일수
	공공요금	운영비	단기전화, 우편요금 등	
	특근매식비	운영비	특근매식비	
	입력 프로그램	운영비	입력 프로그램 개발	
자료처리	내용검토	일용임금	내용검토요원	
		민간이전	산재·고용보험	일용임금×3%
	조사표 입력	일용임금	입력요원	
		민간이전	산재·고용보험	일용임금×3%
결과분석 및 공표	결과분석	운영비	PC 임차	
		일용임금	업무보조원	모집인원×운용일수
		민간이전	4대 보험	일용임금×11%(30일 이상)
		운영비	PC 임차	
		운영비	사무용품 구입비	
		국내여비	보고서 검토협의 여비	외부 대행
		업무추진비	보고서 검토협의 간담회	
	공표	운영비	보고서 발간비	인쇄단가×인쇄부수

작성예시 : 시범지역 예산 내역

(단위 : 원)

예산과목	소요예산	산 출 내 역
합계	57,972,640	
■ 일용임금	9,150,100	
- 조사관리자	3,926,300	56,090원*5명*14일
- 내검입력원	1,813,350	51,810원*5명*7일
- 업무보조원	3,410,450	51,810원*2명*32 ~ 33일
■ 운영비	44,426,030	
- 도급조사원	20,677,620	(53,540원*25명*2일)+(17,840원*1000가구)
- 조사필수품	10,300,000	10,000원*1,030가구
- 보고서 인쇄	4,000,000	
- 조사표, 지침서류 인쇄	3,045,500	조사표, 지침서, 편철표지, 협조문, 봉투
- 자문료	1,200,000	150,000원*4명*2회
- 기타운영비 등	4,752,910	홍보, 사무용품비 등
- 특근매식비	450,000	6,000원*75일
■ 국내여비	3,500,000	
- TF 회의 등	1,920,000	80,000원*3명*8회
- 현장조사 실사지도	1,020,000	60,000원*1명*17일
- 지자체 업무협의	560,000	60,000원*3명*3회
■ 업무추진비	400,000	
- 조사원 간담회	400,000	10,000원*40명
■ 민간이전	496,510	
- 산재, 고용	188,020	30일미만 근로자
- 산재, 고용, 국민, 건강	308,490	30일이상 근로자

1) 현장조사 1일 업무량 : 3가구, 내검입력 1일 업무량 : 25가구

2) 2017년 일용임금 및 도급단가 적용

3) 조사필수품 : 가구주 조사표 1만원, 협조용 3%

참고자료 : 표본규모별 예산 산출

< 1,500가구 기준 >

(단위 : 원)

예산과목	소요예산	산 출 내 역
합계	89,921,600	
■ 일용임금	13,121,450	
- 조사관리자	5,048,100	56,090원*6명*15일
- 내검입력원	4,662,900	51,810원*6명*15일
- 업무보조원	3,410,450	51,810원*2명*32 ~ 33일
■ 운영비	72,403,640	
- 도급조사원	30,803,640	(53,540원*33명*2일)+(53,540원*500일)
- 조사필수품	22,950,000	10,000원*1,545가구+5,000원*1500가구
- 보고서 인쇄	6,000,000	
- 조사표, 지침서류 인쇄	6,000,000	조사표, 지침서, 편철표지, 협조문, 봉투
- 자문료	1,200,000	150,000원*4명*2회
- 기타운영비 등	5,000,000	홍보, 사무용품비 등
- 특근매식비	450,000	6,000원*75일
■ 국내여비	3,300,000	
- TF 회의 등	1,920,000	80,000원*3명*8회
- 현장조사 실사지도	1,020,000	60,000원*1명*17일
- 업무협의	360,000	60,000원*2명*3회
■ 업무추진비	600,000	
- 조사원 간담회	400,000	10,000원*40명
- 업무협의회	200,000	
■ 민간이전	496,510	
- 산재, 고용	188,020	30일미만 근로자
- 산재, 고용, 국민, 건강	308,490	30일이상 근로자

- 1) 현장조사 1일 업무량 : 3가구, 내검입력 1일 업무량 : 20가구
- 2) 2017년 일용임금 및 도급단가 적용
- 3) 조사필수품 : 가구주 조사표 1만원, 가구원 조사표 5천원, 협조용 3%

제 2 절 조사표 설계

주요내용 및 확인사항

- 조사표는 응답자가 쉽게 이해하고 답할 수 있도록 작성
- 조사표는 「조사표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작성

2-1. 조사항목

■ 항목체계

- ▶ 조사항목은 크게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분
 - 기본항목 : 복지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작성할 필요가 있는 항목으로, 필수적인 공통항목과 선택적인 선택항목으로 구분
 - 자율항목 :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 항목체계에 존재하지 않아도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는 항목
- ▶ 응답항목의 경우에도 변경가능과 변경불가를 구분
 - 변경불가 : 응답항목을 임의로 수정 불가(고정형 응답범주)
 - 변경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 보기를 추가·삭제·수정 가능

■ 조사항목

- ▶ 조사표의 구성 : 가구주 조사표, 가구원 조사표
- ▶ 조사영역(14개) :
 - 공통영역(6개) : 가구일반, 주거, 근로상태 및 일자리, 소득 및 지출, 건강, 사회복지 인프라 및 복지의식
 - 선택영역(8개) : 저소득, 영유아, 아동 및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여성, 다문화, 여가 및 사회참여

▶ 조사항목 분류(14개 분야 94개 항목)

대분류	중분류	조사항목	조사항목 구분	응답항목 구분	조사대상 구분
I.가구 일반	1.가구일반(8)	① 성명	공통	변경불가	가구주
		② 가구주와의 관계			
		③ 성별			
		④ 생년월일			
		⑤ 혼인상태			
		⑥ 교육수준			
		⑦ 국적			
		⑧ 장애종류 및 등급			
II.주거	1.주거(8)	① 주택유형	공통	변경불가	가구주
		② 주택 점유형태	공통		
		③ 주택규모	공통		
		④ 주택 건축시기	공통		
		⑤ 주택위치	선택		
		⑥ 겨울철 난방 에너지 지원	공통		
		⑦ 난방비	공통		
		⑧ 난방비 부담	공통		
III.근로상태 및 일자리	1.근로상태 및 일자리(6)	① 근로능력 정도	공통	변경불가	가구주/ 가구원
		② 경제활동상태 및 종사상 지위			
		③ 직종			
		④ 근로시간 형태			
		⑤ 주당 근로시간			
		⑥ 일자리 만족도			
IV.소득 및 지출	1.가계지출(5)	① 지출비중이 큰 항목	공통	변경불가	가구주
		② 비소비지출액			
		③ 생활비			
		④ 경제적 어려움			
		⑤ 생활비(최소생활비, 적정생활비)			
	2.가계소득(4)	① 가구소득	공통	변경불가	가구주
		② 이전소득			
		③ 비경상소득			
		④ 노후생활대책			

대분류	중분류	조사항목	조사항목 구분	응답항목 구분	조사대상 구분
	3.가계부채(1)	① 부채유무	공통	변경불가	가구주
	4.국민기초 생활보장(1)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가구 여부	공통	변경불가	가구주
V.저소득	1.저소득(3)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보장급여 ②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서비스 (인지도, 이용경험 등) ③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경험 (신청이유 등)	선택	변경가능	가구주
VI.건강	1.건강(14)	① 건강상태 ② 만성질환 여부(치료기간, 도움필요여부) ③ 건강검진 수검여부(건강검진 종류) ④ 지방자치단체 운동프로그램 참여 여부 ⑤ 규칙적인 운동 여부(운동횟수, 장소) ⑥ 하루 수면시간 ⑦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 ⑧ 스트레스로 인한 전문가 상담여부 ⑨ 슬픔, 절망감 경험(상담여부) ⑩ 죽고 싶다고 생각한 경험(자살시도) ⑪ 우울감, 자살 극복방법 ⑫ 보건소 이용 경험(만족도) ⑬ 병의원을 이용할 수 없었던 경험 ⑭ 의료서비스 만족도	공통	변경가능	가구주/ 가구원
VII.영유아	1.영유아(4)	① 영유아 돌봄 ② 보육시설 만족도 ③ 보육시설 이용하지 않는 이유 ④ 영유아 대상 서비스 (인지도, 이용경험 등)	선택	변경가능	가구주
VIII.아동 및 청소년	1.아동 및 청소년(2)	① 학교에 다니지 않는 가구원 유무 (다니지 않는 이유) ② 아동, 청소년 대상 서비스 (인지도, 이용경험 등)	선택	변경가능	가구주
IX.어르신	1.어르신(5)	① 연금수급(수급여부, 수급자수) ② 어르신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인지도, 이용경험 등) ③ 어르신 보건 지원 서비스 (인지도, 이용경험 등)	선택	변경가능	가구주

대분류	중분류	조사항목	조사항목 구분	응답항목 구분	조사대상 구분
X.장애인	1.장애인(7)	④ 노인복지강화 사업	선택	변경가능	가구주
		⑤ 노인복지우선 확대사업			
		① 장애인 급여 수급(수급여부, 수급자수)			
		② 장애인 가구의 어려움			
		③ 장애인 주거 지원 서비스 (인지도, 이용경험 등)			
		④ 장애인 자립생활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인지도, 이용경험 등)			
		⑤ 장애인 가정 지원 서비스 (인지도, 이용경험 등)			
XI.여성	1.여성(5)	⑥ 장애인 가구 추가 소요비용 여부	선택	변경가능	가구주
		⑦ 장애인 복지 역점 사항			
		① 여성 생활환경 안전도	선택	변경가능	가구주/ 가구원
		② 필요한 안전정책			
		③ 여성편의시설에 대한 의견			
XII.다문화	1.다문화(4)	④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중요 요인			
		⑤ 여성을 위한 주요 역점 사항			
		① 다문화 어려움	선택	변경가능	가구주/ 가구원
		② 다문화관련 건강 및 고용지원 서비스 (인지도, 이용경험 등)			
XIII.여가 및 사회참여	1.여가생활(2)	③ 다문화관련 교육 및 생활지원 서비스 (인지도, 이용경험 등)			
		④ 다문화우선 정책			
	2.사회활동(5)	① 참여여가활동	선택	변경가능	가구주/ 가구원
		② 여가활동 함께 하는 사람			
		① 사회활동 참여 (참여경험, 향후 참여의사)	선택	변경가능	가구주/ 가구원
		② 자원봉사 참여 경험(횟수, 분야)			
		③ 자원봉사활동 참여 의향 (희망분야, 어렵게 하는 이유)			
		④ 1365자원봉사포털 인지 여부 (이용경험, 만족도)			
		⑤ 기부/후원 여부(유형, 하지 않는 이유)			
XIV.사회복지 인프라 및 복지의식	1.사회복지 인프라(4)	① 지역에 위치한 복지시설 만족도	공통	변경불가	가구주/ 가구원
		② 사회복지관련 시설 이용시 좋은점			
		③ 사회복지관련 시설 이용시 불편한 점			
		④ 필요한 복지시설			

대분류	중분류	조사항목	조사항목 구분	응답항목 구분	조사대상 구분
	2.지역사회 만족도(5)	① 생활영역 만족도	공통	변경불가	가구주/ 가구원
		② 삶의 질 전년도 비교			
		③ 타지역 대비 거주지역 만족도			
		④ 역점 추진 복지 분야			
		⑤ 복지 우선 지원 대상			



조사항목 설계시 참고사항

- 표준 조사항목 설계시 복지영역별 '대상 서비스(정책)'는 제안된 내용으로, 지자체별 항목 설계시 해당 '대상 서비스(정책)'는 변경이 가능함
- 표준 조사항목 설계시 '지역에 위치한 복지시설'은 제안된 내용으로, 실제 항목 설계시에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복지시설로 변경 가능함

시범지역 자율항목 현황

경기도 여주시

지자체명	주제	조사문항/지표	활용 목적
여주시	노인가구 경제활동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경제활동참여도 (직종 포함) 및 소득조사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근로의사, 노인이 일하고 싶은 주된 이유	노인들의 적정생활 비용 분석과 근로 참여 욕구 파악
	노인가구 건강 및 여가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건강 일상생활, 질병, 수발서비스 - 노인복지시설(여가시설) 인지도, 이용경험·어려움, 향후 이용의향	노인복지 향상서비스 계획수립
	영유아가구	보육시설 인지도·이용경험, 자녀양육 필요 서비스, 출산 계획 시 걱정되는 사항	보육서비스 지원 및 보육프로그램 제공 기관 인센티브 제공 방안 수립
	주거실태	소득대비 주거비(전·월세) 부담률, 계층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거주 유형 조사	주거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지자체명	주제	조사문항/지표	활용 목적
양산시	건강	양산시 향노화 서비스프로그램 인지도, 희망 서비스 분야, 참여 의향	활동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 및 인프라 조성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소득, 소비 실태 및 서비스 욕구	저소득층 생활안정
	아동	아동관련 복지시설 인지도, 이용경험, 이용의향	맞춤형 서비스제공
	자원봉사	1365 자원봉사 포털 이용경험 횟수, 방법	자원봉사 활성화

응답소요시간 및 방문횟수(시범지역 여주시 기준)

- ▶ 평균적인 응답 소요시간은 54분, 평균 방문횟수는 2.1회이나 가구원수, 조사 대상 문항수에 따라 차이가 있음
- ▶ 읍면부 지역보다는 동부지역이, 일반조사구보다는 아파트조사구가 응답소요 시간 및 방문횟수가 높게 나타나 조사대상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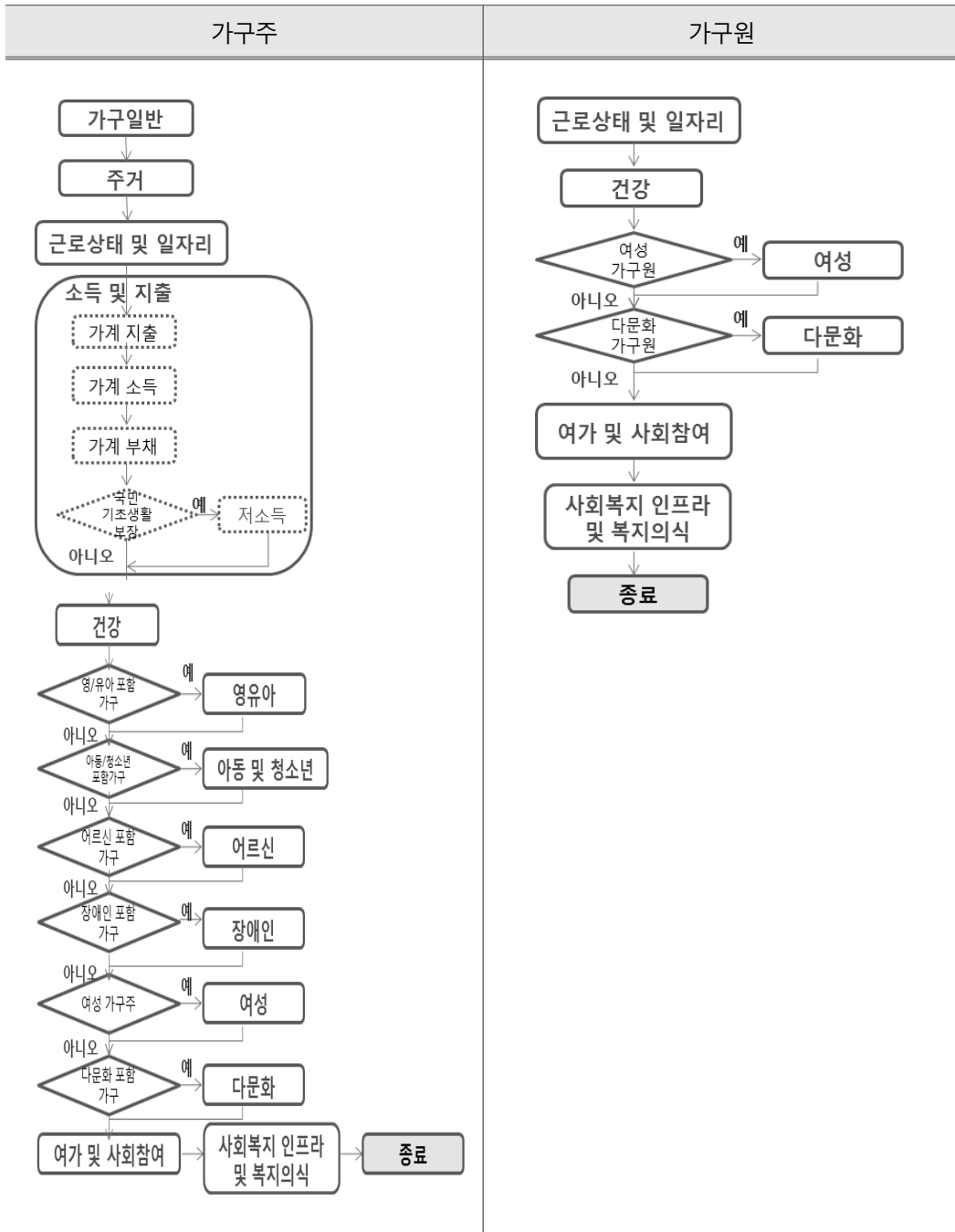
	가구원수				권역		조사구 특성	
	1인	2인	3인	4인이상	동부	읍면부	일반	아파트
응답 소요시간	40	54	66	70	58	51	52	60
방문 횟수	2.1	2.1	2.2	2.3	2.2	2.0	1.9	2.5

- ▶ 조사원 업무량 산정 및 향후 조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방문시기 및 방문 결과를 기록하도록 조치(설문지 표지에 기록)

응 답 정 보	1차 방문	___ 월 ___ 일 ___ 시 ___ 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미완사유 :
	2차 방문	___ 월 ___ 일 ___ 시 ___ 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미완사유 :
	3차 방문	___ 월 ___ 일 ___ 시 ___ 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미완사유 :
	최종방문	___ 월 ___ 일 ___ 시 ___ 분	방문결과	① 완료	
	※ 미완사유코드 ① 늦은 귀가 ② 장기출타 ③ 부재중(원인 미파악) ④ 조사거부 ⑤ 기타				
	조사표완료 소요시간		총 _____ 분	총 방문 횟수	총 _____ 회

2-2. 조사표 구성

표준조사표의 구성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기본항목 적용

-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복지실태조사 기본항목(선택항목 포함)을 조사표에 반영하여 지역 간 비교가능성 제고

지자체 자율항목 개발

- 기본항목 이외에 별도로 통계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자체 자율항목으로 문항 추가 가능
- 정책 추진 방향 설정 및 이미 수립된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음
 - (1단계) 관련 과에 조사표 설계관련 수요조사표 배부
 - (2단계) 수요조사표를 통한 자율항목 개발
 - (3단계~끝) 실무자 회의를 통한 조사표 검토 및 개발
 ⇒ 1단계~끝 과정까지 반복하여 조사표 항목 완성

〈 수요조사 서식(예) 〉

소속 (부서)	부문 명칭	지표명	조사문항	활용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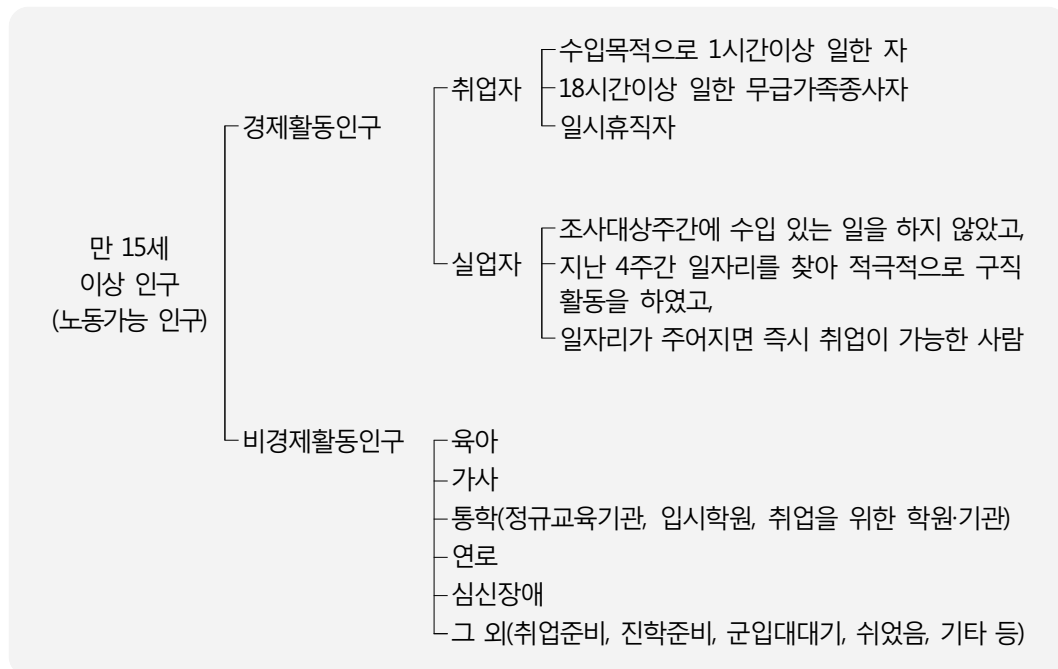
적용 분류체계

- 직업분류체계(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

대분류	중분류
1 관리자	11 공공 및 기업 고위직
	12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13 전문서비스 관리직
	14 건설·전기 및 생산관련 관리직
	15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22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대분류	중분류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27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2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3. 사무종사자	31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32 금융 및 보험 사무직
	33 법률 및 감사 사무직
	39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4. 서비스 종사자	41 경찰·소방·보안 관련 서비스직
	42 이미용·예식·의료보조 서비스직
	43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44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5. 판매종사자	51 영업직
	52 매장 판매직
	53 방문·노점·통신 판매 관련직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61 농축산 숙련직
	62 임업 숙련직
	63 어업 숙련직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1 식품가공관련 기능직
	72 섬유·의복·가죽 관련 기능직
	73 목재·가구·악기·간판 관련 기능직
	74 금속성형관련 기능직
	75 운송 및 기계관련 기능직
	7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77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78 영상 및 통신 장비 관련 기능직
	79 기타 기능 관련직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81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직
	82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조작직
	83 화학관련 기계조작직
	84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조작직
	85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조작직
	8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87 운전 및 운송 관련직
	88 상하수도 및 재활용처리관련 기계조작직
	89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조작직
9. 단순노무 종사자	91 건설 및 광업관련 단순노무직
	92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93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
	99 농림어업 및 기타서비스 단순노무직
A. 군인	A11 군인
	A12 장교

▶ 경제활동인구 체계



■ 조사표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조사표 표지 작성

수록항목	가이드라인	
국가승인 (협의) 통계마크		> 크기 : 도안은 지름 1.5 ~ 3.0cm > 편집허용 : 도안배경, 색깔, 글꼴크기 그 외 사항은 관련규정 엄수 > 위치 : 조사표 표지의 왼쪽 위
지자체CI		> 조합 : 로고타입(왼쪽), 심벌마크(오른쪽) > 로고 : 국문 및 영문 기관명 표기 > 심벌 : 명도에 따른 색상 표현 가능 > 위치 : 조사표 표지의 가운데 아래
조사표명	> 규칙 ① 조사표명 앞부분에 연도를 숫자로 표기하고 '년' 표기 ② 조사명 뒤 '표' 표기 ③ 조사대상 및 조사부문 괄호로 표기 > 위치 : 조사표 표지의 가운데 위	
감사 인사말	> 문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치 : 마지막 조사항목 아래	
홈페이지 주소	> 표기법 : 지자체 대표 홈페이지만 표기 http://www.ooo.go.kr > 위치 : 조사표 표지의 가운데 아래(지자체CI 아래)	

제 3 절 표본설계 및 관리

주요내용 및 확인사항

- 조사모집단의 명확한 정의 및 추출틀 등을 철저히 준비
- 표본크기와 가장 효율적인 추출법을 정하여 표본을 추출

3-1.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

❑ 목표모집단

조사의 관심대상이 되는 모든 기본단위들의 집합

- ▶ 조사시점 기준 지역의 만 13세 이상 모든 개인

❑ 조사모집단

현실적으로 조사가 가능하고 추출틀을 작성할 수 있는 추출단위들로 구성된 모집단

- ▶ 조사하기 어려운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제외한 일반 가구의 만 13세 이상 모든 가구원

❑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의 차이

- ▶ 조사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조사가 가능한 모집단으로 구성하기 위해 면접조사가 어려운 섬, 기숙시설 및 특수사회시설을 제외하여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제외되는 시설의 종류 : 학교기숙사, 회사기숙사,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3-2. 표본추출틀

표본추출틀

표본추출단위들로 구성된 목록으로 정의된 모집단 내의 모든 추출단위들이 포함

- ▶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중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조사구를 제외한 보통 조사구 및 아파트조사구

표본추출틀의 출처

- ▶ 통계명 : 인구주택총조사
- ▶ 작성기관 : 통계청
- ▶ 작성년도 : 매년

표본추출틀 선정이유

- ▶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와 주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
- ▶ 통계청은 매년 생성 또는 소멸되는 조사단위를 반영하기 위해 최신 정보를 추가적으로 모집단에 반영하고 있으며, 통계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은 매년 보완된 표본추출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표본추출틀 갱신 과정 및 내용 등

- ▶ 매년 등록센서스*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인구·가구·주택의 규모·구조 및 주요 특성에 대한 자료를 갱신
- *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인구·가구·주택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는 방식

3-3. 표본설계 방법 및 결과

▣ 표본설계 개요

- ▶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하기 위한 과정을 계획하는 것으로, 모집단 정의, 표본추출틀 구성, 표본 크기 및 추출 방법 등이 포함

▣ 표본설계 방법 및 과정

▶ 표본추출틀과 추출단위

- (추출틀)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구 중 아파트조사구(A), 보통조사구(1)만을 대상으로 함
- (추출단위) 1차 추출단위 → 표본 조사구, 2차 추출단위 → 추출된 표본 조사구의 가구

▶ 모집단 분석

- 지역 및 조사의 특성, 관심변수와 연관성이 있는 주요특성에 대해 조사 모집단의 분포 분석
- 조사모집단 분석을 통해 층화변수 및 분류지표를 결정
- 모집단 분석은 조사대상의 특성을 부문별(가구, 인구 등)로 파악하고, 그 안에서 발견된 정보를 표본설계에 이용하기 위함

▶ 층화 및 분류 지표 선정

- (층화*) 권역별로 층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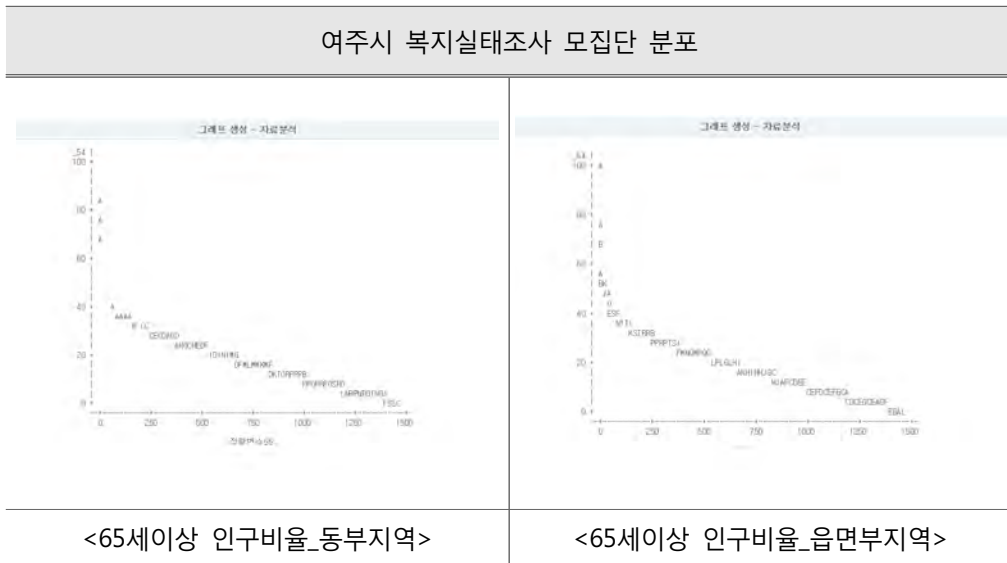
* 층화란 모집단을 특성에 따라 서로 동질적인 몇 개의 부분집단으로 나누는 과정으로, 모집단을 몇 개의 층으로 나눈 후에 각 층별로 독립적인 표본추출이 이루어지게 됨. 효과적인 층화가 이루어질 경우 추정치의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부분통계의 생산이 가능하고 경비절감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층화를 잘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필요

- (분류 지표) 층화 후 조사구 특성을 반영하는 분류지표(보조층화지표)에 따라 조사구를 정렬한 후 계통추출방법으로 조사구를 추출하면, 보조층화 지표도 사실상 층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분류지표 선정) 조사모집단 분포에서 확인한 변수들에 대하여 가장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변수를 분류지표로 선정

예) 복지실태조사의 경우 조사특성상 소득과 관련성이 많고 지역특성상 65세이상 인구 비율이 높아 자가비율과 65세이상인구 비율을 분류지표로 선정(추가 검토변수 : 평균 가구원수, 주거용 연면적, 가구주 교육정도 등)

- (분류지표 반영) 선정된 분류지표를 대상으로 의사결정나무, 변곡점 등을 이용한 구분점 탐색이 가능하며, 둘 이상의 분류지표 적용 시 유의성이 높은 순서로 분류지표 순위 선정 필요



▶ 표본크기의 결정

- 조사목적에 맞는 목표정도를 정한 후 그것을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예산, 조사인력 등 조사관련 제약조건들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 신규조사의 경우 단순임의 추출에서의 모비율 추정식 이용

$$n = \frac{z^2 p(1-p)}{e^2 + \frac{z^2 p(1-p)}{N}} \times deff \quad N : \text{모집단 가구수}$$

* 추정식의 설계효과는 유사조사가 있는 경우 활용

▶ 표본배분

- 각 지역별 표본규모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표본배분이 불필요하나, 전체 표본규모를 결정한 이후에 지역별 표본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배분 방법을 결정
- 제곱근비례배정은 규모가 작은 층의 추정값에 대한 정도를 따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며, 층별 표본규모가 유사한 경우에는 비례배정이 일반적임

▶ 표본 추출

- (표본조사구 추출) 층별 확률비례 계통추출법 사용
- (표본가구 추출) 단순 임의추출(SRS) 사용
 - 조사구당 가구수는 15가구 이상으로 결정

* 표본으로 한번 추출된 조사구는 응답부담 완화를 위하여 일정 기간 다른 조사에 사용되지 못함으로, 표본추출틀의 포함률 하락 방지를 위하여 15가구 이상을 권장

➡ 표본배분 방법 및 추출 방법

구분	종류	내 용 설 명
표본 배분 방법	비례배분	· 층별로 모집단의 구성비만큼 표본을 배분하는 방법으로서 표본층의 구성비를 모집 · 단층의 구성비에 맞추어 주는 방법으로 모집단에 대한 이용가능한 정보가 거의 없을 경우 활용되는 배분방법
	제곱근배분	· 조사에서 전체 추정값에 대한 정보보다는 각 층별로 추정값에 대한 정도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쓰이는 방법
	최적배분	· 층별 조사단위당 조사비용이 서로 다르고, 층별 모집단 분산이 다를 때 이를 감안해서 표본을 배분할 때 유용
표본 추출 방법	단순임의 추출	· 크기 N개의 모집단에서 n개의 추출단위를 뽑을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경우 각각에 표본으로 추출될 가능성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법 · 모집단의 모든 조사단위의 추출틀을 구하기 어렵고 조사비용이 많이 소요

구분	종류	내 용 설 명
	계통표본 추출	- 추출틀에 수록된 처음 k개의 추출단위에서 하나를 임의로 뽑고, 그 다음부터는 매 k번째에 해당되는 추출단위를 뽑는 추출법 - 간편하면서 추출단위가 골고루 뽑힌다는 장점 - 추출단위들이 특정한 경향을 가진 경우 편향이 발생
	층화추출	- 모집단을 관심변수와 관련성이 많은 보조변수의 값이 유사한 추출단위들끼리 묶어서 만든 층들로 나누고, 각 층에서 단순임의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 - 층별 추정값을 얻을 수 있고, 단순임의추출보다 표본조사의 정도를 높일 수 있음
	집락추출	- 서로 인접한 조사 단위들을 묶어서 집락 또는 조사구를 만든 다음, 집락들 중에서 일부를 추출하고 추출된 집락에 속한 조사단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표본으로 추출 - 모집단의 모든 조사단위에 대한 추출틀보다 집락에 대한 추출틀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경우와 대규모 조사에서 주로 사용

3-4. 표본관리

▣ 조사대상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수정 및 보완 방법

▶ 표본조사구 요도 확인 및 보완

- 표본조사구의 조사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구요도(건물, 도로 등이 표기된 조사용 지도)를 실지 확인하여, 재개발·재건축 등 조사구 교체 사항을 확인함
- 조사구요도 상 건물 및 도로 등의 위치가 실제와 다른 경우, 요도상에 직접 표기하여 수정·보완 함

▶ 표본조사구의 현지 확인 방법

읍면동 행정협조	- 지리적 변동상황을 잘 알 수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협조를 받아 표본조사구 변동상황 파악
직원(조사원) 현지 확인	- 직원(또는 조사원)이 직접 표본조사구를 방문하여 변동상황을 파악

▶ 표본조사구 교체사유

재개발·재건축	- 공고를 확인하여 시공사가 선정되는 등 6개월 내에 본격 이주가 예상 되면 조사구 교체
우범·유흥가	- 조사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조사구 교체 - 유흥업소 종사자가 다수 거주하더라도 우범지역이 아니라면 조사구 교체 불가
표본조사 중복	- 타 기관의 조사와 중복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집단 불응 할 경우 조사구 교체 가능
가구수 과소	- 조사구 내 총가구수가 20가구 미만인 경우만 조사구 교체
기타 (집단불응)	- 일부가구의 불응이 아니라 집단불응인 경우만 조사구 교체 - 교체요청 시 면접 가구수, 불응 가구수, 집단불응현황 등을 기입

▶ 표본조사구 교체 방법

- 표본추출을 위해 층별, 분류지표별로 정렬된 표본추출틀 내에서 대체할 조사구와 특성이 유사한 조사구로 대체

▶ 표본조사구 교체 절차(지방통계청 기술지원, 인총 모집단 사용시)

- 통계담당자가 표본추출 및 설계담당부서에 교체 요청
(00 시(군)청 ⇒ 00 지방통계청)
- 교체사유 타당성 검토 및 대체 표본조사구 추출(00 지방통계청)
- 요도 및 가구명부 복사(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과)
- 요도 확인 및 현지 방문하여 조사 가능성 확인(00 시(군)청)

▶ 표본가구 대체 사유

불응가구	- 전체 가구원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불능가구	- 가구원 전원이 병원입원, 해외여행, 출장 등으로 부재중 또는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부적격	- 가구원 전원이 조사대상 적격연령이 없거나,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경우
빈집, 철거	- 이사 등으로 인한 전출 가구이거나, 재개발 등으로 인해 해당 가구가 철거된 경우 - 빈집은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말하며 신축되어 아직 입주하지 않은 주택도 포함
거처 종류 변동	- 상가 등으로 거처 종류가 변경되어 조사대상 가구가 아닌 경우

▶ 표본가구 대체 방법

- 조사원이 조사관리자나 담당자에게 교체를 요청하면 대체사유가 적절한지를 확인 후 교체
- 단, 신축으로 인해 새로운 가구가 생긴 경우에는 거쳐번호와 가구번호 부여 원칙에 따라 새로운 번호 부여

▣ 단계별 조사대상자 관리방법 및 내용

▶ 표본조사구 선정후

- 표본조사구의 현지확인 등을 거쳐, 대체여부를 확인후 조사 실시 전 대체

▶ 준비조사 기간 중

- 조사가구에 협조 안내 및 조사안내문 등을 배부하며, 응답대상의 거주 여부를 확인
- 응답대상의 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적격가구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조사구 대체

▶ 본조사 기간 중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명부를 작성하여, 응답대상의 누락 및 착오를 방지

3-5. 표본추출시스템 및 지방통계청 기술지원 안내

▣ 표본추출시스템 이용

- ▶ 통계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은 표본추출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통계청 예규 제183호 표본설계 및 관리지침

제6조(표본추출틀 보완) ③ 매년 보완된 표본추출틀 정보는 표본설계를 위해 통계청 소속기관 및 통계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표본추출시스템 소개 및 이용방법

- 웹을 기반으로 하여 인터넷을 쓸 수 있는 환경에서 등록된 사용자는 누구든지 시스템에 접속하여 쉽게 표본설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구현
- 표본추출시스템 : <http://www.narastat.kr/ses/index.do>

〈 표본추출시스템 초기화면 〉

▶ 지방통계청 기술지원 요청

- ▶ 통계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은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표본설계 등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통계법 제13조 (예산·인력 및 기술 등의 지원)

- ②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부터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자문이나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해당 지자체 관할 지방통계청

지방통계청	관할 지역
경인지방통계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동북지방통계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
호남지방통계청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동남지방통계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충청지방통계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3장

조사준비

제 1 절

종합실시계획 수립

주요내용 및 확인사항

- 종합실시계획은 업무단계별 추진계획을 자세하게 수립

■ 업무개요

- ▶ 종합실시계획은 시험조사 실시결과를 토대로 하여 전체적인 통계작성 각 업무단계별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추진일정을 수립하는 것을 말함

■ 계획수립 시 포함해야할 주요 내용

- ▶ 조사일정
- ▶ 조사표류 준비
- ▶ 조사인력 운영
- ▶ 홍보실시
- ▶ 준비조사, 본조사
- ▶ 자료처리
- ▶ 자료분석 및 결과공표, 보고서 발간
- ▶ 소요예산

 참고자료 : 종합실시계획 목차

- I. 조사배경
- II. 조사개요
 - 1. 조사목적
 - 2. 법적근거
 - 3. 조사연혁
 - 4. 조사대상
 - 5. 표본설계
 - 6. 조사주기
 - 7. 조사일정
 - 8. 조사내용
 - 9. 조사방법
 - 10. 조사인력 및 체계
 - 11. 소요예산
 - 12. 추진일정
 - 13. 결과물 제출
- III. 세부추진계획
 - 1. 업무 흐름도
 - 2. 기관별 수행 업무 및 역할
 - 3. 인력운영
 - 4. 조사용품 구입.배부.관리
 - 5. 사무 공간 및 PC임차
 - 6. 홍 보
 - 7. 교 육
 - 8. 준비조사 및 본조사
 - 9. 입력.내검
 - 10. 실사지도
 - 11. 추진현황 보고
 - 12. 통계조사 검증
 - 13. 조사표류 제출
 - 14. 자료처리 및 조사결과 집계
 - 15. 조사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16. 안전관리 및 보안
- IV. 소요예산
- V. 추진일정표
- VI. 행정사항

제 2 절 통계작성 승인 신청

주요내용 및 확인사항

-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작성 승인을 신청해야 함
 - 통계작성 승인 작성절차,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변경승인 절차 등 참고

통계작성 승인 제도

통계작성 승인 제도의 취지

- 유사·중복통계작성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응답부담을 경감시키고, 인력·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
- 통계의 기술적 측면에서 작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검토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제거

통계작성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 처음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는 물론 기존의 승인통계 이외의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모두 해당



통계법 제18조 (통계작성의 승인)

-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통계작성 승인

▶ 승인 관련 부서

- 시도 단위 : 통계청 통계조정과
- 시군구 단위 : 지방청 지역통계과

▶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제출)** 해당 통계의 조사 등 자료수집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또는,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 **15일** 전까지 신청
- **(제출방법)** 신청서공문은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여 해당지방청에 제출 후 나라통계시스템(<http://narastat.kr>)내에 있는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공문 시행한 첨부물과 동일한 자료를 업로드 하여야 하며, 추후 수정변경 사항은 시스템 내에서 실시
-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통계법 시행규칙 제12조
 - ①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
 - 통계작성 승인신청사항을 전반적으로 기술한 통계개요(p56 작성개요 참조)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서 또는 요령서
 - ③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
 - ④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 ⑤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 ⑥ 표본설계 요약서(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 신청 결과통보 및 고시

- 승인 처리기간 내 승인여부 결정과 문서에 의한 통보 및 고시
 - 고시는 매주 1회 통계청 홈페이지에 게재
 - 홈페이지 주소 : <http://kostat.go.kr>(새소식-공지사항-고시)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나라통계시스템(<http://narastat.kr>)에서 전자신청하는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계작성 [] 승인신청서
[] 협의의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조사·가공 통계) 7일(보고통계)
① 통계의 명칭		② 통계의 종류 : 일반 [], 지정 []	
③ 통계작성 목적(근거 법률)		④ 통계작성 사항	

⑤ 통계작성 대상	대 상 : 개인 [], 가구 [], 사업체 [], 그 밖의 대상 []
	모집단
	대상 범위 및 규모
	대상 지역

⑥ 통계작성 기준시점(기간)	
⑦ 조사(보고) 기간	
⑧ 작성 주기	

⑨ 통계작성 및 자료수집 방법		[] 전수, [] 확률표본, [] 유의표본, [] 기타 :
	[] 조사	[] 면접, [] 전화, [] 우편(팩스), [] 배포(유치) [] 집합, [] 인터넷, [] 관측, [] 기타 :
	[] 보고	[] 행정집계, [] 행정조사
	[] 가공	이용통계명 자료명

⑩ 통계작성 체계	⑪ 통계작성 분류체계 [] 표준분류 : , [] 그 밖의 분류 :
⑫ 통계결과 공표	⑬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송 계획

「통계법」 제18조 제1항 전단, 제20조 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계작성 승인(협의)를 신청(요청)합니다.

○
○
○

기 관 장

광익

통계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성별구분 여부 포함) 1부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 또는 요령서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필요한 경우 성별 구분란을 표시합니다)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로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통계작성 승인(협의) 신청서 작성방법

작 성 방 법

- ① 통계의 명칭: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작성승인을 받거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려는 통계의 명칭을 기입
- ③ 통계작성 목적(근거 법률): 협의요청인 경우 통계작성의 근거 법률을 함께 기입
- ④ 통계작성 사항: 조사 또는 보고 항목 등을 주요 부문별로 구분하여 항목별 항목 수를 기입
(예: 사업체 일반사항 ○개 항목, 고용 관련 ○개 항목, 급여 관련 ○개 항목 등)
- ⑤ 통계작성 대상
 - 모집단: 표본조사의 경우 표본 모집단명을 기입
 - 대상 범위 및 규모: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이 되는 응답자의 속성과 범위
(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F건설업에 해당하고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업체, 전국의 84개 도시의 근로자 가구 등)를 적고, 규모는 작성대상이 되는 개인·가구·사업체수, 작성하는 기관 수 등을 기입
 - 대상 지역: 전국 또는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실시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명을 기입
- ⑨ 통계작성 및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 방법은 두 가지 이상인 경우 해당 항목 모두 체크
 - **조사**: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여 조사한 자료를 통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 **보고**: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 **행정집계**: 개인·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또는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실적 등의 자료를 집계하여 보고하는 경우
 - **행정조사**: 행정기관이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집계하여 보고하는 경우(신고한 자료의 확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포함)
 - **가공**: 한 종류 이상의 통계와 추가로 수집한 통계자료 또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 ⑩ 통계작성 체계: 조사표나 보고서식 등이 작성되어 통계작성기관까지 수집되는 계통을 기입
(예: 읍·면·동 → 시·군·구(...과/팀) → 시·도(...과/팀) → 행정자치부(...과/팀))
- ⑪ 통계작성의 분류체계: 표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국표준무역분류, 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를 기입
 - 표준분류와 다른 경우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분류를 기입
- ⑫ 통계작성결과와 공표예정일과 공표방법을 기입
- ⑬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통계데이터를 통계청에 전송하는 일정을 기입
(예: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0000년 00월, 전송 예정일(0000년 00월))
- ※ 첨부서류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에는 조사대상이나 항목이 자연인인 경우 성별 구분을 표시하여야 함

▶ 표본설계의 내용검토

구 분	검 토 내 용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 모집단의 정확한 정의가 이루어졌는가? - 표본추출틀의 구성가능성/포함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 사용가능한 보조프레임이 있는가?
목표오차 또는 표본규모	- 목표오차를 고려하여 표본규모를 산출하였는가? - 주어진 예산과 현실성이 반영되었는가? - 표본크기 산출공식이 명시되었는가?
표본추출방식	- 조사목적에 적합한 표본추출방식을 채택하였는가? - 확률표본추출방법을 채택하였는가? - 층화, 복합표본, PPS, 자체가중 등의 방식을 채택하였는가? - 효율적인 층화기준을 고려하였는가?
표본배정/ 선정방식	- 합리적인 층별 표본배정 방식을 채택하였는가? - 층별 또는 주요 범주별 최소표본수를 할당하였는가? - 층별 또는 주요 범주별 예상 상대표준오차를 제시하였는가?
추정식	- 표본추출방식에 의한 가중치를 적용하였는가? - 무응답 및 사후층화 가중치를 고려하였는가? - 가중치 및 표본추출방식을 고려한 평균, 총합, 비율, 분산식을 채택하였는가? - 복합설계의 경우 선형화 또는 반복분산 추정방법을 고려하였는가?
주요항목별 공표범위	- 주요항목별 공표범위를 제시하였는가? - 공표범위별 표본규모가 적절한가?

➡ 표본설계의 주요 검토기준

구 분	검 토 기 준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 모집단과 표본추출틀을 정확히 제시해야 함 (예/시) △△에 수록된 ○○○개 대상 - 조사대상에 대한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표본추출틀을 구성하여야 함
목표오차 또는 표본규모	- 목표허용오차와 적정 표본규모를 산출해야 함 (예/시) 전국단위 자료작성인 경우 전국 허용오차 2-3% 지역단위 자료작성인 경우 지역별 허용오차 5-10% - 주요항목에 대한 통계표 작성을 세분화하고자 하는 경우, 표본규모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함
표본추출방식	- 표본추출틀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최대한 확률표본을 적용하는 것이 비표본 오차를 줄일 수 있음 - 표본추출틀이 없는 경우에도, 모집단 포함률을 높일 수 있도록 표본추출대상을 포괄적으로 지정하도록 함
표본배정/ 선정방식	- 모집단수에 비례할당 시, 해당 특성에 대해서 통계표를 작성하는 경우, 범주별 최소표본수를 고려하여야 함 (예/시) 지역별 최소 표본수 30-50으로 배정 - 표본추출단위 선정방식은 랜덤성을 고려해야 함
추정식	- 층별 표본배정한 경우, 가중치를 고려한 추정식을 적용해야 함 - 인구, 연령, 규모별 사업체수 등 모집단 정보를 이용하여 사후층화 가중치를 적용하여야 함 - 평균, 비율, 총합에 대한 추정식 명시 - 표준오차, 분산, 상대표준오차 등에 대한 추정식 명시
주요항목별 공표범위	- 세분화된 통계표 작성 시 각 셀별 응답표본수가 최소한 10~15 이내가 되어야 함 - 응답표본수가 적은 셀은 유사한 셀간 병합하여 통계표 작성해야 함 - 원하는 셀대로 통계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표본규모를 확대하여 조사하여야 함 - 표본설계 시 고려하지 않은 “분류/항목”에 대한 통계표 작성 시 대표성 검토 반드시 필요

작성예시 : 표본설계 요약서

□ 조사개요

조사명	복지실태조사	조사주관	○ ○ ○
표본설계 방식	자체설계 (○)	외부용역 ()	
조사목적	○ ○ ○ 등을 파악하여 ○ ○ ○ 정책수립에 기여		
조사대상	만 13세 이상의 인구		
조사항목	00개 영역 00개 항목		
자료수집 방법	면접조사	조사시기 (조사주기)	2017. ##. ##.~##. ##. (매년)

□ 표본설계 내역

분 류	내 용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 목표모집단 : 조사시점 기준 00시의 만 13세 이상 모든 개인 · 조사모집단 : 조사하기 어려운 기숙시설 및 특수사회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제외한 일반가구의 가구원 · 추출틀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목표오차 또는 표본규모	· 표본규모 : 1,000가구 · 허용오차 : ±3.0%p
표본추출방식 (층화, 특성, 분류지표 포함)	· 층화 2단 집락추출법(Two-stage cluster sampling) - 조사구 추출시 층별 확률비례 계통추출법(PPS_SYS) 사용 · 동부와 읍면부 2개 층으로 층화 · 분류지표 : ① 주택유형별 ② 자가비율 ③ 65세이상인구비율
표본배정방식	층별 가구수 기준, 비례배분
추정식 (평균, 총합, 비율, 분산)	$\hat{\mu} = \bar{y} = \frac{\sum_h \sum_i \sum_j^m w_{hij} y_{hij}}{\sum_h \sum_i \sum_j^m w_{hij}}$ $\widehat{Var}(\bar{y}) = \sum_{h=1}^2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cdot} - \bar{e}_{h\cdot\cdot})^2$
주요항목별 공표범위	· 동부 및 읍면부 공표 · 가구 및 가구원 특성별(가구원수별, 성별, 연령별 등) 공표

※ 내용이 많은 경우 표 안에 작성하지 않고 서술식으로 작성가능

작성예시 : 복지실태조사 작성개요

1. 작성기관 : 00부 00실 00과
(전화번호 : 02-0000-0000, 홈페이지 : <http://kostat.go.kr>)
2. 작성연혁
 - 2017. 7월 : 최초 작성
3. 통계의 종류 : 일반통계(지정통계, 일반통계 중 택1)
4.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승인번호 : 일반통계 호)
5. 작성목적
 - 지역민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여 이를 지역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성과를 모니터링하는 근거자료로 활용
6. 작성대상 : 가구/개인(개인, 가구, 사업체, 기업체 등 해당사항 모두 기입)
 - 범위(모집단) : 지역에 거주하는 만13세 이상 모든 가구원
 - 대상규모(표본크기) : 1,000가구
 - 대상지역 : 00시/00구
7. 작성주기, 기준시점 및 조사(보고)기간
 - 조사주기 : 1년
 - 대상기간(기준시점) : 2017. ##. ##. 0시기준
 - 조사(보고)기간 : 2017. ##. ##.~##. ##.
8. 작성항목
 - 조사표 구성 : 가구주 조사표, 가구원 조사표
 - 13개 부문 00개 항목
 - 주거, 건강, 근로실태 및 일자리, 소득과 지출, 여가 및 사회참여, 사회복지 인프라 및 복지의식
9. 작성방법
 - 작성형태 : 조사(조사, 보고(업무), 가공 중 택1)
 - 대상선정 : 확률표본(전수, 확률표본, 유의표본, 기타() 중 택1)
 - 자료수집 : 면접조사(면접, 우편, 전화(팩스), 배포(유치), 집합, 온라인(인터넷) 등 주된 자료수집 방법 택1)
10. 조사체계(자체, 용역, 위임·위탁 구분)
 - 00시/00구 → 조사관리자 → 조사원 → 조사대상 가구
11. 결과공표
 - 공표주기 : 1년(작성주기와 다를 경우가 있음)
 - 공표시기 : 조사기준년 익년 9월
 - 공표방법 : 보도자료.인터넷게재, 보고서발간(보고서명)
 - 공표범위
 - 지역 : 시군구(전국,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타 중 결과공표 최하위 단위표시)
 - 내용 : 성별, 연령별 등
 - 통계결과 국제기구 제출여부(제출), 국제기구명(OECD)
12. 예산 : _____천원, 예산 지원기관 : 000
13. 기타 참고사항(주요용어, 통계 이용시 유의사항 등 기술)

통계작성 변경승인(협의)

승인작성 변경승인(협의) 대상

- 통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 승인을 얻었거나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협의를 거친 통계에 대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 및 협의를 거친 사항(통계법 시행령 제25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는 경우

* 모집단, 조사시기, 조사항목 등 승인내용 중 일부라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승인이 필수적임

변경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제출)**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받은 사항을 변경승인(협의)을 받으려면 자료수집을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또는,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10일전까지** 신청(통계법 시행령 제 26조 및 제28조)

- **(제출방법)** 신청서공문은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여 해당지방청에 제출 후 나라통계시스템(<http://narastat.kr>)내에 있는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공문 시행한 첨부물과 동일한 자료를 업로드하여야 하며, 추후 수정변경사항은 시스템 내에서 실시

- **(변경 신청서 및 첨부서류)** 통계법 시행규칙 제14조

- ①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서 또는 요령서
- ③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
- ④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 ⑤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 ⑥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신청 결과통보 및 고시

- 변경승인 처리기간 내 승인여부 결정과 문서에 의한 통보 및 고시

- 고시는 매주 1회 통계청 홈페이지에 게재
- 홈페이지 주소 : <http://kostat.go.kr>(새소식-공지사항-고시)

▶ 통계작성변경 승인(협의) 신청서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나라통계시스템(http://narastat.kr)에서 전자신청하는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계작성변경 ☐ 승인신청서 ☐ 협의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설계·조사(보고·지수개편 변경) 5일(그 밖의 사항))

① 신청 통계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 승인(협의) 번호		
	통계의 종류	일반 ☐ ,	지정 ☐
	작성변경 연월일		

②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③ 그 밖의 참고사항
「통계법」 제18조 제1항 후단, 제20조 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7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계작성 변경승인(협의)를 신청(요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관인
통계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성별구분 여부 포함) 1부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 또는 요령서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필요한 경우 성별 구분란을 표시합니다)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통계작성 승인(협의) 신청서 작성방법

작 성 방 법

- ① 통계의 명칭: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통계작성변경 승인을 받거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협의를
거치려는 통계의 명칭을 적습니다.
- ② 변경사항: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작성 승인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협의를거친
통계에 대하여 변경 전과 후의 변경사항과 변경사유를 적습니다.
- ③ 그 밖의 참고사항: 그 밖의 특이사항(협의요청인 경우에는 해당 통계에 관한 근거 법률의 개정여부
등 변동사항)를 적습니다.

제 3 절 입력 프로그램 설계

주요내용 및 확인사항

- 효율적인 통계 생산을 위하여 조사표를 쉽게 입력 및 내검할 수 있도록 입력 프로그램 개발 및 사용

■ 입력 프로그램 개요

- ▶ 입력 프로그램은 수집된 자료(조사표)를 정확하게 자료처리하여 조사결과를 집계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함
- ▶ 입력 프로그램 기본메뉴
 - 명부관리, 입력 및 내검, Data 관리, Data cleaning 및 집계기능 등
- ▶ 입력 프로그램 개발
 - 자체 개발 또는 외부 용역업체에 개발 요청

■ 시범조사 지역 활용 입력 프로그램 안내

- ▶ 나라-Pro 주요 기능
 - (명부 설계 및 관리) 명부에 대한 정보 수집, 오류 검토 및 수정
 - (업무량 배정 및 관리) 관리자가 작업자의 업무 진행상태 확인
 - (조사표 설계) 객관식, 주관식 등 다양한 질문 유형을 제공
- ▶ 이용희망 기관은 공문으로 통계청 조사시스템관리과에 사용 신청
 - 간단한 실무협의 후 즉시 사용 가능
 - 홈페이지(<http://www.narastat.kr/narapro>)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18년도부터 통계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강의 운영

■ 조사에 대한 내검 규칙 설계

- ▶ 가구일반사항과 조사항목간 연계성을 체크하여 오류를 내검할 수 있도록 내검규칙을 설계
 - 조사부문 해당연령과 가구일반사항의 생년월일 연계

조사부문	해당 연령(2017년 기준 예시)
영유아	만0~5세(2011. 7. 7. ~ 2017. 7. 6. 출생자) 가구원이 있는 가구
아동·청소년	만6~18세(1998. 7. 7. ~ 2011. 7. 6. 출생자) 가구원이 있는 가구
어르신	만65세 이상(1952. 7. 6. 이전 출생자)인 가구원
여성	만15세 이상 여성(2002. 7. 6. 이전 출생자)인 가구원

- ▶ 항목간 이동이 조사표대로 설계되었는지, 다중응답 및 우선순위가 있는 조사항목의 경우 응답항목의 개수 설정은 제대로 되었는지 등 확인

▶ 내검규칙(예시)

- 가구일반사항(가구원 인적사항)

항목	내검규칙
가구주와의 관계	생년월일이 20020707 보다 큰데(만15세미만) 가구주와의 관계가 ①가구주 또는 ②배우자인 경우
	생년월일이 19870707 보다 큰데(만30세미만) 가구주와의 관계가 ⑥부모 또는 ⑦조부모인 경우
	생년월일이 19720707 보다 큰데(만45세미만) 가구주와의 관계가 ⑦조부모인 경우
	생년월일이 20020707 보다 큰데(만15세미만) 가구주와의 관계가 ④기혼 자녀인 경우
조사대상(가구원)	생년월일이 20170706보다 큰 경우
혼인상태	15세미만(20020707보다 큰데)인데 혼인상태가 ①배우자있음 ②사별 ③이혼인 경우
	생년월일이 19670706보다 작을 때(만50세이상) 혼인상태가 ④미혼인 경우
	만15세이상 20세미만(19970707~20020706)일 때 혼인상태가 ②사별인 경우
교육정도	2005~2010년생인데 교육정도 최종학교가 ②무학인 경우
	생년월일이 19870706보다 작은 경우(만30세이상) 최종학교가 ③초등학교~⑦대학교이고 졸업상태가 ①인 경우

항목	내검규칙
	생년월일이 20101231보다 큰데 최종학교가 ③초등학교이고 졸업상태가 ①재학인 경우
	생년월일이 20050706보다 큰데 최종학교가 ④중학교이고 졸업상태가 ①재학인 경우
	생년월일이 20020706보다 큰데 최종학교가 ⑤고등학교이고 졸업상태가 ①재학인 경우
	생년월일이 19990706보다 큰데 최종학교가 ⑥대학교~⑨대학원이고 졸업상태가 ①재학인 경우

- 가구일반사항과 조사항목간 내검

항목	내검규칙
다문화	가구일반사항의 7에서 '②한국으로 귀화한 외국인' 또는 '③외국인'으로 응답하였는데 다문화 값이 Null인 경우 가구일반사항의 7에서 '③한국인'으로 응답하였는데 9.다문화 응답값이 있으면 오류
근로상태 및 일자리	근로상태 및 일자리>1번>1.가구일반사항의 4.생년월일이 20020707 보다 큰데 근로상태 조사대상이 ①~④인 경우(15세미만 여부) 근로상태 및 일자리>7번>1.가구일반사항의 4.생년월일이 19520706 보다 큰데 7.응답대상 선택값이 있으면 오류(65세이상 여부)

- 조사항목과 조사항목간 내검

항목	내검규칙
소득 및 지출	소득 및 지출 1-1번 (Ⅲ. 근로상태 및 일자리 2에서 임금근로자로 응답한 가구원이 있는데 근로상태와 근로소득 연계 값이 0또는 Null인 경우 (종사상지위와 소득의 종류_근로소득 연계) 소득 및 지출 1-2번 (Ⅲ. 근로상태 및 일자리 2에서 자영업자로 응답한 가구원이 있는데 근로상태와 사업소득 연계 값이 0또는 Null인 경우 (종사상지위와 소득의 종류_사업소득 연계) 소득 및 지출 2-7번 (X. 여가 및 사회참여 5. 종교활동에서 ① 예 로 응답하였는데 2-7 비영리단체이전에 값이 0 이거나 Null인 경우(사회참여와 지출 연계) 소득 및 지출 4-1번 (Ⅱ. 주거 2에서 1)자가 또는 2)전세 또는 6)무상인데 4-1 경제적 어려움_월세에서 월세 연체에 응답한 경우(주택 점유형태와 경제적 어려움 연계) 소득 및 지출 4-1번 (Ⅱ. 주거 2에서 3)보증금 있는 월세 또는 4)보증금 없는 월세인데 4-1 경제적 어려움_월세에서 비해당으로 응답한 경우

▶ 내검규칙

IN NARA-Pro - [작성/수정/삭제]

NARA 여주시 복지실태조사 1회차 narapro (ADMIN)

내용검토 규칙 및 실행

내용검토 규칙 목록

번호	내용검토 규칙 목록	조건	여주시 복지실태조사(가구호)	검색창	필수
ERR-008	[가구호] 1. 가구일반사항 > 생년월일이 20020707 보다 큰데(만15세미만) 가구주와의 관계가 종 호	[가구호] 1. 가구일반사항 > 생년월일이 20020707 보다 큰데(만15세미만) 가구주와의 관계가 종 호			
ERR-009	[가구호] 1. 가구일반사항 > 생년월일이 19870707 보다 큰데(만30세미만) 가구주와의 관계가 종 호	[가구호] 1. 가구일반사항 > 생년월일이 19870707 보다 큰데(만30세미만) 가구주와의 관계가 종 호			
ERR-010	[가구호] 1. 가구일반사항 > 생년월일이 19720707 보다 큰데(만45세미만) 가구주와의 관계가 종 호	[가구호] 1. 가구일반사항 > 생년월일이 19720707 보다 큰데(만45세미만) 가구주와의 관계가 종 호			
ERR-011	[가구호] 1. 가구일반사항 > 생년월일이 20020707 보다 큰데(만15세미만) 가구주와의 관계가 종 호	[가구호] 1. 가구일반사항 > 생년월일이 20020707 보다 큰데(만15세미만) 가구주와의 관계가 종 호			
ERR-020	[가구호] 1. 가구일반사항 > 생년월일이 20170706보다 큰 경우	[가구호] 1. 가구일반사항 > 생년월일이 20170706보다 큰 경우			
ERR-001	[가구호] 1. 가구일반사항 > 15세미만(20020707보다 큰데)인데 혼인상태가 혼인중인 경우	[가구호] 1. 가구일반사항 > 15세미만(20020707보다 큰데)인데 혼인상태가 혼인중인 경우			
ERR-022	[가구호] 1. 가구일반사항 > 생년월일이 19870706보다 작을 때(만30세이상) 혼인상태가 종인 경우	[가구호] 1. 가구일반사항 > 생년월일이 19870706보다 작을 때(만30세이상) 혼인상태가 종인 경우			
ERR-026	[가구호] 1. 가구일반사항 > 만15세미만 20세미만(19970707-20020706)을 때 혼인상태가 종인 경우	[가구호] 1. 가구일반사항 > 만15세미만 20세미만(19970707-20020706)을 때 혼인상태가 종인 경우			
ERR-025	[가구호] 1. 가구일반사항 > 2009-2019년생인데 혼인상태가 종인 경우	[가구호] 1. 가구일반사항 > 2009-2019년생인데 혼인상태가 종인 경우			
ERR-030	[가구호] 1. 가구일반사항 > 생년월일이 19870706보다 작은 경우(만30세미만) 6-1의 종-종이고 6-2	[가구호] 1. 가구일반사항 > 생년월일이 19870706보다 작은 경우(만30세미만) 6-1의 종-종이고 6-2			
ERR-031	[가구호] 1. 가구일반사항 > 생년월일이 20101231보다 큰데 6-1의 종이고 6-2가 종인 경우	[가구호] 1. 가구일반사항 > 생년월일이 20101231보다 큰데 6-1의 종이고 6-2가 종인 경우			
ERR-032	[가구호] 1. 가구일반사항 > 생년월일이 20050706보다 큰데 6-1의 종이고 6-2가 종인 경우	[가구호] 1. 가구일반사항 > 생년월일이 20050706보다 큰데 6-1의 종이고 6-2가 종인 경우			
ERR-033	[가구호] 1. 가구일반사항 > 생년월일이 20020706보다 큰데 6-1의 종이고 6-2가 종인 경우	[가구호] 1. 가구일반사항 > 생년월일이 20020706보다 큰데 6-1의 종이고 6-2가 종인 경우			
ERR-034	[가구호] 1. 가구일반사항 > 생년월일이 19990706보다 큰데 6-1의 종-종이고 6-2가 종인 경우	[가구호] 1. 가구일반사항 > 생년월일이 19990706보다 큰데 6-1의 종-종이고 6-2가 종인 경우			
ERR-036	[가구호] 2. 주거 > 주택의 종류가 종-종이 아니거나 Null인 경우	[가구호] 2. 주거 > 주택의 종류가 종-종이 아니거나 Null인 경우			
ERR-039	[가구호] 2. 주거 > 2-1.공유형태가 1)1가구에 2-2.주거자가 0이거나 Null인 경우	[가구호] 2. 주거 > 2-1.공유형태가 1)1가구에 2-2.주거자가 0이거나 Null인 경우			
ERR-040	[가구호] 2. 주거 > 2-1.공유형태가 2)2가구에 2-2.주거자가 0이거나 Null인 경우	[가구호] 2. 주거 > 2-1.공유형태가 2)2가구에 2-2.주거자가 0이거나 Null인 경우			
ERR-041	[가구호] 2. 주거 > 2-1.공유형태가 3)3가구에 2-2.주거자가 0이거나 Null인 경우	[가구호] 2. 주거 > 2-1.공유형태가 3)3가구에 2-2.주거자가 0이거나 Null인 경우			
ERR-042	[가구호] 2. 주거 > 2-1.공유형태가 4)4가구에 2-2.주거자가 0이거나 Null인 경우	[가구호] 2. 주거 > 2-1.공유형태가 4)4가구에 2-2.주거자가 0이거나 Null인 경우			

파일 내보내기 | 규칙 내보내기 | 규칙 불러오기

등록 | 수정 | 삭제

▶ 내검실행 결과화면

IN NARA-Pro - [작성/수정/삭제]

NARA 여주시 복지실태조사 1회차 narapro (ADMIN)

내용검토 규칙 및 실행

내용검토 작업 목록

번호	내용검토 작업	검토건수	수정수	태산건수	작업시간(초)	작업일자	종료
1	내검008	9	64	4	1.61	2017-11-02 18:51:04	입력완료

내용검토 작업 실행 | 내용검토 처리 | 내용검토 조회 | 실행 실행

내용검토 결과

번호	내용검토	조건	가구번호	가구번호	가구번호	가구번호
1	ERR-119	[가구호] 2. 주거 > 2-1.공유형태가 1)1가구에 2-2.주거자가 0이거나 Null인 경우				
2	ERR-104	[가구호] 13. 소득 및 자산 > 1-1번 (1), 근로소득 및 자산의 2에서 종-종도 포함된 가구원이 있는데 근로소득과 근로소득액 연계 4201 0	3128053022A	029	001	01
3	ERR-104	[가구호] 13. 소득 및 자산 > 1-1번 (1), 근로소득 및 자산의 2에서 종-종도 포함된 가구원이 있는데 근로소득과 근로소득액 연계 4201 0	3128011062A	025	001	01

파일 내보내기

수사팀에 결과 전송

제 4 절 조사표류 준비

주요내용 및 확인사항

- 통계조사에 필요한 각종 조사표류를 꼼꼼하게 준비
- 조사표류는 부족하지 않도록 예비물량 확보

■ 조사표류 정리

- ▶ 현장조사에 필요한 조사표류를 비롯하여 조사원 계약과 관련된 서식 등 조사 전반에 필요한 조사용품을 준비

조사표류	조사용품		
조사표 표지 조사지침서 조사구요도	조사원증 근무관리기록부 조사원연락전 조사원 가방 조사표 발송/회수용 상자	조사원증 케이스, 끈 인사장 조사표 기입요령 조사표 받침대 조사 필수품 필수품 지급명부	계약서 서약서 비밀보호용 봉투 문구 케이스 사무용품 스마트폰 통합 데이터 이용권

▶ 업무단계별 필요 조사용품 현황

업무단계	조사용품
조사원 교 육	조사표, 조사지침서, 가구관리명부(교육용 각 1부), 조사원 가방, 필기용품 (조사받침대 포함)
준비조사	가구관리명부, 조사표, 조사원증, 조사안내문, 방문전, 조사필수품(협조용 포함), 조사필수품 지급명부, 스마트폰 통합 데이터이용권
정리용품	조사표 편철지, 조사표 발송/회수용 상자

준비방법별 조사용품 현황

업무단계	조사용품	비 고
인쇄	조사표, 조사지침서, 협조공문, 방문전, 비밀보호용 봉투, 조사표 편철지, 조사표 발송/회수용 상자	
구입	조사원 가방, 필기용품(조사받침대 포함), 조사필수품(협조용 포함), 스마트폰 통합 데이터이용권	
자체 출력	가구관리명부, 조사표 작성요령, 조사필수품 지급명부, 계약서, 서약서, 근무관리기록부	
관련과 요청	조사구 요도, 가구명부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과	공문

조사필수품

- ▶ (조사응답자) 응답가구당 1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 ▶ (협조자 사례품) 협조자(아파트 관리사무소, 통반장, 이장 등)에게 협조자 사례품으로 조사필수품의 3%이내에서 지급
- ▶ (지급대장 기록·관리) 조사필수품과 협조자 사례품을 배부했을 때는 반드시 지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

조사표류 소요수량 산정

- ▶ 조사 투입인력(통계담당자 및 조사원수 등), 가구수 등을 고려하여 산출
- ▶ 분실 및 표본대체 등을 감안하여 예비수량 확보
 - 예비수량은 조사표류 소요수량의 10~20% 정도 확보

사무공간 및 PC 임차

- ▶ 자체적으로 사무공간 및 PC 확보가 어려운 경우 조사시작 전 임차

참고자료 : 조사표류 양식

→ 가구관리명부

2017년 여주시 복지실태조사 가구명부																	
조사구 번호		3	1	2	8	0	1	1	1	1	1	—	A	시작 번호		3	

일련 번호	거 차 번호	가 구 번호	주소					공동주택			가구주 성명	가구방문				조사 가구 여부	
			시도 명	시군구 명	읍면 동명	번지	도로명	건물 번호 명	명칭	동		호수	1차	2차	3차		4차
3	003	001	경기	여주	가남	205-1					301	유○○ ()일 ()일 ()일 ()일 ()시 ()시 ()시 ()시					
4	003	002	경기	화성시		205-1					201	박○○					
5	003	003				205-1					101	정○○					
	056	001															
	056	002															
6	004	001				208-1						노○○					
	004	002															
7	005	001				209-1						김○○					
8	006	001				209-2						이○○					
9	006	002				209-2						한○○					
10	007	001				209-3											
11	008	001				209-4						박○○					
12	008	002				209-4						송○○					
13	009	001				211-1						유○○					
14	010	001				316-5						하○○					
15	010	002				209-4						정○○					

※ 조사가구 여부 : 1. 응답가구 2. 불응가구 3. 불응가구 4. 빈집

※ 불응사유 : 1. 사생활 노출 기피 2. 가정사정(실업, 부부이혼 등) 3. 바쁘거나 귀찮아서 4. 정부불신 5. 기타(면접 불가 등)

※ 불응사유 : 11. 장기출타 12. 고령 13. 장애 14. 기타

참고자료 : 조사표류 양식

➡ 조사협조문

조 사 협 조 문

안녕하십니까?

경인지방통계청에서는 여주시와 공동으로 여주시민의 복지 수요,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올해 7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여주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는 여주시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통계입니다.

귀 닥은 여주시 가구를 대표하는 표본으로 통계적인 방법에 의해 선정되어 여주시 조사담당자가 귀댁을 방문하게 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어야 정확한 통계작성이 가능하므로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호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니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7월

경인지방통계청장



■ 통계상황실 : 031-887-0000, 1234

■ 기관 연락처 (경인지방통계청) 02-2110-0000 (여주시) 031-887-0000

참고자료 : 조사표류 양식

→ 조사필수품 지급명부

2017년 여주시 복지실태조사 조사필수품 지급명부

조사구번호 : 담당공무원 : (인)
조사담당자 : (인)

일련 번호	거처/가구번호	지급품목	지급일자	수량자	가구주와의 관계	서명	비고
1							
2							
3							
4							
5							
16							
17							
18							
19							
20							
계	상품권 총 ()매						

→ 조사원증

통계조사원증

성명 : 이○○
 생년월일 : 1980-03-01
 수행기간 : 2017.7.6. 부터 2017.7.20. 까지

위 사람은 정부가 승인한
 여주시 복지실태조사의 통계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2017년 7월 6일

경인지방통계청장 관인

1. 이 사람은 「통계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을 위하여 관계자 등의 계층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2. 위 통계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위 통계를 주유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No. AA2017001

 **여주시 통계조사원증**

이 ○ ○ ○
경인지방통계청 

제 5 절 조사원 모집 및 교육

주요내용 및 확인사항

- 투명한 절차를 통해 조사원 모집
- 표준화된 지침서를 통해 조사원 교육 실시

■ 조사원 모집

▶ 모집방법 및 선발자격

- (모집 공고) 홈페이지 등을 통한 모집공고(7일 이상 공고)
- (공고 내용) 모집인원, 일용 및 도급단가, 담당업무, 모집방법
- (제출 서류) 통계조사 조사원 지원서, 통계조사 경력증명서, 전산자격증 등
- (선발 자격)

구분	선발기준
업무보조원	- 컴퓨터 활용 가능자 등 -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출퇴근이 가능한 자(기간제에 한함)
조사관리자	- 조사원이 작성한 조사표의 내용을 검토 및 지도할 수 있는 자 - 산업, 직업분류 코딩 유경험자, 가구대상 통계 조사 유경험자 우대 - 불응, 불능가구에 대한 대응지침 및 설득을 할 수 있는 자 -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출퇴근이 가능한 자(기간제에 한함)
조사원	- 산업, 직업분류 코딩 유경험자, 가구대상 통계 조사 유경험자 우대 - 조사구와 동일 시군구나 인접지역 거주자
입력·내검요원	- 조사내용을 잘 알고 있는 조사관리자 또는 조사원 연장 운용 - 전산입력 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유경험자 우대

- (모집 절차)

구 분	시 점	수행업무	비 고
조사원 모집계획 및 공고	조사실시 한달전	- 홈페이지, 나라일터 등 공고 - 응시원서 및 서류접수 - 인력풀내 응시 협조 문자 발송 등	7일 이상 공고
조사원 면접 및 확정통보	공고 이후 3~5일	- 업무 적격자 서류심사 및 면접 - 최종 합격자 통보	
조사원 모집확정	면접 후	- 조사요원 적격자 최종 모집확정	
업무량 배정	조사실시 전	- 조사원간 업무량 형평성 고려 - 조사원 거주지 등 이동거리 고려 하여 배정	
계약서 작성	조사기간 중	- 모집확정자 관련서류 제출 및 접수 - 근로 및 도급계약서 작성	
수당 지급	조사종료 후 14일이내 지급	- 조사 완료 및 회수율 등 고려하여 수당지급	

▶ 조사원 지위와 급여

구분	계약구분	1일 단가*		비고
		'17년	'18년	
현장조사원	도급계약	53,540	60,240	
조사관리자	근로계약	56,090	62,790	산재, 고용보험 가입
업무보조원	근로계약	51,810	60,240	
입력내검원	근로계약			산재, 고용보험 가입
예비조사원	도급계약			

* 통계청의 경우, 전년도 말경에 당해연도 인건비 단가가 결정됨

- (도급수수료 단가 산정) 도급계약을 위해 완료 조사표당 단가산정 필요하며, 해당업무 미완료시 산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도급수당 지급함

- 도급수수료 산출근거(예) : 완료 조사표 수 1일 3가구 기준
- 53,540원(1일 도급수당) ÷ 3가구 = 17,846.6원

- (중도포기자 및 대체조사원 수당지급 방법)

- 조사업무를 중도에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비율로 수당 지급
- 다만, 천재지변, 사고 등으로 부득이하게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수행한 업무량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액 없이 전액 지급

- (4대 보험가입)

구분	4대 보험 가입	비 고
도급계약	미가입	개인별 상해보험 가입권고 필요
근로계약	- 운용일수 1개월 이상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 산재, 고용보험) 가입 - 운용일수 1개월 미만 : 2대 보험(산재, 고용보험) 가입	

■ 조사원 교육

▶ 교육과정

- (교육 대상) 조사관리자, 조사원(예비조사원 포함), 업무 보조원
- (교육 일시) 현장 조사 실시 전
- (교육 강사) 조사 담당 공무원
- (교육 방법) 지침서를 활용한 집합 교육

▶ 교육내용 및 시간

- (교육 내용) 조사일정별 수행사항 및 조사항목 개념, 조사표 작성요령 및 조사표 내용 검토 방법, 조사표 회수 및 제출방법 등

〈참고〉 교육 일정표 (예시)

시간	교육내용
09:30 ~ 10:00	등록
10:00 ~ 10:50	조사개요 안전수칙 및 현장조사 요령
10:50 ~ 11:00	휴식
11:00 ~ 11:50	조사구요도 및 가구명부 이용 방법 조사표 작성방법(가구일반사항)
11:50 ~ 13:00	점심시간
13:00 ~ 13:50	조사표 작성방법(주거~어르신)
13:50 ~ 14:00	휴식
14:00 ~ 14:50	조사표 작성방법(여성~소득 및 지출)
14:50 ~ 15:00	휴식
15:00 ~ 15:50	내용검토 및 조사표 작성 실습
15:50 ~ 16:00	휴식
16:00 ~ 17:00	보안교육 및 행정사항

▶ 조사기간 중 교체된 조사원에 대한 교육 실시

- 조사원의 중도포기로 조사원이 교체 될 경우 담당자가 별도 교육 실시

■ 조사원 업무량

▶ 업무량 배정시 고려사항

- 응답소요시간, 조사 난이도, 방문횟수를 종합 고려하여 조사원당 일일 업무량 산정
- 조사지역과의 거리를 감안하고 아파트조사구와 일반조사구를 적절하게 배분하여 배정

▶ 조사원별 역할 및 업무량

- 도급조사원 : 1일 약 3가구
- 예비조사원 : 조사원의 10%, 단 조사원이 4인 이하인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 입력 및 내검요원 : 1일 20가구 내외

참고자료

00지방통계청 공고 제2000 - 000 호

2017년 000복지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00통계청에서는 「2017년 000복지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 . .

00통계청장

1. 모집인원 및 운용기간

근무 지역	구분	인원	계약 방법	운 용 기 간	수당	비고
000	도급 조사원	00명	도급 계약	2017 . 0. 00. ~ 0. 00. (기간 중 3일)	53,540원 (1일 기준)	교육 1일, 준비조사 2일
				2017. 0. 00. ~ 0. 00. (기간 중 16일)	1가구당 = 53,540원/1일 업무량 (원료 가구당 기준)	조사 실적에 따라 지급
	조사 관리자	00명	근로 계약	2017. 0. 00. ~ 0. 00. (기간 중 22일)	56,090원	교육 1일, 준비조사 2일, 조사관리 및 입력
	업무 보조원	0명	근로 계약	2017. 0. 00. ~ 0. 00. (기간 중 00일)	51,810원	조사준비 및 업무보조
	예비 조사원	0명	도급 계약	2017 . 0. 00. ~ 0. 00. (기간 중 1일)	53,540원 (1일 기준)	교육 1일

2. 담당업무

담당업무	주요담당업무
도급조사원	- 준비조사기간 중 조사안내문 배부 및 대상가구 적격여부 확인 - 대상가구 방문 및 조사표 작성, 조사 필수품 배부 - 조사표 누락여부 및 내검 후 제출
조사관리자	- 조사원 현장조사 지도 및 지원 - 조사표 내용검토 및 입력, 산업·직업분류 코딩 - 불응가구의 설득 지원, 조사원별 조사 진척율 파악 및 관리 - 현장조사 전화 품질검증
업무보조원	- 조사준비 및 조사기간 행정업무 보조 - 담당공무원 업무 보조
예비조사원	- 조사원 유고시 대체 투입 - 자격요건 및 담당업무는 도급조사원과 동일

참고자료

3. 모집방법

□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

□ 2차 면접전형(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통계분야에 대한 지식, 조사업무에 대한 자세 등 종합적으로 평가

4. 응시 자격요건

- 책임감이 투철하고 사용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지방통계청에서 지정한 근무 장소에서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출퇴근이 가능한 자 (기간제근로자에 한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이중취업자가 아닌 자
 - ※ 타 직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자등록자인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중 타 직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5. 모집일정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17. 00. 00.(요일) 10:00 이후 개별통보
- 면접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2017. 00. 00. (요일) 10:00~
장 소	(주소)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00. 00.(요일) 15:00 이후
 - ○○지방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 공지사항에 공고

참고자료

6.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00. 00.(요일) ~ 2017. 00. 00.(요일) 18시까지
- 접수처 및 문의처

소속	접수.문의 담당자	문의처	접수처
○○지방 통계청 ○○과	○○○	000-000-0000	■ 우편 및 방문 접수처 - (주소) ■ 전자우편 접수처 : (이메일) ■ FAX 접수처 : (FAX 번호)

※ 우편, FAX, e-mail : 접수마감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 : 평일 18:00까지, 토.일요일 제외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서식 참조)
 - 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증 사본 1부(조사관리자 최종 합격자에 한함)
- ※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기술자격증 관련 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도로 서류를 제출 하지 않음
-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와 달리 사전동의서는 선택사항으로, 동의하지 않고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거짓 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응시를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보수 감액 및 향후 2년간 응시를 제한함

통계청 기간제 및 도급조사원 응시원서

업무명		○○○ 복지실대조사		분 야		응시번호	
사 진 (3cm x 4cm)		성 명 (한글)			성 별		
					생년월일		
		연락처	전화번호	() - , (HP)			
			주 소				
		e-mail					
학력사항		① 고졸이하 ② 대졸이하 ③ 대학원 이상					
일 반 경력사항		기 간		근 무 처		담당업무 내용	
		~					
		~					
통계조사 참여경력		년 ①		②		③	
		년 ①		②		③	
		년 ①		②		③	
		년 ①		②		③	
자 격 사 항	구분	자격증명		등록번호		취득일자	
	전산 관련						
	기타						
기 타		저소득층 ☐ 장애인 ☐ 다자녀보육 가구 ☐ 북한이탈주민 ☐ 우수조사원 양성과정 교육이수자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17년 월 일 성 명 : (서명)							

주 1」 분야에는 [도급조사원, 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 기재

2. 거짓으로 작성 시 향후 2년간 응시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3)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본인 : 관련 증명서류(저소득층 및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등 증명서류)

참고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인)
기간제 근로자 모집 및 관리	장애인증명서	
기간제 근로자 모집 및 관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간제 근로자 모집 및 관리	국가자격증	

2. 이용기관의 명칭 : ○○지방통계청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7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번호 :
전화번호 :

제 6 절 홍보실시

주요내용 및 확인사항

- 홍보는 소요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홍보계획 수립

■ 추진계획 수립

- ▶ 홍보예산 범위 내에서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선정
- ▶ 조사대상처에 대해 홍보방향, 홍보방법, 매체별 홍보내용, 홍보문안 등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

■ 홍보실시

- ▶ (홍보 대상) 조사대상처, 관련 기관 등
- ▶ (홍보 방법)
 - 매스컴 홍보 : 보도자료, TV 광고, 신문광고, 언론PR
 - 옥외광고물 : 홍보탑, 현수막, 플래카드, 가로기 등
 - 지역 홍보 : 유선방송사, 아파트 안내방송, 지역언론 등
- ▶ (홍보 기간) 본 조사 실시 전부터 본 조사 기간까지

■ 유관기관 협조 요청

- ▶ 공문을 통한 홍보협조 요청의뢰, 홍보문안 등도 같이 송부

참고자료 : 홍보 사례

▶ 보도자료 : 중부일보 등 17건

중부일보

경인통계청, 여주시와 최초로 복지실태조사 진행

보도권 sorry@joongbo.com 2017년 07월 11일 09:50

경인지방통계청과 여주시는 10월 최초로 기초지방자치단체 복지실태조사인 2017년 제1회 여주시 복지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해당 조사는 지역통계 활성화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통계청이 합력하여 처음 추진하는 시군구 단위 표준통계작성기법 개발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여주시 복지실태조사는 표본으로 선정된 1천개 가구에 실수하는 만1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주거, 일자리, 건강, 사회복지 인프라 및 복지서비스 등 복지 전반에 대한 지역민의 생활실태와 복지 욕구 등을 조사한다.

한편, 조사결과를 오는 11월 공표예정이며, 여주시는 조사결과를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복지성가사/sorry@joongbo.com

<저작권지킴이 중부일보 (http://www.joongbo.com)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통계청의 다른 기사보기

한일간경기

연세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여주시, 제1회 복지실태조사 실시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 복지실태조사

김정희 기자 | 2017년 07월 11일 09:50

여주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7월 7일부터 7월20일까지 14일간 '제1회 여주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복지실태조사는 지역통계표준매뉴얼 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통계청이 주관해 시군구 단위 표준 통계작성 기법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행정자치부가 현장조사 예산(5천만원)을 지원하고, 통계청이 기술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조사이다.

여주 관내 1,000표본가구의 가구주와 만13세 이상의 가구원을 조사대상으로 조사원 방문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여주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제도과 정책 제공되는 시설 등이 여주시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만족도를 주는지는 조사하게 된다.

유은희 기획예산담당관은 "여주시 복지정책수립에 활용되는 자료인 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대상 가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수집되는 자료는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 '통계법'에 따라 그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므로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할 때에는 조사원증을佩戴했는지 신분을 확인하고 응답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통계팀(031-887-2035)으로 문의 하면 된다.

이보택 기자 leevett@2gan.co.kr

▶ 현수막 홍보 : 여주시청 등 15곳



참고자료 : 홍보 사례

▶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7. 7. 10.(월) 12:00	 책임운영기관 경인지방통계청
	배포일시	2017. 7. 10.(월) 12:00	
	담당부서	경인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담당자	과 장: 민경삼(02-2110-7760) 사 무 관: 고영희(02-2110-7762) 주 무 관: 성경희(02-2110-7778)	

기초지자체 최초, 여주시 복지실태조사 실시

- 경인지방통계청과 여주시가 협업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 복지실태조사 -

- 경인지방통계청과 여주시는 최초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복지실태조사인 **2017년 제1회 여주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2017. 7.7.~7.20.)하고 있다.
 - 본 조사는 지역통계 활성화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통계청이 협업하여 처음 추진하는 시군구 단위 표준통계작성기법 개발·보급 사업(통계청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 * 통계청은 2017년 24개 중점관리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작성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한다.
- 여주시 복지실태조사는 표본으로 선정된 **1,000개 가구에 상주하는 만1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주거, 일자리, 건강, 사회복지 인프라 및 복지의식 등 복지 전반에 대한 **지역민의 생활실태와 복지 욕구** 등을 조사한다.
 - 조사결과는 2017년 11월 공표예정이며, 여주시는 조사결과를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붙임】 제1회 여주시 복지실태조사 개요



본 자료는 ‘출처 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자료수집

제 1 절

현장조사 실시

주요내용 및 확인사항

- 본조사를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대상처 명부 및 조사지역 경계확인 등 준비 조사를 실시
- 정확한 자료 수립을 위하여 현장조사 관리

1-1. 준비조사

- 준비조사는 조사원이 담당 조사구의 위치 및 경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부여된 업무량을 확인하는 과정
- 담당 조사구내의 조사대상 가구를 파악하고 본조사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준비

준비조사 실시

- ▶ 준비조사기간은 보통 업무량에 따라 1~2일 기간으로 정함
- ▶ 주요 업무
 - 조사구역도, 가구명부 확인 및 보완
 - 누락된 거처 및 가구번호 신규부여
 - 건물 등의 수정사항 있는 경우, 조사구역도 및 가구명부에 수정·보완 (거처번호, 가구번호, 주소, 빈집·비대상 여부 파악)

- 조사안내문 배부 및 방문안내스티커 부착
- 조사협조자에 필수품 등 전달

1-2. 본조사

- 조사기간 중 대상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또는 자기기입식조사) 실시
- 관리체계에 따라 조사관리 및 조사자료 내용점검

■ 조사용품 배부 및 관리

- ▶ 조사표류와 조사용품 배부이력을 기록 및 관리
- ▶ 조사표는 한꺼번에 배부하면 관리의 어려움과 낭비가 심하므로 적절한 간격을 두고 나누어서 배부
- ▶ 개인의 인적사항이 적힌 조사표류는 함부로 폐기하지 않도록 주의

〈참고〉 조사필수품 및 조사용품 배부내역(예)

(단위 : 개)

구분	지침서 등				조사 필수품	조사용품			
	지침서	조사표	포스터	인사말	(물품명)	필기 도구	조사원증	가방	휴대전화 통화권
총 수량									
배부수량									
도급조사원									
조사관리자									
조사관리자									
지도공무원									

■ 조사원 관리

- ▶ 매일 조사원들의 표본현황(완료, 부재, 거부, 예약사항 등)을 파악
- ▶ 조사현장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파악

〈참고〉 일정별 진척률 파악 양식(예)

구 분				" "월							0	0.0%
관리자	조사원	조사구 번호	읍면동	1일	2일	3일	...	12일	13일	14일	완료 가구	진척률

■ 조사표 점검

- ▶ 비표본오차의 최소화를 위해 현장조사 기간 중 조사표의 검토가 필요함
- ▶ 단계별 조사표 점검 방법

단 계	점검자	점검 방법
1단계	조사원	-조사 현장에서 누락사항 및 착오사항에 대해 검토 -자기기입식 조사표의 작성오류에 대해 질의 및 수정
2단계	관리자	-조사원별 회수된 조사표의 작성실태 점검 -누락 및 착오, 상호연관성 항목 점검 -가구관리종합표, 가구원명부, 필수품 지급대장 등 작성실태 점검
3단계	지도 공무원	-다수 발생하는 조사착오 및 누락사항 파악 -조사원 및 관리자 재교육을 통한 동종의 오류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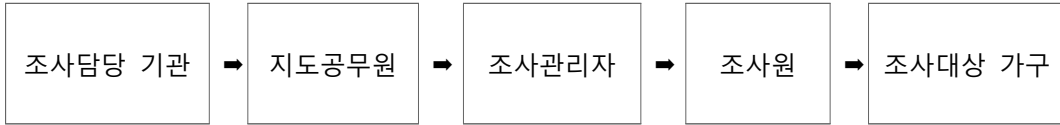
▶ 조사표 내용검토 세부방법

- (공통항목 내검) 조사표와 가구명부의 기본사항 기입 일치여부, 누락 및 사선처리여부, 단일선택문항의 복수선택 여부 등 검토
- (상호연관 항목 내검) 조사표의 각 항목을 조사후 관련 항목 사이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응답이 있는지 등을 점검해야함

- 상호연관 항목 내검 (예)
 - (영유아가구) 가구원 중 만 0~5세 가구원이 있는데 응답이 누락되거나 0~5세 가구원이 없는데 조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 (집세 연체) 최근 1년 동안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전세”, “무상”인 경우 “③비해당”에 응답하였는지 확인
 - (가구소득과 가구원의 근로상태) 가구원 중 임금근로자가 있을 경우 가구소득에 근로 소득이 있는지, 자영업자가 있을 경우 가구소득에 사업소득이 있는지 등 확인

■ 현장조사 관리체계

▶ 조사체계



▶ 관리 주체별 주요 역할

구 분	담 당 역 할
총 책임자	• 조사관련 업무 총지휘 • 조사업무 제반사항 점검 및 순회지도 • 조사 애로사항 청취 및 격려
담당 팀장	• 실사지도 업무총괄 • 조사전반에 관한 지침 시달 • 조사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 강구
담당 공무원	• 현장지도 총괄 • 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 회수된 조사표의 완성도 등 점검 • 조사업무 전체 진척률 파악 • 전산입력 및 내용검토 지도 • 「조사필수품 지급명부」확인 • 기타 조사관련 서류 및 행정사항 확인 점검
조사관리자	• 담당 조사원별 조사표 취합 및 조사용품 지급관리 • 조사표류 작성실태 점검 및 수정보완 • 담당 공무원의 전달사항 시달 • 가구명부관리 • 불응가구의 설득지원 • 조사 진척률 파악 및 보고
조사원	• 현장조사 실시 및 조사필수품 지급 • 조사표류 작성 및 제출

1-3. 실사지도 실시

실사지도 실시

- ▶ 현장조사의 진행상황 점검 및 불응가구의 설득 지원 등을 위해 담당 공무원의 현장 지도 실시

※ 실사지도 세부계획은 별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음

실사지도 방법

구 분	내 용
실사지도 대상	조사원
실사지도 기간	본 조사기간 중
실사지도원	통계담당 공무원
실사지도 주요업무	• 현장조사원 교육 및 중간소집시 추가 전달사항 • 현장 애로사항 파악 및 지원 • 조사구 및 가구대체 지원 • 현장조사 진척상황 파악 및 조사표 내용검토 • 조사관련 서류 및 행정사항 점검

- 실사지도 점검표 작성을 통해 향후 조사시 동일한 애로사항의 최소화에 활용
- 현장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조사원과의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전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참고자료

실사지도 점검표

조사지역		성명	(서명)
조사원			

지도내용	지도결과	조치사항
○ 조사진척도 - 출장일정에 따른 조사진척률은 적절한가?		
○ 조사표작성 - 조사표 작성은 조사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 필수품관련 - 조사필수품은 적절하게 구분하여 배부하였는지?		
○ 조사표내검관련 - 조사항목간 상호연관 되는 항목은 타당성 있게 기입되었는지?		
○ 전산입력 - 조사표 입력일정에 차질은 없는지? - 검토에러의 경우 기타란에 사유가 기입되었는지?		
○ 기타 - 기타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		

제 2 절 사후검증

주요내용 및 확인사항

- 현장조사 품질평가를 위한 사후검증 실시

품질평가

- 사후 모니터링 실시로 부실 및 허위 조사 방지를 통한 통계의 정확성 제고
- 조사원 관리를 통한 조사내용 부실 방지 및 책임성 확보

사후 모니터링

- (시기) 사후검증을 위해 조사가 완료된 후 바로 실시
- (방법) 전화 및 방문 모니터링
- (비율) 총 가구의 5~10%
- (주요 내용) 조사원 방문 및 응답여부, 조사필수품 수령 여부 등
- (활용) 정확도 여부에 따라 내용 보완자료로 활용

전화검증표 및 집계표(예시)

질문1	질문2	질문3-1		질문3-2		질문4
방문여부	응답여부	총가구원수 (조사표)	총가구원수 (전화검증)	13세이상 가구원수 (조사표)	13세이상 가구원수 (전화검증)	조사필수품 수령여부
○	○	4	4	3	3	○
○	○	2	2	2	2	○

참고자료

「2017년 ○○ 복지실태조사」 현장조사결과 전화검증표

1. 방문 여부

(인사말)

1-1) 안녕하세요. 저는 ○○시 복지실태조사 담당공무원(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 ○○○
이라고 합니다. _____님 맞습니까?

_____님 계시면 부탁드립니다.(_____님이신가요?/_____님과 좀 통화할 수 있을까요?)

1) 성명 맞춤

2) 성명 틀림

☞응답자와 통화를 못하고 가구원과의 통화 시 상황을 판단하여 1)또는 2)를 기재

☞응답자와 통화가 되지 않으면 다음에 다시 통화

(연결되면) 바쁘신 중에도 “2017년 ○○시 복지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시에서는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하여 조사에 응답해주신 분들께 몇
가지를 여쭙보고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1분 정도만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 7.7.~7.20. 기간 중에 ○○시 조사원이 「2017년 ○○시 복지실태조사」 때문에 찾아
보았던 적이 있었나요?

1) 예

2) 아니오

2. 응답 여부

2. 귀하께서는 「2017년 ○○시 복지실태조사」에 응답하신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 질문 종료

3. 정확성 검증 설문

3. 지난번에 조사한 조사결과와 검증을 위해 (이미 응답해주신 내용 중에서) 두 가지
정도만 여쭙보겠습니다.

3-1) 7월 7일 기준으로 귀댁의 **총가구원 수**(해당가구에 상주하는 가구원)는 몇 분이었습니까?
(가구주용 조사표 표지 총 가구원수) _____명

3-2) 만 13세 이상 가구원은 몇 분이었습니까?

(가구주용 조사표 표지 13세 이상 가구원수) _____명

4. 조사필수품 수령 여부

4. 바쁘신 데도 전화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조사에 응답해 주신 **보답으로
상품권**을 받으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통계조사에 (계속)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 복지실태조사 담당공무원(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 ○○○ 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응답자 성명	가구원 번호	전화번호	통화일
						월 일

제5장

자료처리

제 1 절

자료코딩

주요내용 및 확인사항

- 조사결과는 조사표상의 부호 값대로 코딩하며, 분류수준 값들은 별도의 코드 체계로 변경

방법 및 내용

- 부호는 조사내용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것을 선택
- 부호는 배타성과 고유성을 갖도록 설계
 - 부호는 각 조사사항을 모두 나타내면서, 각각의 조사사항에 대해 서로 구분할 수 있는 배타성을 가져야 함
 - 조사된 내용은 반드시 어느 한 부호에 해당되어야 함
- 질문의 형태별 코딩 시 유의사항
 - (폐쇄형 질문) 기타항목이 있을 때에는 전산입력이 가능하도록 그에 적절한 코드를 부여하는데, 기존에 있던 보기번호와 겹치지 않도록 함
 - (개방형 질문) 코드를 입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을 읽고 해석한 후 숫자코드로 변환해야 함

코드체계

-  조사결과는 조사표상의 부호 값대로 코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분류수준 (분석변수) 값들은 별도의 코드체계로 변경

분류수준		코딩방법
연령	13 ~ 29세이하	생년월일을 만나이로 환산후 연령구간별로 코딩
	30 ~ 39세이하	
	40 ~ 49세이하	
	50 ~ 59세이하	
	60세이상	
혼인상태	유배우	사별과 이혼을 같은 범주로 통합
	사별/이혼	
	미혼	
교육정도	초졸이하	최종학교와 졸업상태를 결합하여 구간별로 코딩
	중졸	
	고졸	
	대졸이상	
거처종류	단독주택	연립/다세대/기타를 같은 범주로 통합
	아파트	
	연립/다세대/기타	
점유형태	자기집	보증금 있는 월세와 보증금 없는 월세를 같은 범주로 통합
	전세	
	월세	
	무상	
가구소득	1분위	가구소득을 균등화소득으로 전환하여 소득5분위로 코딩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가구원수별	1인가구	가구원수 4인이상은 4인이상가구로 통합
	2인가구	
	3인가구	
	4인이상가구	
생활권	동부	행정구역을 동부와 읍면부로 분류
	읍면부	
직업	전문관리	한국직업분류 대분류를 5개로 통합하여 분류
	사무	
	서비스판매	
	농어업	
	기능노무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임시 일용근로자를 통합하고 고용주와 자영자를 통합
	임시 및 일용근로자	
	고용주/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제 2 절 자료입력

주요내용 및 확인사항

- 입력요원을 선발하여 입력 및 내검 관련 교육 실시
- 조사표 입력 전후로 내용검토 실시

■ 전산입력방법

- 입력 프로그램에 로그인하여 조사표 입력
 - 입력관리자에게 부여받은 ID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로그인
 - 조사표 입력란에서 값을 입력 뒤 TAB키나 ENTER키로 다음항목 이동
 - 모든 항목 입력 후 저장 버튼으로 입력된 값들을 저장

■ 오류 내검법

- 조사표 입력 전 조사표의 항목의 단위나 수치의 합계 및 간단한 오류를 내용 검토 후 수정
- 입력 프로그램 내검사항을 확인하여 오류 수정

■ 전산입력관리

- 현장조사원 중 우수한 자를 선정하여 입력요원으로 선발
 - (입력 기간 및 입력요원수) 표본규모를 감안하여 결정
 - (주요 업무) 조사표입력 및 착오내용에 대한 조사표 수정

■ 전산입력교육

- 입력 프로그램을 통한 조사표 입력요령, 내검오류에 대한 처리방법 등을 교육

제 3 절 자료내검

주요내용 및 확인사항

- 모든 내검 오류사항을 파악하여 수정
- 조사내용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조사표 내용검토 강화

단계별 내검

현장조사	조사표 작성 및 회수 후 각 조사항목에 대하여 지침서대로 맞게 기입 되었는지, 관련 항목 사이 논리 관계가 맞는지 점검
↓	
조사표 입력 전	지도공무원, 조사관리자가 수집된 자료를 eye-checking 방법으로 1차 내검
↓	
조사표 입력 중	- 입력 시스템에 내용검토 규칙을 등록하여 전산 내검 수행 - 엑셀 Filtering 내검 실시
↓	
조사표 집계 후	집계결과 이상치 자료 확인 및 처리 방법 연구

부문별 내검 내용

▶ 공통사항

- 누락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한다
- 조사표 일련번호가 결번이나 중복이 없이 차례로 기입되었는지 확인한다.
- 순위로 응답하는 항목은 번호순이 아닌 우선순위로 응답했는지 확인한다.
- 기타에 표시된 경우 사유가 기입되었는지, 또한 기입된 내용이 다른 응답 항목에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 응답내용이 변경된 경우 확실하게 수정하여 자료 입력 시 착오가 없도록 주의한다.
- 지정된 항목으로 표시된 경우 해당 없는 항목은 사선 처리한다.

▶ 표지 및 가구일반사항

항목	내검사항
표지	조사표 표지에 조사된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와 「가구명부」 상의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조사표 표지에 조사된 '가구원번호'와 「가구명부」 상의 '가구원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조사표 표지에 조사된 '총 가구원 계'와 「가구명부」 상의 '가구원번호'의 마지막 일련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가구원 사항에서 다음 등식이 성립 하는지 확인한다. $\text{조사된 가구원} = \text{총가구원} - (\text{13세미만 가구원} + \text{불응 불능가구원})$
성별	가구주와 그 배우자의 성별이 동일한지 확인한다.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써 넣었는지 확인한다.
	만 13세 이상인 자인지 확인한다.
가구주와의 관계	한 가구에 조사된 가구주가 1명만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교육정도	교육정도와 연령의 관계가 합리적인지 확인한다.
혼인상태	「① 배우자 있음」은 혼인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혼인상태를 조사한다.
	가구주가 미혼인데, 동일가구 내 가구원 중 가구주와의 관계에 「① 배우자」가 있거나, 동일 가구 내에 「① 배우자」인 가구원이 있는데 가구주가 「②사별」, 「③ 이혼」, 「④ 미혼」이면 착오이다.
	「미성년자가 ① ~ ③의 기혼자인 경우 재확인한다.

▶ 주거

항목	내검사항
주택유형	주택유형이 ① 일반단독주택으로 조사되었는데 거주 가구수가 2가구 이상이면 확인한다.
주택면적	공용면적이 제외된 면적인지 확인한다. 조사단위인 m ² 로 조사되었는지 확인하고 '평'으로 조사한 경우 환산하여 기입한다.
난방비	1년 총액이 아닌 월평균 금액으로 조사되었는지 확인한다.

▶ 근로상태 및 일자리

항목	내검사항
근로상태	근로상태에서 ①~④(경제활동인구)로 응답하였는데 I. 가구일반사항의 나이가 14세 이하가 아닌지 확인한다. 근로상태는 '①②③'으로 응답하고 경제활동상태는 '⑨ 비경제활동인구'인 경우,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②~⑪'중에서 응답. 즉, '① 근로무능력'은 아니어야함
근로시간형태	종사상지위에서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로 응답하였는데 근로시간형태에서 '② 시간제'로 응답한 경우 종사상 지위와 근로시간형태가 정확한지 확인한다.
계속근로 희망 여부	65세이상 가구원만 응답하는 항목으로 다른 연령대의 가구원이 응답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한달 용돈	생활비를 제외한 한달동안 지출하는 용돈 금액을 기입하는 항목으로 생활비를 포함하여 응답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건강

항목	내검사항
만성질환 및 장애 유무	I. 가구일반사항에서 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원이 만성질환 및 장애유무에서 '② 없음'으로 응답한 경우 다시 확인한다.
우울, 자살충동 극복 방법	자살시도 여부와 관계없이 우울감 또는 자살충동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극복방법을 응답하여야 한다. 우울, 자살충동 극복방법에서 '⑥ 도움 받은 곳 없음(혼자 해결)'으로 응답한 경우 다른 항목을 선택하면 착오이다.

▶ 영유아/아동·청소년/어르신/여성

항목	내검사항
영유아	(영유아 대상) I. 가구일반사항의 가구원 중 만 0~5세 가구원이 있는데 응답이 누락되거나 0~5세 가구원이 없는데 조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낮시간 돌봄) 낮시간(어린이집 등 이용시간 외) 동안 주로 돌봐주는 주체를 물어보는 항목으로 보육시설 이용여부에서 '② 다니지 않음'으로 응답한 가구와 보육시설 이용형태에서 '② 반일반'으로 응답한 가구가 모두 조사되었는지 확인한다.
	(영유아 대상 사업의 도움정도 및 추후 이용의향) 사업에 대해 모르고 있어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응답하는 항목이므로 빠짐없이 조사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대상) I. 가구일반사항의 가구원 중 만6~18세 가구원이 있는데 응답이 누락되거나 만6~18세 가구원이 없는데 조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의 도움정도 및 추후 이용의향) 사업에 대해 모르고 있어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응답하는 항목이므로 빠짐없이 조사되어야 한다.
어르신	(어르신 대상) I. 가구일반사항의 가구원 중 만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데 응답이 누락되거나 만65세 이상 가구원이 없는데 조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어르신 대상 사업의 도움정도 및 추후 이용의향) 사업에 대해 모르고 있어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응답하는 항목이므로 빠짐없이 조사되어야 한다.
여성	(여성 대상) I. 가구일반사항의 가구원 중 만15세 이상 여자 가구원인데 응답이 누락되거나 만15세 이상 여자 가구원이 아닌데 조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다문화/여가 및 사회참여/사회복지 인프라 및 복지인식

항목	내검사항
다문화	(다문화 대상) I. 가구일반사항에서 '②한국으로 귀화한 외국인' 또는 '③외국인'으로 응답한 가구원만 조사한다.
	(다문화관련 사업의 도움정도 및 추후 이용의향) 사업에 대해 모르고 있어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응답하는 항목이므로 빠짐없이 조사되어야 한다.
여가 및 사회참여	(참여여가활동) '③ 문화예술 참여 활동', '⑤ 스포츠 참여 활동', '⑧ 사회 활동'으로 응답하고 함께 하는 사람에서 '① 혼자'로 응답한 경우 다시 한번 확인한다.
	(기부/후원금 여부) 기부/후원금 여부와 XIII 소득 및 지출에서 비영리단체로 이전 금액의 연관관계를 확인한다.
사회복지 인프라 및 복지인식	(사회복지시설 추후 이용의향) 사업에 대해 모르고 있어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응답하는 항목이므로 빠짐없이 조사되어야 한다.
	(사회복지관련 시설(혹은 프로그램)을 이용시 좋은 점) 1순위에 '⑪ 없음'으로 응답하고 2순위에 '①~⑩'으로 응답한 경우 다시 확인한다.
	(사회복지관련 시설(혹은 프로그램)을 이용시 불편한 점) 1순위에 '⑬ 없음'으로 응답하고 2순위에 '①~⑫'으로 응답한 경우 다시 확인한다.

▶ 소득과 지출

항목	내검사항
생활비	연간 생활비(한 달 평균 생활비 X 12개월)는 □ 가구소득의 종류별 소득 총합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초과하는 경우 재확인하도록 한다.
	생활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재확인하고, 이하일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인지 확인한다.
경제적 어려움	(집세 연체) 최근 1년 동안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혹은 "무상"인 경우 "③비해당"에 응답하도록 한다.
	(공교육비 미납) "자녀가 없거나" 혹은 자녀가 "미취학", "대학원생(석.박사)"인 경우 "③비해당"에 응답하도록 한다.
	(사회보험료 미납) 최근 1년동안 의료급여 혹은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만을 받는 가구는 "③비해당"에 응답하도록 한다.
	(의료서비스 미이용) 최근 1년동안 병원을 갈 일이 없었을 경우 "③비해당"에 응답하도록 한다.
최소생활비 및 적정 생활비	주관적 적정생활비는 주관적 최저생활비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다.

오류 유형 및 처리방안

오류 검사 방법

OFF CODE 검사	입력되어야 할 부호 이외의 것이 입력되어 있는 오류를 찾아내는 방법 ex) 성별란에 "1.남자", "2.여자"라고 할 때 1과 2를 제외한 다른 숫자나 문자 또는 공란이 있을 때
관련 항목 검사	서로 연관되는 항목간의 관계를 검토하여 모순이 발생할 때 오류를 찾아내는 방법 ex) "연령"과 "학력"항목의 관계를 검토할 경우 15세 이면서 대학생으로 조사된 경우
범위 검사	각 항목이 적합한 상한과 하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ex) "월"과 "일"의 항목에서 "월"항목에 1과 12사이에 속하지 않는 숫자가 들어온다거나 "일"의 경우 해당 월에 따라 1~28, 29, 30, 31 이외의 숫자가 나올 경우
합계 검사	조사표상의 수치 내용을 계산한 후 합계란의 수치와 동일하지 않을 때 오류를 발견하는 방법
검사 숫자에 의한 검사	입력하고자 하는 데이터 숫자의 마지막 자리에 검사숫자를 추가하여 데이터가 입력되면 데이터와 검사숫자를 상호 비교하여 입력착오를 찾아내는 방법
순서 검사	조사 대상의 중복 및 누락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고유의 일련번호를 순서대로 할당한 경우 적용됨

오류 처리방안

간단한 수정	입력된 내용과 조사표를 대조하여 입력오류인지를 판단함, 단순 입력오류의 경우에는 조사표의 내용대로 수정하고 입력오류가 아닐 경우에는 조사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후 오류사항에 대한 판단이 설 때만 수정함
전화 확인 및 현지방문 질의	조사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응답자에게 전화로 확인하여 조사표를 수정함. 다수 항목이 잘못 조사되었거나 부실 조사인 경우에는 조사원이 다시 조사대상처를 방문하여 재조사함
통계적 처리	수차례에 걸친 내용검토과정을 통해서도 정정되지 않는 오류나, 오류 수정비용이 큰 항목의 경우에는 무응답대체(imputation)기법을 사용함
집계대상에서 제외	조사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목이 누락된 경우와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조사표를 집계대상에서 제외함

▶ 조사자료의 적정성 검증

- 첫 번째 조사의 경우 과거자료도 없고 비교가능한 자료 확보도 어려워 조사자료의 적정성 검증에 어려움이 있음. 특히 소득과 지출의 경우 정확한 금액이 파악되었는지 판단이 어려움
- 현재 우리나라 공식소득분배지표는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산출되므로 가계동향조사를 비롯해서 가구소득과 관련된 조사자료와 비교·검토함
- 산점도와 상자그림을 통해 극단 이상치 확인 결과 단위를 착오 입력한 사례 발견

□ 가구소득 비교

단위 : 만원

	가구소득(년)		시점	비고
	평균	중앙값		
가계동향조사	5,279		2016	전국가구(2인이상)
가계금융복지조사_전국	4,883	4,000	2015	
가계금융복지조사_서울	5,357	4,162	2015	
가계금융복지조사_경기	4,387	3,553	2015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4,542		2014	
경기도 복지실태조사_경기	4,056		2015	
경기도 복지실태조사_여주	2,808	1,728	2015	
여주시 복지실태조사	3,614	3,000	2016	

□ 기타 지표 비교

단위 : %

	가계동향조사 (전국가구 2인이상)	여주시 복지실태조사	비고
적재가구비율 ¹⁾	20.5	19.4	
평균소비성향 ²⁾	71.1	57.9	

1) 처분가능소득 - 소비지출 < 0

2)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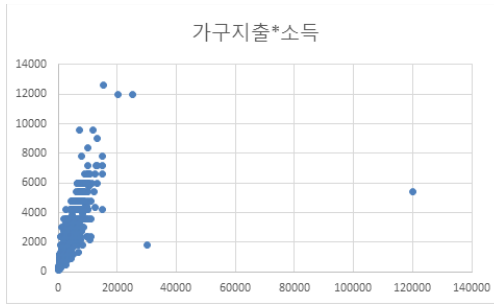
□ 소득5분위 비교(월평균소득)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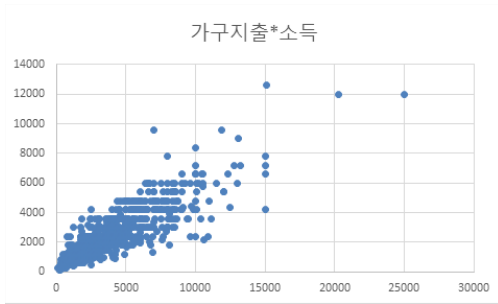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가계동향	1,447	2,914	4,010	5,270	8,347
여주시 복지실태	670	1,753	2,702	3,796	6,319

가구소득과 가구지출의 산점도

수정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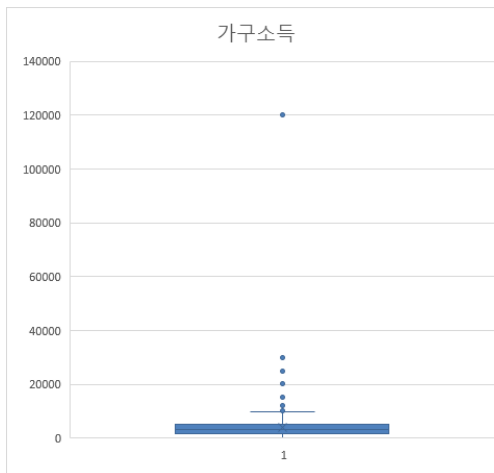


수정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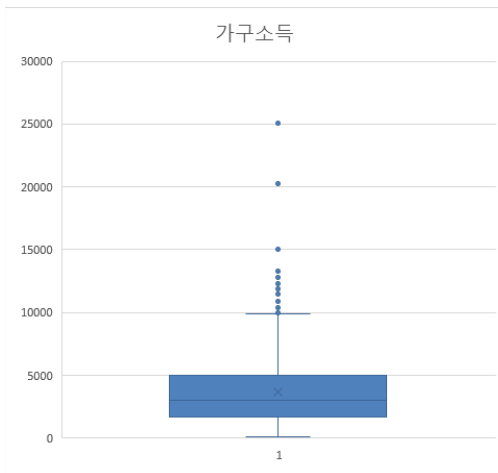


가구소득 상자그림

수정전



수정후



제 4 절 무응답자료 처리

주요내용 및 확인사항

- 무응답 자료는 가중치 조정, 대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
- 주요항목별 응답률을 공표

■ 단위무응답 실태

▶ 단위무응답

- 표본 대상자가 설문에 응하지 않아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단위 무응답이라고 하며, 표본대체 및 가중값 조정 방법으로 무응답을 대체함

▶ 가구부문 조사의 단위무응답 실태

- 가구부문 조사시 불응 및 불능 등의 사유로 응답대상자의 단위무응답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전체가구원의 무응답시에는 동일 집락내에서 가구를 대체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함
- 일부 가구원의 무응답 경우에는 사후가중치를 통해 전체 모집단을 보완하는 사후정보를 통해 무응답처리

▶ 단위 무응답 처리

종 류	관 련 내 용
무응답 가중치조정 (Non-response Weighting adjustment)	전체 표본을 몇 개의 대체 층으로 분류한 뒤 각 층에서 무응답으로 인한 효과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조정해 주는 방법

■ 항목무응답 실태

▶ 항목무응답

- 응답자들이 전체 설문 항목에 모두 응답하지 않고 일부의 항목에만 응답하는 경우를 항목무응답이라고 하며, 전체 항목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인 단위 무응답과는 처리방법의 차이가 있음

▶ 가구부문 조사의 항목무응답 실태

- 대부분의 가구부문 지역통계 조사시 내검을 통해 전화질의 및 재방문 등을 통해 항목무응답을 최소화 하고 있음

■ 항목 무응답 처리방법

종 류	관 련 내 용
순차적 핫덱 (Sequential Hot-deck)	동일한 조사에서 다른 응답자로부터 얻은 자료를 이용해 결측값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자료의 입력순서에 따라 바로 앞의 응답 결과로 결측값을 대체하는 방법
랜덤대체 (Random imputation)	대체 층 내에서 임의로 한 응답값을 선택하여 결측값에 대체하는 방법
평균대체 (Mean imputation)	전체 표본을 몇 개의 대체 층으로 분류한 뒤 각 층에서의 응답자 평균 값을 그 층에 속한 모든 결측값에 대체 하는 방법
최근방대체 (Nearest neighborhood imputation)	각 대체 층 내에서 결측값에 대응하는 변수값이 가장 가까운 응답자의 자료로 결측값을 대체하는 방법
회귀대체 (Regression imputation)	응답 자료를 토대로 변수 y 와 관련된 보조변수 $x_1, x_2, x_3, \dots, x_k$ 에 대한 회귀모형을 적합시킨 후, 적합된 회귀모형의 예측값을 이용해 결측된 y 값을 대체하는 방법
콜드덱 (Cold-deck)	결측값을 기존에 실시된 표본조사의 유사 항목 응답값으로 대체하는 방법

제6장

통계추정 및 분석

제 1 절

통계추정

주요내용 및 확인사항

- 표본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통해 모집단의 값을 추정
- 추정의 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중값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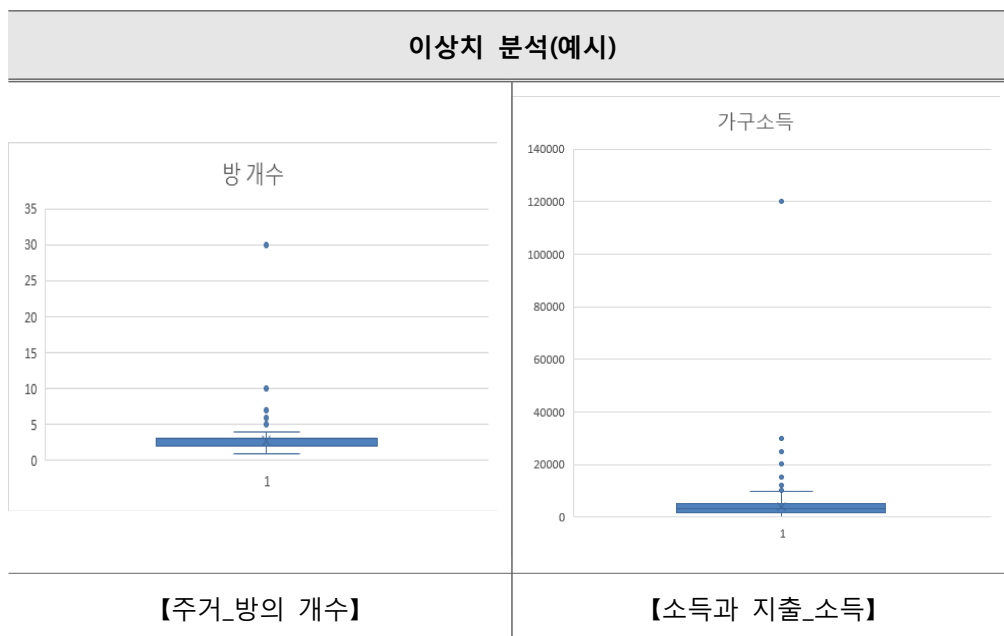
■ 가중치 조정

- ▶ 가중치의 적용은 모집단의 구조와 표본구조를 일치시킴으로써 추정의 정확도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음. 본 표본조사의 가중치는 크게 3단계를 거쳐 산정됨
 - (설계 가중치) 각 층에서 배정된 표본 조사구 수만큼 조사구 내의 가구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으로 추출
 - (무응답 조정) 최초 표본단위가 단위무응답인 경우 이를 보정하기 위해 최초 목표 표본 크기를 유효표본크기로 나누어 조정. 대체표본으로 교체할 경우 무응답 보정은 필요하지 않음
 - (사후층화) 벤치마킹 자료를 이용하여 최신 모집단 자료에 맞게 보정
 - (가구원) 성 및 연령그룹별로 최신 주민등록인구에 맞게 보정한 사후층화 가중값을 최종가중값으로 사용
 - (가구) 매년 등록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특성 반영

이상치 식별 및 처리

이상치(outlier) 처리

- (내용검토 과정) 조사원이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관리자 및 담당 공무원이 조사표 검토과정에서 이상치 여부를 확인 판단하고 있으며 이상치로 판단되는 경우 조사표에 기록된 전화번호를 활용하여 다시 사실여부를 확인함
- (자료입력 과정) 입력자료에 대한 범위로류 확인(range check)을 하고 있어 입력오류에 의한 이상치 또한 발생하지 않고 있음
- (데이터 분석 과정) 탐색적 자료분석을 통한 이상치 분석(상자그림 등)을 통한 자료 확인



- 이상치 처리를 할 만한 경우는 발생하지 않음(입력 착오)

▶ 극단가중값 처리

- 극단가중값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중층을 병합하거나 절삭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극단가중값 처리
 - (가중층의 병합) 가중층의 표본크기가 30 미만인 경우에는 병합 고려
 - (가중값의 절삭) 극단가중값 탐지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한 후, 극단가중값이 없거나 너무 많은 방법은 제외
- 극단 가중값 처리는 지나치게 큰 값들이 추정량의 분산을 크게 만들어 추정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 본 조사에서는 극단가중값 처리를 할 만큼의 큰 값을 갖는 가중치는 없어 극단 가중값 처리를 하지 않았음

■ 통계추정 산식 및 내용

▶ 추정

$$\text{비율(평균)추정 : } \hat{\mu} = \bar{y} = \frac{\sum_h^2 \sum_i^{n_h} \sum_j^{m_{hi}} w_{hij} y_{hij}}{\sum_h^2 \sum_i^{n_h} \sum_j^{m_{hi}} w_{hij}}$$

- $h = 1, 2$: 층(지역)
- $i = 1, 2, \dots, n_h$: 조사구
- $j = 1, 2, \dots, m_{hi}$: 대상가구 또는 대상 가구원
- w_{hij} = h 층의 i 조사구내 j 번째 가중값

제 2 절 표본오차 추정방법 및 결과

주요내용 및 확인사항

- 추정결과 공표 시 상대표준오차 허용 범위를 제시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추정값과 더불어 추정값의 변동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

추정결과의 적용

- 표본조사 결과에 가중값을 적용하여 얻은 점추정값은 변동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표준오차와 함께 제공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
 - 점추정값으로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표준오차를 고려한 구간추정값에는 차이가 없을 수 있기 때문
 - 표준오차는 평균값의 크기, 척도의 차이 등에 의해 비교가능한 형태가 아니므로 표준오차를 평균으로 나눈 상대표준오차를 이용

표본오차 추정산식

추정량의 분산

$$\text{분산추정(테일러선형근사)} : \widehat{Var}(\bar{y}) = \sum_{h=1}^2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cdot} - \bar{e}_{h\cdot\cdot})^2$$

$$- e_{hi\cdot}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bar{y}) \right) / w_{h\cdot\cdot}$$

$$- \bar{e}_{h\cdot\cdot} = \left(\sum_{i=1}^{n_h} e_{hi\cdot} \right) / n_h$$

$$- w_{h\cdot\cdot} = \sum_h \sum_i \sum_j w_{hij}$$

$$\text{표준오차} : \widehat{SE}(\bar{y}) = \sqrt{\widehat{Var}(\bar{y})}$$

$$\text{상대표준오차} : \widehat{RSE}(\bar{y}) = \frac{\widehat{SE}(\bar{y})}{\bar{y}} \times 100(\%)$$

주요항목 표본오차

권역별 가구소득 추정

	가구소득		
	평균(만원)	표준오차	상대표준오차(%)
동부	4,195	124.56	3.0
읍면부	3,120	121.93	3.9
여주시	3,657	88.75	2.4

권역별 가구지출 추정

	가구소득		
	평균(만원)	표준오차	상대표준오차(%)
동부	2,747	74.57	2.7
읍면부	1,986	66.05	3.3
여주시	2,366	51.22	2.2

표본오차 이용 시 고려사항

- 조사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정확성 평가 기준에 맞게 유의사항을 표기하여 자료 이용자로 하여금 신뢰도가 낮은 통계결과를 이용하는데 주의하도록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가구 통계 유의사항 표기 및 해석】

	$RSE < 25\%$		$25\% \leq RSE < 50\%$	$50\% \leq RSE$
	$n \geq 10$	$n < 10$		
표기	표기 없음	*	*	**
해석	신뢰도 높음	신뢰도 다소 낮음	신뢰도 다소 낮음	신뢰도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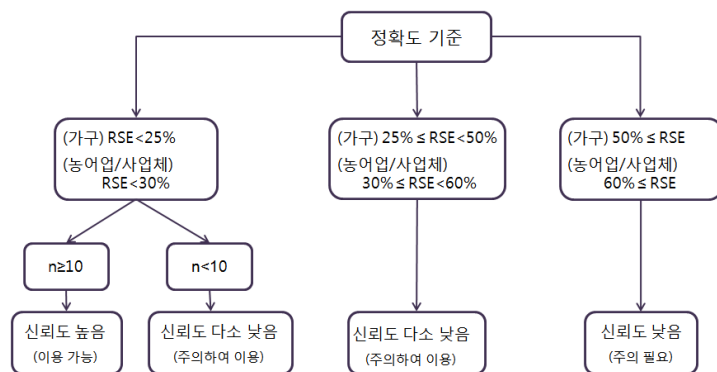
【농어업·사업체 통계 유의사항 표기 및 해석】

	$RSE < 30\%$		$30\% \leq RSE < 60\%$	$60\% \leq RSE$
	$n \geq 10$	$n < 10$		
표기	표기 없음	*	*	**
해석	신뢰도 높음	신뢰도 다소 낮음	신뢰도 다소 낮음	신뢰도 낮음

표본오차 산출방법 제공 방법

- ▶ (표본오차의 작성) 표본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는 표본조사의 정확성을 평가하고 이용자에게 정확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표본오차를 작성하여야 함
- ▶ (표본오차의 기준) 표본조사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 상대표준오차(RSE)를 보고서 및 보도자료 등에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보도자료는 주요 결과표에 대하여서만 작성할 수 있음

[표본조사 정확도 평가 기준]



* n은 표본규모

제 3 절 결과분석

주요내용 및 확인사항

- 조사결과를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법으로 분석하여 공표

통계표 작성

- ▶ 자료 처리 후 결과표를 재검토하여 결과표를 최종 확정
 - 결과표 양식 기준으로 조사결과를 집계

결과분석

- ▶ 분석 작성에 앞서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인지 아웃라인 작성
- ▶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텍스트나 표보다 그래프를 이용한 정보 제공

〈참고〉 여주시 복지실태조사

표3. 가구소득

(단위 : 만원)

		평균 소득	경상 소득						비경상 소득	총위 소득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공적이 전소득	사적이 전소득			
생활권	전체	3,618	3,570	2,095	976	176	240	83	47	3,000
	동	4,102	4,063	2,696	901	180	200	85	39	3,600
	읍 면 부	3,130	3,074	1,488	1,052	173	280	81	56	2,465

가구소득의 구성 및 평균/중위소득

단위 : %, 만원



〈참고〉 서울복지실태조사

서울의 가구당 한 달 생활비는?

서울인포그래픽스 제124호 2015. 2. 16.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
The Seoul Institute



서울거주 가구의 한 달 평균 생활비는 314만원으로 소득의 85.6%를 차지
1인가구 135만원, 2인가구 230만원, 3인가구 355만원, 4인가구 465만원 지출
식료품비(22.7%)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용돈·경조비 등(21.0%), 교통·통신비(12.1%) 순

● 서울거주 가구의 한 달 평균 생활비는 314만원으로 소득의 85.6%를 차지

2013년 서울복지실태조사 기준 서울거주 가구의 한 달 평균 생활비는 314만원이며,
월평균 경상소득 366만원의 85.6%를 차지
가구원수별로는 1인가구 135만원, 2인가구 230만원, 3인가구 355만원, 4인가구 465만원 등으로,
가구원 1인이 증가할 때마다 평균 102만원 증가
가구원 1인당 총 생활비는 1인가구가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나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3년 서울복지실태조사 (서울거주 3,798가구 대상)

● 식료품비(22.7%)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용돈·경조비 등(21.0%), 교통·통신비(12.1%) 순

총 생활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식료품비(22.7%)로 월평균 71만원, 그 다음은 용돈·경조비 등 66만원
(21.0%), 교통·통신비 38만원(12.1%), 세금·사회보장비 34만원(10.9%), 교육비 24만원(7.6%) 순

교육비의 경우 가구원수가 많아질수록 전체 생활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며,
실제 취학연령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큰 3인이상 가구의 지출액은 월평균 44만원
(공교육비 18만원, 사교육비 26만원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더 많아)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3년 서울복지실태조사 (서울거주 3,798가구 대상)

주 : 식료품비=가정식비+외식비+주류·담배비, 주거비=월세+주거관리비+광열수도비,
생활용품비=가구·가사용품비+의류·신발비, 용돈·경조비등=자녀·부모님용돈+경조비+종교관련비+기타

출처 : 서울인포그래픽스 제124호, 서울연구원

서울의 가구당 겨울철 난방비는?

서울 가구당 난방비 월평균 15.3만 원 지출, 절반가량(49.2%)이 10~20만 원 지출
1㎡당 난방비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이 가장 높고(2,609원), 아파트가 가장 낮아(1,847원)
난방비가 소득의 10%를 넘는 가구는 13.2%, 소득의 20% 이상도 6.2%에 달해

서울인포그래픽스 제213호 2016. 12. 12.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
The Seoul Institute



서울 가구당 월평균 난방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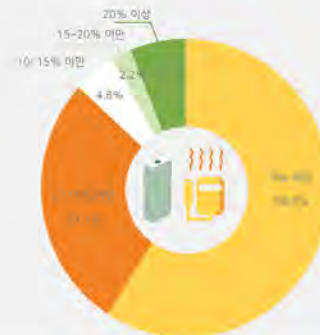


주택규모별 난방비 지출액 (단위: 만 원)



주: 월평균 난방비는 2014년 12월 ~ 2015년 2월 기준,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기준

가구소득 대비 난방비 지출 비중



단위면적(1㎡)당 난방비 (단위: 원)



자료: 서울특별시·서울연구원,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서울 거주 3,019가구 대상, 표준오차 95% 수준에서 ±1.8%)

서울 가구당 난방비 월평균 15.3만 원 지출, 절반가량(49.2%)이 10~20만 원 지출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결과 서울의 가구당 겨울철 난방비는 월평균 15.3만 원(2014년 12월~2015년 2월 기준)

지출구간별로는 10~20만 원이 절반가량(49.2%)을 차지하였으며, 20~30만 원이 24.5%, 10만 원 미만이 20.3%, 30만 원 이상이 6.0% 순

1㎡당 난방비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이 가장 높고(2,609원), 아파트가 가장 낮아(1,847원)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와 일반단독주택의 난방비가 각각 16.6만 원으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연립주택 16만 원, 다세대주택 14.4만 원 순이었으나, 단위면적(1㎡)당 난방비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이 2,609원으로 가장 높고, 아파트가 1,847원으로 가장 낮아(기타 제외)

주택규모별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66~99㎡가 16.6만 원, 그다음으로 많은 33~66㎡가 11.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주택규모가 커질수록 난방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함

난방비가 소득의 10%를 넘는 가구는 13.2%, 소득의 20% 이상도 6.2%에 달해

가구소득 대비 난방비 지출 비중은 5% 미만이 59.0%로 가장 많고, 5~10%가 27.7%로 그다음을 차지

반면, 난방비가 소득의 10%를 넘는 가구는 13.2%였으며, 소득의 20%가 넘는 가구도 6.2%에 달해

출처 : 서울인포그래픽스 제213호, 서울연구원

최종보고서 수록 내용

항 목	수 록 내 용
표제지	· 발간등록번호, 연도, 제목, 발행일, 발행처, 발행인
이용자를 위하여	· 이용시 유의사항, 조사대상연령, 조사대상기간 설명 등, 문의처
목차	· 조사개요, 조사결과, 통계표, 주요항목별 표본오차, 조사표
조사개요	· 조사목적, 법적근거, 조사연혁, 조사기간, 조사주기 및 조사규모, 모집단 및 표본설계, 조사대상, 조사항목, 조사방법, 결과공표
표본설계	· 표본추출방법, 가중값 부여방법 등
조사결과	
통계표	
주요 조사항목의 정확성 지표	· 표본오차, 변동계수, 신뢰계수 등
부록	· 조사표

최종보고서 오류 점검 내용

부문	세부항목	
보고서 구성	표지	간행물번호가 제시되어 있는가? 영문조사명이 제시되어 있는가?
	용어, 개요 등 설명	결과 요약(요약 보고서)이 기술되어 있는가? 조사연혁에 대한 설명이 있는가?
	이용자를 위한 설명	자료 이용시 유의사항이 제시되어 있는가? 자료 문의처가 제시되어 있는가?
	보고서 발행정보	발행일, 발행처, 발행기관이 제시되어 있는가?
	기타	설문지가 첨부되어 있는가? 승인통계 결과물만 제시되어 있는가?
보고서 내용	표본설계	모집단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이루어졌는가? 표본틀, 표본추출방법, 표본크기 책정방법 등이 기술되어 있는가?
	추정	가중값 사출과정이 제시되어 있는가? 무응답 대체방법이 제시되어 있는가? 추정값의 변동성 지표(표준오차, 상대표준오차)가 제시되어 있는가?
		통계표(그래프) 형태의 일관성이 있는가?
		통계표(그래프)에 단위가 제시되어 있는가?
	통계표 및 그래프	수치가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제 7 장

통계 공표 및 관리

제 1 절

공표통계 및 해석방법

주요내용 및 확인사항

- 통계 공표의 적정성을 지켜 신뢰 가능한 자료 제공
- 이용자의 올바른 통계 해석을 위해 해석방법 및 유의사항을 제시

■ 공표방법

- 통계작성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결과를 공표해야 함
- 세부 항목별로 적합한 분류범주로 통계표를 작성하여 공표

■ 공표통계 분류 수준

● 분류수준별 범주

변수명		범주
성별		남자, 여자
연령별	가구주	39세이하,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 가구주의 경우 10대와 20대의 표본이 많지 않아 조사결과에 따라 29세이하 또는 39세이하로 분류
	가구원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교육정도별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변수명	범주
가구소득별	1,000만원 미만, 1,000~3,000만원 미만, 3,000~5,000만원 미만, 5,000~10,000만원 미만, 10,000만원 이상 ※ 가구소득의 경우 지역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지역사정에 맞게 소득구간 및 상·하한선을 조정하여 구성
직종별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업, 기능노무직
주거유형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기타
혼인상태별	미혼, 배우자있음, 사별/이혼
생활권	동부와 읍면부로 분류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고용주/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 세부적인 추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표에 필요한 최소 표본규모 및 오차의 한계가 함께 고려되어야 함

- 각 분류 범주별 항목의 표본크기가 10미만인 경우에는 셀통합(collapsing)하거나, ‘*(신뢰도 다소 낮음)’ 표기를 하여 제공해야함

통계표 표두 통합

〈 조사결과 빈도분석 〉

		만족도(단위 : 명)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전체		306	759	718	168	6
성 별	남 자	155	355	340	79	2
	여 자	151	404	378	89	4
연령별	13 ~ 29세 이하	38	68	126	14	1
	30 ~ 39세 이하	70	118	71	12	0
	40 ~ 49세 이하	58	135	116	18	0
	50 ~ 59세 이하	50	186	136	35	2
	60세 이상	90	252	269	89	3
혼 인 상 태	유 배 우	211	525	446	113	3
	사 별 / 이 혼	42	117	116	27	2
	미 혼	53	117	156	28	1

* 「매우만족」 응답항목의 전체 사례수가 6명이고 분류변수별로 보면 “0”인 경우도 많아 응답항목을 5개 범주에서 3개 범주로 변경

〈 셀 통합 후 통계표 〉

			만족도(단위: %)		
			불만족	보통	만족
전체			53.9	37.7	8.4
성 별	남	자	54.2	37.9	7.9
	여	자	53.7	37.5	8.8
연령별	1 3 ~ 2 9 세 이 하		42.5	51.5	6.0
	3 0 ~ 3 9 세 이 하		70.0	25.4	4.7
	4 0 ~ 4 9 세 이 하		59.0	35.4	5.6
	5 0 ~ 5 9 세 이 하		58.4	33.1	8.6
	6 0 세 이 상		48.5	38.3	13.2
혼 인 상 태	유 배 우		57.4	34.1	8.5
	사 별 / 이 혼		52.6	38.1	9.3
	미 혼		46.0	46.4	7.6

➡ 분류변수 통합 및 삭제

〈 가구특성 분류변수 빈도분석 〉

		가구수
전체		1,000
거 처 종 류	단 독 주 택	571
	아 파 트	320
	연립/다세대/기타	109
점 유 형 태	자 기 집	681
	전 세	86
	보증금 있는 월세	102
	보증금 없는 월세	23
	기 타	108
장애인가구	비 장애 인 가 구	935
여 부	장 애 인 가 구	65
다문화가구	한 국 인 가 구	985
여 부	다 문 화 가 구	15
가구원수별	1 인 가 구	302
	2 인 가 구	387
	3 인 가 구	144
	4 인 이 상 가 구	167
생활권	동 부	500
	읍 면 부	500

〈 분류변수 통합 및 삭제 〉

		가구수
전체		1,000
거 처 종 류	단 독 주 택	571
	아 파 트	320
	연립/다세대/기타	109
점 유 형 태	자 기 집	681
	전 세	86
	월 세	125
	기 타	108
장애인가구	비 장 애 인 가 구	935
여 부	장 애 인 가 구	65
가구원수별	1 인 가 구	302
	2 인 가 구	387
	3 인 가 구	144
	4 인 이 상 가 구	167
생활권	동 부	500
	읍 면 부	500

* 보증금있는월세와 보증금없는월세 통합 다문화가구
여부 삭제

공표통계 해석방법

- ▶ 조사 결과 보고서, 간행물 및 보도자료 등에 이용자를 위하여 해석 방법에 대한 안내를 명시
 - 자료 수치의 세부항목의 합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통계표 및 도표의 내용 중에서 전년도판 수치와 일치되지 않는 것은 지표 작성 방법이나 자료원의 변경 또는 일부 착오내용을 최근 자료에서 정정한 것으로 최근 자료의 수치를 이용하여야 함
 - 통계표 중에서 사용된 부호의 뜻
 - : 해당숫자 없음
 - 0 : 단위 미만
 - p : 잠정치
 - ... : 해당숫자 미상
 - 보고서 내용을 인용 시 반드시 출처 명시 필요
 - 담당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등 안내

성인지(성별 관련) 공표통계 항목

-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별구분을 포함하여 자료를 공표해야 함
 - 통계작성 승인사항(시행령 제25조)
- ▶ 복지실태조사의 경우 사례수가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 대다수 항목에 대해 성별 통계를 공표함

〈참고〉 여주시 복지실태조사 예시

외국인에 대한 차별 인식		매우 심하다	조금 심하다	보통이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성별	남자	4.5	29.9	38.6	23.6	3.4
	여자	4.5	27.3	40.4	24.9	2.9
건강상태		아주 건강함	건강한 편	보통	건강하지 않은 편	건강이 아주 안 좋음
성별	남자	19.2	46.5	17.3	12.2	4.8
	여자	11.7	42.2	21.4	20.5	4.2

제 2 절 통계의 이용자 서비스

주요내용 및 확인사항

- 통계 이용자들이 쉽게 자료에 접근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로로 서비스 제공

통계포털 또는 홈페이지

- ▶ 통계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되는 경로, 경로별 제공자료 유형 및 내용 등을 통계 이용자에게 안내
 - KOSIS(<http://kosis.kr>) : 통계표
 - 지자체 홈페이지 : 보도자료, 보고서
- ▶ KOSIS 통계표 수록을 위한 이용 방법
 - (담당 부서) 통계청 통계서비스기획과
 - (통계DB시스템) <http://stat.kosis.kr/nsist>
 - ※ 자세한 사항은 통계DB시스템 지침서 및 매뉴얼 참고(DB시스템 자료실에 수록)

담당자 연락처 정보

- ▶ 통계의 담당자 또는 이용관련 문의 연락처(담당부서, 담당자, 이메일, 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자에게 안내

통계설명자료 제공

- ▶ 각종 통계 설명자료(예 : 메타정보, 방법론 보고서, 품질보고서 등)를 통계포털 또는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이용자가 이용 할 수 있도록 제공
 - 통계설명자료 DB : <http://meta.narastat.kr>
 - KOSIS(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통계설명자료

제 3 절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주요내용 및 확인사항

- ③ 마이크로데이터를 신속하게 제공
- ③ 수집된 개인정보는 반드시 보호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개요

- ▶ 통계조사 응답자의 비밀을 최대한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심층적인 경제 및 사회현상 분석을 원하는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를 위해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
- ▶ 통계작성기관은 통계법 제37조에 근거하여 공문을 통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과로 자료 이관



통계법 제37조 (위임 및 위탁)

-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29조의2에 따른 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2.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

▶ 마이크로데이터 구축 및 서비스 절차



제 4 절 비밀보호 및 보안

주요내용 및 확인사항

- 통계법에 의한 비밀보호를 준수하며 자료 처리 시 관리적 및 기술적 보호조치 방안 마련

■ 자료 수집, 처리 및 보관 과정의 비밀보호

- ▶ (자료수집)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비밀보호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이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 자료 처리 및 보관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고유식별정보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암호화하고, 해당 고유식별정보는 삭제
- (자료처리) 작업 중 개체식별자료를 다운로드 또는 저장 불가
- (접속기록) 자료이용에 대한 접속기록 관리
- (보안프로그램) 악성 코드 방지 등을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 공표자료의 비밀보호

- ▶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시 응답자 식별가능성 제거를 위한 방법

항목	조치와 방법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의 식별이 가능하므로, 일련번호로 변경하여 제공
생년월일	개인정보항목으로 제공불가하므로, 만나이로 제공

제8장

참고자료

제 1 절 통계조정제도¹⁾

통계조정 개념

- ▶ 국가통계의 균형적 발전과 신뢰도 제고, 통계이용의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취하는 여러 가지 제도
 - 통계작성의 중복을 방지 및 통계작성의 기준을 설정
 - 통계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
 - 통계작성, 중지, 변경 또는 통계작성사무의 개선을 요구
 - 통계의 진실성 확보, 시의성 및 활용성
- ※ 신규통계 작성, 기존통계 변경 및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통계청장의 승인 또는 협의를 받아야 함

주요 조정업무 내용

가. 통계작성지정기관이란?

- ▶ 통계작성지정기관은 통계작성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법인으로서 통계청장에게 신청, 지정기관의 지정요건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정 받은 기관

1) 통계청, 「통계조정업무 매뉴얼」 참고

▶ 지정기관이 될 수 있는 요건



통계법 제15조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 ①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거나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 등을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요건은 통계작성 조직 및 예산, 통계작성 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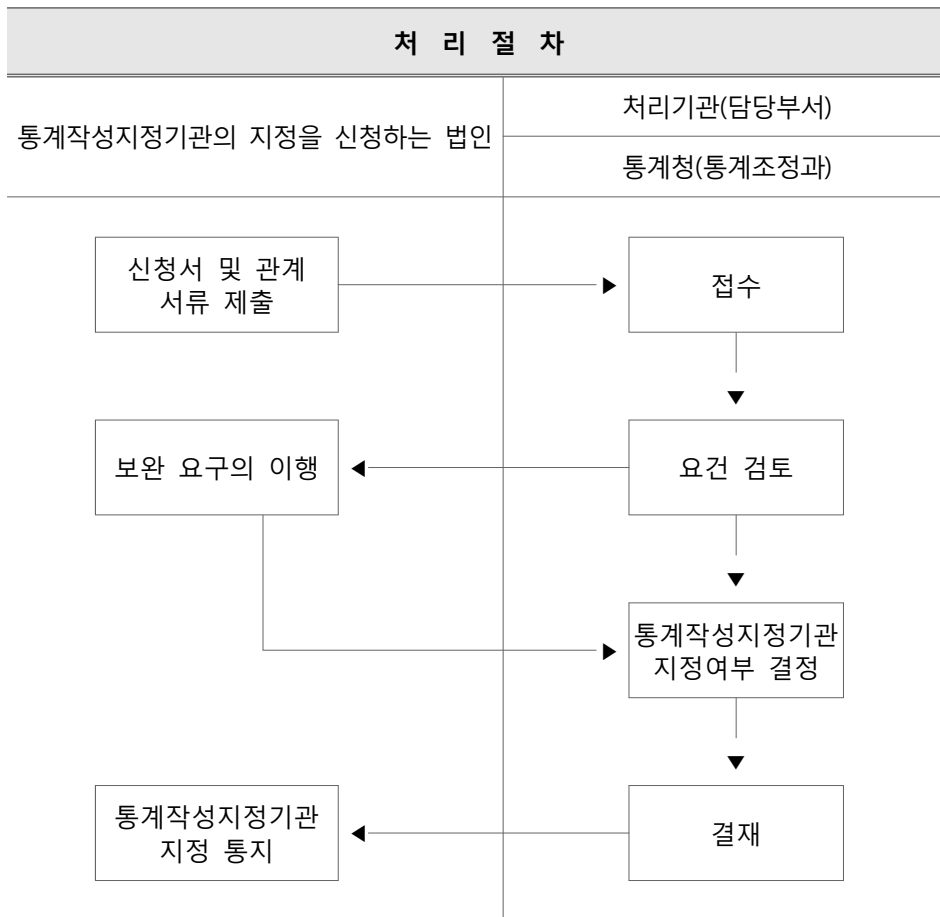


통계법 시행령 제18조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통계의 작성과 보급에 필요한 조직,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거나 구체적인 확보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3.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 지정기관의 지정 절차도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 신청서식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나라통계시스템(http://narastat.kr)에서 전자신청하는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기관		① 명칭 ② 설립근거	
③ 통계작성·보급 관련 부서·인력·예산	부서명		
	인력 (계 명)	통계기획·분석·처리	명
		통계조사	명
		통계자료 제공 등 보급	명
	예산(경비) (계 천원)	통계기획·분석·처리	천원
		통계조사	천원
통계자료 제공 등 보급		천원	
④ 향후 통계작성 보급계획			
⑤ 그 밖의 참고사항			
「통계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 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통계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1부 2.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을 담당할 조직이나 인력의 현황 자료 1부 3. 통계의 작성 및 보급과 관련된 예산의 현황 자료 1부 4.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관한 계획(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계획 및 통계청에 통계데이터 전송계획을 포함) 1부		수수료 없음

나. 지정통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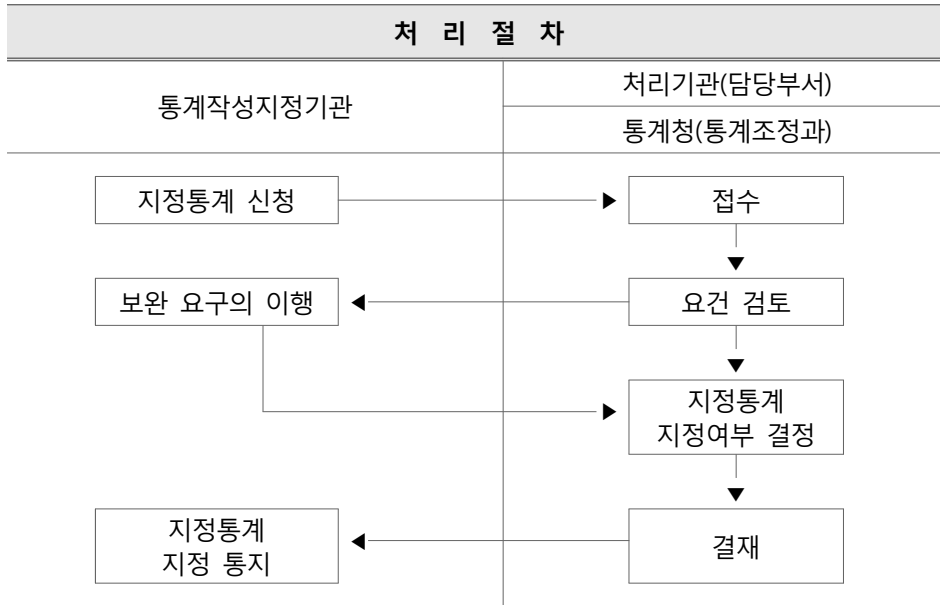
- ▶ 지정통계는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중요한 통계
- ▶ 지정통계가 될 수 있는 요건



통계법 제17조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는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 지정기관의 지정 절차도



▶ 지정통계 지정 신청서식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나라통계시스템(http://narastat.kr)에서 전자신청하는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정통계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 통계	① 명칭
	② 통계작성 승인(협의) 번호
	③ 통계작성 기관명
	④ 통계작성 목적
	⑤ 지정통계로 지정받으려는 사유

「통계법」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 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 통계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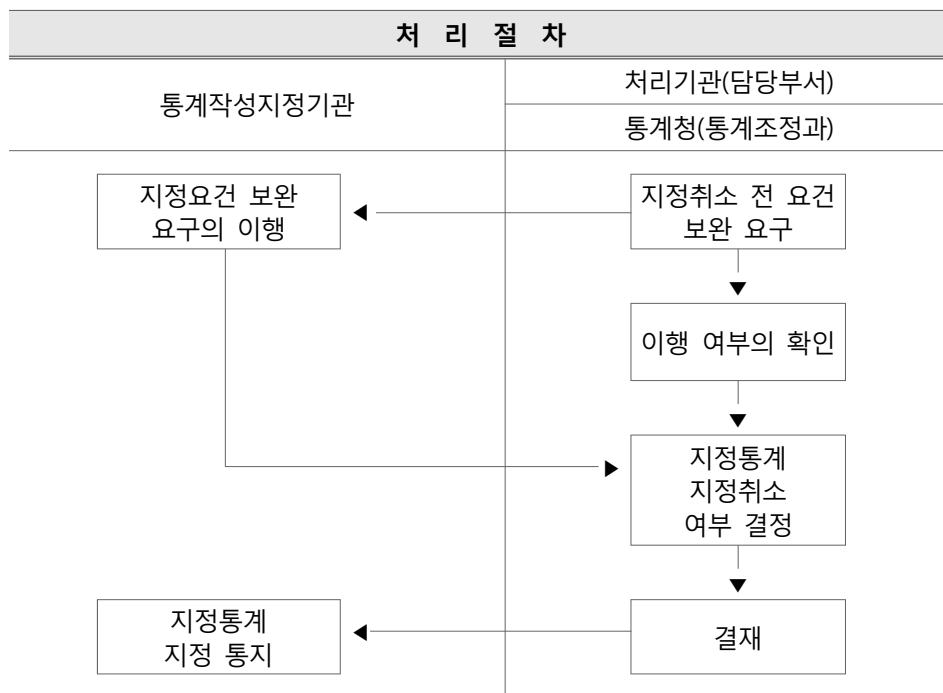
통계청장 귀하

다. 지정통계의 지정취소

▶ 지정통계의 지정취소 사유(통계법 제17조 제2항)

- 지정통계가 통계법 제17조 제2항에 정한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지정통계의 지정취소 절차도



▶ 지정통계의 지정취소 요건



통계법 시행령 제23조 (지정통계의 지정취소)

- 통계청장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기간까지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해당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지정통계의 지정취소 결과통보 및 고시

- 지정통계 지정취소 결정과 문서에 의한 통보 및 고시

- 고시는 매주 1회 통계청 홈페이지에 게재
- 홈페이지 주소 : <http://KOSTAT.GO.KR>(새소식-공지사항-고시)

라. 통계작성승인 : [제2절 통계작성 승인 신청 참고]

마. 통계작성의 협의

▶ 협의대상 통계

- 다른 법률에 통계작성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한 경우에만 협의통계 대상으로 보며, 임의규정(~할 수 있다)으로 되어있으면 협의통계 대상으로 볼 수 없음

☞ 예시) 국민건강영양조사 ⇒ 법적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 (국민영양조사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상태·식품섭취·식생활조사 등 국민의 영양에 관한 조사 (이하 “국민영양조사”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통계작성의 협의요청 및 협의



통계법 시행규칙 제28조 (통계작성의 협의요청 및 협의)

-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0조 제1항 전단에 따라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보고 등 자료수집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통계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협의를 요청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 협의요청 절차도, 제출방법,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신청서류의 접수·심사·처리, 신청에 대한 결과통보 및 고시,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 표시 등은 통계의 작성승인 절차와 동일함

바.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 [제2절 통계작성 승인 신청 참고]

사. 통계작성의 중지승인(협의)

▶ 통계작성 중지승인(협의) 대상

- 통계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의 중지를 요구 받은 통계
- 통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승인을 얻은 통계의 작성중지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중지 시 통계청장의 승인 (협의) 받아야 함

▶ 통계작성 중지승인(협의) 절차도(통계작성승인 처리와 동일)

▶ 신청서 제출

-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을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또는,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 10일 전까지** 신청

▶ 제출방법

- 신청서공문은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여 해당지방청에 제출 후 나라통계 시스템(<http://narastat.kr>)내에 있는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공문 시행한 첨부물과 동일한 자료를 업로드 하여야 하며, 추후 수정변경 사항은 시스템 내에서 실시

▶ 중지사유의 타당성 검토

- 통계작성 중지로 인한 통계결과 이용자의 애로사항 발생 유무
- 대체 활용 할 수 있는 통계 유무
- 작성중지로 인한 인력 및 예산 절감효과

▶ 신청 결과통보 및 고시 : 신규 통계작성 승인과 동일하게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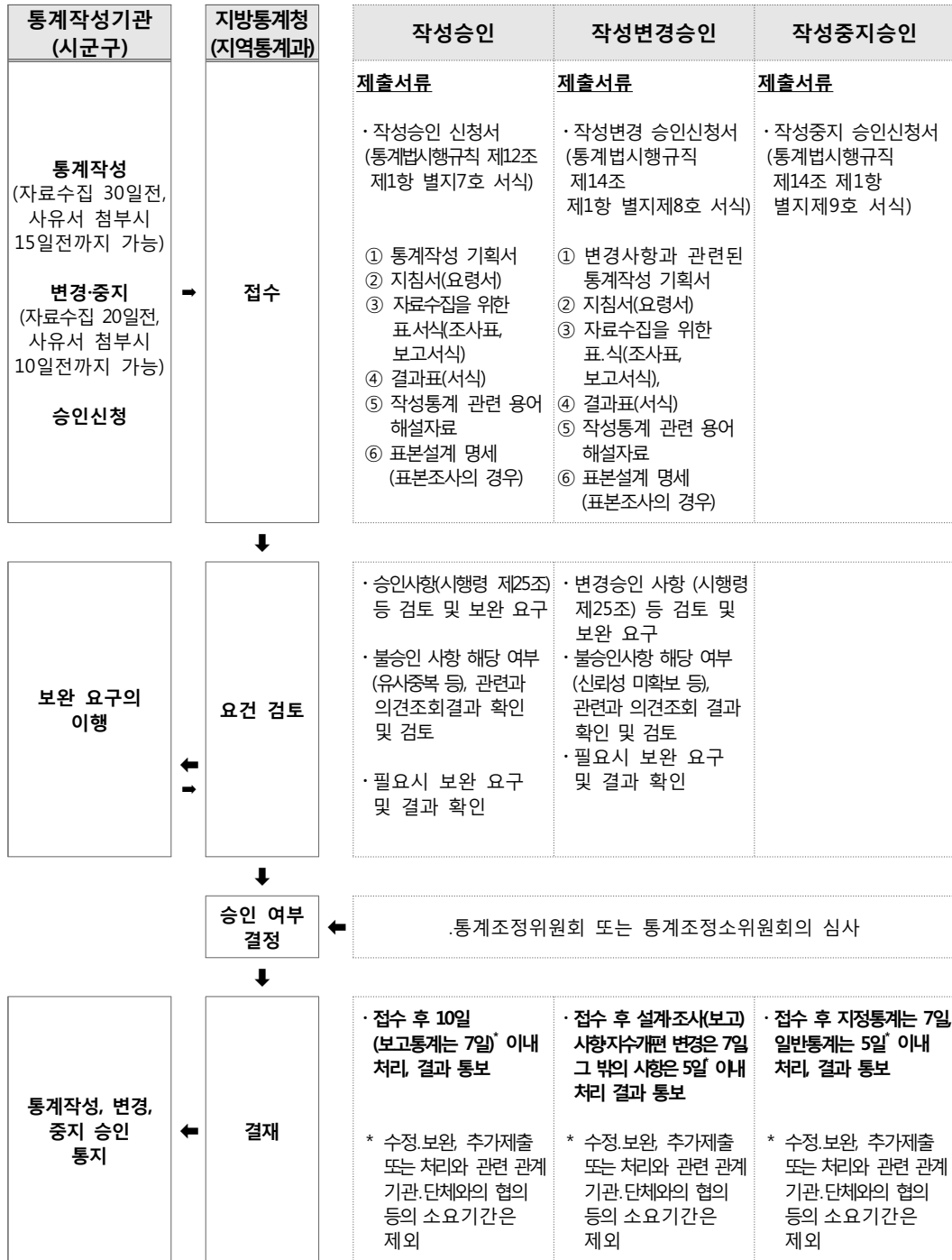
▣ 조정업무의 담당부서

▶ 통계청 통계조정과 : 통계 조정제도 총괄

▶ 통계업무 관련 부서

- (통계청 통계정책과) 통계법, 국가통계위원회, 통계책임관 지정
- (통계청 통계심사과) 통계기반정책평가 관련 업무
- (통계청 품질관리과) 통계품질진단 관련 업무
- (통계청 통계서비스기획과) 국가통계 DB구축, KOSIS 운영 및 e-나라지표 관련 업무
- (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시·군·구 지역통계 조정업무 및 품질관리

➡ 통계 조정업무 가이드라인



제 2 절 통계품질관리²⁾

통계품질관리 개념

- ▶ 통계품질관리(Quality Management for Statistics : QMS)란 통계이용자들에게 통계를 사용하는데 적합하도록 생산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 만족을 주면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통계를 작성·보급·관리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통합한 체계

통계품질진단 유형

유 형	대 상	진단 주체
정기진단	주요 승인통계	10년의 범위 안에서 외부전문가 진단
수시진단	품질저하가 의심되는 통계	수시로 외부전문가 진단
자체진단	모든 승인통계	매년 작성기관 스스로 진단

자체통계품질진단

- ▶ 자체통계품질진단 개념
 - 자체통계품질진단은 외부에 의뢰하여 품질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의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통계작성기관이 직접 소관 통계의 품질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 각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담당자가 웹기반의 시스템을 통해 통계청이 개발하여 제공한 진단서를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진단하여, 취약한 부분을 스스로 인식하고 직접 개선과제를 도출·이행하여 담당통계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진단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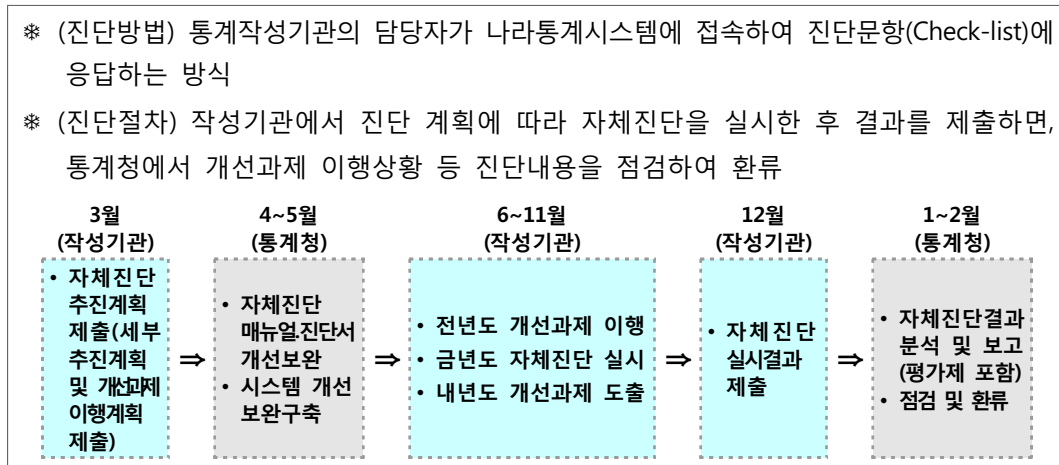
2) 통계청, 「자체통계 품질진단 매뉴얼」 참고

▶ 자체통계품질진단서의 구성

- 자체통계품질진단서는 과정중심(Process-Oriented) 방식으로 구성되어 통계작성 절차에 따라 통계작성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총 7장에 걸쳐 71개 항목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도록 구성

➔ 자체통계품질진단 방법 및 절차

- * (진단방법) 통계작성기관의 담당자가 나라통계시스템에 접속하여 진단문항(Check-list)에 응답하는 방식
- * (진단절차) 작성기관에서 진단 계획에 따라 자체진단을 실시한 후 결과를 제출하면, 통계청에서 개선과제 이행상황 등 진단내용을 점검하여 환류



■ 자체통계품질진단 시스템 이용 안내

- ▶ **품질관리 메뉴 중 자체품질진단 선택**



PART

II. 부 록

- 항목정의서
- 표준조사표
- 기본계획
- 표본설계보고서
- 종합실시계획
- 나라Pro 사용설명서
- 지역통계 표준프로세스 준수율 점검표(조사통계)



부 록

항목정의서

분류

I. 가구일반사항

가구주

공통

항목명

가구주와의 관계

구성된 가구원과 가구주와의 관계

조사항목

2 가구주와의 관계	① 가구주(본인)	② 배우자	③ 미혼 자녀	④ 기혼 자녀 및 그 배우자	⑤ 손자·손녀 및 그 배우자	⑥ 부모(배우자 쪽 포함)	⑦ 조부모(배우자 쪽 포함)	⑧ 미혼 형제자매(배우자쪽 포함)	⑨ 기타 친·인척	⑩ 기타 동거인

통계표 구성

<가구주와의 관계>

(단위: %)

가구주 (본인)	배우자	미혼 자녀	기혼 자녀 및 그 배우자	손자·손녀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 쪽 포함)	조부모 (배우자 쪽 포함)	미혼 형제자매 (배우자 쪽 포함)	기타 친·인척	기타 동거인

<가구특성>

(단위: %)

	가구원 수				가구형태			
	1인(단독) 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이상 가구	단독가구	1세대 (단독가구 제외)	2세대	3세대이상

현장조사 유의사항

- ▶ 가구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구주와 가구원의 관계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입한다.
- ▶ 반드시 1번에는 가구주를 기입하도록 하며, 위로부터 공란 없이 기입한다.

응답항목 유의사항

① 가구주

- 주민등록상의 가족관계 또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계를 실제로 책임지고 있는 생계 책임자를 의미한다.
- 생계책임자는 단순히 가구원 중에서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고 결정 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 전혀 소득이 없이 단순히 타 가구원의 소득을 수령하여 지출하는 경우는 가구주로 처리하면 안 된다.
- 단, 가구주가 조사 불능자일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가구주로 선정하며 이때 다른 가구원과의 관계도 선정된 가구주를 기준으로 수정한다.
- 혈연 또는 친족관계가 없는 사람 2인 이상이 함께 사는 경우 그 중 한 사람(대표자 또는 연장자)을 가구주로 한다.

⑧ 미혼 형제자매

- 가구주뿐만 아니라 가구주의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분류

I. 가구일반사항

가구주

공통

항목명

성별

구성된 가구원의 성별

조사항목

3 성별	① 남 ② 여							

통계표 구성

<응답자 성별>

(단위: %)

	전체		가家主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현장조사 유의사항

- ▶ 이름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현지에서 성별을 질문하여 성별을 표시한다.

분류

I. 가구일반사항

가家主

공통

항목명

생년월일

구성된 가구의 생년월일

조사항목

4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生年月日) (예: 1977년 3월 1일 → 1 9 7 7 0 3 0 1)											

통계표 구성

<응답자 연령>

(단위: %)

	전체						가家主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현장조사 유의사항

-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입한다.
- ▶ 정책수립 및 집행 시 주민등록상의 나이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실제생일이 아닌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조사한다.

분류

I. 가구일반사항

가구주

공통

항목명

혼인상태

구성된 가구원의 혼인상태

조사항목

5	① 배우자 있음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혼인상태				

통계표 구성

<응답자 혼인상태>

(단위: %)

	전체				가구주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미혼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미혼

현장조사 유의사항

- ▶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현재 혼인상태를 말하며, 조사 시 연령과 혼인상태를 점검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 미성년자가 ① ~ ③의 기혼자인 경우 재확인

응답항목 유의사항

① 유배우

-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
- ※ 사실혼 관계 및 배우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포함

② 사별

- 배우자 중 한쪽이 사망하여 현재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사람



사 례

광복 전 또는 한국전쟁 당시 배우자가 납치 또는 실종된 사람은 사별로 간주
⇒ 사망신고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대로 기입

③ 이혼

- 배우자와 서로 헤어져 현재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사람
- 이혼신고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재결합이 예상되지 않는 사실상의 이혼상태에 있는 별거도 이혼으로 간주함

④ 미혼

- 혼인한 경험이 없는 사람

항목명

교육수준

구성된 가구원의 최종 학교 및 졸업 상태

조사항목

6 교육수준	6-1 최종 학교	① 미취학(만7세 미만)	② 무학(만7세 이상)	③ 초등학교	④ 중학교	⑤ 고등학교	⑥ 대학(4년제 미만)
		⑦ 대학교(4년제 이상)	⑧ 대학원(석사)	⑨ 대학원(박사)			
6 교육수준	6-2 졸업 상태	⑩ 비해당	① 재학	② 휴학	③ 중퇴	④ 수료	⑤ 졸업

통계표 구성

<응답자 교육수준>

(단위: %)

	전체				가구주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학 졸업이상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학 졸업이상

현장조사 유의사항

- ▶ 정규교육과정 또는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학력을 묻는 항목으로 학제가 다른 외국인은 교육 받은 기간 등을 참고하여 학력을 기재한다.

응답항목 유의사항

- ▶ 현재 재학 중인 경우는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두 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는 최고 학력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 대학교 졸업이후, 다시 대학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경우

- 「⑥ 대학(4년제 미만)」 → 「① 재학」

☞ 대학교 졸업이후, 대학을 졸업한 경우

- 「⑦ 대학교(4년제 이상)」 → 「⑤ 졸업」

- ▶ 공민학교는 초등학교, 고등공민학교는 중학교에 해당한다.

- ▶ 과거 학제인 경우에는 현재 학력으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 과거 5년제 중학교 졸업인 경우

- 「⑤ 고등학교」 → 「⑤ 졸업」

- ▶ 석·박사 통합과정 중인 경우는 이수학점이 24학점 이하이면 「⑧ 대학원 석사 과정」 재학으로, 그 이외는 「⑨ 대학원 박사 과정」 재학으로 조사한다.

① 재학

- 검정고시 준비생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수료

- 학교를 다니는 동안 졸업 이수 학점을 다 이수하였으나 졸업시험이나 졸업논문 등 졸업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⑤ 졸업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을 검정고시로 합격한 경우도 해당한다.



주의사항

기능훈련, 직업훈련, 입시학원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항목명

국적

구성된 가구원의 국적

조사항목

7 국 적	7-1 구분	① 한국인 ② 한국으로 귀화한 외국인(한국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동포, 기타 귀화한 외국인 포함) ③ 외국인					
7-2 국적 (01전국적)							

통계표 구성

<응답자 국적>

(단위: %)

	전체			가구주		
	한국인	귀화한 외국인	외국인	한국인	귀화한 외국인	외국인

현장조사 유의사항

- ▶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하는 것이므로 응답자가 기피하지 않도록 조사목적
잘 설명한다.
- ▶ 국적은 외모나 사용 언어만으로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질문하여 기입한다.
- ▶ 국적에서 ② 한국으로 귀화한 외국인, ③ 외국인 응답자만 국적란에 국적으로 한글로
표기한다.

응답항목 유의사항

- ▶ 이중국적인 사람은 ① 한국인으로 기입한다.
- ▶ 일제 강점기에 일본 또는 다른 나라 국적을 강요에 의해 취득했던 경우에는 ① 한국인으로 기입한다.
- ▶ 북한 이탈주민은 ① 한국인으로 기입한다.
- ▶ 한국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동포는 조선족은 ② 한국으로 귀화한 외국인으로 기입한다.
- ▶ 귀화·인지에 따른 국적취득자, 국제결혼 후 귀화한 가구원 ⇨ ② 한국으로 귀화한 외국인
 - * 인지 :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식이라고 확인하는 것
- ▶ 외국국적자인 경우 ⇨ ③ 외국인

항목명

장애종류 및 등급

구성된 가구원 장애종류 및 등급

조사항목

8 장애 종류 및 등급	8-1 장애 종류	① 비해당	① 지체	② 뇌병변	③ 시각	④ 청각	⑤ 언어	⑥ 안면	⑦ 신장	⑧ 심장
		⑨ 간	⑩ 호흡기	⑪ 장루·요루	⑫ 간질	⑬ 지적	⑭ 자폐	⑮ 정신		
8-2 장애 등급		① 비해당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⑥ 6급		

통계표 구성

<응답자 장애종류>

(단위: %)

1수준	장애														비장애	
2수준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비장애	
3수준	외부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발달장애	정신 장애	비장애		
4수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심장	호흡기	장루 /요루	간질	지적	자폐	정신	비해당

<응답자 장애등급>

(단위: %)

1수준	장애						비장애
2수준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비해당

※ 응답정도를 파악하여 수준별 통계표 제시 ※ 응답정도를 파악하여 수준별 통계표 제시

현장조사 유의사항

- ▶ 장애인은 등록장애인 한하며, 복지카드에 따라 장애종류를 정확하게 기입하도록 한다.
- ▶ 치매와 뇌혈관성질환과 같은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등급, 보훈대상자인 상이등급은 제외한다.

응답항목 유의사항

- ▶ 중복장애(2가지 이상의 장애가 같이 나타남)의 경우, 주요 장애 하나만 표시한다. 등급이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어려움을 주는 장애로 표시한다.
- ▶ 중복장애의 경우에는 중복장애가 복지카드에 표시되어 합산되어 있는 경우 이를 그대로 기입한다.

※ 장애유형별 등급범위: 중복장애의 경우 본 표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지체장애	○	○	○	○	○	○	신장장애		○			○	
뇌병변장애	○	○	○	○	○	○	심장장애	○	○	○		○	
시각장애	○	○	○	○	○	○	호흡기장애	○	○	○			
청각장애		○	○	○	○	○	간장애	○	○	○		○	
언어장애			○	○			안면장애		○	○	○		
지적장애	○	○	○				장루·요루장애		○	○	○	○	
자폐성장애	○	○	○				간질장애		○	○	○		
정신장애	○	○	○										

분류

II. 주거

가구주

공통

항목명

주택 유형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

조사항목

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 | | |
|--------------------------|-------------|----------------------|
| ① 일반 단독주택 | ② 다가구용 단독주택 | ③ 영업겸용 단독주택 |
| ④ 아파트 | ⑤ 연립주택 | ⑥ 다세대주택 |
| ⑦ 비거주용건물(상가·공장·여관 등)내 주택 | ⑧ 오피스텔 | ⑨ 쪽방, 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 |
| ⑩ 기타 () | | |

통계표 구성

<주택 유형>

(단위: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이 아닌 건물	기타
	①+②+③				⑦+⑨	⑧+⑩

현장조사 유의사항

▶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을 적는다.

응답항목 유의사항

- ① 일반 단독주택
- 한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

② 다가구용 단독주택

- 다가구 주택은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주택으로서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지만 분리해서 팔거나 살 수 없는 주택을 의미한다.

③ 영업겸용 단독주택

- 상가가 함께 설치된 단독주택

④ 아파트

-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의미하며 4층 이하라도 아파트로 허가를 받았으면 아파트로 본다.

⑤ 연립주택

-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의미한다.
- 2~4층의 맨션, 빌라 등이 포함된다.

⑥ 다세대주택

-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의미 한다.
- 동당 건물 연면적이 660㎡(200평)를 초과하면 연립주택, 660㎡(200평) 이하는 다세대 주택이다.
- 다세대주택은 각 호별로 각각 분리하여 사고 팔 수 있다는 점에서 다가구 단독주택과 다르다.

⑦ 비거주용건물(상가·공장·여관 등)내 주택: 상가, 공장, 여관 등에 일부를 구획하여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

⑧ 오피스텔: 일반업무시설 중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

항목명 주택점유형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점유형태 및 가격(임차료)

조사항목

2 점유 형태와 가격(임차료)은 어떻게 되십니까? 점유 형태에 따라 가격(임차료)을 응답해 주십시오.

2-1 점유 형태	2-2 가격(임차료)		
1) 자가 거주자	현재 주택가격(시세)	억	만원
2) 전세 거주자	전 세 보 증 금	억	만원
3) 보증금 있는 월세 거주자	보 증 금	억	만원
	매 달 월 세		만원
4) 보증금 없는 월세 거주자(사글세 포함)	매 달 월 세		만원
5) 일세	일 세		원
6) 무상			
7) 기타			

통계표 구성

<주택점유형태>

(단위: %)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월세	보증금 없는월세	기타
					⑤+⑥+⑦

<점유형태별 가격-자가>

(단위: %, 만원)

	5천 미만	5천~1억 미만	1억~3억 미만	3억~5억 미만	5억 이상	평균
--	-------	----------	----------	----------	-------	----

※ 응답비중 등을 고려하여 간격 조정 가능

<점유형태별 가격-전세보증금>

(단위: %, 만원)

	5천 미만	5천~1억 미만	1억~3억 미만	3억~5억 미만	5억 이상	평균
--	-------	----------	----------	----------	-------	----

※ 응답비중 등을 고려하여 간격 조정 가능

<점유형태별 가격-월세보증금/임차료>

(단위: %, 만원)

	보증금						월세					
	5천 미만	5천~1억 미만	1억~3억 미만	3억~5억 미만	5억 이상	평균	5천 미만	5천~1억 미만	1억~3억 미만	3억~5억 미만	5억 이상	평균

※ 응답비중 등을 고려하여 간격 조정 가능

<점유형태별 가격-보증금 없는 월세>

(단위: %, 만원)

	20만 미만	20만~50만 미만	50만~100만 미만	100만~200만 미만	200만 이상	평균
--	--------	------------	-------------	--------------	---------	----

※ 응답비중 등을 고려하여 간격 조정 가능

<점유형태별 가격-일세>

(단위: %, 만원)

	5만 미만	5만~10만 미만	10만~20만 미만	20만~50만 미만	50만 이상	평균
--	-------	-----------	------------	------------	--------	----

※ 응답비중 등을 고려하여 간격 조정 가능

※ 일정표본 이하면 통계표 제시 않음

현장조사 유의사항

- ▶ 주택가격의 경우, 현재 집의 가격(현시가기준)을 기입한다.
- ▶ 이 때 응답 가구의 주택 점유형태가 1)자가인 경우 현재 주택가격(시세)을 묻고, 2)전세인 경우는 전세 보증금을, 3)보증금 있는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 4)보증금 없는 월세는 월세를 기입한다.

응답항목 유의사항

- ① 자기집
 - 법률상 소유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자기 소유인 집
- ② 전세
 - 월세 없이 전세금만 내고 세 들어 사는 경우
- ③ 보증금 있는 월세
 -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월 집세(방세)를 지불하는 경우
- ④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 월세 : 보증금 없이 매월 집세(방세)를 지불하는 경우
 - 사글세 : 1년 또는 10개월분의 집세를 한꺼번에 지불하고 매월 1개월분의 집세를 공제하는 경우
- ⑥ 무상
 - 관사, 사택 또는 친척집 등에서 세 없이 무상으로 살고 있는 경우

항목명

주택규모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면적 및 방 개수

조사항목

3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규모와 방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3-1 주택 면적

_____ m² (또는 _____ 평)

3-2 방 개수

_____ 개

2차자료 항목 및 유사항목

- ▶ 인구주택총조사(조사자료)
 - 주거용연면적으로 통해 주택면적을 대체 가능
 - 하지만,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주기가 5년이고, 결과 공표의 시점 차이로 시의성이 떨어짐
 - 참고자료로 활용

▶ 건축물관리대장(행정자료)

- 연면적을 통해 주택면적을 대체 가능
- 복지실태조사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는 복지 사각 지대에 대한 실태 파악임. 등록(인가)된 건물과 더불어 비등록(인가)된 건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
→ 조사의 실시목적에 고려하여 행정자료 대체여부를 결정

통계표 구성

<주택면적>

(단위: %)

	20㎡ 미만	20~33㎡ 미만	33~66㎡ 미만	66~99㎡ 미만	99~132㎡ 미만	132㎡ 이상
--	--------	-----------	-----------	-----------	------------	---------

※ 응답비중 등을 고려하여 간격 조정 가능

<방 개수>

(단위: %)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	----	----	----	----	-------

현장조사 유의사항

▶ 전용면적

- 공유면적(발코니, 계단, 주차장 등)을 제외한 실제등기상의 내부면적(거실, 욕실, 드레스룸, 침실, 주방, 현관 면적의 합)임
- 건평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면적(차고면적은 포함하지 않음)만을 기입. 단, 세준 경우는 제외
- 평은 조사 참고용 단위이므로 조사단위(㎡)로 환산하여 기입(1평=3.3㎡)

▶ 방 개수

- 방이란 사면이 벽 또는 문으로 막혀 있고 높이는 2미터(m), 넓이는 4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의미
- 거실의 경우, 침실로 사용하고 있거나 침실로 사용이 가능하면 방수에 포함

항목명 주택 건축시기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건축시기

조사항목

4 현재 살고 계시는 주택은 언제 지어졌습니까?

- | | | | |
|--------------|--------------|--------------|--------------|
| ① 2010년 이후 | ② 2005~2009년 | ③ 2000~2004년 | ④ 1995~1999년 |
| ⑤ 1990~1994년 | ⑥ 1985~1989년 | ⑦ 1980~1984년 | ⑧ 1970~1979년 |
| ⑨ 1960~1969년 | ⑩ 1959년 이전 | ⑪ 잘 모르겠음 | |

통계표 구성

<주택 건축시기>

(단위: %)

	2010년 이후	2005~ 2009년	2000~ 2004년	1995~ 1999년	1990~ 1994년	1985~ 1989년	1980~ 1984년	1970~ 1979년	1960~ 1969년	1959년 이전	모름
--	-------------	----------------	----------------	----------------	----------------	----------------	----------------	----------------	----------------	-------------	----

※ 셀별 응답비율을 고려하여 카테고리화

현장조사 유의사항

- ▶ 건물이 완공되어 최초 입주가 가능한 시기로 일반적으로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자를 말한다.
- ▶ 신축의 경우(빠대를 모두 무너뜨리고 새로 집을 지은 경우) 새로운 주택이 되므로, 건축 연도는 신축한 연도로 기입한다.

항목명 주택위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위치

조사항목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위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지하층 ② 반지하층 ③ 지상 ④ 옥상(옥탑)

통계표 구성

<주택위치>

(단위: %)

	지하층	반지하층	지상	옥상(옥탑)
--	-----	------	----	--------

응답항목 유의사항

- ② 반지하
-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해당 층의 1/2 이상인 경우
- ④ 옥상(옥탑)
- 건물 옥상에 설치된 주거 공간을 의미

항목명 겨울철 난방에너지 자원

겨울철 사용하는 난방에너지 종류

조사항목

- 5 귀택에서 지난 겨울(0000년 12월~0000년 2월) 난방을 위해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십니까?
(많이 쓰는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지역난방 ② 석유 ③ 전기 ④ 도시가스 ⑤ LPG가스 ⑥ 연탄 ⑦ 기타()

통계표 구성

<겨울철 난방에너지 자원>

(단위: %)

	지역난방	석유	전기	도시가스	LPG가스	연탄	기타
--	------	----	----	------	-------	----	----

※ 응답비중을 고려하여 '기타'와 통합가능

현장조사 유의사항

- ▶ 지난 겨울(0000년 12월~0000년 2월) 주로 사용했던 난방 에너지를 순서대로 2가지 기입한다.

항목명 난방비

난방비로 지출한 월 평균 금액

조사항목

- 6 귀택에서 지난 겨울(0000년 12월~0000년 2월) 난방비로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얼마나 됩니까?

월평균 _____ 만원

통계표 구성

<난방비>

(단위: %, 만원)

	10만원 미만	10~30만원	30~50만원	50~100만원	100만원 이상	평균
--	---------	---------	---------	----------	----------	----

※ 응답비중 등을 고려하여 간격 조정 가능

현장조사 유의사항

- ▶ 지난 겨울(○○○○년 12월~○○○○년 2월) 사용했던 난방비를 모두 합산하여 지난 겨울 개월 수(3개월)로 나눈 평균값을 기입한다.

항목명

난방비 부담

겨울철 사용하는 난방비의 부담 정도

조사항목

7 귀댁에서 지난 겨울(○○○○년 12월~○○○○년 2월) 지출한 난방비가 가계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셨습니까?

- ① 전혀 부담 안 된다 ② 부담 안 된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부담된다 ⑤ 매우 부담된다

통계표 구성

<난방비 부담>

(단위: %)

	전혀 부담 안 된다	부담 안 된다	보통이다	부담된다	매우 부담된다
--	---------------	---------	------	------	---------

현장조사 유의사항

- ▶ 난방비 지출로 인한 부담 정도를 응답자의 주관적 생각으로 평가하여 선택하도록 한다.

분류

Ⅲ. 근로상태 및 일자리

가구주

가구원

공통

항목명

근로능력정도 및 무능력이유

응답자의 근로능력정도 및 무능력이유

조사항목

1 귀하는 일을 할 능력이 되십니까?

※ 학력이나 기술수준과는 관계없이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서의 근로능력을 의미합니다.

① 비해당(만14세 이하) → IV. 건강으로

② 근로가능

③ 단순근로가능(집에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정도)

④ 단순근로미약자(집안 일만 가능)

⑤ 근로능력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집안일도 불가능) → 1-1번으로

1-1 일을 못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중증장애

② 질병 또는 부상

③ 노령으로 인한 심신 무능력

④ 기타

→ 응답 후 IV. 건강으로 가십시오

통계표 구성

<근로능력 정도 및 무능력이유>

(단위: %)

	근로가능	단순근로 가능	단순근로 미약자	근로능력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	이유			
					중증장애	질병 또는 부상	노령으로 인한 심신 무능력	기타

※ 만14세 이하 제외 비율

현장조사 유의사항

- ▶ 본 질문은 각 개인별 근로능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능력은 본인의 장애, 부상, 질병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돌봐야 할 사람이 있다든지 하는 가구의 여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 ▶ 만14세 이하 가구원은 “① 비해당(만14세 이하)”에 기입하고 IV.건강으로 이동한다.

응답항목 유의사항

▶ 근로능력의 정도는 다음 기준에 의해 판단한다.

구분	내용
①근로가능(일용노동 가능)	일터에서 종일 노동이 가능한 경우
②단순근로가능 (집에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정도)	일터에서 종일 근로가 어렵거나, 장애,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집에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경우
③단순근로미약자(집안일만 가능)	돈을 벌기 위한 일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집에서 가사일을 하거나 가사일을 보조할 수 있는 경우
④근로능력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 (집안일도 불가능)	장애, 부상,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하여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 (실제로 경제활동상태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됨)

▶ ‘④ 근로능력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인 경우, **2** 은 ⑨ 비경제활동인구, **2-1** 은 ① 근로무능력이어야 함

▶ ‘①②③’으로 응답한 경우에서 **2** 이 ‘⑨ 비경제활동인구’인 경우, **2-1** 은 ‘②~⑪’중에서 응답. 즉, ‘① 근로무능력’은 아니어야함

항목명 경제활동상태 및 비경제활동 이유

응답자의 경제활동상태 및 비경제활동 이유

조사항목

2 조사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어떠한 지위로 일을 하셨습니다?

※ 직장이 있지만 질병, 휴가 등으로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않은 경우 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가족의 사업체에서 무보수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것은 무급가족종사자에 해당합니다.

-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 ④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 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⑥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⑦ 무급가족종사자

→ 3번으로

⑧ 실업자(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함) → 7번으로

⑨ 비경제활동인구(전업주부,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등) → 2·1번으로

2-1 현재 일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근로무능력 ② 정규교육기관학업 ③ 진학준비 ④ 취업준비 ⑤ 가사 ⑥ 양육
- ⑦ 간병 ⑧ 군복무 ⑨ 구직활동 포기 ⑩ 근로의사 없음 ⑪ 기타

→ 응답 후 7번으로 가십시오.

2차자료 항목 및 유사항목

▶ 지역별 고용조사(조사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의 공표범위는 ‘구’를 제외한 ‘시·군’이다.
- 지역별 고용조사의 경제활동상태와는 응답항목이 상이하므로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통계표 구성

<경제활동상태 및 비경제활동이유>

(단위: %)

	임금 근로자	공공 일자리	고용원이 있는 자영 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 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 인구	이유									
								근로 무능력	학업	진학 준비	취업 준비	가사	양육	간병	군복무	구직 포기	근로 의사 없음

※ 비경제활동이유의 경우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기타와 통합제시

현장조사 유의사항

- ▶ 실제로 일하고 있는 종사자의 지위를 파악한다.
- ▶ 2가지 이상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주된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 ▶ 학생, 주부라 하더라도 소득을 목적으로 주당 1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는 취업자로 파악한다.
- ▶ 일시휴직자(병가,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는 취업자로 파악한다.

응답항목 유의사항

- ▶ 임금근로자(상용, 임시, 일용 근로자) 구분 기준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상용근로자	정해진 채용절차에 의하여 입사한 사람으로 회사의 인사 관리규정을 적용 받는 자 또는 퇴직금 및 상여금 등 각종 수당 수혜자는 상용 근로자
1개월 이상~1년 미만	임시근로자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으나 일정한 사업완료의 필요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도 고용 계약 기간에 준하여 판단함
 - 사업완료의 필요기간에 따라 1년 이상은 상용근로자, 1년 미만은 임시근로자로 각각 구분
- 동일업체에 1년 이상 근무(계약기간이 아님)한 경우라도 고용계약이 처음부터 임시 또는 일용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우선하여 분류
 - 예) 당초 8개월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가 계약 만기시점에 7개월 연장한 경우
 - 채용기간이 1년 3개월이나 상용근로자로 분류하지 않고 임시근로자로 분류

- 대상가구원의 응답내용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계약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분류할 것
- 응답자가 원하는 직장을 구하기 전에 '임시로 다닌다' 라고 대답한 경우라도 1년 또는 1개월 이상의 계약여부를 확인

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임금을 주는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는 사람(자영업자)이 해당



주의사항

- 가족종사자를 두고 있는 경우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분류

⑥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의 파트너(무급가족종사자 포함)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 개인사업자, 작가 등 예술인, 농·어부, 행상 및 노점상, 프리랜서 등을 말하며, 무급 가족종사자 외에 유급 고용원이 있는 경우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분류

⑦ 무급가족 종사자

- 자기 가족(동일가구 내)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 없이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
 - 동일가구 내 가족이라도 일정한 봉급을 받는 경우는 임금근로자로 분류
 - 가구를 달리하는 가족 또는 친척의 사업체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경우에는 무급가족종사자가 아니며,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임금근로자로 분류

구분	내용
1.상용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자(회사 내규에 의해 채용되어 인사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고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사람)
2.임시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없더라도 1년 이내에 이 일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또는 일정한 사업완료(프로젝트 등)의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자(단, 한 직장 에서 오래 일하였거나 앞으로도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임시직)
3.일용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거나, 일정한 장소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자

구분	내용
4.자활 및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희망근로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 또는 공공근로사업, 노인 일자리, 희망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자
5.고용주	한 사람 이상 피고용인을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
6.자영업자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7.무급가족종사자	동일가구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단,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경우는 무급 가족종사자가 아님)
8.실업자	만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4주 동안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을 하지 못한 자. 구직활동을 한 경우, 30일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갈 것이 확실한 취업대기자는 구직활동여부와 관계없이 실업자로 분류
9.비경제활동인구	만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 또한 주된 활동 상태에 따라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로 구분되며, 집에서 통근하는 군 복무자(공익근무요원 등)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

항목명

직종

응답자의 직종

조사항목

3 어떤 직종에서 일을 하셨습니까?

- ① 관리직 ② 전문가 및 관련 직종 ③ 사무직 ④ 서비스직 ⑤ 판매직
 ⑥ 농림어업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⑧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⑨ 단순노무직 ⑩ 군인(직업군인)

통계표 구성

<직종>

(단위: %)

	관리직	전문가 및 관련 직종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림어업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단순 노무직	군인 (직업군인)
--	-----	----------------	-----	------	-----	-------------	----------------------	---------------------	-----------	--------------

현장조사 유의사항

▶ 아래의 직업분류를 참고하여 분류한다.

응답항목 유의사항

구분	예시
① 관리직	공공 및 기업 고위직,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전문서비스 관리직,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② 전문가 및 관련 직종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법률 및 행정 전문직,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③ 사무직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금융 및 보험 사무직, 법률 및 감사 사무직,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④ 서비스직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⑤ 판매직	영업직, 매장 판매직, 방문·노점 및 통신 판매 관련직
⑥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식품가공관련 기능직, 섬유·의복 및 가죽관련 기능직,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관련 기능직, 금속성형관련 기능직, 운송 및 기계관련 기능직, 전기 및 전자관련 기능직, 건설 및 채굴관련 기능직, 영상 및 통신 장비관련 기능직, 기타 기능 관련직
⑦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직,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조작직, 화학관련 기계조작직,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조작직,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조작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관련 기계조작직,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⑧ 단순노무직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청소 및 경비관련 단순노무직, 가사·음식 및 판매관련 단순노무직,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⑨ 농림어업	농·축산 숙련직, 임업 숙련직, 어업 숙련직

항목명 근로시간 형태

응답자의 근로시간 형태

조사항목

4 하시는 일의 근로시간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전일제 ② 시간제

통계표 구성

<근로시간 형태>

(단위: %)

	전일제	시간제
--	-----	-----

현장조사 유의사항

- ▶ ① 전일제 : 시간제 근로자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 ▶ ② 시간제 :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거나,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평소 1주에 36시간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또한 임금이 시간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항목명 주당 근로시간

응답자의 주당 근로시간

조사항목

5 조사대상 주간에 실제 몇 시간 일하였습니까?

주당 _____ 시간

통계표 구성

<주당 근로시간>

(단위: %, 시간)

	30시간 미만	30~40시간	40~50시간	50~60시간	60시간 이상	평균
--	---------	---------	---------	---------	---------	----

응답항목 유의사항

▶ 조사대상주간(0000.00.00.~0000.00.00.) 동안 일한 시간들을 합산하여 기입한다.

※ 취업시간 결정기준

- 수입있는 일을 위해 근로한 시간
- 정규근무시간 이외 초과근무시간도 포함
- 가족이 경영하는 농업, 상업 등의 일을 도운 시간



주의사항

- 조사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록하고, 시간은 30분 단위로 반올림
- 임금근로자는 근로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자기직무와 관련해서 일한 시간을 포함
- 비임금근로자는 자기·가족사업을 위해 보낸 시간을 말하며 실질적인 거래는 없어도 거래를 위해 사업장 밖에서 보낸 시간도 포함

항목명

일자리 만족도

응답자의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항목

6 귀하의 일자리에서의 고용조건 및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6-1 임금 또는 소득	①	②	③	④	⑤
6-2 고용의 안정성	①	②	③	④	⑤
6-3 하고 있는 일의 내용	①	②	③	④	⑤
6-4 근로환경	①	②	③	④	⑤
6-5 근로시간	①	②	③	④	⑤
6-6 복리후생	①	②	③	④	⑤
6-7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통계표 구성

<일자리 만족도>

(단위: %)

	만족도						
	임금 또는 소득	고용의 안정성	일의 내용	근로환경	근로시간	복리후생	전반적 만족도

※ 만족 비율만 제시(④+⑤)

현장조사 유의사항

- ▶ 임금 또는 소득: 임금 또는 소득의 절대액 기준이 아니라 일한 대가로서의 상대적인 임금 및 소득에 대한 만족도임
- ▶ 고용의 안정성: 현재 일자리의 고용에 대한 안정성 만족도를 조사한다.
- ▶ 하고 있는 일의 내용: 일의 내용, 업무량, 성격 등 직무와 관련된 만족도를 조사한다.
- ▶ 근로환경: 안전, 위생상태 등 근무(작업)환경과 관련된 만족도를 조사한다.
- ▶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조사한다.
- ▶ 복리후생: 일자리의 복지(보너스, 특별상여, 주식배당, 유급휴가, 유급병가 등의 재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보험급여, 휴가시설이용, 유연한 업무스케줄, 여행기회, 은행서비스, 훈련과 개발 등이 포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다.
- ▶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6-1 임금 또는 소득 ~ 6-6 복리후생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일자리 만족도를 조사한다.

분류

IV. 소득 및 지출

가구주

공통

항목명

지출비중이 큰 항목

가구에서 지출 비중이 큰 항목

조사항목

1 귀택에서 매달 지출하는 항목 중 지난 1년 동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해주시시오)

1순위

2순위

- | | |
|-----------------------------------|-------------------------------|
| ① 식비(식자재 구입 등) 및 외식비 | ② 공교육비(학교등록금, 납입금 등) |
| ③ 사교육비(학원, 과외비 등) | ④ 주거비(월세+공과금+관리비) |
| ⑤ 생활용품 구입비(일상생활 소모품) | ⑥ 세금(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기타 모든 세금) |
| ⑦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 공공사회보험 | ⑧ 민간보험 |
| ⑨ 부채상환(주택자금대출 등 모든 부채상환에 들어가는 금액) | ⑩ 보건의료비(건강보험료 제외) |
| ⑪ 내구재(전자제품이나 가구) 구입비 | ⑫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 사용료 등) |
| ⑬ 부모님, 자녀 등 가구원의 용돈 | ⑭ 피복비(옷, 신발 등의 구입비) |
| ⑮ 교통비(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 자가용운행 비용) | ⑯ 경조사비 |
| ⑰ 현금 및 각종 기부금 | ⑱ 저축 |

통계표 구성

<지출비중이 큰 항목>

(단위: 만원)

	식비	교육비	주거비	생활용품 및 내구재, 피복 구입비	세금 및 각종보험	저축 및 부채상환	보건의료 비	교통· 통신비	기타
		②+③		⑤+⑪+⑭	⑥+⑦+⑧	⑨+⑯		⑫+⑮	⑬+⑰+⑱

현장조사 유의사항

- ▶ 가구에서 매달 지출하는 생활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순서대로 두 가지를 선택하여 기입한다.

응답항목 유의사항

구분	해당 내용
① 식비(식자재 구입 등) 및 외식비	◦ 곡물 및 식빵, 육류, 낙농품, 어패류, 채소해조류, 과실류, 유지 및 조미료, 빵 및 과자류, 차음료 및 주류, 기타식료품, 외식비 등 포함
② 공교육비(학교등록금, 납입금 등)	◦ 각종교육기관 납입금, 교재비, 보충교육비, 문구류 등 포함
③ 사교육비(학원, 과외비 등)	◦ 가구원에게 투입된 사교육비(교육기관 이용비, 교재비, 도구실습비, 간식비 등 모두 포함)에 한정해서 계산하도록 한다.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만을 계산에 포함한다.
④ 주거비(월세+공과금+관리비)	◦ 월세, 주택설비 및 수선비, 공동주택관리비, 화재보험료, 기타 주거비 포함
⑤ 생활용품 구입비	◦ 일상생활 소모품
⑥ 세금(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기타 모든 세금)	◦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연말정산 공제 후 금액), 사업소득세(원천징수분), 종합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주민세, 총포·석궁 등 소지허가 등록면허세 등
⑦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 공공사회보험	◦ 국민연금 기여금(국민연금법에 따라 매월 내는 국민연금 기여금), 기타 연금 기여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실업보험)료 납부
⑧ 민간보험	◦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 공공사회보험을 제외한 민간보험
⑨ 부채상환(주택자금대출 등 모든 부채상환에 들어가는 금액)	◦ 금융회사 담보대출,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포함),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환대출, 외상·할부 미결제 잔액, 개인에게 빌린 돈, 직장대출, 각종공제회 대출, 이자 등
⑩ 보건의료비(건강보험료 제외)	◦ 의약품(인삼, 한약, 양약, 조제약), 보건의료용품기구(소모품, 안경, 콘택트렌즈 등), 보건의료서비스 진료비(한방, 치과 치료비, 외래진료비, 입원치료비 등)
⑪ 내구재(전자제품이나 가구) 구입비	◦ 일반가구, 가정요기기, 식기주방용품, 가사잡화(조명기구, 가정용 공구 등) 및 소모품(전구, 화장지, 세제, 건전지 등), 침구 및 직물 제품, 실내장식품, 가사서비스(가사사용임금료, 보육료, 청소료, 기타가사서비스) 포함
⑫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 사용료 등)	◦ 공공교통비(택시, 기차, 지하철, 자동차 임차료, 화물운송료, 버스, 항공료 등), 개인교통비(자동차구입, 자전거구입, 부품 및 관련용품 구입, 연료비, 정비 및 수리비, 보험료, 주차료,

구분	해당 내용
	통행료 등), 통신(일반전화기기, 이동저화기가, 우편요금, 인터넷 이용료, 전화요금, 기타통신) 포함
⑬ 부모님, 자녀 등 가구원의 용돈	◦ 생활비를 제외한 가구원의 교제비 등
⑭ 피복비(옷, 신발 등의 구입비)	◦ 외의, 내의, 직물 및 실류, 기타피복, 신발, 피복 및 신발 서비스 포함
⑮ 교통비	◦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 자가용운행 비용
⑯ 경조사비	◦ 축의, 조의 등 다른 가구의 애경사 행사시 금전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응답자 본인과 관련된 결혼식·회갑연·돌 등의 축하금, 조의금 등이 해당
⑰ 헌금 및 각종 기부금	◦ 종교단체 및 사회단체 등에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
⑱ 저축	◦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정기·부정기적으로 재산증가를 위해 지출하는 돈

항목명

비소비지출액

구성된 모든 가구원의 비소비지출액 합

조사항목

2 가구원 모두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경상조세, 연금지출, 건강보험료 등 비소비지출 금액을 기입해 주십시오.

※ 비소비지출은 세금, 국민·공적연금, 건강보험료, 고용·신재보험료 등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말함

※ 각각의 가구원에 대해 지출종류별로 만원 단위로 반올림한 금액을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지난 1년 총 지출
2-1 경상조세	경상적인 소득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연간 총 _____ 만원
2-2 연금	각 연금법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는 연금기여금으로 국민연금, 공적연금(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을 연간 총액으로 기입 연간 총 _____ 만원
2-3 사회보험료	법률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는 보험료(건강보험료, 고령보험료 등)로 연간 총액으로 기입 연간 총 _____ 만원
2-4 비경상조세	상속세, 취득세, 과징금 등 연간 총 _____ 만원
2-5 이자비용	대출 등에 따른 이자비용으로 연간 총액으로 기입 연간 총 _____ 만원
2-6 가구간이전	타가구 송금액 축의·조의금 등 연간 총 _____ 만원
2-7 비영리단체로이전	종교 사회단체 기부금, 단체회비 등 연간 총 _____ 만원

통계표 구성

<비소비지출액>

(단위: 만원)

	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료	비경상조세	이자비용	가구간 이전	비영리단체로 이전
--	------	----	-------	-------	------	--------	--------------

※ 평균 비소비지출액 산정

<가구 소득 비중>

(단위: %)

	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료	비경상조세	이자비용	가구간 이전	비영리단체로 이전
--	------	----	-------	-------	------	--------	--------------

현장조사 유의사항

- ▶ 비소비지출은 세금, 국민·공적연금, 건강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등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 ▶ 각각의 가구원에 대해 지출종류별로 만원 단위로 반올림한 금액을 기입한다.

분류

IV. 소득 및 지출 - ① 지출

가구주

공통

항목명

한달 평균 생활비

가구의 한 달 평균 생활비

조사항목

3 지난 1년 동안 귀댁의 한 달 평균 생활비 지출액은 얼마나 됩니까?

월평균 _____ 만원

통계표 구성

<한달 평균 생활비>

(단위: %, 만원)

	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150~20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 이상	평균
--	----------	-----------	-----------	-----------	----------	----

※ 응답비중 등을 고려하여 간격 조정 가능

현장조사 유의사항

- ▶ 모든 가구원의 지난 1년간(0000.00.~0000. 00.)간의 지출을 합산하여 12개월로 나눈 월 평균액을 기입한다.
 - 생활비는 가정생활을 위한 비용이므로 재산 증가를 위한 지출이나, 부채 감소를 위한 지출은 제외한다.
 - 기준시점 전에 월부 및 외상으로 상품을 구입하고, 이를 갚았을 경우 구입시점 기준으로 현재 지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저금, 저축성보험료, 계 부은 금액 등 재산 증가를 위한 지출은 제외한다.
 - 주택부금 상환금은 부채 감소를 위한 지출이므로 제외한다.
- ▶ 순수하게 가구원들의 가정생활을 위하여 사용된 금액의 총 생활비를 조사한다.
 - 가구에서 6개월 미만 생계를 같이한 가족(부모나 자녀 등)이 있을 경우 이들의 지출은 총 생활비에서 제외한다.
- ▶ 1회적으로 지출된 것(예를 들어 결혼, 장례비용)도 포함된다. 다만, 사업이나 업무용도로 사용한 돈은 제외하여야 한다.
- ▶ 친인척, 이웃,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보조받는 각종 현물(장학금, 의료비, 각종 공과금 대납, 식료품, 의류, 난방용품 등)도 현금으로 환산하여 생활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 ▶ 연간 생활비(한 달 평균 생활비 × 12개월)는 **1** 종류별 소득 총합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초과하는 경우 재확인하도록 한다.
- ▶ 생활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재확인하고, 이하일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인지 확인한다.
(예 3인 가구 기준 월 200 만 원 이하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 확인)

< 2017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및 중위소득 > (원/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최저생계비	991,759	1,688,669	2,184,569	2,280,428	3,176,307	3,672,187

항목명 경제적 어려움

응답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조사항목

4 귀댁에서 지난 1년 동안 경제적인 이유로(돈이 없어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구분	비해당	있다	없다
4-1 경제적 이유로 지난 1년 동안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한 적이 있다 * 본인 집이나 전세에 사는 경우에는 '0 비해당'으로 응답	0	1	2
4-2 경제적 이유로 지난 1년 동안 3개월 이상 공과금(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또는 관리비를 못낸 적이 있다. * 오피스텔, 고시원 등 공과금·관리비가 월세에 포함된 경우, 관사 등에 무상거주하는 경우, 비닐하우스·컨테이너·창고 등 전기·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0 비해당'으로 응답	0	1	2
4-3 경제적 이유로 자녀(대학생 포함)의 공교육비를 못 낸 적이 있다 * 자녀가 없거나 성인인 경우 '0 비해당'으로 응답	0	1	2
4-4 경제적 이유로 식사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		1	2
4-5 경제적 이유로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 등)를 미납한 적이 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의료보호 대상자인 경우 '0 비해당'으로 응답	0	1	2
4-6 경제적 이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 지난 1년 동안 본인이나 가족들이 아픈적이 없는 경우 '0 비해당'으로 응답	0	1	2
4-7 경제적 이유로 지난 겨울 난방비가 부담되어서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1	2

통계표 구성

<경제적 어려움>

(단위: %)

	집세연체	공과금 미납	공교육비 미납	결식 또는 감식	사회보험료 미납	의료서비스 미이용	난방
--	------	--------	---------	----------	----------	-----------	----

※ 경제적 이유로 인한 결핍 경험률(있음 비율) 통계표 제시

현장조사 유의사항

- ▶ **4** 질문들은 조사대상가구가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생계부문에서 결핍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각 항목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구의 경우, 그러한 경험이 “금전적 사정, 즉 돈이 없어서”인지를 파악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 해당 경험이 있더라도 “돈 때문”이 아니라면 “②없다”에 표시하도록 한다.
- ▶ **4-1** 에서는 최근 1년 동안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혹은 “무상”인 경우 “③비해당”에 응답하도록 한다.
- ▶ **4-3** 에서는 “자녀가 없거나” 혹은 자녀가 “미취학”, “대학원생(석·박사)”인 경우 “③비해당”에 응답하도록 한다.
 - 또한 공교육비는 등록금뿐만 아니라, 학용품, 교재비 등도 포함한다.
- ▶ **4-5** 에서는 최근 1년 동안 의료급여 혹은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만을 받는 가구는 “③비해당”에 응답하도록 한다.
- ▶ **4-6** 에서는 최근 1년 동안 병원을 갈 일이 없었을 경우 “③비해당”에 응답하도록 한다.

항목명

최소생활비 및 적정생활비

가구주가 생각하는 최소 및 적정생활비

조사항목

5 귀댁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비는 월평균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5-1 최소생활비

월평균 _____ 만원

5-2 적정생활비

월평균 _____ 만원

통계표 구성

<최소생활비>

(단위: %, 만원)

	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150~20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 이상	평균
--	----------	-----------	-----------	-----------	----------	----

※ 응답비중 등을 고려하여 간격 조정 가능

<적정생활비>

(단위: %, 만원)

	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150~20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 이상	평균
--	----------	-----------	-----------	-----------	----------	----

※ 응답비중 등을 고려하여 간격 조정 가능

현장조사 유의사항

- ▶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최소생활비, 적정생활비를 조사한다.
- ▶ 최저생활비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현금으로 지출되는 비용과 자가소비액, 현물지원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예를 들어, 현금지출과 현물로 지원 받는 것이 없고, 농사를 지어서 살아가는 경우 자가 소비액이 최소생활비가 된다.
- ▶ 주관적 적정생활비는 주관적 최저생활비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다.

항목명 가구소득

구성된 모든 가구원의 소득 합

조사항목

- 1 지난 1년 동안 가구원 모두에 대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정부로부터 받은 수혜금을 세금 공제전 금액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지난 1년 총 소득(없으면 '0' 기입)
1-1 근로소득 → 근로의 대가로 받은 일체의 보수로서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을 공제하기 전 총액	
1) 급여소득	연간 총 _____ 만원
2) 상여금	연간 총 _____ 만원
1-2 사업소득 → 총수입액에서 일체의 사업자출(인건비, 재료비, 임대료, 전기료 등)을 차감한 금액	
1) 자영업자 등의 영업이익	연간 총 _____ 만원
2) 기타사업소득(보험설계사의 실적에 따른 소득 등)	연간 총 _____ 만원
1-3 재산소득 → 재산의 운영을 통해서 발생한 소득	
1) 이자소득	연간 총 _____ 만원
2) 배당소득	연간 총 _____ 만원
3) 개인(퇴직) 연금소득	연간 총 _____ 만원
4) 주택 및 건물 임대소득	연간 총 _____ 만원
5) 기타재산소득	연간 총 _____ 만원
1-4 정부수혜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공적 사회보장 수혜금	
1) 공적연금(국민·공무원연금 등)	연간 총 _____ 만원
2) 기초연금	연간 총 _____ 만원
3) 사회수혜금(생계·실업급여, 양육수당 등)	연간 총 _____ 만원
4) 연말정산환급금	연간 총 _____ 만원

통계표 구성

<가구 소득>

(단위: 만원)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정부수혜금			
	급여 소득	상여금	자영업 영업 이익	기타 사업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개인 연금 소득	임대 소득	기타 재산 소득	공적 연금	기초 연금	사회 수혜금	연말 정산 환급금

※ 평균 가구 소득액 산정

현장조사 유의사항

- ▶ 각각의 가구원에 대해 소득 종류별로 만원 단위 반올림한 금액을 기입한다.
- ▶ 지난 1년 동안 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 현물, 자가생산 · 판매물에 대한 소비, 임대료 · 이자 등의 명목으로 받은 현물은 현물소득 이므로 시장가격으로 환산한 후 귀 가구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기입한다
 - 근무처에서 상품을 받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근로소득
예)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 통근버스 등
 - 자가판매물(생산물)을 소비한 경우 ⇒ 사업소득
예) 자가에서 운영하는 학원에서 자녀 수강 등
 -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나 임대료 대신 상품을 받은 경우 ⇒ 재산소득
예) 토지를 임대해주고 받은 쌀 등
- ▶ 자산의 형태가 변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은 소득에 미포함 예) 저축찾은 금액, 빌린 돈 등
- ▶ 상품권을 받은 경우에도 받은 소득으로 인식
예) 회사에서 상품권 받은 경우 ⇒ 상여금, 타가구에서 일회성으로 받은 상품권 ⇒ 기타 비경상소득 등
- ▶ 자영업자 등의 사업소득 파악이 어려울 경우, 가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가게로 전입되는 부분을 소득으로 파악
- ▶ 지난 1년 동안의 총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해당구간의 번호에 표시한다.
- ▶ 실 수령액이 아닌 세금 납부 전 소득이며, 가구주 소득이 아닌 가구소득임에 유의한다.
- ☞ 가구소득 = 할아버지의 노령연금 + 아버지의 사업소득 + 어머니의 이자소득 + 자녀의 월급
· 한 가구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가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항목명 이전소득

구성된 모든 가구원의 이전소득 합

조사항목

2 귀하의 가구가 지난 1년동안 ① 부모, 자녀, 형제 등 다른 가구나 학교, 종교단체와 같은 비영리단체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정기적인 생활비, 보조금 등의 사적 이전소득, ② 정부 및 학교, 종교·사회복지단체와 같은 비영리단체로부터 현물형태(상품·서비스)로 제공받은 혜택을 현금으로 환산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기입해 주십시오.

※ 부모, 자녀 등 다 가구로부터 받은 현물 소득은 조사 제외

구분		지난 1년 총 소득
2-1 사적이전소득	• (가구간 이전소득) 교육비, 생활비 등 정기적 이전 • (기타 이전소득) 학교 및 비영리단체 등의 장학금, 적십자 구호금 등	연간 총 _____ 만원
2-2 사회적 현물이전	• 저소득층 등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각종 공공요금 면제 및 할인혜택	연간 총 _____ 만원

통계표 구성

<가구 이전소득>

(단위: 만원)

	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사회적 현물이전

※ 평균 가구 이전소득액 산정

※ 비경상소득과 통합제시

현장조사 유의사항

- ▶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닌 이전에 의한 소득으로 사적이전소득과 사회적 현물이전으로 나누어 금액을 기입한다.

항목명

비경상소득

구성된 모든 가구원의 비경상소득 합

조사항목

3 위에서 조사되지 않은 귀하의 가구에서 받은 비경상적이고 일시적인 수입을 기입해 주십시오.
※ 부모, 자녀 등 다 가구로부터 받은 현물 소득은 조사 제외

구분		지난 1년 총 소득
3-1 경조소득	• 타가구로부터 축의 및 조의 표시로 제공받은 현금 등	연간 총 _____ 만원
3-2 기타비경상소득	• 퇴직수당, 만기이전 보험금, 일회성 용돈 기타 비경상적 수입 등	연간 총 _____ 만원

통계표 구성

<가구 비경상소득>

(단위: 만원)

	비경상소득	
	경조소득	기타비경상소득

※ 평균 가구 비경상소득액 산정
※ 이전소득과 통합제시

<가구 소득 비중>

(단위: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정부수혜금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급여 소득	상여금	자영업 영업 이익	기타 사업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개인 연금 소득	임대 소득	기타 재산 소득	공적 연금	기초 연금	사회 수혜금	연말 정산 환급금	사적 이전 소득	사회적 현물 이전	경조 소득	기타 비경상 소득



소득관련 부가 지표 산출

- ① 가처분소득 = 가구소득* - 가구 비소비지출**
 - * 가구소득은 가구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의 합
 - ** 가구 비소비지출은 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료, 비경상조세, 이자, 가구간이전,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의 합
- ② 상대적 빈곤율 = 상대적 빈곤선(균등화소득의 중위 값 50% 기준) 이하인 비율
- ③ 소득5분위배율 = 소득상위 20%(5분위)계층의 소득 / 소득하위 20%(1분위)계층의 소득

현장조사 유의사항

- ▶ 일시적이며 경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수입으로 경조소득과 기타 비경상소득으로 나누어 금액을 기입한다.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내용
소득	경상소득	근로소득	■ 가구주, 배우자, 가구원의 급여, 상여금 등
		사업소득	■ 사업경영을 통해 얻은 판매수입 중에서 가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가계로 전입된 소득
		재산소득	■ 재산의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이자 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기타 재산소득
		이전소득	■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닌 이전에 의한 소득 ※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세금 환급금, 가구 간 이전, 할인혜택, 기타이전 소득, 사회적 현물이전(정부 및 비영리단체가 가계 지출에서 특정한 목적(구체적 용도)에 지출의 보전 또는 직접 현물을 제공하는 상품)
	비경상소득		■ 일시적이며 경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수입 ※ 경조소득, 퇴직금 및 연금일시금, 기타비경상 소득
기타수입	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		■ 저축 및 보험 탄 금액, 계 탄 금액, 보증금 회수, 유가증권 매각, 부동산 매각, 기타 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
	부채증가로 인한 소득		■ 부동산 담보 대출, 기타 빌린 돈
	자산이전		■ 자산이전수입

항목명 노후 생활 대책

응답 가구의 노후생활 대책

조사항목

4 귀하 가구 또는 귀하 부부의 노후 생활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각 항목별로 모두 응답해주시시오.

노후생활 대책	있다	없다
4-1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①	②
4-2 개인연금	①	②
4-3 퇴직금, 퇴직연금	①	②
4-4 저축, 보험 등 금융자산 마련	①	②
4-5 주식, 채권	①	②
4-6 현재 살고 있는 집	①	②
4-7 현재 살고 있는 집 이외의 부동산	①	②

통계표 구성

<노후생활대책>

(단위: %)

	공적연금	개인연금	퇴직금	금융자산	주식/채권	자택	자택 외 부동산
--	------	------	-----	------	-------	----	-------------

※ 노후생활대책 있음 비율을 통계표로 제시

현장조사 유의사항

▶ 국민연금

- 가입자가 노령이나 질병·사망으로 인하여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되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 보장 제도로 사회보험의 일종인 공적 연금제도이다.
- 가입대상은 대한민국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 60세 미만 국민이다.
- 국민연금의 급여종류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이 있다.

▶ 기타 공적 연금(공무원, 군인, 교원)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이 속하고 대개 월급 에서 원천 징수하며 가입이 강제적인 경우가 많다.

▶ 사적 연금(은행, 보험회사 등을 통한 개인연금)

- 개인적으로 은행, 보험회사, 투자신탁 등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매월, 매분기별 혹은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는 방법으로 노후생활을 위하여 연금을 들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 사적 연금의 종류로는 개인연금신탁, 연금보험, 노후연금 등이 있다.

▶ 퇴직금

-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이자나 일정액으로 생활하기 위하여 퇴직금을 적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 예금, 적금, 저축성보험

-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이란 여러 가지 목적으로 가입한 경우가 있겠으나 반드시 노후 생활을 위해서 들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 부동산 운용

- 부동산 소유자를 모두 「노후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으로 조사해서는 안 되고 노후 생활을 위해 부동산을 확보하여 부동산 운용 (임대수입,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노후 생계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 주식, 채권 등

- 각종 증권, 채권, 펀드 등을 운용하여 노후생활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분류

IV. 소득 및 지출 - ③ 가계부채

가구주

공통

항목명

가계 부채

응답 가구의 부채유무 및 금액, 이유, 돈 빌린 곳, 가계부담 정도

조사항목

1 귀택에 부채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1-1 귀택의 부채는 얼마정도 되십니까?

_____ 억 _____ 만원

1-2 귀택의 부채가 발생한 주요 사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① 주택 구입비용(기주용) ② 주택 전월세 보증금 ③ 교육비
 ④ 의료비 ⑤ 생활비 ⑥ (자녀) 결혼 또는 분가 비용
 ⑦ 이자 지불 또는 부채상환 ⑧ 투자목적(주식투자, 투자용 부동산 매입 등) ⑨ 기타()

1-3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는 어디로부터 빌린 것입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은행
 ② 제2금융권(증권회사,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③ 서민금융제도(미소금융, 마이크로크레딧, 햇살론, 새희망홀씨론 등)
 ④ 사채
 ⑤ 가족, 친지
 ⑥ 기타()

1-4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해 매달 지출하는 이자가 가계에 어느 정도 부담됩니까?

- ① 전혀 부담 안 된다 ② 부담 안 된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부담된다 ⑤ 매우 부담된다

통계표 구성

<가계부채-부채금액, 가계부담정도>

(단위: %, 만원)

	부채 없음	부채있음										
		부채금액						가계 부담정도				
		5000 만원 미만	5000~ 1억원	1억~ 1억5000 만원	1억5000 ~3억원	3억원 이상	평균	전혀 부담 안 된다	부담 안 된다	보통 이다	약간 부담 된다	매우 부담 된다

※ 응답비중 등을 고려하여 간격 조정 가능

<가계부채-부채이유, 부채 빌린 경로>

(단위: %)

	부채 없음	부채있음													
		부채이유								빌린경로					
		주택 구입 비용 (거주용)	주택 전월세 보증금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	자녀 결혼, 분가	부채 상환	투자	기타	은행	제2 금융권	서민 금융 제도	사채	가족, 친지

현장조사 유의사항

- ▶ 반드시 현재 기준으로 질문한다.
 -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나 건물 등에 대해 보증금을 받은 것이 있다면 이는 돌려줘야 할 금액이므로 부채로 계산되어야 한다.
 - '계'의 경우에도 갯돈을 타고 이를 갚아가는 과정이라면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은 부채로 계산되어야 한다.
- ▶ 부채용도 : 현재 가구원이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한 용도를 조사하며 보기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를 선택하여 기입하도록 한다.
- ▶ 이자 부담 정도
 - 이자를 내는 것으로 인해 생계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 정도
 - 이자지급이 생계에 주는 부담 정도는 주관적으로 판단

응답항목 유의사항

▶ 부채기관

① 은행

- 은행법에 의거 설립된 금융기관을 말하며, 일반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으로 나뉜다.
- 특수은행에는 기업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을 포함

② 제2금융권

-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통칭하는 것으로 본다. 즉 증권회사,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옛 상호신용금고) 등을 총칭하는 말이다.

③ 서민금융제도

- 서민 및 영세상공인 등 금융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 및 민간기구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새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 햇살론, 바퀴드림론과 지원제도별 자격요건에 따라 신청 가능한 각종 지원제도가 있다.

④ 사채

- 대부업체, 신용카드 연체대납업자, 직접적 대출을 해주지 않고 상호저축은행 등 대출 중개를 해주는 곳을 통해 돈을 빌린 것을 말한다.

⑤ 가족, 친지

- 가족, 지인,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빌린 돈을 말한다.

⑥ 기타

- 보기에 해당 항목이 없을 경우 '⑥ 기타'로 선택하고 구체적 내용을 기입한다.

분류

V. 저소득

가구주

공통

항목명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가구 여부

응답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가구 여부

조사항목

1 귀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입니까? (해당하는 모든 항목에 응답)

- ① 생계급여 가구 ② 주거급여 가구 ③ 의료급여 가구 ④ 교육급여 가구
⑤ 조건부 수급가구 ⑥ 특례가구 ⑦ 대상 아님

통계표 구성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가구 여부>

(단위: %)

1수준	대상가구						대상가구아님
2수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조건부 수급	특례	대상가구아님

※ 응답정도를 파악하여 수준별 통계표 제시

현장조사 유의사항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 ▶ 의료특례 · 자활특례 · 교육특례 등 특례도 포함되며, 가구원 중 일부만 수급하는 가구도 수급가구로 간주한다.
- ▶ 한 가구에 수급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주민등록이 별도로 설정된 경우 가능) 가구주를 기준으로 응답한다.

항목명 국민기초생활보장 보장급여

응답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가구의 보장급여 수준

조사항목**2** 지난 1년 동안 연간 수급 개월 수와 총 급여액은 얼마입니까?

※ 특례가구의 경우 특례가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응답, 가령 의료급여 특례자의 경우 의료급여에 대한 정보를 기입

급여유형	2-1 연간 수급개월수	2-2 연간 급여액	2-3 도움정도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1) 생계급여	개월	_____만원	①	②	③	④
2) 주거급여	개월	_____만원	①	②	③	④
3) 의료급여	개월		①	②	③	④
4) 교육급여	개월		①	②	③	④

통계표 구성

<국민기초생활보장 보장급여>

(단위: 개월, 만원, %)

	생계급여								
	평균 수급개월 수	연간급여액				도움정도			
		150만원 미만	150~300 만원	300만원 이상	평균 급여액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 응답비중 등을 고려하여 간격 조정 가능

(단위: 개월, 만원, %)

	주거급여								
	평균 수급개월 수	연간급여액				도움정도			
		150만원 미만	150~300 만원	300만원 이상	평균 급여액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 응답비중 등을 고려하여 간격 조정 가능

	의료급여					교육급여				
	평균 수급개월 수	도움정도				평균 수급개월 수	도움정도			
		전혀 안 됨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전혀 안 됨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현장조사 유의사항

▶ 생계급여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30%) 이하일 경우 지원
- 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주거급여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

▶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 조사대상 기간 중 의료급여, 교육급여 지원 대상 기간을 월단위로 조사하고, 도움정도를 조사한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기준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 기준>

(단위: 원/월)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급여종류별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	중의소득의 30%	495,879	844,335	1,092,275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의료	중의소득의 40%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주거	중의소득의 43%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4	2,987,114
	교육	중의소득의 50%	826,466	826,466	1,820,458	2,233,690	2,646,923	3,060,156	3,473,388

항목명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서비스(인지도, 이용경험 등)

응답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사업 및 서비스의 인지도, 이용경험, 도움정도, 추후이용의향

조사항목

3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사업 및 서비스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요.

※ 3-1에서 '2 모름'이라고 한 경우 각 사업의 설명을 참조하여 3-3, 3-4 문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사업명	3-1 인지도	3-2 이용경험	3-3 도움정도	3-4 추후 이용의향
	① 알고있음 ② 모름	① 이용 ② 이용안함	① 전혀 도움 안 됨 ② 별로 도움 안 됨 ③ 약간 도움 됨 ④ 매우 도움 됨	① 있음 ② 없음
1) 문화누리카드				
2) 쓰레기종량제봉투무상지급				

⋮

통계표 구성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서비스(인지도, 이용경험 등)>

(단위: %)

	문화누리카드							
	이용경험			도움정도				추후이용의향
	알고있음	이용	이용안함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있음 / 없음

(단위: %)

	쓰레기종량제봉투무상지급							
	이용경험			도움정도				추후이용의향
	알고있음	이용	이용안함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있음 / 없음

⋮

현장조사 유의사항

- ▶ 위 사업의 인지여부, 이용경험, 도움정도, 이용의향을 조사한다.
 - 3-1 에서 '② 모름'이라고 한 경우 각 사업의 설명을 참조하여 3-3, 3-4 문항에 응답을 받음
- ▶ 사업 설명

구분	주요 내용
1) 문화누리카드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문화 복지 사업으로 차상위계층 등에게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카드
2) 쓰레기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쓰레기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서비스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및 서비스

- 해당 서비스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사업 등을 포함하여 조사함
- 조사시 해당 사업 등에 관한 주요내용을 조사표에 간략하게 표기하여 응답 시 도움

항목명**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경험(신청이유 등)**

응답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경험, 신청이유, 미선정이유, 생계해결방법

조사항목**4** 귀댁은 지난 1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5번으로****4-1** 귀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기본적인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②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

③ 주거비를 지원받기 위해

④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

⑤ 기타()

4-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서

② 자동차의 시가가 기준보다 높아서

③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높아서

④ 살고 있는 집 이외에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⑤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⑥ 기타()

⑦ 잘 모르겠다

4-3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후 귀댁의 생계문제는 주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주시시오.

1순위 ☐**2순위** ☐

① 부양의무자(같이 살지 않는 부모나 자녀)

② 친지 및 이웃의 도움

③ 민간단체의 도움

④ 빚을 내어서 생활

⑤ 저축 등 있는 재산을 줄여서

⑥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

⑦ 본인이 스스로 벌어서 (공공기관 프로그램 참여 제외)

⑧ 공공기관 프로그램(공공근로 사업, 차상위 자활사업 등)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⑨ 기타()

통계표 구성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경험 등>

(단위: %)

	신청	급여신청 주된 이유					수급자 미선정 이유						
	경험 있음	생계 문제 해결	의료 급여를 받기 위해	주거비를 지원 위해	자녀 교육비 지원 위해	기타	소득이 기준 보다 많아서	자동차의 시가가 기준 보다 높아서	자택의 가격이 높아서	재산 (주택 외)이 기준 보다 많아서	부양 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 보다 많아서	기타	잘 모름

※ 응답비중을 고려하여 '기타'와 통합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 미선정으로 인한 생계문제 해결 방법>

(단위: %)

	1순위								
	부양 의무자	친지 및 이웃의 도움	민간단체의 도움	빚을 내어서 생활	저축 등 있는 재산을 줄여서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	본인이 스스로 벌어서	공공기관 프로그램	기타

	2순위								
	부양 의무자	친지 및 이웃의 도움	민간단체의 도움	빚을 내어서 생활	저축 등 있는 재산을 줄여서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	본인이 스스로 벌어서	공공기관 프로그램	기타

※ 응답비중을 고려하여 '기타'와 통합가능

현장조사 유의사항

- ▶ 국민기초생활보장 비대상 가구만 해당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경험, 이유, 선정되지 못한 이유, 생계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조사한다.

항목명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미신청 이유

응답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미신청 이유

조사항목

5 [4 의 ②번 응답자만] 귀댁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필요 없어서(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아서)
- ②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 ③ 신청해도 선정되지 않을 것 같아서
- ④ 절차, 서류가 복잡해서
- ⑤ 가족이 반대해서
- ⑥ 남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
- ⑦ 남들이 내 사정을 아는 것을 원치 않아서
- ⑧ 기타()

통계표 구성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미신청 이유>

(단위: %)

1수준	필요 없어서	방법 몰라서	선정되지 않을 것 같아서	복잡해서	가족이 반대해서	남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	남들이 내 사정을 아는 것을 원치 않아서	기타
2수준	방법 몰라서	선정되지 않을 것 같아서	복잡해서	가족이 반대해서	남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	남들이 내 사정을 아는 것을 원치 않아서	기타	

※ 응답비중을 고려하여 '기타'와 통합가능

※ '필요없어서'의 비중을 고려하여 적정수준 선택

현장조사 유의사항

- ▶ 4 번의 “②아니오”를 선택한 경우에만 해당되고, 5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주된 이유를 조사한다.

분류

Ⅵ. 건강

가구주

가구원

공통

항목명

건강상태

응답자의 주관적인 건강상태

조사항목

1 귀하는 평소에 본인의 건강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① 아주 건강함

② 건강한 편

③ 보통

④ 건강하지 않은 편

⑤ 건강이 아주 안 좋음

통계표 구성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

	아주 건강함	건강한 편	보통	건강하지 않은 편	건강이 아주 안 좋음
--	--------	-------	----	-----------	-------------

현장조사 유의사항

- ▶ 객관적인 상태의 건강이 아닌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으로, 조사대상자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건강상태에 대해 확인한다.
- ▶ 타인과의 비교를 유도하거나 평상시 앓고 있는 질환이 있는지 등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설명은 하지 않는다.

항목명 만성질환여부

응답자의 만성질환여부 및 치료기간, 도움필요여부

조사항목

2 지속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습니까?

- ① 있음 ② 없음 → 3번으로

2-1 얼마나 오랜기간 치료를 받고 계십니까?

※ 투병 때문에 지속적인 투약이 필요하나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기간은 최초 투병 및 투약시점부터 산정합니다.

- ① 3개월 미만 투병·투약 중 ②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투병·투약 중 ③ 6개월 이상 투병·투약 중

2-2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 ① 도움 필요 없음 ②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함 ③ 전적으로 도움 필요함

통계표 구성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

	질병 또는 장애 없음	질병 또는 장애 있음					
		치료기간			일상 생활 도움		
		3개월 미만 투병·투약 중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투병·투약 중	6개월 이상 투병·투약 중	도움 필요 없음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함	전적으로 도움 필요함

현장조사 유의사항

▶ 만성질환 보유 여부

만성질환은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적인 질병이나 장애를 의미한다. 현재 기준으로 투병하거나 투약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2-1항으로 이동한다.

응답항목 유의사항

▶ 만성질환 기간

- 투병하거나 투약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기간을 다시 질문하여 ‘①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인 경우’, ‘③ 6개월 이상인 경우’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 ※ 투병하거나 투약하고 있었고, 투병 때문에 지속적인 투약이 필요하나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만성질환이 있는 것으로 본다(기간은 최초 투병 또는 투약 시점부터 산정한다). 기간은 최초 투병 및 투약시점부터 산정한다.

▶ 일상생활 도움필요 정도

- 현재 기준으로 옷 입기, 세수, 양치질, 목욕, 식사, 누웠다 일어나기, 화장실 이용, 대소변 조절, 머리감기 등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대한 도움필요 정도를 해당되는 번호에 기입하도록 한다.
- 보기의 질문들을 응답자에게 읽어주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모든 동작을 수행한다면 ‘① 도움 필요 없음’, 위 9가지 항목 중 한 가지라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②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모든 항목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③ 전적으로 도움 필요’를 선택한다.

항목명

건강검진수검

응답자의 건강검진 수검여부 및 건강검진 종류

조사항목

3 지난 1년 동안 건강체크를 위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4번으로

3-1 지난 1년 동안 받아보신 건강검진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 | |
|-----------------------------|----------------------------------|
| ① 본인부담 종합건강검진 | ② 사업장 특수건강검진 (유해물질 노출 직종 종사자 대상) |
|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지역, 직장가입) | ④ 무료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 이외의 국가건강검진 등) |
| ⑤ 기타() | |

통계표 구성

<응답자의 건강검진 수검여부 및 건강검진 종류>

(단위: %)

	건강검진 안 받았음	건강검진 받았음				
		본인부담 종합건강검진	사업장 특수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무료건강검진	기타

현장조사 유의사항

▶ 지난 1년 동안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에 대해 조사한다.

응답항목 유의사항

▶ 아래의 건강검진 분류표를 참고하여 분류한다.

구분	예시
① 본인부담 종합건강검진	- 대학병원이나 개인병원에서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을 말함
② 사업장 특수건강검진	-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에 따라 화학물질 소음 분진작업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을 말함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만 19~64세 세대주 및 만 40~64세 세대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만 40세,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로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
④ 무료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외의 국가건강검진을 말함

항목명 지방자치단체 운동프로그램 참여 여부

응답자의 지방자치단체 운동프로그램 참여 여부

조사항목

4 지난 1년 동안 ○○시의 동사무소, 보건소, 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통계표 구성

<지방자치단체 운동프로그램 참여 여부>

(단위: %)

	운동 프로그램 참여	운동 프로그램 미참여
--	------------	-------------

현장조사 유의사항

▶ 지난 1년 동안 ○○시에서 운영하는 운동프로그램 참여경험에 대해 조사한다.

항목명 규칙적인 운동

응답자의 규칙적인 운동 횟수 및 장소

조사항목

5 귀하는 최소 주 1회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을 하십니까?

① 한다

② 안한다 → 6번으로

5-1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① 주 1~2회

② 주 3~4회

③ 주 5회 이상

5-2 운동할 때, 주로 어디에서 하십니까?

① 공원

② 사설 체육관, 헬스클럽

③ 주민 체육센터

④ 학교 운동장

⑤ 가정에서

⑥ 기타 ()

통계표 구성

<규칙적인 운동횟수 및 장소>

(단위: %)

	운동안함	운동함							
		주간 운동 횟수			운동 장소				
		주 1~2회	주 3~4회	주 5회 이상	공원	사설 체육관, 헬스클럽	주민 체육센터	학교 운동장	가정

현장조사 유의사항

- ▶ 직업활동과 관련하여 팔이나 다리 등을 움직여서 발생하는 신체활동은 제외하고, 응답자의 건강유지를 위한 신체활동만을 포함한다.
- ▶ 규칙적인 운동의 기준은 하루 30분 이상으로 보며, 불규칙 적이고 일시적인 스포츠활동은 제외한다.
- ☞ 학생이 학교에서 체육시간에 친구들과 축구를 한다고 하는 경우는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이 아니므로 「② 안한다」에 해당 한다.
 - 운동에는 등산, 댄스스포츠, 걷기, 요가, 자전거 타기 등이 포함된다.
- ▶ 위의 기준으로 운동 횟수와 운동장소를 조사한다.

항목명

하루 수면시간

응답자의 하루 수면시간

조사항목

6 귀하는 최근 일주일간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주무셨습니까?

하루 평균 _____ 시간

통계표 구성

<하루 수면시간>

(단위: %, 시간)

	4시간 미만	4~6시간	6~8시간	8~10시간	10시간 이상	평균
--	--------	-------	-------	--------	---------	----

현장조사 유의사항

▶ 조사대상 일주간(0000.00.00.~00.00.) 수면 시간의 산술평균값을 조사한다.

항목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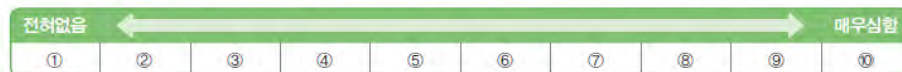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

응답자의 일상생활 등 스트레스 정도

조사항목

7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

※ 스트레스란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이나 조건 혹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를 의미



통계표 구성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

(단위: %)

	전혀없음	없어편	보통	심한편	매우 심함
	①+②	③+④	⑤+⑥	⑦+⑧	⑨+⑩

현장조사 유의사항

- ▶ 평소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느꼈는지 정신적 건강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이다. 스트레스 정도를 숫자(①~⑩) 크기를 고려하여 대답하는데, 매우 심한 경우는 ⑩을 선택하고, 전혀 느끼지 않는 경우에는 ①을 선택한다.

항목명

스트레스로 인한 전문가 상담여부

응답자의 스트레스로 인한 전문가 상담여부

조사항목

8 지난 1년 동안 스트레스 문제로 전문가의 상담(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 보건소 등에서)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통계표 구성

<스트레스로 인한 전문가 상담여부>

(단위: %)

	상담	미상담
--	----	-----

현장조사 유의사항

- ▶ 평소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변화로 전문가와 상담한 경험 유무에 대해 응답한다.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교육, 프로그램 등 간단한 설문 작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항목명 슬픔, 절망감 경험

응답자의 슬픔, 절망감 경험여부 및 전문가 상담여부

조사항목

9 지난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10번으로

9-1 이러한 문제로 전문가의 상담(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 보건소 등에서)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통계표 구성

<슬픔, 절망감 경험>

(단위: %)

	슬픔, 절망감 등 미경험	슬픔, 절망감 등 경험	
		상담	미상담

현장조사 유의사항

- ▶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적 건강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이다.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학업, 직장일, 가사일)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지 조사한다.
- ▶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학업, 직장일, 가사일)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경험한 사람이 대상이다.
- ▶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으로 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 보건소 등에서 전문가의 상담을 한 번이라도 받은 경우가 해당한다.

항목명 죽고 싶다고 생각한 경험

응답자의 죽고 싶다고 생각한 경험 및 자살시도 경험

조사항목**10** 지난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12번으로**10-1** 지난 1년 동안 실제로 자살시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12번으로**통계표 구성**

<죽고 싶다고 생각한 경험>

(단위: %)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 없음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 있음	
		자살시도	자살미시도

현장조사 유의사항

- ▶ 응답자 본인이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 ▶ 자살 시도 경험
 - 최근 1년 동안 죽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응답항목 유의사항

- ① 예
 - 죽기위해 계획을 세우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심적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끼는 경우가 해당한다.
 - ☞ 자살 사이트 가입, 자살을 위한 약 문의 등
 - 단순히 죽고 싶다고 푸념하는 정도의 생각은 해당하지 않는다. 예) 70대 노인이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은 제외
- ② 아니오
 -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 **12**항으로 이동한다.

항목명 우울감, 자살 극복방법

응답자의 우울감 및 자살 극복 방법

조사항목

11 [9의 ①번 또는 10의 ①번 응답자만] 지난 1년 동안 우울하거나 자살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해당되는 문항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가족들의 도움 ② 친구, 동료 도움 ③ 심리상담소
④ 병원치료 ⑤ 기타() ⑥ 도움 받은 곳 없음(혼자 해결)

통계표 구성

<우울감, 자살 극복방법>

(단위: %)

	가족들의 도움	친구, 동료 도움	심리상담소	병원치료	기타	도움 받은 곳 없음(혼자 해결)
--	---------	--------------	-------	------	----	----------------------

현장조사 유의사항

- ▶ 최근 1년 동안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끼거나,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 위와 같은 생각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을 조사

항목명 보건소 이용 경험

응답자의 보건소 이용경험 및 만족도

조사항목

12 지난 1년 동안 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13번으로

12-1 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서비스는 어느 정도 만족했습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통계표 구성

<보건소 이용 경험>

(단위: %)

	보건소 이용경험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현장조사 유의사항

▶ 보건소 이용 경험 및 만족도

- 최근 1년 동안 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에 대한 이용경험과 만족도를 조사한다.

항목명

병의원을 이용할 수 없었던 경험

응답자의 병의원을 이용할 수 없었던 경험 및 이유

조사항목

13 지난 1년 동안 귀하께서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14번으로

13-1 그런 적이 있다면, 어떤 이유로 병의원에 가지 못했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

① 경제적인 이유로

② 예약하지 못해서

③ 교통편이 불편해서

④ 시간이 부족해서

⑤ 오래 기다려야 하므로

⑥ 기타 ()

통계표 구성

<병의원을 이용할 수 없었던 경험>

(단위: %)

	내원 못한적 없음	내원 못한적 있음(이유)					
		경제적인 이유	예약하지 못해서	교통편 불편	시간 부족	오래 기다려야 하므로	기타

현장조사 유의사항

- ▶ 본인이 원하는 때, 가지 못한 적은 주관적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므로, 필요했지만 진료를 받지 못했던 적이 있는지를 강조한다.
- ▶ 병의원에는 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한의원 모두 포함된다.(단, 치과는 제외)
- ▶ 의료서비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적 의료서비스(예방접종, 조기검진, 건강검진 등), 물리치료, 재활치료 등 의료인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모두 포함된다.
- ▶ 본인이 원하는 때 병의원에 가지 못한 가장 주된 이유 한 가지를 선택한다.
시간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경우, 시간이 없는 자세한상황과 이유를 확인하여 시간이 없어서 어떤 행동을 하지 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다시 확인한다.

항목명

의료서비스 만족도

응답자의 치료수준, 진료과목의 다양성 등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항목

14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시의 공공 및 민간 의료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비스 내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4-1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치료수준)	①	②	③	④	⑤
14-2 진료과목의 다양성	①	②	③	④	⑤
14-3 의사의 충분성	①	②	③	④	⑤
14-4 입원의 용이성	①	②	③	④	⑤

통계표 구성

<의료서비스 만족도>

(단위: %)

	만족도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치료수준)	진료과목의 다양성	의사의 충분성	입원의 용이성

※ 만족 비율만 제시(④+⑤)

현장조사 유의사항

- ▶ 지난 1년 동안 아팠을 때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진료 과목의 다양성, 의사의 충분성, 입원의 용이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다.
- ▶ 두 군데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했더라도 주로 이용한 한 곳만 조사한다.

분류

VII. 영유아

가구주

선택

항목명

영유아 돌봄

해당 응답가구의 보육시설 이용여부 및 유형, 이용형태, 낮 시간 양육 주 돌봄자

조사항목

1 귀택의 만0~6세 영유아는 낮시간 동안 주로 누가 돌보고 있습니까?

가구원 번호	1-1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까?	1-2 다니고 있는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의 유형은 어디에 해당 됩니까?	1-3 다니고 있는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은 어떤 형태로 이용 하십니까?	1-4 낮시간(어린이집 등 이용시간 외) 동안 주로 돌봐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영유아 번호 1. 가구 일반사항의 해당 가구원 번호 기입	① 다니고 있음 → 1-2번으로 ② 다니지 않음 → 1-4번으로	① 국공립 어린이집 ② 직장 어린이집 ③ 민간 어린이집 ④ 가정 어린이집 (놀이방) ⑤ 공동육아시설 (부모협동어린이집) ⑥ 국공립 유치원 ⑦ 사립 유치원 ⑧ 기타()	① 종일반 → 2번으로 ② 반일반 → 1-4번으로	① 부모가 직접 돌봄 ② 할머니, 할아버지 ③ 기타 가족 ④ 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⑤ 가사도우미나 고용인 ⑥ 이웃 ⑦ 아이들끼리 지냄 ⑧ 기타()

통계표 구성

<영유아 돌봄>

(단위: %)

	보육시설		보육시설 유형								보육시설 이용 형태	
	이용	이용 안함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공동 육아시설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기타	종일반	반일반

(단위: %)

	낮(보육시간 이용 외) 시간 양육 주 돌봄자								
	부모가 직접 돌봄	할머니, 할아버지	기타 가족	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 나 고용인	이웃	아이들끼리 지냄	기타	

※ 보육시설을 전혀 이용하지 않거나, 반일반 형태로 이용하는 가구만 응답

현장조사 유의사항

▶ 보육시설 이용여부

- 영유아의 현재 보육기관 이용여부를 조사한다. 가구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파악하며, 다니고 있을 경우 **1-2**번, 다니지 않을 경우 **1-4**번으로 이동한다.
- 만 0~6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데, 영유아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 특성상 연도별 기준이므로 생년월일 중 월과일은 고려하지 않고, ○○○○년~○○○○년 출생자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 보육시설 유형

- 조사기준 시점은 현재이다.
- 영유아의 가구원 번호를 가구원 순서에 따라 첫 칸부터 적은 후 각 영유아에 대해 질문 하도록 한다. 이때 영유아의 가구원 번호는 가구현황에서의 가구원 번호와 일치하도록 기재한다.

▶ 보육시설 이용형태

- 조사 대상가구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육체계를 조사한다.

▶ 영유아의 주 돌봄자

- 어린이집·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돌봐주는 사람은 누구인지 조사한다.

응답항목 유의사항

▶ 보육시설 유형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유형에서 어린이집의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한다.

구분	내용
① 국공립 (국립·시립·구립 등) 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어린이집 명칭에 'OO구립', 'OO시립', 등의 명시되어 있음(국가나 지자체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해 설치한 어린이집은 '② 직장어린이집'에 해당함 예) 종로구청어린이집)
②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설치한 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③ 민간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포함)	-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부모협동 어린이집과 ①, ④, ⑧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의 어린이집
④ 가정어린이집 (개인가정에서 운영 하는 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⑤ 공동육아시설	- 보호자 15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OO어린이집"으로 한다.
⑥ 국공립 유치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유치원. 유치원 명칭에 'OO구립', 'OO시립', 등의 명시되어 있음
⑦ 사립유치원	- 일반 개인이나 민간이 운영하는 유치원.

▶ 보육시설 이용형태

- 종일반은 7:30~19:30까지 12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맞벌이 가정이나 구직·돌봄 필요 사유 (장애, 0~1세 자녀 2명 이상, 임신, 한부모, 저소득층, 조손, 입원 등)가 있는 가정이 대상

- 반일반은 9:00~15:00까지 하루 최대 6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전업주부의 자녀가 주 대상

▶ 영유아의 주 돌봄자

-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이용할 경우 가장 많은 시간을 이용하는 방법 하나만 선택한다. 보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을 경우 '⑧ 기타'로 선택하고 구체적 방법을 기입한다.

항목명 보육시설 만족도

해당 응답가구의 보육시설 만족도

조사항목

2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1-1**의 ①번 응답자만]
현재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 **2-1번으로**
- **3번으로**

2-1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비용이 비싸서
② 교육(보육) 프로그램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③ 교사 때문에
④ 시설 및 환경이 열악해서
⑤ 급식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⑥ 이동거리가 멀어서
⑦ 기타()

통계표 구성

<보육시설 만족도>

(단위: %)

	보육시설 만족도			불만족이유						
	만족	보통	불만족	비용이 비싸서	교육(보육) 프로그램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교사 때문에	시설 및 환경이 열악해서	급식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이동 거리가 멀어서	기타
	①+②	③	④+⑤							

※ 응답비중을 고려하여 '기타'와 통합가능

※ '불만족이유'는 만족도가 '보통' 이하인 경우만 응답

현장조사 유의사항

▶ 어린이집 · 유치원 만족도

- 현재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다.

응답항목 유의사항

① 비용이 비싸서

- 비용은 ‘납입금(수업료, 운영위원회비, 기성회비 등)’, ‘경비(입학금, 수업료, 운영지원비, 실험실습비 등)’, ‘보충 교육비(학원비, 보충 교육비, 개인 및 그룹 과외비 등)’, ‘교재비(책값, 학용품값 등), 하숙·자취·기숙사비’ 등을 포함한다.

② 교육(보육) 프로그램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교육 내용이나 수준, 교육 방법(수업 지도, 평가), 이론, 실습 등 수업 지도 방법, 평가 방법 등을 포함한다.

③ 교사 때문에

-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적극적 지도, 관심, 애정), 학부모와의 관계, 수업준비 등을 포함한다.

④ 시설 및 환경이 열악해서

-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교재비, 도구 실습비, 간식, 체험학습 등) 시설, 설비 또는 생활 시설(식당, 화장실 등), 주변 환경이 교육여건

⑤ 급식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 급식의 전반적 만족도(품질, 맛, 온도, 양, 간, 청결, 종류, 건강, 계절에 맞는 음식 등)

⑥ 이동거리가 멀어서

- 영유아가 집에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이동하는 거리의 만족도

항목명 보육시설 이용하지 않는 이유

해당 응답가구가 보육시설이 이용하지 않는 이유

조사항목

3 [가구 내 모든 영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4로 이동하고 가구원 중 한명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경우/ 1-1의 2번 응답자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믿을만한 곳이 없어서
- ② 가까운 곳에 없어서
- ③ 국공립시설 입소 대기 중
- ④ 비용 때문에
- ⑤ 가족이 돌보는 것이 아이에게 좋을 것 같아서
- ⑥ 아이가 가지 않으려고 해서
- ⑦ 기타()

통계표 구성

<보육시설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믿을만한 곳이 없어서	가까운 곳에 없어서	국공립시설 입소 대기 중	비용 때문에	가족이 돌보는 것이 아이에게 좋은 것 같아서	아이가 가지 않으려고 해서	기타
--	----------------	---------------	------------------	--------	--------------------------------------	----------------------	----

현장조사 유의사항

- ▶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하지 않는 이유
 - 가구원 중 한명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경우, 보내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다.

응답항목 유의사항

- ▶ 보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을 경우 '⑦ 기타'로 선택하고 구체적 방법을 기입한다.

항목명

영유아 대상 서비스(인지도, 이용경험 등)

해당 응답기구의 영유아 대상 사업 및 서비스의 인지도, 이용경험, 도움정도, 추후이용의향

조사항목

4 다음은 영유아대상 사업 및 서비스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시오.

※ 4-1에서 '2 모름'이라고 한 경우 각 사업의 설명을 참조하여 4-3, 4-4 문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사업명	4-1 인지도	4-2 이용경험	4-3 도움정도	4-4 추후 이용의향
	① 알고있음	① 이용(현재) ② 이용(과거) ③ 이용안함	① 전혀 도움 안 됨 ② 별로 도움 안 됨 ③ 약간 도움 됨 ④ 매우 도움 됨	① 있음 ② 없음
	② 모름			
1) 보육료 지원				
2) 양육수당 지원				

⋮

통계표 구성

<영유아 대상 서비스>

(단위: %)

	보육료 지원								
	이용경험			도움정도				추후이용의향	
	알고있음	이용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있음	없음
		현재	과거						

(단위: %)

	양육수당 지원								
	이용경험			도움정도				추후이용의향	
	알고있음	이용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있음	없음
		현재	과거						

⋮

현장조사 유의사항

- ▶ 위 사업의 인지여부, 이용경험, 도움정도, 이용의향을 조사한다.
 - 4-1 에서 '② 모름'이라고 한 경우 각 사업의 설명을 참조하여 4-3, 4-4 문항에 응답을 받음
- ▶ 사업 설명

사업명	주요 내용
1)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만0~5세)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서비스
2) 양육수당 지원	-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의 양육비 지원서비스
:	



영유아대상 사업 및 서비스

- 해당 서비스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사업 등을 포함하여 조사함
- 조사시 해당 사업 등에 관한 주요내용을 조사표에 간략하게 표기하여 응답 시 도움

분류

VIII. 아동 및 청소년

가구주

선택

항목명

학교에 다니지 않는 가구원 유무(다니지 않는 이유)

해당 응답가구의 학교에 다니지 않는 가구원 유무 및 다니지 않는 이유

조사항목

1 귀댁의 만7~18세 아동·청소년 중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2번으로

1-1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경제적 이유 | ② 건강상의 이유 |
| ③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 ④ 학교에 다니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려고(검정고시 준비, 홈스쿨링 포함) |
| ⑤ 유학 준비를 위해서 | ⑥ 기타() |

통계표 구성

<학교에 다니지 않는 가구원 유무(다니지 않는 이유)>

(단위: %)

	학교에 다니지 않는 가구원 있음	다니지 않는 이유					
		경제적 이유	건강상의 이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학교에 다니지 않고 스스로 공부	유학 준비를 위해	기타

현장조사 유의사항

▶ 초·중·고 학력 가구원

- 만 7~18세 아동·청소년에 대한 질문으로, 해당 가구원이 없는 가구는 IX. 어르신 복지 문항으로 이동한다.
- 만 7~18세의 아동·청소년 가구원 중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가구원을 조사 한다.
- 아동·청소년 가구원이 모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② 없다’로 선택한 후 2번으로 이동한다.

응답항목 유의사항

▶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

- 아동·청소년 가구원이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다. 보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을 경우 ‘⑥ 기타’로 선택하고 구체적 이유를 기입한다.

항목명 아동, 청소년 대상 서비스(인지도, 이용경험 등)

해당 응답가구의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사업 및 서비스의 인지도, 이용경험, 도움 정도, 추후이용의향

조사항목

2 다음은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 및 서비스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 2-1에서 '2 모름'이라고 한 경우 각 사업의 설명을 참조하여 2-3, 2-4 문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사업명	2-1 인지도	2-2 이용경험	2-3 도움정도	2-4 추후 이용의향
	① 알고있음	① 이 용 ② 이용안함	① 전혀 도움 안 됨 ② 별로 도움 안 됨 ③ 약간 도움 됨 ④ 매우 도움 됨	① 있음 ② 없음
② 모 림				
1) 공동육아나눔터				
2) 아이돌봄서비스				

⋮

통계표 구성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서비스>

(단위: %)

	공동육아나눔터							
	이용경험			도움정도				추후이용의향
	알고있음	이용	이용안함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있음 / 없음

(단위: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경험			도움정도				추후이용의향
	알고있음	이용	이용안함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있음 / 없음

⋮

현장조사 유의사항

- ▶ 위 사업의 인지여부, 이용경험, 도움정도, 이용의향을 조사한다.
 - 2-1 에서 '② 모름'이라고 한 경우 각 사업의 설명을 참조하여 2-3, 2-4 문항에 응답을 받음
- ▶ 사업 설명

사업명	주요 내용
1) 공동육아나눔터	-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확산 지원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서비스 - 자녀(미취학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이 육아라는 공통된 활동에 있어 자신의 가족과 다른 가족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어울려 나눌 수 있는 공간(장소)을 의미
2) 아이돌봄서비스	- 취업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 제공
: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사업 및 서비스

- 해당 서비스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사업 등을 포함하여 조사함
- 조사시 해당 사업 등에 관한 주요내용을 조사표에 간략하게 표기하여 응답 시 도움

분류

IX. 어르신

가구주

선택

항목명

연금수급(수급여부, 수급자수)

해당 응답가구의 연금 수급 여부 및 수급자 수

조사항목

- 1 귀댁에 계신 만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현재 다음의 급여를 받는 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분이나 급여를 받고 있습니까?

서비스 유형	1-1 수급 여부	1-2 수급자 수
1)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① 있다	명
	② 없다	
2) 기초연금	① 있다	명
	② 없다	

통계표 구성

<연금수급(수급여부, 수급자수)>

(단위: %, 명)

	공적연금 수급	수급자 수		기초연금 수급	수급자 수	
		1명	2명 이상		1명	2명 이상

※ '연금수급'은 '있다' 응답 비율

현장조사 유의사항

- ▶ 만65세 이상(0000년 0월 0일 이전 출생자) 어르신(노인)이 있는 가구만 응답한다. 해당하지 않는 가구는 X.장애인 문항으로 이동한다.
- ▶ 공적/기초연금 수급 노인
 - 응답자 가구의 가구원 중 공적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각각 조사한다.

- 공적연금
 - 국가가 운영주체가 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 이에 해당한다.
- 기초연금
 -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평생 국가의 발전과 자녀들 양육에 헌신하느라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겨를이 없었던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2017년도 기준)

단독가구	부부가구
1,190,000원	1,904,000원

▶ 공적/기초연금 수급 인원

- 응답자 가구의 가구원 중 공적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 인원을 각각 조사한다.

항목명

어르신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인지도, 이용경험 등)

해당 응답가구의 어르신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의 인지도, 이용경험, 도움정도, 추후이용의향

조사항목

2 다음은 어르신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 **2-1**에서 '② 모름'이라고 한 경우 각 사업의 설명을 참조하여 **2-3**, **2-4** 문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사업명	2-1 인지도	2-2 이용경험	2-3 도움정도	2-4 추후 이용의향
	① 알고있음	① 이 용 ② 이용안함	① 전혀 도움 안 됨 ② 별로 도움 안 됨 ③ 약간 도움 됨 ④ 매우 도움 됨	① 있음 ② 없음
	② 모 르			
1) 노인돌봄서비스				
2) 노인간병서비스				

통계표 구성

<어르신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단위: %)

	노인돌봄서비스								
	이용경험			도움정도				추후이용의향	
	알고있음	이용	이용안함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있음	없음

(단위: %)

	노인간병서비스								
	이용경험			도움정도				추후이용의향	
	알고있음	이용	이용안함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있음	없음

⋮

현장조사 유의사항

- ▶ 위 사업의 인지여부, 이용경험, 도움정도, 이용의향을 조사한다.
 - 2-1 에서 '② 모름'이라고 한 경우 각 사업의 설명을 참조하여 2-3, 2-4 문항에 응답을 받음
- ▶ 사업 설명

구 분	주요 내용
1) 노인돌봄서비스	-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식사, 세면 등 신변활동 지원과 가사지원, 보호서비스 등을 제공
2) 노인간병서비스	- 갑작스러운 질병 등으로 간병이 필요한 노인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 정부에서 지급하는 이용권(바우처)을 이용하여 일정시간 사용 가능(장기요양보험, 요양시설)

⋮



어르신 일상생활 지원 사업 및 서비스

- 해당 서비스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사업 등을 포함하여 조사함
- 조사시 해당 사업 등에 관한 주요내용을 조사표에 간략하게 표기하여 응답 시 도움

항목명 **어르신 보건 지원 서비스(인지도, 이용경험 등)**

해당 응답가구의 어르신 보건 지원 서비스의 인지도, 이용경험, 도움정도, 추후 이용의향

조사항목

3 다음은 어르신들을 위한 보건 사업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시오.

※ 3-1에서 '㉔ 모름'이라고 한 경우 각 사업의 설명을 참조하여 3-3, 3-4 문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사업명	3-1 인지도	3-2 이용경험	3-3 도움정도	3-4 추후 이용의향
	① 알고있음	① 이 용 ② 이용안함	① 전혀 도움 안 됨 ② 별로 도움 안 됨 ③ 약간 도움 됨 ④ 매우 도움 됨	① 있음 ② 없음
	② 모 림			
1) 치매지원서비스				
2) 재가지원서비스				

⋮

통계표 구성

<어르신 보건 지원 서비스>

(단위: %)

	치매지원서비스							
	이용경험			도움정도				추후이용의향
	알고있음	이용	이용안함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있음 / 없음

(단위: %)

	재가지원서비스							
	이용경험			도움정도				추후이용의향
	알고있음	이용	이용안함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있음 / 없음

⋮

현장조사 유의사항

- ▶ 위 사업의 인지여부, 이용경험, 도움정도, 이용의향을 조사한다.
 - 3-1 에서 '② 모름'이라고 한 경우 각 사업의 설명을 참조하여 3-3, 3-4 문항에 응답을 받음
- ▶ 사업 설명

구 분	주요 내용
1) 치매지원서비스	치매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치매조기검진, 예방등록관리, 치료비 지원 등을 제공
2) 재가지원서비스	65세 이상의 장기요양수급대상자 또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지원, 신체활동 지원, 특별서비스 등을 제공

:



어르신 보건 지원 사업 및 서비스

- 해당 서비스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사업 등을 포함하여 조사함
- 조사시 해당 사업 등에 관한 주요내용을 조사표에 간략하게 표기하여 응답 시 도움

항목명

노인복지강화 사업

해당 응답가구가 생각하는 노인복지강화 사업

조사항목

- 4 귀하는 ○○시의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 | |
|--------------------------|----------------------|
| ① 경제적 지원 (현금, 물품지원) | ② 돈벌이가 되는 일자리 제공 |
| ③ 사회공헌, 자원봉사 일자리 제공 | ④ 건강증진, 장기요양보호 관련 사업 |
| ⑤ 여가, 문화 시설이나 프로그램 제공 | ⑥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
| ⑦ 주거지원(노인전용주택, 집수리 사업 등) | ⑧ 기타() |

통계표 구성

<노인복지강화 사업>

(단위: %)

	1순위							2순위							
	경제적 지원	돈벌이가 되는 일자리 제공	사회 공헌, 자원 봉사 일자리 제공	건강 증진, 장기 요양 보호 관련 사업	여가, 문화 시설	자기 계발을 위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	주거 지원	기타	경제적 지원	돈벌이가 되는 일자리 제공	사회 공헌, 자원 봉사 일자리 제공	건강 증진, 장기 요양 보호 관련 사업	여가, 문화 시설	자기 계발을 위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	주거 지원

※ 응답비중을 고려하여 '기타'와 통합가능

현장조사 유의사항

▶ ○○시 노인복지 사업 중 강화 필요

- ○○시에서 어르신(노인)들을 위한 사업 중 강화시켜야 할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조사한다.

응답항목 유의사항

- ▶ 보기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두 가지 선택하여 중요한 순서대로 기입하도록 한다. 보기에 해당 항목이 없을 경우 '⑧ 기타'로 선택하고 구체적 내용을 기입한다.

항목명 노인복지우선 확대사업

해당 응답가구가 생각하는 노인복지우선 확대 사업

조사항목

5 귀하는 ○○시가 어르신들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할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노인복지관
- ② 경로당
- ③ 운동시설(스포츠센터, 생활체육시설)
- ④ 요양시설(입소해서 생활하는 시설)
- ⑤ 가정방문서비스 기관(방문목욕, 가사지원 등)
- ⑥ 주간보호시설(혼자 지내기 어려운 노인을 낮동안 보호)
- ⑦ 보건기관(보건소, 건강증진센터 등)
- ⑧ 노인전문 직업훈련, 취업알선 기관
- ⑨ 교육시설(시민대학, 도서관 등)
- ⑩ 기타()

통계표 구성

<노인복지강화 사업>

(단위: %)

	1순위									
	노인 복지관	경로당	운동시설	요양시설	가정방문 서비스 기관	주간보호 시설	보건기관	노인전문 직업, 취업알선 기관	교육시설	기타

※ 응답비중을 고려하여 '기타'와 통합가능

(단위: %)

	2순위									
	노인 복지관	경로당	운동시설	요양시설	가정방문 서비스 기관	주간보호 시설	보건기관	노인전문 직업, 취업알선 기관	교육시설	기타

※ 응답비중을 고려하여 '기타'와 통합가능

현장조사 유의사항

- ▶ 확대가 필요한 어르신 복지시설
 - ○○시에서 어르신(노인)들을 위한 사업 중 확대시켜야 할 시설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조사한다.

응답항목 유의사항

- ▶ 보기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두 가지 선택하여 중요한 순서대로 기입하도록 한다. 보기에 해당 항목이 없을 경우 '⑩ 기타'로 선택하고 구체적 내용을 기입한다.

분류

X. 장애인

가구주

선택

항목명

장애인 급여 수급(수급여부, 수급자수)

해당 응답가구의 장애인 급여 수급 여부 및 수급자 수

조사항목

- 1 귀택에 계신 장애인 가구원 가운데 현재 다음의 급여를 받는 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분이나 급여를 받고 있습니까?

서비스 유형	1-1 수급 여부	1-2 수급자 수
1) 장애인연금(중증장애인 대상-1급, 2급, 중복3급)	① 있다	명
	② 없다	
2) 장애수당(경증장애인 대상-3급, 4급, 5급, 6급)	① 있다	명
	② 없다	
3) 장애아동수당	① 있다	명
	② 없다	
4) 장애아동 및 장애인자녀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① 있다	명
	② 없다	

통계표 구성

<장애인 급여 수급(수급여부, 수급자수)>

(단위: %, 명)

	장애인 연금 수급	수급자 수		장애 수당 수급	수급자 수		장애 아동 수당 수급	수급자 수		장애 아동 등 보육비 및 교육비 수급	수급자 수	
		1명	2명 이상		1명	2명 이상		1명	2명 이상		1명	2명 이상

※ '장애인 급여 수급'은 '있다' 응답 비율

현장조사 유의사항

- ▶ 가구주(본인) 또는 가구원 중에 등록장애인이 없는 경우에는 X.여성으로 이동하여 조사한다.
※ 등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 응답자 가구의 가구원(가구주 포함) 중 장애급여 수급 여부 및 수급 인원을 각각 조사한다.
- ▶ 사업 설명

구 분	주요 내용
1) 장애인연금	- 국민연금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 2016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단독가구기준 100만원 부부가구 기준 160만원 이하이거나 소득 없이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사람들이 대상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등급 1급과 2급, 3급 중복장애인을 말하며, 3급 중복장애란 3급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유형의 장애가 더 있는 경우를 말함
2) 장애수당	- 18세 이상의 등록 경증장애(3~6급)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함
3) 장애아동수당	-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함
4) 장애아동 및 장애인자녀 보육비(교육비)지원	-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만 5세 이하 장애아동, 취학 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에게 지급되는 보육비 - 단,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하였으나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만 5세 이하 영유아 및 부득이하게 휴학한 장애아도 해당됨

항목명 장애인 가구의 어려움

장애인 가구의 어려움

조사항목

2 귀택은 아래와 같은 어려움을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느끼시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은 편이다	어려운 편이다	매우 어려운 편이다
2-1 사회적 차별로 인한 어려움	①	②	③	④
2-2 취업이나 경제적 활동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2-3 저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①	②	③	④
2-4 자녀양육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2-5 장애로 인한 스트레스 및 가족들 간의 불화	①	②	③	④
2-6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한 어려움	①	②	③	④
2-7 장애의 재활치료(의료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2-8 이성교제 및 결혼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2-9 여가, 취미, 문화 활동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2-10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통계표 구성

<장애인 가구의 어려움>

(단위: %)

	사회적 차별로 인한 어려움	경제 활동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자녀 양육 어려움	가족간 불화	교육의 어려움	의료 서비스 이용 어려움	결혼(이성 교제) 어려움	문화활동 어려움	이동 어려움
	③+④	③+④	③+④	③+④	③+④	③+④	③+④	③+④	③+④	③+④

※ 어려운 정도만 구성

현장조사 유의사항

▶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대한 의견을 각 질문문항별로 응답자가 느끼는 정도를 조사한다.

항목명 장애인 주거 지원 서비스(인지도, 이용경험 등)

해당 응답기구의 장애인 주거 지원 사업 및 서비스의 인지도, 이용경험, 도움정도, 추후이용의향

조사항목

3 다음은 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시오.

※ 3-1에서 '2 모름'이라고 한 경우 각 사업의 설명을 참조하여 3-3, 3-4 문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사업명	3-1 인지도	3-2 이용경험	3-3 도움정도	3-4 추후 이용의향
	① 알고있음	① 이 용 ② 이용안함	① 전혀 도움 안 됨 ② 별로 도움 안 됨 ③ 약간 도움 됨 ④ 매우 도움 됨	① 있음 ② 없음
	② 모 림			
1)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2) 공동주택 특별공급				

통계표 구성

<장애인 주거 지원 서비스>

(단위: %)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이용경험			도움정도				추후이용의향
	알고있음	이용	이용안함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있음 / 없음

(단위: %)

	공동주택 특별공급							
	이용경험			도움정도				추후이용의향
	알고있음	이용	이용안함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있음 / 없음

현장조사 유의사항

- ▶ 위 사업의 인지여부, 이용경험, 도움정도, 이용의향을 조사한다.
 - 3-1 에서 '② 모름'이라고 한 경우 각 사업의 설명을 참조하여 3-3, 3-4 문항에 응답을 받음
- ▶ 사업 설명

구 분	주요 내용
1)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저소득 중증 장애인의 주택 내 생활불편을 줄이기 위해 화장실 개선, 문턱제거, 경사로 개선 등 집수리 지원
2) 공동주택 특별공급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급(분양·임대)할 때 무주택 세대주인 장애인에게 특별공급을 알선하는 제도



장애인 주거 지원 사업 및 서비스

- 해당 서비스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사업 등을 포함하여 조사함
- 조사시 해당 사업 등에 관한 주요내용을 조사표에 간략하게 표기하여 응답 시 도움

항목명

장애인 자립생활 및 취업 지원 서비스(인지도, 이용경험 등)

해당 응답가구의 장애인 자립생활 및 취업지원 서비스의 인지도, 이용경험, 도움 정도, 추후이용의향

조사항목

4 다음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시오.

※ 4-1 에서 '② 모름'이라고 한 경우 각 사업의 설명을 참조하여 4-3, 4-4 문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사업명	4-1 인지도	4-2 이용경험	4-3 도움정도	4-4 추후 이용의향
	① 알고있음	① 이 용 ② 이용안함	① 전혀 도움 안 됨 ② 별로 도움 안 됨 ③ 약간 도움 됨 ④ 매우 도움 됨	① 있음 ② 없음
	② 모 르			
1) 자립생활지원사업				
2) 장애인 재활치료 및 교육지원사업				

통계표 구성

<장애인 자립생활 및 취업 지원 서비스>

(단위: %)

	자립생활지원사업								
	이용경험			도움정도				추후이용의향	
	알고있음	이용	이용안함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있음	없음

(단위: %)

	장애인 재활치료 및 교육지원 사업								
	이용경험			도움정도				추후이용의향	
	알고있음	이용	이용안함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있음	없음

⋮

현장조사 유의사항

▶ 위 사업의 인지여부, 이용경험, 도움정도, 이용의향을 조사한다.

- 4-1 에서 '② 모름'이라고 한 경우 각 사업의 설명을 참조하여 4-3, 4-4 문항에 응답을 받음

구 분	주요 내용
1) 자립생활지원사업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정보제공 (예: 권익옹호활동, 개인별 자립계획수립, 포괄적 자립생활 정보제공 등)
2) 장애인 재활치료 및 교육지원사업	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료(바우처), 사회교육, 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



장애인 자립생활 및 취업 지원 서비스

- 해당 서비스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사업 등을 포함하여 조사함
- 조사시 해당 사업 등에 관한 주요내용을 조사표에 간략하게 표기하여 응답 시 도움

항목명 장애인 가정 지원 서비스(인지도, 이용경험 등)

해당 응답가구의 장애인 가정 지원 서비스의 인지도, 이용경험, 도움정도, 추후이용의향

조사항목

5 다음은 장애인 가정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 5-1에서 '② 모름'이라고 한 경우 각 사업의 설명을 참조하여 5-3, 5-4 문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사업명	5-1 인지도	5-2 이용경험	5-3 도움정도	5-4 추후 이용의향
	① 알고있음	① 이 용 ② 이용안함	① 전혀 도움 안 됨 ② 별로 도움 안 됨 ③ 약간 도움 됨 ④ 매우 도움 됨	① 있음 ② 없음
	② 모 림			
1) 장애활동지원서비스				
2) 장애아동 재활치료				

⋮

통계표 구성**<장애인 가정 지원 서비스>**

(단위: %)

	장애활동지원서비스							
	이용경험			도움정도				추후이용의향
	알고있음	이용	이용안함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있음 / 없음

(단위: %)

	장애아동 재활치료							
	이용경험			도움정도				추후이용의향
	알고있음	이용	이용안함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있음 / 없음

⋮

현장조사 유의사항

- ▶ 위 사업의 인지여부, 이용경험, 도움정도, 이용의향을 조사한다.
 - 5-1 에서 '② 모름'이라고 한 경우 각 사업의 설명을 참조하여 5-3, 5-4 문항에 응답을 받음
- ▶ 사업설명

구 분	주요 내용
1) 장애활동지원서비스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보내 일상생활, 사회활동을 도와주는 서비스
2) 장애아동 재활치료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



장애인 가정 지원 서비스

- 해당 서비스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사업 등을 포함하여 조사함
- 조사시 해당 사업 등에 관한 주요내용을 조사표에 간략하게 표기하여 응답 시 도움

항목명

장애인 가구 추가 소요비용 여부

장애인 가구의 추가 소요 비용 여부 및 소요금액, 추가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항목

조사항목

6 귀댁에서는 장애인 가구원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 7번으로

6-1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한달 평균 얼마나 됩니까?

월평균 _____ 만원

6-2 장애로 인해 추가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① 교통비(자동차 개조비 포함)

② 의료비(진료비, 재활치료비, 약값 등)

③ 교육비, 보육비(특수교육, 장애로 인한 사교육비)

④ 보호, 간병비(활동보조인, 가정봉사원, 간병인, 수발자 비용)

⑤ 재활기관 이용료(복지관, 재활기관 서비스 이용)

⑥ 통신비(장애인용 컴퓨터 등 특수장비)

⑦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유지비

⑧ 기타()

통계표 구성

<장애인 가구 추가 소요 비용>

(단위: %, 만원)

장애인 가구 추가 소요 비용 있음	소요비용						추가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항목							
	10만원 미만	10~ 50만원	50~ 100만 원	100~ 200만 원	200 만원 이상	평균	교통비	의료비	교육비, 보육비	보호, 간병비	재활 기관 이용료	통신비	장애인 보조 기구 구입, 유지비	기타

※ 응답비중 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 간격 및 '기타' 조정 가능

현장조사 유의사항

- ▶ 장애인이 없는 가구에 비해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여부, 월평균 금액, 가장 많이 들어가는 항목을 조사한다.

항목명

장애인 복지 역점 사항

해당 응답가구가 생각하는 장애인 복지 역점 사항

조사항목

- 7 귀하는 장애인복지 분야 중 00시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 ① 소득보장 | ② 의료보장(진료비, 재활치료비, 약값 등) |
| ③ 고용보장 | ④ 주거보장 |
| ⑤ 이동권 보장 | ⑥ 보육, 교육보장(특수교육, 장애로 인한 사교육비) |
| ⑦ 문화, 여가, 체육활동 | ⑧ 장애인 인권보장 |
| ⑨ 장애인 인식개선 | ⑩ 기타() |

통계표 구성

<장애인 복지 역점 사항>

(단위: %)

	1순위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주거보장	이동권 보장	보육, 교육보장	문화, 여가, 체육활동	장애인 인권보장	장애인 인식개선	기타

※ 응답비중을 고려하여 '기타'와 통합가능

(단위: %)

	2순위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주거보장	이동권 보장	보육, 교육보장	문화, 여가, 체육활동	장애인 인권보장	장애인 인식개선	기타

※ 응답비중을 고려하여 '기타'와 통합가능

현장조사 유의사항

- ▶ 장애인복지 분야에 대해 ○○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야 하는 부분을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 조사한다.

분류

XI. 여성

가구주

가구원

선택

항목명

여성 생활환경 안전도

여성이 생각하는 주변 생활환경 안전도

조사항목

1 귀하가 살고 있는 생활환경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다	보통이다	안전하다	매우 안전하다
1-1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	①	②	③	④	⑤
1-2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동네	①	②	③	④	⑤
1-3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시(지역사회)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나라 전체	①	②	③	④	⑤

통계표 구성

<여성 생활환경 안전도>

(단위: %)

	현재 살고 있는 집	현재 살고 있는 동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시)	우리나라 전체
	④+⑤	④+⑤	④+⑤	④+⑤

※ 안전한 정도만 구성

현장조사 유의사항

- ▶ 만15세 이상(0000.0.0. 이전 출생자) 여성만 조사하는 항목이다. 해당되지 않으면 XII.다문화로 이동한다.
- ▶ 생활분야별 안전도
 - 여성들이 각 분야별 안전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항목명

필요한 안전정책

여성에게 필요한 안전대책

조사항목

2 귀하가 생각하는 가장 필요한 안전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 ①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및 확산 | ②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적극적 캠페인 |
| ③ 범죄나 안전사고지대를 고려한 도시 환경 조성 | ④ 인터넷 상의 여성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
| ⑤ 여성 전용 주차장의 확대 | ⑥ 기타() |

통계표 구성

<필요한 안전 대책>

(단위: %)

	1순위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및 확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적극적 캠페인	범죄나 안전사각지대를 고려한 도시 환경 조성	인터넷 상의 여성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여성 전용 주차장의 확대	기타

※ 응답비중을 고려하여 '기타'와 통합가능

(단위: %)

	2순위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및 확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적극적 캠페인	범죄나 안전사각지대를 고려한 도시 환경 조성	인터넷 상의 여성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여성 전용 주차장의 확대	기타

※ 응답비중을 고려하여 '기타'와 통합가능

현장조사 유의사항

▶ 여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안전정책

- 여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안전정책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조사한다.

응답항목 유의사항

- ▶ 보기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두 가지 선택하여 중요한 순서대로 기입하도록 한다. 보기에 해당 항목이 없을 경우 '⑥ 기타'로 선택하고 구체적 내용을 기입한다.

항목명 여성 편의시설에 대한 의견

조사항목

3 다음은 여성 편의 시설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각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요.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1 여성들의 휴식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3-2 여성들의 편의시설(여성전용 주차장 등)이 잘 마련되어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3-3 돌봄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3-4 출산(임산부 휴게실 등) 및 양육(수유실 등) 관련 공간은 잘 마련되어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통계표 구성

<여성 편의시설 마련 정도>

(단위: %)

	휴식공간 마련	편의시설 마련	돌봄시설 마련	출산 및 양육 공간 마련
	④+⑤	④+⑤	④+⑤	④+⑤

※ 잘 구축된 정도만으로 구성

현장조사 유의사항

▶ 여성 편의시설에 대한 의견을 각 질문문항별로 응답자가 느끼는 정도를 조사한다.

항목명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중요 요인

여성이 생각하는 삶의 질 향상에 중요 요인

조사항목

4 귀하는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① 양성평등의식 확립 ② 정치 및 사회참여활동 ③ 사회교육(예: 취미교실) ④ 건강관리
 ⑤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⑥ 자녀 보육서비스 ⑦ 저소득 모자가족세대 지원 ⑧ 저소득 여성노인지원
 ⑨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여성보호 ⑩ 성폭력 예방 및 피해여성보호 ⑪ 기타()

통계표 구성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중요 요인>

(단위: %)

	1순위										
	양성평등 의식 확립	정치 및 사회참여 활동	사회교육	건강관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자녀 보육 서비스	저소득 모자가족 세대 지원	저소득 여성노인 지원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여성 보호	성폭력 예방 및 피해여성 보호	기타

※ 응답비중을 고려하여 '기타'와 통합가능

(단위: %)

	2순위										
	양성평등 의식 확립	정치 및 사회참여 활동	사회교육	건강관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자녀 보육 서비스	저소득 모자가족 세대 지원	저소득 여성노인 지원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여성 보호	성폭력 예방 및 피해여성 보호	기타

※ 응답비중을 고려하여 '기타'와 통합가능

현장조사 유의사항

- ▶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조사한다.

응답항목 유의사항

- ▶ 보기에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두 가지 선택하여 중요한 순서대로 기입하도록 한다. 보기에 해당 항목이 없을 경우 '⑪ 기타'를 선택하고 구체적 내용을 기입한다.

항목명

여성을 위한 주요 역점 사항

여성을 위한 주요 역점 사항

조사항목

- 5 귀하는 여성을 위해 00시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① 직업훈련 및 알선 시설 ② 가정폭력상담소 ③ 보육시설 ④ 건강시설
 ⑤ 의료시설 ⑥ 문화시설(극장, 전시장 등) ⑦ 사회교육시설 ⑧ 미혼모 보호시설
 ⑨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여성보호시설 ⑩ 기타()

통계표 구성

<여성을 위한 주요 역점 사항>

(단위: %)

	1순위									
	직업훈련 및 알선 시설	가정폭력 상담소	보육시설	건강시설	의료시설	문화시설	사회교육 시설	미혼모 보호시설	가정폭력 이나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	기타

※ 응답비율을 고려하여 '기타'와 통합가능

(단위: %)

	2순위									
	직업훈련 및 알선 시설	가정폭력 상담소	보육시설	건강시설	의료시설	문화시설	사회교육 시설	미혼모 보호시설	가정폭력 이나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	기타

※ 응답비중을 고려하여 '기타'와 통합가능

현장조사 유의사항

- ▶ 여성을 위해 00시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
 - 여성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조사한다.

응답항목 유의사항

- ▶ 보기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두 가지 선택하여 중요한 순서대로 기입하도록 한다. 보기에 해당 항목이 없을 경우 '⑩ 기타'를 선택하고 구체적 내용을 기입한다.

분류

Ⅹ. 다문화

가구주

선택

가구원

항목명

다문화 어려움

다문화 가구의 어려움 정도

조사항목

①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일에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느끼시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해당없음	전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은 편이다	어려운 편이다	매우 어려운 편이다
1-1 한국어 사용에 대한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1-2 주위의 편견과 차별	①	②	③	④	⑤
1-3 가족 갈등(ex.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등)	①	②	③	④	⑤
1-4 경제적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1-5 자녀양육과 교육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통계표 구성

<다문화 어려움>

(단위: %)

	한국어 사용 어려움	주위의 편견과 차별	가족갈등	경제적 어려움	자녀양육의 어려움
	③+④	③+④	③+④	③+④	③+④

※ 어려운 정도만 구성

현장조사 유의사항

- ▶ I.가구일반사항의 ②한국으로 귀화한 외국인 또는 ③외국인으로 응답한 가구원만 조사한다. 해당되지 않으면 XIII.여가 및 사회참여로 이동한다.
- ▶ 다문화 가구원으로 생활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을 각 분야별로 조사한다.

항목명

다문화관련 건강 및 고용지원 서비스(인지도, 이용경험 등)

응답자의 다문화관련 건강 및 고용지원 서비스의 인지도, 이용경험, 도움정도, 추후 이용의향

조사항목

2 다음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문화 관련 건강 및 고용지원 서비스들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시오.

※ 2-1에서 '② 모름'이라고 한 경우 각 사업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여 2-3, 2-4 문항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2-1 인지도	2-2 이용경험	2-3 도움정도	2-4 추후 이용의향
사업명	① 알고있음 ② 모 르	① 이 용 ② 이용안함	① 전혀 도움 안 됨 ② 별로 도움 안 됨 ③ 약간 도움 됨 ④ 매우 도움 됨	① 있음 ② 없음
1)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지원				
2) 다문화가족 취업교육				

⋮

통계표 구성

<다문화관련 건강 및 고용지원 서비스>

(단위: %)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							
	이용경험			도움정도				추후이용의향
	알고있음	이용	이용안함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있음 없음

(단위: %)

	다문화가족 취업교육							
	이용경험			도움정도				추후이용의향
	알고있음	이용	이용안함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있음 없음

⋮

현장조사 유의사항

- ▶ 위 사업의 인지여부, 이용경험, 도움정도, 이용의향을 조사한다.
 - 2-1 에서 ‘② 모름’이라고 한 경우 각 사업의 설명을 참조하여 2-3, 2-4 문항에
응답을 받음
- ▶ 사업 설명

구분	주요 내용
1)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지원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지원, 의료급여 및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지원 등의 건강지원 사업
2) 다문화가족 취업교육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자립 지원을 위한 취업 교육 사업

⋮



다문화관련 건강 및 고용지원 서비스

- 해당 서비스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사업 등을 포함하여 조사함
- 조사시 해당 사업 등에 관한 주요내용을 조사표에 간략하게 표기하여 응답 시 도움

항목명 다문화관련 교육 및 생활지원 서비스(인지도, 이용경험 등)

응답자의 다문화관련 교육 및 생활지원 서비스의 인지도, 이용경험, 도움정도, 추후 이용의향

조사항목

3 다음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문화 관련 교육 및 생활지원 서비스들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시오.

※ 3-1에서 '모름'이라고 한 경우 각 사업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여 3-3, 3-4 문항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사업명	3-1 인지도	3-2 이용경험	3-3 도움정도	3-4 추후 이용의향
	① 알고있음 ② 모름	① 이용 ② 이용안함	① 전혀 도움 안 됨 ② 별로 도움 안 됨 ③ 약간 도움 됨 ④ 매우 도움 됨	① 있음 ② 없음
1) 한국어교육 지원				
2)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

통계표 구성**<다문화관련 교육 및 생활지원 서비스>**

(단위: %)

	한국어 교육지원							
	이용경험		도움정도				추후이용의향	
	알고있음	이용 이용안함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있음	없음

(단위: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이용경험		도움정도				추후이용의향	
	알고있음	이용 이용안함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있음	없음

⋮

현장조사 유의사항

- ▶ 위 사업의 인지여부, 이용경험, 도움정도, 이용의향을 조사한다.
 - 3-1 에서 '② 모름'이라고 한 경우 각 사업의 설명을 참조하여 3-3, 3-4 문항에 응답을 받음
- ▶ 사업 설명

구분	주요 내용
1) 한국어교육 지원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에게 단계별 한국어 교육 지원
2)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체계적인 언어발달을 돕기 위해 언어평가 및 교육이 필요한 만12세 이하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게 서비스

:



다문화관련 건강 및 고용지원 서비스

- 해당 서비스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사업 등을 포함하여 조사함
- 조사시 해당 사업 등에 관한 주요내용을 조사표에 간략하게 표기하여 응답 시 도움

항목명

다문화 가정을 위한 주요 역점 사항

응답자가 생각하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주요 역점 사항

조사항목

- 4 다문화가정을 위해 00시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① 취업지원 | ② 한글교육, 문화적응교육 |
| ③ 경제적지원 | ④ 다문화인식개선 사업(가족 및 지역주민 인식교육등) |
| ⑤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 ⑥ 전문적인 가족상담(부부상담, 부모자녀상담 등) |
| ⑦ 기타() | |

통계표 구성

<다문화 가정을 위한 주요 역점 사항>

(단위: %)

	1순위						
	취업지원	교육(한글 및 문화적응)	경제적지원	다문화인식 개선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전문적인 가족상담	기타

※ 응답비중을 고려하여 '기타'와 통합가능

(단위: %)

	2순위						
	취업지원	교육(한글 및 문화적응)	경제적지원	다문화인식 개선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전문적인 가족상담	기타

※ 응답비중을 고려하여 '기타'와 통합가능

현장조사 유의사항

- ▶ 다문화가정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견해를 조사한다.

응답항목 유의사항

- ▶ 보기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두 가지 선택하여 중요한 순서대로 기입하도록 한다. 보기에 해당 항목이 없을 경우 '⑦ 기타'로 선택하고 구체적 내용을 기입한다.

분류

Ⅲ. 여가 및 사회참여 - 1 여가생활

가구주

가구원

선택

항목명

참여여가활동

응답자가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조사항목

1 지난 1년 동안(0000.0.0. ~ 0000.0.0.) 귀하가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은 무엇입니까? 많이 참여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휴식 활동(산책, 목욕, 낮잠, TV/라디오 청취, 음악 감상, 신문/잡지보기 등)
- ② 문화예술 관람 활동(전시회, 박물관, 연주회, 연극·무용·연계 공연 관람, 영화관람 등)
- ③ 문화예술 참여 활동(문화행사참여, 문예창작/독서토론, 미술활동, 악기연주, 노래교실, 전통예술 배우기, 사진촬영, 무용 등)
- ④ 스포츠 관람 활동(스포츠 경기 직접관람, TV 등을 통한 간접관람, 온라인게임 경기 현장관람 등)
- ⑤ 스포츠 참여 활동(각종 스포츠 운동, 헬스, 요가, 댄스스포츠, 조깅/속보, 승마, 암벽등반 포함(등산/낚시는 취미·오락 활동으로 포함) 등)
- ⑥ 관광 여행(유적방문, 명승지 관람, 산림욕, 캠핑, 해외여행, 야유회, 놀이공원/동물원/식물원, 축제참가, 자동차 드라이브 등)
- ⑦ 취미·오락 활동(수집활동, 생활 공예, 요리/다도, 애완동물 돌보기, 노래방가기, 인테리어, 등산, 낚시, 인터넷/블로그, 게임, 바둑/장기/체스, 쇼핑/외식, 음주, 독서, 미용, 공부/학원이용 등)
- ⑧ 사회 활동(봉사활동, 종교 활동, 가족 및 친지방문, 계모임/동창회, 친구만남, 동호회 등)
- ⑨ 기타()

통계표 구성

<참여여가활동>

(단위: %)

	1순위								
	휴식 활동	문화예술 관람 활동	문화예술 참여 활동	스포츠 관람 활동	스포츠 참여 활동	관광 여행	취미·오락 활동	사회 활동	기타

※ 응답비중을 고려하여 '기타'와 통합가능

(단위: %)

	2순위								
	휴식 활동	문화예술 관람 활동	문화예술 참여 활동	스포츠 관람 활동	스포츠 참여 활동	관광 여행	취미·오락 활동	사회 활동	기타

※ 응답비중을 고려하여 ‘기타’와 통합가능

현장조사 유의사항

- ▶ 여가란 일하고 남은 시간에서 생리적 필수시간을 제외한 자유 시간을 의미한다.
- ▶ 수험생, 연로자, 주부 등 평소 여가가 전혀 없다고 응답한 사람에게는 위와 여가 개념에 입각해서 여가활동을 조사한다.
- ▶ 응답내용이 포괄적인 의미일 때는 구체적인 행위를 파악하여 해당 분류에 맞춰 최근 1년(0000년 0월 0일 ~ 0000년 0월 0일) 가장 많이 참여한 활동 순으로 기입한다.

응답항목 유의사항

- ① 휴식 활동 : 산책, 목욕, 낮잠, TV/라디오 청취, 음악 감상, 신문/잡지보기 등
- ② 문화예술 관람 활동 : 전시회, 박물관, 연주회, 연극·무용·연계 공연 관람, 영화관람 등
- ③ 문화예술 참여 활동 : 문화행사참여, 문예창작/독서토론, 미술활동, 악기연주, 노래 교실, 전통 예술 배우기, 사진촬영, 무용 등
- ④ 스포츠 관람 활동 : 스포츠 경기 직접관람, TV 등을 통한 간접관람, 온라인게임 경기 현장관람 등
- ⑤ 스포츠 참여 활동 : 각종 스포츠 운동, 헬스, 요가, 댄스스포츠, 조깅/속보, 승마, 암벽등반 포함(등산/낚시는 취미·오락 활동으로 포함) 등
- ⑥ 관광 여행 : 유적방문, 명승지 관람, 산림욕, 캠핑, 해외여행, 야유회, 놀이공원/동물원/식물원, 축제참가, 자동차 드라이브 등
- ⑦ 취미·오락 활동 : 수집활동, 생활 공예, 요리/다도, 애완동물 돌보기, 노래방가기, 인테리어, 등산, 낚시, 인터넷/블로그, 게임, 바둑/장기/체스, 쇼핑/외식, 음주, 독서, 미용, 공부/학원이용 등
- ⑧ 사회 활동 : 봉사활동, 종교 활동, 가족 및 친지방문, 계모임/동창회, 친구만남, 동호회 등

항목명 여가활동 함께 하는 사람

응답자가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

조사항목

2 이러한 여가활동을 주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 | | |
|-------------------------|-----------------|
| ① 혼자 | ② 가족(친척 포함)과 함께 |
| ③ 친구(연인 포함)와 함께 | ④ 직장 동료 |
| ⑤ 동호회(종교단체 등 포함) 회원과 함께 | ⑥ 기타() |

통계표 구성

<여가활동 함께 하는 사람>

(단위: %)

	혼자	가족(친척)과 함께	친구(연인)와 함께	직장 동료	동호회 회원과 함께	기타
--	----	---------------	---------------	-------	---------------	----

※ 응답비중을 고려하여 '기타'와 통합가능

현장조사 유의사항

▶ 응답한 여가활동을 누구와 주로 함께 하는지 기입한다.

분류

XIII. 여가 및 사회참여 - 2 사회활동

가구주

가구원

선택

항목명

사회활동 참여(참여경험, 향후 참여의사)

응답자의 사회활동 참여경험 및 향후 참여의사

조사항목

1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앞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구분	1-1 참여경험		1-2 향후 참여의사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 반상회, 주민회의, 부녀회, 아파트, 대표자 회의, 통반장 회의	①	②	①	②
2) 지역 방범활동, 청소년선도, 교통정리와 같은 지역봉사활동	①	②	①	②
3) 주민들이 모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거나 문화 활동을 하는 (복지)공동체사업	①	②	①	②
4) 시민운동단체, 사회단체 활동	①	②	①	②
5) 종교활동	①	②	①	②
6) 동호회	①	②	①	②

통계표 구성

<사회참여활동>

(단위: %)

	반상회 등		지역봉사활동		공동체 사업		사회단체활동		종교활동		동호회	
	참여율	향후 참여 의사 비율	참여율	향후 참여 의사 비율	참여율	향후 참여 의사 비율	참여율	향후 참여 의사 비율	참여율	향후 참여 의사 비율	참여율	향후 참여 의사 비율

※ 참여율은 참여 경험 '있다' 비율, 향후 참여 의사 비율은 향후 참여의사 '있다' 비율

현장조사 유의사항

- ▶ 지난 1년 동안(0000년 0월 0일~0000년 0월 0일) 보기와 같은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향후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한다.
- 단체에 단순히 가입만 하고 활동하지 않은 상태는 단체에 참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최근 1년 동안 가입비 또는 회비를 납부한 적이 있으면 활동한 것으로 본다.

항목명 자원봉사 참여 경험(횟수, 분야)

응답자의 자원봉사 참여횟수 및 참여분야

조사항목

2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3번으로

2-1 평소 자원봉사활동에 얼마나 참여하십니까?

① 주 3회 이상 ② 주 1~2회 ③ 한 달에 1~2회 ④ 연 1~2회

2-2 어느 분야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십니까?

① 지역사회행사 ② 영유아복지 분야 ③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④ 노인복지 분야
 ⑤ 장애인복지 분야 ⑥ 여성복지 분야 ⑦ 문화·예술 분야 ⑧ 교통 관련 분야
 ⑨ 환경 분야 ⑩ 기타()

통계표 구성

<자원봉사참여 경험>

(단위: %)

미참여	참여	참여횟수				참여분야									
		주 3회 이상	주 1~2 회	한 달에 1~2 회	연 1~2 회	지역 사회 행사	영유아 복지 분야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	노인 복지 분야	장애인 복지 분야	여성 복지 분야	문화· 예술 분야	교통 관련 분야	환경 분야	기타

※ 응답비율을 고려하여 참여분야의 '기타'는 통합가능

현장조사 유의사항

- ▶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 1항)
- ▶ 참여경험이 없다면 **3**으로 이동한다.
- ▶ 자원봉사활동 참여 횟수
 - 한 번 활동 시 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에는 하루를 기준으로 참여횟수를 계산한다.
 - 예) 쓰나미 구호활동을 3박 4일 나갔을 경우 : 4회

항목명

자원봉사활동 참여 의향(희망분야, 어렵게 하는 이유)

응답자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의향 및 희망분야, 어렵게 하는 이유

조사항목

3 귀하는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예

→ **3-1** 어느 분야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시길 원하십니까?

- | | | | |
|------------|------------------------------|---------------|------------|
| ① 지역사회봉사 | ② 영유아복지 분야 | ③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 ④ 노인복지 분야 |
| ⑤ 장애인복지 분야 | ⑥ 여성복지 분야 | ⑦ 문화·예술 분야 | ⑧ 교통 관련 분야 |
| ⑨ 환경 분야 | ⑩ 기타() | | |

② 아니오

→ **3-2**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 ① 참여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서 | ② 적절한 봉사 일을 찾기 어려움 | ③ 바쁘고 시간이 없음 |
| ④ 같이 할 사람이 없음 | ⑤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 ⑥ 별 관심이 없어서 |
| ⑦ 기타() | | |

통계표 구성

<자원봉사활동 참여 의향>

(단위: %)

참여 의향 있음	희망분야										참여 의향 없음	참여를 어렵게 하는 이유						
	지역 사회 행사	영유아 복지 분야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	노인 복지 분야	장애인 복지 분야	여성 복지 분야	문화· 예술 분야	교통 관련 분야	환경 분야	기타		참여 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서	적절한 봉사 일을 찾기 어려움	바쁘고 시간이 없음	같이 할 사람이 없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별 관심이 없어서	기타

※ 응답비중을 고려하여 희망분야 및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 '기타'는 통합가능

현장조사 유의사항

▶ 향후 자원봉사활동을 참여할 생각이 있는지 질문한다.

항목명

1365자원봉사포털 인지 여부(이용경험, 만족도)

응답자의 1365 자원봉사포털 인지 및 이용경험, 만족도

조사항목

4 귀하는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5번으로

4-1 이용경험도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5번으로

4-2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통계표 구성

<1365 자원봉사포털>

(단위: %)

	인지도		이용경험		만족도				
	알고있음	모름	이용	이용안함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현장조사 유의사항

▶ 1365자원 봉사포털(www.1365.go.kr)

- ‘1365 자원봉사 포털’은 전국의 자원봉사 정보를 한곳에 모아 다양한 자원봉사 정보 검색은 물론 신청부터 실적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말한다.

항목명

기부/후원 경험(유형, 어려움)

응답자의 기부 및 후원 경험 및 유형, 어려움

조사항목

5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부/후원(현금, 물품 포함)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5-1** 기부/후원을 하신다면 어떤 유형에 해당이 되십니까?

① 정기후원

② 비정기후원

② 아니오

→ **5-2** 기부/후원을 하지 않는 이유 혹은 후원하기에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① 마땅한 후원대상자를 찾기 어렵다

② 후원기관을 믿기 어렵다

③ 내 형편도 어려워 곤란하다

④ 기부/후원의 의미를 잘 모른다

⑤ 어떤 절차로 기부/후원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

⑥ 기부/후원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서 귀찮다

⑦ 어려움이 없다

⑧ 기타()

통계표 구성

<기부 및 후원 경험>

(단위: %)

	유형			가장 큰 어려움								
	기부 /후원 경험 있음	정기 후원	비정기 후원	기부 /후원 경험 있음	마땅한 후원대 상자를 찾기 어려워	후원 기관을 믿기 어렵다	내 형편도 어려 워서 곤란 하다	기부/ 후원의 의미를 잘 모른다	어떤 절차로 기부/ 후원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	기부/ 후원 하는 절차가 까다로 워서 귀찮다	어려움이 없다	기타

※ 응답비중을 고려하여 가장 큰 어려움에서 '기타'는 통합가능

현장조사 유의사항

- ▶ 기부란 직접 관계없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현금 또는 물품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빈곤가정,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결식아동 등에 대한 후원 및 공익사업단체에 대한 기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기부에 포함 : 적십자 회비, 구세군, 종교단체에서 모금하는 특별, 구제현금 등
 - 기부에서 제외 : 경조금, 정치적 후원금, 친목회비, 종교적 헌금(십일조, 주일 헌금, 보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
- ▶ 최근 1년(0000. 0. 0. ~ 0000. 0. 0.) 동안 현금 또는 물품을 기부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경험이 없는 경우 기부/후원을 어렵게 하는 원인을 질문한다.
- ▶ 정기적인 활동 여부는 주, 월, 분기, 반기 단위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정기적'으로 간주한다.

분류

XIV. 사회복지인프라 및 복지의식 - ① 인프라

가구주

가구원

공통

항목명

지역에 위치한 복지시설 만족도

응답자 지역에 위치한 복지시설 인지도, 이용경험, 만족도, 추후이용의향

조사항목

① 다음은 귀하의 지역에 위치한 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시설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시설	1-1 인지도	1-2 이용경험	1-3 만족도					1-4 추후 이용의향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청소년 자원센터	① 알고있음	① 이용	①	②	③	④	⑤	① 있음 ② 없음
		② 이용안함						
2) 지역아동센터	② 모름							① 있음 ② 없음
	① 알고있음	① 이용	①	②	③	④	⑤	
		② 이용안함						
	② 모름							

⋮

통계표 구성

<복지시설 만족도>

(단위: %)

	인지도		이용경험		만족도					추후이용의향	
	알고있음	모름	이용	이용안함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있음	없음

현장조사 유의사항

▶ 시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만족도, 추후 이용 의향을 질문한다.

- ▶ **1-1** 에서 '②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 각 시설을 설명한 후 **1-4** 추후 이용의향을 질문한다.

사업명	내용
1)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의 발굴과 원조를 위한 조사, 연구, 홍보, 연락조정, 복지교육, 자원봉사국의 설치·운영, 또는 자원봉사활동의 사고에 대한 보험운영, 자원봉사활동기금의 조성 등 사업이나 활동을 함
2) 일자리센터	구직자의 맞춤형 취업 알선 및 취업난 해소를 위해 설치한 일자리 전담 센터.

⋮



참 고

이 조사항목은 각 지자체에 위치한 시설로 변경이 가능하다.
⇒ 조사를 원하는 해당 시설 및 서비스 등을 자유롭게 추가

항목명

사회복지관련 시설 이용 시 좋은점

응답자 지역에 위치한 복지시설 이용 시 좋았던 점

조사항목

- 2** 전반적으로 볼 때, 귀하의 지역에 위치한 사회복지관련 시설(혹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① 대중교통, 접근이용의 편의

② 최신 시설 및 편의성

③ 환경의 청결함

④ 접수처리, 등록, 환불 등 행정의 편의

⑤ 다양한 프로그램

⑥ 높은 서비스의 질

⑦ 원하는 시간에 이용 가능

⑧ 사회복지사 및 직원의 친절

⑨ 저렴한 비용

⑩ 기타()

⑪ 없음

통계표 구성

<사회복지관련 시설 이용 시 좋은점>

(단위: %)

	접근의 용이	최신 시설 및 편의성	환경의 청결함	행정의 편의	다양한 프로그램	높은 서비스의 질	원하는 시간에 이용 가능	사회 복지사 및 직원의 친절	저렴한 비용	기타	없음
--	-----------	-------------------	------------	-----------	-------------	-----------------	------------------------	-----------------------------	-----------	----	----

※ 응답비중을 고려하여 '기타'와 통합가능

현장조사 유의사항

- ▶ ○○시 사회복지관련 시설(혹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좋은 점은 무엇인지 응답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조사한다.

응답항목 유의사항

- ▶ 보기에 해당 항목이 없을 경우 '⑩ 기타'를 선택하고 구체적 내용을 기입한다.
▶ 1순위까지만 응답해도 무방하며 1순위에 '⑪ 없음'으로 응답하고 2순위에 '①~⑩'으로 응답한 경우 다시 확인한다.

항목명

사회복지관련 시설 이용 시 불편한 점

응답자 지역에 위치한 복지시설 이용 시 불편한 점

조사항목

- 3 전반적으로 볼 때, 귀하의 지역에 위치한 사회복지관련 시설(혹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대중교통, 접근이용의 불편

② 시설 불편, 낙후됨

③ 환경의 불결함

④ 접수처리, 등록, 환불 등 행정의 불편

⑤ 정보제공부족

⑥ 필요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

⑦ 이용시간대의 제한

⑧ 낮은 서비스의 질

⑨ 사회복지사 및 직원의 불친절

⑩ 비용부담

⑪ 본인이 바쁘고 시간부족

⑫ 기타()

⑬ 없음

통계표 구성

<필요한 복지시설>

(단위: %)

	여성을 위한 시설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시설	초등학생을 위한 시설	중·고생을 위한 시설	어르신을 위한 시설	장애인을 위한 시설	취업 지원을 위한 시설	저소득층을 위한 시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시설	기타	없음
--	-----------	----------------	-------------	-------------	------------	------------	--------------	-------------	---------------	----	----

※ 응답비중을 고려하여 '기타'와 통합가능

현장조사 유의사항

- ▶ 복지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
○○시의 복지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조사한다.

응답항목 유의사항

- ▶ 보기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을 두 가지 선택하여 중요한 순서대로 기입하도록 한다. 보기에 해당 항목이 없을 경우 '⑩ 기타'를 선택하고 구체적 내용을 기입한다.

분류

Ⅳ. 사회복지인프라 및 복지인식 - ② 지역사회 만족도

가구주

가구원

공통

항목명

생활영역 만족도

응답자 지역의 생활영역 만족도

조사항목

1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생활영역에 현재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 해당이 꼭 되지 않더라도, 귀하가 생각하는 전반적인 만족정도를 표기하여 주십시오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1 경제상태(소득, 생활수준, 노후소득보장 등)	①	②	③	④	⑤
1-2 고용과 노동(취업, 직업, 고용조건 등)	①	②	③	④	⑤
1-3 주거생활(주거수준, 주거비 부담, 주거환경 등)	①	②	③	④	⑤
1-4 요보호 가족 돌봄(영유아보육,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보호와 수발)	①	②	③	④	⑤
1-5 건강과 보건(건강관리, 의료시설 이용, 의료비 부담 등)	①	②	③	④	⑤
1-6 교육(학교시설, 급식,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	①	②	③	④	⑤
1-7 여가생활(여가시설, 여가활동, 문화생활 등)	①	②	③	④	⑤
1-8 위의 사항을 모두 고려한 전반적 생활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통계표 구성

<생활영역 만족도>

(단위: %)

	경제상태	고용과 노동	주거생활	요보호 가족 돌봄	건강과 보건	교육	여가생활	전반적 만족도
--	------	--------	------	--------------	--------	----	------	------------

※ 만족 비율만 제시(④+⑤)

현장조사 유의사항

- ▶ 응답자의 각 생활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다.
- ▶ 각 생활영역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세부내용
1) 경제상태 (소득, 생활수준, 노 후 소득 보 장 등)	현재 가구의 소득과 생활수준,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조사한다. —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 등이 포함 — 생활수준: 소비생활, 저축, 부채, 자산, 세금 등 — 노후소득보장: 노후준비(국민연금, 기타 공적연금, 사적연금, 퇴직급여, 예금·적금·저축성 보험, 부동산 운용, 주식·채권 등)
2) 고용과 노동 (취업, 직업, 고용조건 등)	취업여부, 일의 내용, 업무량, 직무 만족도, 임금, 복리후생, 승진기회, 근무 환경, 인간관계(상하, 동료간), 근로시간, 직장 성희롱 방지노력, 교육훈련 기회 등의 전반적 만족도
3) 주거생활 (주거수준, 주거비 부담, 주거환경 등)	— 주거수준: 면적, 방 개수, 난방, 방음, 월세·전세 부담 — 주거환경: 시장·마트·의료복지시설·문화시설·교통 접근용이성, 교육 — 환경, 치안문제, 소음정도, 대기오염, 이웃과의 관계, 주변 자연환경 등
4) 요보호 가족 돌봄 (영유아보육, 노인 이나 장애인 등의 보호와 수발)	영유아, 노인, 장애인 가구원을 돌보는 데 있어 현재 응답자 가구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 만족도를 조사한다. — 돌봄 비용 부담, 일상생활 환경, 사회인식, 정보제공 및 상담, 돌봄 서비스 등
5) 건강과 보건 (건강관리, 의료 시설 이용, 의료비 부담 등)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 약국 등 의료기관 이용 시의 서비스 질에 대하여 전년도와 비교한다.
6) 교육 (학교시설, 급식, 평생교육, 직업 교육 등)	자녀교육, 가족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 비용, 교육 프로그램, 교사, 시설환경, 급식, 이동거리 등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7) 여가생활 (여가시설, 여가 활동, 문화생활 등)	평소 응답자의 여가생활 활용에 대한 주관적 만족 여부를 조사한다. — 여가생활 비용이나 시간, 환경여건, 여가시설, 여가활용에 대한 정보 등 외적인 부분 뿐 아니라 본인의 취미여부나 체력정도, 함께 할 사람 여부 등의 내적인 부분도 포함하여 전반적인 여가생활 활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다.
8) 전반적 생활만족도	경제적인 면, 가족관계, 직업, 건강 등 모든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개인이 느끼는 만족도 정도를 조사한다.

항목명 삶의 질 전년도 비교

응답자의 전년대비 삶의 질 수준

조사항목

2 다음 생활 영역에서 귀댁의 삶의 질 수준은 전년도(2016년)에 비해 개선되었습니까?

※ 해당이 꼭 되지 않더라도, 귀하가 생각하는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 수준을 표기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나아지지 않았음	나아지지 않았음	비슷함	나아졌음	매우 나아졌음
2-1 경제생활	①	②	③	④	⑤
2-2 고용과 노동	①	②	③	④	⑤
2-3 주거생활	①	②	③	④	⑤
2-4 요보호 가족 돌봄	①	②	③	④	⑤
2-5 건강과 보건	①	②	③	④	⑤
2-6 교육	①	②	③	④	⑤
2-7 여가생활	①	②	③	④	⑤
2-8 위의 사항을 모두 고려한 전반적 삶의 질 수준	①	②	③	④	⑤

통계표 구성

<전년대비 삶의 질 수준>

(단위: %)

	경제생활	고용과 노동	주거생활	요보호 가족 돌봄	건강과 보건	교육	여가생활	전반적 삶의 질 수준
--	------	--------	------	-----------	--------	----	------	-------------

※ 나아진 비율만 제시(④+⑤)

현장조사 유의사항

- ▶ 보기의 각 생활영역에서 작년과 비교하여 삶의 질이 개선된 정도를 조사한다.
- ▶ **1**의 생활영역 설명을 참조한다.

항목명 타지역 대비 거주 지역 만족도

다른 지역과 비교한 응답자의 거주 지역 만족도

조사항목

3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볼 때 살기에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악하다 ←										→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통계표 구성

<타 지역 대비 거주 지역 만족도>

(단위: %)

	매우 열악하다	열악한 편이다	보통이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①+②	③+④	⑤+⑥	⑦+⑧	⑨+⑩

현장조사 유의사항

- ▶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개인의 느낌을 조사한다.
- ▶ 점수가 낮을수록 거주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낮고, 높을수록 거주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항목명 역점 추진 복지 분야

응답자의 주관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점 추진되어야 할 복지 분야

조사항목

4 귀하는 00시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복지(노인복지, 기초생활보장, 보육 등) ② 경제(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등) ③ 교육(학교교육, 평생교육, 직업훈련 등)
 ④ 보건의료, 건강분야 ⑤ 여가, 문화, 예술 ⑥ 교통(대중교통, 보행환경 등)
 ⑦ 주택정책 ⑧ 도시안전 ⑨ 환경오염(대기, 수질 등)
 ⑩ 공원·녹지문제 ⑪ 도시계획, 도시개발 ⑫ 기타()

통계표 구성

<역점 추진 복지 분야>

(단위: %)

	복지	경제	교육	보건 의료, 건강 분야	여가, 문화, 예술	교통	주택 정책	도시 안전	환경 오염	공원, 녹지 문제	도시 계획, 도시 개발	기타
--	----	----	----	-----------------------	------------------	----	----------	----------	----------	-----------------	-----------------------	----

※ 응답비중을 고려하여 '기타'와 통합가능

현장조사 유의사항

- ▶ ○○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정책적으로 좀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가 무엇인지 응답하도록 한다.
- ▶ 보기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두 가지 선택하여 중요한 순서대로 기입하도록 한다.

응답항목 유의사항

- ▶ '⑫ 기타'로 선택하였을 경우 구체적인 분야를 기입하도록 한다.

항목명 복지 우선 지원 대상

응답자의 느끼는 복지 우선 지원 대상

조사항목

5 귀하는 00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5세 이하 영유아 ② 학령기 아동청소년 ③ 노인 ④ 장애인 ⑤ 저소득층
⑥ 자녀가 있는 취업여성 ⑦ 모든 여성 ⑧ 한부모 가정 ⑨ 다문화 가정 ⑩ 기타()

통계표 구성

<복지 우선 지원 대상>

(단위: %)

	5세 이하 영유아	학령기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자녀가 있는 취업여성	모든 여성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	--------------	------------------	----	-----	------	-------------------	-------	-----------	-----------	----

※ 응답비중을 고려하여 '기타'와 통합가능

현장조사 유의사항

- ▶ 00시에서 복지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응답하도록 한다.
- ▶ 보기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상을 두 가지 선택하여 중요한 순서대로 기입하도록 한다.

응답항목 유의사항

- ▶ '⑩ 기타'로 선택하였을 경우 구체적인 대상을 기입하도록 한다.

부 록

표준조사표



승 인 번 호
제

통계법 제32조(성실응답의무),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작성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니 성실하고 정확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복지실태조사표 (가구주용)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시민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시 복지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해서 응답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오니, 조사원이 귀댁을 방문하게 되면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부문은 응답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행정구역번호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원번호

성명	구분	계	남	여
가구당 조사표 부수	총 가구원			
	13세 미만 가구원			
조사표 가입 방법	13세 이상 가구원			
	① 조사원면접 ② 자기가입식 통농가구원 조사원 가구원			

※ 조사에 대한 의문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성명	전화번호
조사담당자		() -

기관 CI

<http://www.○○○.go.kr>

1. 가구 일반사항

귀댁의 가구원 현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귀댁 가구원의 개인특성에 대하여 말씀해주십시오.

가구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로, 그에 속하는 모든 구성원이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결혼 등으로 분가하여 따로 살고 있는 자녀와 그의 가족은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방문자나 임시 거주인, 고용인 등은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구원번호	{1}	{2}	{3}	{4}	{5}	{6}	{7}	{8}	{9}	{10}
1 성명										
2 가구주와의 관계	① 가구주(본인) ② 배우자 ③ 미혼 자녀 ④ 기혼 자녀 및 그 배우자 ⑤ 손자·손녀 및 그 배우자 ⑥ 부모(배우자 쪽 포함) ⑦ 조부모(배우자 쪽 포함) ⑧ 형제자매(배우자 쪽 포함) ⑨ 기타 친·인척 ⑩ 기타 동거인									
3 성별	① 남 ② 여									
4 태어난 연, 월, 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生年月日) (예: 1977년 3월 1일 → 1 9 7 7 0 3 0 1)									
5 혼인상태	① 배우자 있음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6-1 최종 교육 수준	① 미취학(만7세 미만) ② 무학(만7세 이상) ③ 초등학교 ④ 중학교 ⑤ 고등학교 ⑥ 대학(4년제 미만) ⑦ 대학교(4년제 이상) ⑧ 대학원(석사) ⑨ 대학원(박사)									
6-2 졸업 상태	⑩ 비해당 ① 재학 ② 휴학 ③ 중퇴 ④ 수료 ⑤ 졸업									
7 국적	① 한국인 ② 한국으로 귀화한 외국인(한국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동포, 기타 귀화한 외국인 포함) ③ 외국인									
7-2 국적 (외국국적)										
8-1 장애 종류	⑩ 비해당 ① 지체 ② 뇌병변 ③ 시각 ④ 청각 ⑤ 언어 ⑥ 안면 ⑦ 신장 ⑧ 심장 ⑨ 간 ⑩ 호흡기 ⑪ 장루·요루 ⑫ 간질 ⑬ 지적 ⑭ 자폐 ⑮ 정신									
8-2 장애 등급	⑩ 비해당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⑥ 6급									

2 | 0000년 000복지실태조사표(가구주용)

II. 주거

귀댁의 주거 특성에 대하여 말씀해주시요.

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일반 단독주택 ② 다가구용 단독주택 ③ 영업점용 단독주택
 ④ 아파트 ⑤ 연립주택 ⑥ 다세대주택
 ⑦ 비거주용건물(상가·공장·여관 등)내 주택 ⑧ 오피스텔 ⑨ 쪽방, 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
 ⑩ 기타 ()

① 일반 단독주택: 하나의 주택에 한 가구만 거주하도록 된 주택
 ② 다가구용 단독주택: 1개동의 주택으로 바닥면적의 합이 660㎡이하로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도록 된 주택으로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
 ③ 영업점용 단독주택: 상가가 함께 설치된 단독주택
 ④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⑤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
 ⑥ 다세대 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으로 공동주택인 것
 ⑦ 비거주용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택: 상가, 공장, 여관 등에 일부를 구획하여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
 ⑧ 오피스텔: 일반업무시설 중 업무를 주로 하며, 문명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
 ⑨ 쪽방, 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 등
 ※ ② 다가구용 단독주택, ⑥ 다세대 주택: 법적인 구분이 건축물 통상상 공동주택이면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이면 다가구용 단독주택(반드시 건축물이 1개동임)
 ⑤ 연립주택, ⑥ 다세대: 주택 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한 공동주택인데, 다가구용 단독주택성도규모(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이면 다세대주택, 규모가 이보다 크면 연립주택

2 점유 형태와 가격(임차료)은 어떻게 되십니까? 점유 형태에 따라 가격(임차료)을 응답해 주십시오.

2-1 점유 형태	2-2 가격(임차료)		
1) 자가 거주자	현재 주택가격(시세)	억	만원
2) 전세 거주자	전 세 보 증 금	억	만원
3) 보증금 있는 월세 거주자	보 증 금	억	만원
	매 달 월 세		만원
4) 보증금 없는 월세 거주자(사글세 포함)	매 달 월 세		만원
5) 일세	일 세		원
6) 무상			
7) 기타			

※ 무상: 관사, 사택 또는 천덕집 등에서 세 없이 공짜로 살고 있는 경우, 가구주나 가구원이 소유한 집이 아닌 별개의 다른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부모, 형제, 친지 등이 소유한 주택에서 임대료나 세 없이 살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규모와 방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3-1 주택 면적

㎡ (또는 평)

3-2 방 개수

개

4 현재 살고 계시는 주택은 언제 지어졌습니까?

- ① 2010년 이후 ② 2005~2009년 ③ 2000~2004년 ④ 1995~1999년
 ⑤ 1990~1994년 ⑥ 1985~1989년 ⑦ 1980~1984년 ⑧ 1970~1979년
 ⑨ 1960~1969년 ⑩ 1959년 이전 ⑪ 잘 모르겠음

5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위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지하층 ② 반지하층 ③ 지상 ④ 옥상(옥탑)

※ 지하/반지하: 건물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높이가 담배 통의 1/2 이상인 경우를 지하, 1/2 미만인 경우를 반지하로 간주함
 옥탑: 건물 옥상에 설치된 주거공간

6 귀댁은 겨울철(0000년 12월~0000년 2월) 난방을 위해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십니까?
 (많이 쓰는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지역난방 ② 석유 ③ 전기 ④ 도시가스 ⑤ LPG가스 ⑥ 연탄 ⑦ 기타

7 귀댁에서 지난 겨울(0000년 12월~0000년 2월) 난방비로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얼마나 됩니까?

월평균 만원

8 귀댁에서 지난 겨울(0000년 12월~0000년 2월) 지출한 난방비가 가계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셨습니까?

- ① 전혀 부담 안 된다 ② 부담 안 된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부담된다 ⑤ 매우 부담된다

III. 근로상태 및 일자리

귀하의 근로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주일간(0000.0.0. ~ 0.0.) 기준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1 귀하는 일을 할 능력이 되십니까?

※ 한력이나 기술수준과는 관계없이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서의 근로능력을 의미합니다.

- ⑤ 비해당(만14세 이하) → IV. 소득 및 지출로

- ① 근로가능
 ② 단순근로가능(집에서 논밭일을 할 수 있는 정도) → 2번으로
 ③ 단순근로미약자(집안 일만 가능)
 ④ 근로능력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집안일도 불가능) → 1~1번으로

1-1 일을 못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중증장애 ② 질병 또는 부상 ③ 노령으로 인한 심신 무능력 ④ 기타

→ 응답 후 IV. 소득 및 지출로 가십시오.

2 조사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어떠한 지위로 일을 하셨습니까?

※ 직장미 있지만 청병, 휴가 등으로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않은 경우 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가족의 사업체에서 무보수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것은 무급가족종사자에 해당합니다.

-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④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 3번으로
 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⑥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⑦ 무급가족종사자
 ⑧ 실업자(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함) → IV. 소득 및 지출로
 ⑨ 비경제활동인구(전업주부,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등) → 2-1번으로

2-1 현재 일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정규교육기관학업 ② 진학준비 ③ 취업준비 ④ 가사 ⑤ 양육
 ⑥ 간병 ⑦ 군복무 ⑧ 구직활동 포기 ⑨ 근로의사 없음 ⑩ 기타

→ 응답 후 IV. 소득 및 지출로 가십시오.

3 어떤 직종에서 일을 하셨습니까?

- ① 관리직 ② 전문가 및 관련 직종 ③ 사무직 ④ 서비스직 ⑤ 판매직
⑥ 농업·어업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⑧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⑨ 단순노무직 ⑩ 군인(직업군인)

4 하시는 일의 근로시간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전일제 ② 시간제

5 조사대상 주간에 실제 몇시간 일하였습니까?

주당 _____ 시간

6 귀하의 일자리에서의 고용조건 및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6-1 임금 또는 소득	①	②	③	④	⑤
6-2 고용의 안정성	①	②	③	④	⑤
6-3 하고 있는 일의 내용	①	②	③	④	⑤
6-4 근로환경	①	②	③	④	⑤
6-5 근로시간	①	②	③	④	⑤
6-6 복리후생	①	②	③	④	⑤
6-7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IV. 소득 및 지출

1 귀댁의 가계지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년(0000.0. ~ 0.)을 기준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1 귀댁에서 매달 지출하는 항목 중 지난 1년 동안(0000.0.~0000.0.)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해주시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① 식비(식자재 구입 등) 및 외식비 | ⑫ 공교육비(학교등록금, 납입금 등) |
| ③ 사교육비(학원, 과외비 등) | ⑭ 주거비(월세+공과금+관리비) |
| ⑤ 생활용품 구입비(일상생활 소모품) | ⑯ 세금(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기타 모든 세금) |
| ⑦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 공공사회보험 | ⑮ 민간보험 |
| ⑨ 부채상환(주택자금대출 등 모든 부채상환에 들어가는 금액) | ⑰ 보건의료비(건강보험료 제외) |
| ⑪ 내구재(전자제품이나 가구) 구입비 | ⑱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 사용료 등) |
| ⑬ 부모님, 자녀 등 가구원의 용돈 | ⑲ 피복비(옷, 신발 등의 구입비) |
| ⑮ 교통비(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 자가용운행 비용) | ⑳ 경조사비 |
| ⑯ 현금 및 각종 기부금 | ㉑ 저축 |

2 가구원 모두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경상조세, 연금지출, 건강보험료 등 비소비지출 금액을 기입해 주십시오.

※ 비소비지출은 세금, 국금, 공적연금, 건강보험료, 고령·산재보험료 등 의무적으로 차출하는 금액을 말함
※ 각자의 가구원에 대해 지출종류별로 한원 단위로 반올림한 금액을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지난 1년 총 지출
2-1 경상조세	경상적인 소득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연간 총 _____ 만원
2-2 연금	각 연금법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는 연금기여금으로 국민연금, 공적연금(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을 연간 총액으로 기입	연간 총 _____ 만원
2-3 사회보험료	법률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는 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로 연간 총액으로 기입	연간 총 _____ 만원
2-4 비경상조세	상속세, 취득세, 과징금 등	연간 총 _____ 만원
2-5 이자비용	대출 등에 따른 이자비용으로 연간 총액으로 기입	연간 총 _____ 만원
2-6 가구간이전	타가구 송금액 축의·조의금 등	연간 총 _____ 만원
2-7 비영리단체로이전	종교 사회단체 기부금, 단체회비 등	연간 총 _____ 만원

3 지난 1년 동안 귀댁의 한 달 평균 생활비 지출액은 얼마나 됩니까?

월평균 _____ 만원

4 귀댁에서 지난 1년 동안 경제적인 이유로(돈이 없어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구분	비해당	있다	없다
4-1 경제적인 이유로 지난 1년 동안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한 적이 있다 * 본인 집이나 전세에 사시는 경우에는 '0' 비해당'으로 응답	①	①	②
4-2 경제적인 이유로 지난 1년 동안 3개월 이상 공과금(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또는 관리비를 못 낸 적이 있다. * 오피스텔, 고시원 등 공과금·관리비가 월세에 포함된 경우, 관사 등에 무상거주하는 경우, 비닐하우스·컨테이너·창고 등 전기·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0' 비해당'으로 응답	①	①	②
4-3 경제적인 이유로 자녀(대학생 포함)의 공교육비를 못 낸 적이 있다 * 자녀가 없거나 성인인 경우 '0' 비해당'으로 응답	①	①	②
4-4 경제적인 이유로 식사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		①	②
4-5 경제적인 이유로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 등)를 미납한 적이 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의료보호 대상자인 경우 '0' 비해당'으로 응답	①	①	②
4-6 경제적인 이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 지난 1년 동안 본인이나 가족들이 아픈 적이 없는 경우 '0' 비해당'으로 응답	①	①	②
4-7 경제적인 이유로 지난 겨울 난방비가 부담되어서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5 귀댁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비는 월평균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5-1 최소생활비

월평균 _____ 만원

5-2 적정생활비

월평균 _____ 만원

2. 귀책 내 가구원의 소득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년(0000.0. ~ 0.)을 기준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1. 지난 1년 동안(0000.0. ~ 0000.0.) 가구원 모두에 대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정부로부터 받은 수혜금을 세금 공제전 금액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 각각의 가구원에 대해 소득 종류별로 만원 단위 반올림한 금액을 기입해 주십시오.

* 지난 1년 동안 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 현물, 자가생산·판매물에 대한 소비, 임대료·이자 등의 형식으로 받은 현물은 현물소득이므로 시장가격으로 환산한 후 귀 가족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기입

- ① 근무처에서 상품을 받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근로소득 예)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 통근버스 등
 ② 자가판매물(생산물)을 소비한 경우 → 사업소득 예) 자기에서 운영하는 학원에서 자녀 수강 등
 ③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나 임대료 대신 상품을 받은 경우 → 재산소득 예) 토지를 임대해주고 받은 쌀 등

* 소득은 가구원별로 각각 발생한 소득을 기입

- 자산의 형태가 변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은 소득에 미포함 예) 저축받은 금액, 벌린 돈 등

- 상품권을 받은 경우에도 받은 소득으로 인식

예) 회사에서 상품권 받은 경우 → 상여금, 타가구에서 일확성으로 받은 상품권 → 기타 비경상소득 등

- 자영업자 등의 사업소득 파악이 어려울 경우, 가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가계로 전입되는 부분을 소득으로 파악

구분	지난 1년 총 소득 (없으면 '0' 기입)
1-1 근로소득 → 근로의 대가로 받은 일체의 보수로서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을 공제하기 전 총액	
1) 급여소득	연간 총 _____ 만원
2) 상여금	연간 총 _____ 만원
1-2 사업소득 → 총수입액에서 일체의 사업지출(인건비, 재료비, 임대료, 전기료 등)을 차감한 금액	
1) 자영업자 등의 영업이익	연간 총 _____ 만원
2) 기타사업소득(보험설계사의 실적에 따른 소득 등)	연간 총 _____ 만원
1-3 재산소득 → 재산의 운영을 통해서 발생한 소득	
1) 이자소득	연간 총 _____ 만원
2) 배당소득	연간 총 _____ 만원
3) 개인(퇴직) 연금소득	연간 총 _____ 만원
4) 주택 및 건물 임대소득	연간 총 _____ 만원
5) 기타재산소득	연간 총 _____ 만원
1-4 정부수혜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공적 사회보장 수혜금	
1) 공적연금(국민·공무원연금 등)	연간 총 _____ 만원
2) 기초연금	연간 총 _____ 만원
3) 사회수혜금(생계·실업급여, 양육수당 등)	연간 총 _____ 만원
4) 연말정산환급금	연간 총 _____ 만원

- 2 귀하의 가구가 지난 1년동안 ① 부모, 자녀, 형제 등 다른 가구나 학교, 종교단체와 같은 비영리단체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정기적인 생활비, 보조금 등의 사적 이전소득, ② 정부 및 학교, 종교·사회복지단체와 같은 비영리단체로부터 현물형태(상품·서비스)로 제공받은 혜택을 현금으로 환산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기입해 주십시오.

※ 부모, 자녀 등 다 가구로부터 받은 현물 소득은 조사 제외

구분		지난 1년 총 소득
2-1 사적이전소득	• (가구간 이전소득) 교육비, 생활비 등 정기적 이전 • (기타 이전소득) 학교 및 비영리단체 등의 장학금, 적십자 구호금 등	연간 총 _____ 만원
2-2 사회적 현물이전	• 저소득층 등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각종 공공요금 면제 및 할인혜택	연간 총 _____ 만원

- 3 위에서 조사되지 않은 귀하의 가구에서 받은 비경상적이고 일시적인 수입을 기입해 주십시오.

※ 부모, 자녀 등 다 가구로부터 받은 현물 소득은 조사 제외

구분		지난 1년 총 소득
3-1 경조소득	• 타가구로부터 축의 및 조의 표시로 제공받은 현금 등	연간 총 _____ 만원
3-2 기타비경상소득	• 퇴직수당, 만기이전 보험금, 일회성 용돈 기타 비경상적 수입 등	연간 총 _____ 만원

- 4 귀하 가구 또는 귀하 부부의 노후 생활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각 항목별로 모두 응답해주시시오.

노후생활 대책	있다	없다
4-1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①	②
4-2 개인연금	①	②
4-3 퇴직금, 퇴직연금	①	②
4-4 저축, 보험 등 금융자산 마련	①	②
4-5 주식, 채권	①	②
4-6 현재 살고 있는 집	①	②
4-7 현재 살고 있는 집 이외의 부동산	①	②

MEMO

3 부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댁에 부채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1-1 귀댁의 부채는 얼마정도 됩니까?

_____ 억 _____ 만원

1-2 귀댁의 부채가 발생한 주요 사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주택 구입비용(거주용)

② 주택 전월세 보증금

③ 교육비

④ 의료비

⑤ 생활비

⑥ (자녀) 결혼 또는 분가 비용

⑦ 이자 지불 또는 부채상환

⑧ 투자목적(주식투자, 투자용 부동산 매입 등)

⑨ 기타()

1-3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는 어디로부터 빌린 것입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은행

② 제2금융권(증권회사,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③ 서민금융제도(미소금융, 마이크로크레딧, 햇살론, 새희망홀씨론 등)

④ 사채

⑤ 가족, 친지

⑥ 기타()

1-4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해 매달 지출하는 이자가 가계에 어느 정도 부담됩니까?

① 전혀 부담 안 된다

② 부담 안 된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부담된다

⑤ 매우 부담된다

V. 저소득

4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입니까? (해당하는 모든 항목에 응답)

① 생계급여 가구

② 주거급여 가구

③ 의료급여 가구

④ 교육급여 가구

⑤ 조건부 수급가구

⑥ 특례가구

⑦ 대상 아님

4번으로

2 지난 1년 동안(0000.0.~0000.0.) 연간 수급 개월 수와 총 급여액은 얼마입니까?

* 특례가구의 경우 특례가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응답. 가정 의료급여 특례시의 경우 의료급여에 대한 정보를 기입

급여유형	2-1 연간 수급개월수	2-2 연간 급여액	2-3 도움 정도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1) 생계급여		_____ 만원	①	②	③	④
2) 주거급여		_____ 만원	①	②	③	④
3) 의료급여			①	②	③	④
4) 교육급여			①	②	③	④

3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사업 및 서비스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 3-1에서 '모름'이라고 한 경우 각 사업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여 3-3, 3-4 문항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사업명	3-1 인지도	3-2 이용경험	3-3 도움정도	3-4 추후 이용의향
	① 알고있음 ② 모름	① 이용 ② 이용안함	① 전혀 도움 안 됨 ② 별로 도움 안 됨 ③ 약간 도움 됨 ④ 매우 도움 됨	① 있음 ② 없음
1) 문화누리카드				
2) 쓰레기종량제봉투무상자금				
3) 정부양곡지원				
4) 희망키움통장				
5) 자활근로사업				
6) 에너지바우처				
7) 생활안정자금대출				
8) 식사배달사업				

〈참고〉 기초생활보장 대상 사업 및 서비스 설명

1) 문화누리카드	저소득층의 삶과 잘 향상과 문화향유를 해소하기 위한 문화복지 사업으로, 차상위계층 등에게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
2) 쓰레기종량제봉투 무상자금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쓰레기종량제봉투 무상자금 서비스
3) 정부양곡지원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한 정부양곡 할인해 주는 서비스
4) 희망키움통장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써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5) 자활근로사업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제공
6) 에너지 바우처	동절기 가중되는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접근성을 높이고 에너지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
7) 생활안정자금대출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장기 저리 융자를 통한 생활안정지원
8) 식사배달사업	저소득 가정의 노인 및 아동(아동급식(G드림) 포함)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통한 건강증진 도모

→ 응답 후 VI.건강으로 가십시오

4 귀택은 지난 1년 동안(0000.0.~0000.0.)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5번으로**

4-1 귀택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기본적인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②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
③ 주거비를 지원받기 위해 ④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
⑤ 기타()

4-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서 ② 자동차의 시가가 기준보다 높아서
③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높아서 ④ 살고 있는 집 이외에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⑤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⑥ 기타()
⑦ 잘 모르겠다

4-3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후 귀택의 생계문제는 주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주시요.

1순위 2순위

- ① 부양의무자(같이 살지 않는 부모나 자녀)
② 친지 및 이웃의 도움
③ 민간단체의 도움
④ 빚을 내어서 생활
⑤ 저축 등 있는 재산을 줄여서
⑥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
⑦ 본인이 스스로 벌어서 (공공기관 프로그램 참여 제외)
⑧ 공공기관 프로그램(공공근로 사업, 차상위 자활사업 등)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⑨ 기타()

→ **응답 후 비고란으로 가입시오**

5 귀택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필요 없어서(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아서) ②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③ 신청해도 선정되지 않을 것 같아서 ④ 절차, 서류가 복잡해서
⑤ 가족이 반대해서 ⑥ 남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
⑦ 남들이 내 사정을 아는 것을 원치 않아서 ⑧ 기타()

VI. 건강

II 귀하의 건강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년(0000.0.0. ~ 0.0.)을 기준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1 귀하는 평소에 본인의 건강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 ① 아주 건강함 ② 건강한 편 ③ 보통
④ 건강하지 않은 편 ⑤ 건강이 아주 안 좋음

2 지속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습니까?

- ① 있음 ② 없음 → **3번으로**

2-1 얼마나 오래기간 치료를 받고 계십니까?

- ※ 투병 때문에 지속적인 투약이 필요하나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기간은 최초 투병 및 투약시점부터 산정합니다.

- ① 3개월 미만 투병·투약 중 ②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투병·투약 중 ③ 6개월 이상 투병·투약 중

2-2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 ① 도움 필요 없음 ②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함 ③ 전적으로 도움 필요함

3 지난 1년 동안 건강체크를 위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4번으로**

3-1 지난 1년 동안 받아보신 건강검진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본인부담 종합건강검진 ② 사업장 특수건강검진 (유해물질 노출 직종 종사자 대상)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지역, 직장가입) ④ 무료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 이외의 국가건강검진 등)
⑤ 기타()

4 지난 1년 동안 거주지역의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구청, 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5 귀하는 최소 주 1회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을 하셨습니까?

- ① 한다 ② 안한다 → **6번으로**

5-1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 ① 주 1~2회 ② 주 3~4회 ③ 주 5회 이상

5-2 운동할 때, 주로 어디에서 하십니까?

- ① 공원 ② 사설 체육관, 헬스클럽 ③ 주민 체육센터
④ 학교 운동장 ⑤ 가정에서 ⑥ 기타 ()

6 귀하는 최근 일주일간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주무셨습니까?

하루 평균 _____ 시간

7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

- ※ 스트레스란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이나 조건 혹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를 의미



8 지난 1년 동안 스트레스 문제로 전문가의 상담(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 보건소 등에서)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9 지난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10번으로**

9-1 이러한 문제로 전문가의 상담(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 보건소 등에서)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0 지난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11번으로**

10-1 지난 1년 동안 실제로 자살시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1 [9의 ①번 또는 10의 ①번 응답자만] 지난 1년 동안 우울하거나 자살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해당되는 문항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가족들의 도움 ② 친구, 동료 도움 ③ 심리상담소
④ 병원치료 ⑤ 기타 () ⑥ 도움 받은 곳 없음(혼자 해결)

12 지난 1년 동안 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13번으로**

12-1 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서비스는 어느 정도 만족했습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13 지난 1년 동안 귀하께서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14번으로**

13-1 그런 적이 있다면, 어떤 이유로 병의원에 가지 못했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

- ① 경제적인 이유로 ② 예약하지 못해서 ③ 교통편이 불편해서
④ 시간이 부족해서 ⑤ 오래 기다려야 하므로 ⑥ 기타 ()

14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시의 공공 및 민간 의료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비스 내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4-1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치료수준)	①	②	③	④	⑤
14-2 진료과목의 다양성	①	②	③	④	⑤
14-3 의사의 충분성	①	②	③	④	⑤
14-4 입원의 용이성	①	②	③	④	⑤

MEMO

Ⅷ. 영유아

영유아 복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은 만0~5세(0000. 0. 0. ~ 0000. 0. 0. 출생자) 영유아 있는 가구만 응답해 주십시오.
없다면, 다음 VI. 아동/청소년 복지로 이동하십시오.

귀하의 친자녀뿐만 아니라 조카, 손자녀 등 만0~5세 이하의 영유아 가구원은 모두 해당됩니다.

1 귀댁의 만0~5세 영유아는 낮시간 동안 주로 누가 돌보고 있습니까?

영유아 번호	가구원 번호	1-1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까?	1-2 다니고 있는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의 유형은 어디에 해당 됩니까?	1-3 다니고 있는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은 어떤 형태로 이용 하십니까?	1-4 보시건어린이집 등 이용시간 외 동안 주로 돌봐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 가구 일반사항의 해당 가구원 번호 기입	① 다니고 있음 → 1-2번으로 ② 다니지 않음 → 1-4번으로	① 국공립 어린이집 ② 직장 어린이집 ③ 민간 어린이집 ④ 가정 어린이집 (놀이방) ⑤ 공동육아시설 (부모협동어린이집) ⑥ 국공립 유치원 ⑦ 사립 유치원 ⑧ 기타()	① 중일반 → 2번으로 ② 반일반 → 1-4번으로	① 부모가 직접 돌봄 ② 할머니, 할아버지 ③ 기타 가족 ④ 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⑤ 가사도우미나 고용인 ⑥ 이웃 ⑦ 아이들끼리 지냄 ⑧ 기타()
1					
2					
3					
4					

2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1-1의 ①번 응답자만] 현재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나 유치원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 2-1번으로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 4번으로
⑤ 매우 만족

2-1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④ 비용이 비싸서 ⑧ 교육(보육) 프로그램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⑨ 교사 때문에
⑤ 시설 및 환경이 열악해서 ⑨ 급식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⑩ 이동거리가 멀어서
⑦ 기타()

3 [가구원 중 한명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경우/ 1-1의 ②번 응답자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믿을만한 곳이 없어서 ② 가까운 곳에 없어서 ③ 국공립시설 입소 대기 중
④ 비용 때문에 ⑤ 가족이 돌보는 것이 아이에게 좋을 것 같아서 ⑥ 아이가 가지 않으려고 해서
⑦ 기타()

4 다음은 영유아대상 사업 및 서비스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요.

* 4-1 에서 '모름'이라고 한 경우 각 사업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여 4-3 4-4 문항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사업명	4-1 인지도	4-2 이용경험	4-3 도움정도	4-4 추후 이용의향
	① 알고있음 ② 모 름	① 이용(현재) ② 이용(과거) ③ 이용안함	① 전혀 도움 안 됨 ② 별로 도움 안 됨 ③ 약간 도움 됨 ④ 매우 도움 됨	① 있음 ② 없음
1) 보육료 지원				
2) 양육수당 지원				
3) 시간연장형 보육료지원				
4)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참고〉 아동 대상 사업 및 서비스 설명

1)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만0~5세)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서비스
2) 양육수당 지원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의 양육비 지원서비스
3) 시간연장형 보육료지원	* (기준) 지원대상은 만0~2세 종일반보육료(맞춤반보육료 지원아동은 종일반보육료만 지원가능), 만3~5세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함.
4) 방과 후 보육료 지원	* (기준)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MEMO

Ⅷ. 아동·청소년

아동 및 청소년 복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은 만6~18세(0000. 0. 0. ~ 0000. 0. 0. 출생자)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만 응답에 주십시오.
없다면, 다음 IX. 어르신 복지로 이동하십시오.
귀하의 친자녀뿐만 아니라 조카, 손자녀 등 만6~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가구원은 모두 해당됩니다.

1 귀댁의 만6~18세 아동·청소년 중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① 비 해당(만6세, 미취학연령) → 2번으로 ① 있다 ② 없다 → 2번으로

1-1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경제적 이유 ② 건강상의 이유 ③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④ 학교에 다니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려고(검정고시 준비, 홈스쿨링 포함) ⑤ 유학 준비를 위해서 ⑥ 기타()

2 다음은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 및 서비스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 2-1에서 '2. 모름'이라고 한 경우 각 사업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여 2-3, 2-4 문항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사업명	2-1 인지도	2-2 이용경험	2-3 도움정도	2-4 추후 이용의향
	① 알고있음	① 이 용 ② 이용안함	① 전혀 도움 안 됨 ② 별로 도움 안 됨 ③ 약간 도움 됨 ④ 매우 도움 됨	① 있음 ② 없음
	② 모 림			
1) 공동육아나눔터				
2) 아이돌봄서비스				
3) 방과후 수업				
4) 돌봄 교실				
5) 디딤씨앗통장				
6) 결식아동급식사업				
7)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8) 아동주의집중력향상서비스				
9) 학교폭력예방교육				
10) 청소년 자원사업				
11) 꿈드림 서비스				
12) 청소년동아리				
13) 청소년동반자사업				

(참고)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 및 서비스 설명

1) 공동육아나눔터	이웃 간 자녀돌봄 풀잇이 구성, 확산 지원을 통해 학가축화로 인한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서비스
2) 아이돌봄서비스	취업부조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친모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 제공
3) 방과후 수업	초·중·고등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 이후 시간에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
4) 돌봄 교실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위해 방과 후 학교에 마련된 돌봄교실에서 아동을 돌봐주는 것
5) 디딤씨앗통장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위업 창업 주거미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선형성을 적극적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6) 결식아동급식사업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G드림카드, 부식배달)
7)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만 12세 이하 문제행동 등의 아동에게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우처 서비스
8) 아동주의집중력향상서비스	만 7세~만 12세 이하 아동들이 교구(주판)를 활용하여 집중력을 향상을 유도하는 바우처서비스
9)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위기지원 원스톱지원센터, 솔리언트프레상딩 활동지원
10) 청소년 자원사업	상담·문화체험, 아웃리치(문화활동), 사춘기 파티, 상담축제 등의 청소년사업
11) 꿈드림 서비스	학교밖 청소년 학습 및 직업체험 지원사업
12) 청소년동아리	상담봉사동아리, 청소년기자단 운영
13) 청소년동반자사업	찾아가는 상담지원서비스

IX. 어르신

어르신 복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은 만65세 이상(0000년 0월 0일 이전 출생자) 어르신(노인)이 있는 가구만 응답에 주십시오.
없다면, X. 장애인 복지로 이동하십시오.

- 1 귀댁에 계신 만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현재 다음의 급여를 받는 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분이나 급여를 받고 있습니까?

서비스 유형	1-1 수급 여부	1-2 수급자 수
1)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① 있다	
	② 없다	
2) 기초연금	① 있다	
	② 없다	

- 2 다음은 어르신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2-1에서 '2 모름'이라고 한 경우 각 사업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여 2-3, 2-4 문항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사업명	2-1 인지도	2-2 이용경험	2-3 도움정도	2-4 추후 이용의향
	① 알고있음 ② 모름	① 이용 ② 이용안함	① 전혀 도움 안 됨 ② 별로 도움 안 됨 ③ 약간 도움 됨 ④ 매우 도움 됨	① 있음 ② 없음
1) 노인돌봄서비스				
2) 노인간병서비스				
3) 노인식사배달서비스				
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고〉 어르신의 일상생활 지원 사업 설명

1) 노인돌봄서비스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식사, 세면 등 신변활동 지원과 가사지원, 보호서비스 등을 제공
2) 노인간병서비스	갑작스러운 질병 등으로 간병이 필요한 노인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 정부에서 지급하는 이용권(바우처)을 이용하여 일정시간 사용 가능(장기요양보험, 요양사설)
3) 노인식사배달서비스	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이유로 식사를 거르는 노인을 위해 경로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거나, 가정으로 도시락이나 밑반찬을 배달
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MEMO

3 다음은 어르신들을 위한 보건 사업들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 3-1에서 '3 모름'이라고 한 경우 각 사업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여 3-3, 3-4 문항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사업명	3-1 인지도	3-2 이용경험	3-3 도움정도	3-4 추후 이용의향
	① 알고있음 ② 모름	① 이용 ② 이용안함	① 전혀 도움 안 됨 ② 별로 도움 안 됨 ③ 약간 도움 됨 ④ 매우 도움 됨	① 있음 ② 없음
1) 치매지원서비스				
2) 재가지원서비스				
3) 방문보건서비스				

〈참고〉 용이 불편한 어르신 지원 사업 설명

1) 치매지원서비스	치매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치매조기검진, 예방등록관리, 치료지원, 지역자원 연계 등을 하는 기관
2) 재가지원서비스	65세 이상의 장기요양수급대상자 또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지원, 신체활동 지원, 특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
3) 방문보건서비스	거동이 불편하거나 집중관리 필요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정기적인 진료 등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

**4 귀하는 ○○시가 어르신들을 위해 가장 강화해야 할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경제적 지원 (현금, 물품지원)
- ② 돈벌이가 되는 일자리 제공
- ③ 사회공헌, 자원봉사 일자리 제공
- ④ 건강증진, 장기요양보호 관련 사업
- ⑤ 여가, 문화 시설이나 프로그램 제공
- ⑥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 ⑦ 주거지원(노인전용주택, 집수리 사업 등)
- ⑧ 기타()

**5 귀하는 ○○시가 어르신들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할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노인복지관
- ② 경로당
- ③ 운동시설(스포츠센터, 생활체육시설)
- ④ 요양시설(입소해서 생활하는 시설)
- ⑤ 가정방문서비스 기관(방문목욕, 가사지원 등)
- ⑥ 주간보호시설(혼자 지내기 어려운 노인을 낮동안 보호)
- ⑦ 보건기관(보건소, 건강증진센터 등)
- ⑧ 노인전문 직업훈련, 취업알선 기관
- ⑨ 교육시설(시민대학, 도서관 등)
- ⑩ 기타()

MEMO

X. 장애인

1 장애인 복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등록 장애인)이 있는 가구만 응답해 주십시오.
없다면, XI.여성으로 이동하십시오.

1 귀댁에 계신 장애인 가구원 가운데 현재 다음의 급여를 받는 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분이나 급여를 받고 있습니까?

서비스 유형	1-1 수급 여부	1-2 수급자 수
1) 장애인연금(중증장애인 대상-1급, 2급, 중북3급)	① 있다	
	② 없다	
2) 장애수당(경증장애인 대상-3급, 4급, 5급, 6급)	① 있다	
	② 없다	
3) 장애아동수당	① 있다	
	② 없다	
4) 장애아동 및 장애인자녀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① 있다	
	② 없다	

2 귀댁은 아래와 같은 어려움을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느끼시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은 편이다	어려운 편이다	매우 어려운 편이다
2-1 사회적 차별로 인한 어려움	①	②	③	④
2-2 취업이나 경제적 활동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2-3 저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①	②	③	④
2-4 자녀양육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2-5 장애로 인한 스트레스 및 가족들 간의 불화	①	②	③	④
2-6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한 어려움	①	②	③	④
2-7 장애의 재활치료(의료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2-8 이성교제 및 결혼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2-9 여가, 취미, 문화 활동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2-10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2-11 기타()	①	②	③	④

3 다음은 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 3-1에서 '2 모름'이라고 한 경우 각 사업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여 3-3, 3-4 문항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사업명	3-1 인지도	3-2 이용경험	3-3 도움정도	3-4 추후 이용의향
	① 알고있음 ② 모름	① 이용 ② 이용안함	① 전혀 도움 안 됨 ② 별로 도움 안 됨 ③ 약간 도움 됨 ④ 매우 도움 됨	① 있음 ② 없음
1)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2) 공동주택 특별공급				

〈참고〉 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 설명

1)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저소득·중증 장애인의 주택 내 생활불편을 줄이기 위해 화장실 개선, 문턱제거, 경사로 개선 등 집수리 지원
2) 공동주택 특별공급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급(분양·임대)할 때 무주택 세대주인 장애인에게 특별공급을 우선하는 제도

4 다음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 4-1에서 '2 모름'이라고 한 경우 각 사업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여 4-3, 4-4 문항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사업명	4-1 인지도	4-2 이용경험	4-3 도움정도	4-4 추후 이용의향
	① 알고있음 ② 모름	① 이용 ② 이용안함	① 전혀 도움 안 됨 ② 별로 도움 안 됨 ③ 약간 도움 됨 ④ 매우 도움 됨	① 있음 ② 없음
1) 자립생활지원사업				
2) 장애인 재활치료 및 교육지원사업				
3)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4) 장애인 직업훈련지원사업				

〈참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취업지원 사업 설명

1) 자립생활지원사업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의료상담, 자립생활 기술훈련, 정보제공 (예: 권익옹호활동, 개인별 자립계획수립, 포괄적 자립생활 정보제공 등)
2) 장애인 재활치료 및 교육지원사업	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료(바우처), 사회교육, 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3)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장애인복지일자리, 장애인행정도우미, 시각장애인 일자리, 장애인시간제일자리 등 일자리 지원 서비스
4) 장애인직업훈련지원사업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서비스

5 다음은 장애인 가정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요.

* 5-1에서 '모름'이라고 한 경우 각 사업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여 5-3, 5-4 문항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사업명	5-1 인지도	5-2 이용경험	5-3 도움정도	5-4 추후 이용의향
	① 알고있음 ② 모름	① 이용 ② 이용안함	① 전혀 도움 안 됨 ② 별로 도움 안 됨 ③ 약간 도움 됨 ④ 매우 도움 됨	① 있음 ② 없음
1) 장애활동지원서비스				
2) 장애아동 재활치료				
3) 장애부모 아동의 언어발달치료				
4)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5)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참고〉 장애인 가정 지원 사업 설명

1) 장애활동지원서비스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들 보내 일상생활, 사회활동을 도와주는 서비스
2) 장애아동 재활치료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3) 장애부모 아동의 언어발달치료	청각 또는 언어 장애를 가진 부모의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4)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양육지원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파견되어 장애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
5)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정신장애인 또는 성실표현자의 조기발견, 개입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 적응 도록 상담, 위기 상황개입, 증상관리,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바우처 서비스

6 귀댁에서 장애인 가구원으로 인하여 장애인이 없는 가구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7번으로**

6-1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한달 평균 얼마나 됩니까?

월평균 _____ 만원

6-2 장애로 인해 추가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 ① 교통비(자동차 개조비 포함) ② 의료비(진료비, 재활치료비, 약값 등)
 ③ 교육비, 보육비(특수교육, 장애로 인한 사교육비) ④ 보호, 간병비(활동보조인, 가정봉사원, 간병인, 수발자 비용)
 ⑤ 재활기관 이용료(복지관, 재활기관 서비스 이용) ⑥ 통신비(장애인용 컴퓨터 등 특수장비)
 ⑦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유지비 ⑧ 기타()

7 귀하는 장애인복지 분야 중 ○○시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① 소득보장 ② 의료보장(진료비, 재활치료비, 약값 등)
 ③ 고용보장 ④ 주거보장
 ⑤ 이동권 보장 ⑥ 보육, 교육보장(특수교육, 장애로 인한 사교육비)
 ⑦ 문화, 여가, 체육활동 ⑧ 장애인 인권보장
 ⑨ 장애인 인식개선 ⑩ 기타()

XI. 여성

여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은 만15세 이상(0000.0.0. 이전 출생자) 여성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당되지 않으시면, IX. 다른화로 이동하십시오.

1 귀하가 살고 있는 생활환경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다	보통이다	안전하다	매우 안전하다
1-1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	①	②	③	④	⑤
1-2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동네	①	②	③	④	⑤
1-3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시(지역사회)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나라 전체	①	②	③	④	⑤

2 귀하가 생각하는 가장 필요한 안전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및 확산
②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적극적 캠페인
③ 범죄나 안전사고저해를 고려한 도시 환경 조성
④ 인터넷 상의 여성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⑤ 여성 전용 주차장의 확대
⑥ 기타()

3 다음은 여성 편의 시설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각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지요.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1 여성들의 휴식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3-2 여성들의 편의시설(여성 전용 주차장 등)이 잘 마련되어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3-3 돌봄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3-4 출산(임산부 휴게실 등) 및 양육(수유실 등) 관련 공간은 잘 마련되어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4 귀하는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양성평등 의식 확립
② 정치 및 사회참여활동
③ 사회교육(예: 취미교실)
④ 건강관리
⑤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⑥ 자녀 교육서비스
⑦ 저소득 모자가족세대 지원
⑧ 저소득 여성노인지원
⑨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여성보호
⑩ 성폭력 예방 및 피해여성보호
⑪ 기타()

5 귀하는 여성을 위해 ○○시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직업훈련 및 알선 시설
② 가정폭력상담소
③ 보육시설
④ 건강시설
⑤ 의료시설
⑥ 문화시설(극장, 전시장 등)
⑦ 사회교육시설
⑧ 미혼모 보호시설
⑨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여성보호시설
⑩ 기타()

XII. 다문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I - 1-7-1에 가구원 중 ② 혹은 ③번이라고 응답한 사람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없다면, XIII. 여가 및 사회참여로 이동하십시오.

1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일에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느끼시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해당없음	전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은 편이다	어려운 편이다	매우 어려운 편이다
1-1 한국어 사용에 대한 어려움	①	①	②	③	④
1-2 주위의 편견과 차별	①	①	②	③	④
1-3 가족 갈등(ex.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등)	①	①	②	③	④
1-4 경제적 어려움	①	①	②	③	④
1-5 자녀양육과 교육의 어려움	①	①	②	③	④

2 다음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문화 관련 건강 및 고용지원 서비스들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요.

* 2-1에서 '모름'이라고 한 경우 각 사업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여 2-3, 2-4 문항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사업명	2-1 인지도	2-2 이용경험	2-3 도움정도	2-4 추후 이용의향
	① 알고있음 ② 모름	① 이용 ② 이용안함	① 전혀 도움 안 됨 ② 별로 도움 안 됨 ③ 약간 도움 됨 ④ 매우 도움 됨	① 있음 ② 없음
1)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지원				
2) 다문화가족 취업교육				
3) 취업성공패키지				

〈참고〉 다문화 관련 건강 및 고용지원 서비스 설명

1)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지원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지원, 의료급여 및 중증, 희귀난치성질환자환 등외 건강지원 사업
2) 다문화가족 취업교육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자립 지원을 위한 취업 교육 사업
3) 취업성공패키지	결혼이민여성 등에 취업성공수당, 참여수당, 생계지원수당을 지원하여 구직을 적극 유도하는 사업

3 다음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문화 관련 교육 및 생활지원 서비스들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 3-1에서 '모름'이라고 한 경우 각 사업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여 3-3, 3-4 문항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사업명	3-1 인지도	3-2 이용경험	3-3 도움정도	3-4 추후 이용의향
	① 알고있음 ② 모름	① 이용 ② 이용안함	① 전혀 도움 안 됨 ② 별로 도움 안 됨 ③ 약간 도움 됨 ④ 매우 도움 됨	① 있음 ② 없음
1) 한국어교육 지원				
2)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3) 방문교육서비스				
4)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참고) 다문화 관련 교육 및 생활지원 서비스 설명

1) 한국어교육 지원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에게 단계별 한국어 교육 지원
2)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체계적인 언어발달을 돕기 위해 언어평가 및 교육이 필요한 만12세 이하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게 서비스
3) 방문교육서비스	입국 5년 미만 결혼이민자, 중도입국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및 생활교육 지원
4)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결혼이민자의 가족, 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4 다문화가정을 위해 ○○시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취업지원
 ③ 경제적지원
 ⑤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⑦ 기타()
- ② 한글교육, 문화적응교육
 ④ 다문화인식개선 사업(가족 및 지역주민 인식교육등)
 ⑥ 전문적인 가족상담(부부상담, 부모자녀상담 등)

 MEMO

제III. 여가 및 사회참여

1. 귀하의 여가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년(0000.0.0. ~ 0.0.)을 기준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1. 지난 1년 동안(0000. 0. ~ 0000. 0.) 귀하가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은 무엇입니까? 많이 참여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휴식 활동(산책, 목욕, 낮잠, TV/라디오 청취, 음악 감상, 신문/잡지보기 등)
- ② 문화예술 관람 활동(전시회, 박물관, 연주회, 연극·무용·연계 공연 관람, 영화관람 등)
- ③ 문화예술 참여 활동(문화행사참여, 문예창작/독서토론, 미술활동, 악기연주, 노래교실, 전통예술 배우기, 사진촬영, 무용 등)
- ④ 스포츠 관람 활동(스포츠 경기 직접관람, TV 등을 통한 간접관람, 온라인게임 경기 현장관람 등)
- ⑤ 스포츠 참여 활동(각종 스포츠 운동, 헬스, 요가, 댄스스포츠, 조깅/속보, 승마, 임벽등반 포함(등산/낚시는 취미·오락 활동으로 포함) 등)
- ⑥ 관광 여행(유적방문, 명승지 관람, 산림욕, 캠핑, 해외여행, 야유회, 놀이공원/동물원/식물원, 축제참가, 자동차 드라이브 등)
- ⑦ 취미·오락 활동(수집활동, 생활 공예, 요리/다도, 애완동물 돌보기, 노래방가기, 인테리어, 등산, 낚시, 인터넷/블로그, 게임, 바둑/장기/체스, 쇼핑/외식, 음주, 독서, 미용, 공부/학원이용 등)
- ⑧ 사회 활동(봉사활동, 종교 활동, 가족 및 친지방문, 계모임/동창회, 친구만남, 동호회 등)
- ⑨ 기타()

2. 이러한 여가활동을 주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 ① 혼자
- ② 가족(친척 포함)과 함께
- ③ 친구(연인 포함)와 함께
- ④ 직장 동료
- ⑤ 동호회(종교단체 등 포함) 회원과 함께
- ⑥ 기타()

2. 귀하의 사회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년(0000.0.0. ~ 0.0.)을 기준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1.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앞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구분	1-1 참여경험		1-2 향후 참여의사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 반사회, 주민회의, 부녀회, 아파트, 대표자 회의, 통반장 회의	①	②	①	②
2) 지역 방범활동, 청소년선도, 교통정리와 같은 지역봉사활동	①	②	①	②
3) 주민들이 모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거나 문화 활동을 하는 (복지)공동체사업	①	②	①	②
4) 시민운동단체, 사회단체 활동	①	②	①	②
5) 종교활동	①	②	①	②
6) 동호회	①	②	①	②

2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3번으로**

2-1 평소 자원봉사활동에 얼마나 참여하십니까?

- ① 주 3회 이상 ② 주 1~2회 ③ 한 달에 1~2회 ④ 연 1~2회

2-2 어느 분야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십니까?

- ① 지역사회행사 ② 영유아복지 분야 ③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④ 노인복지 분야
⑤ 장애인복지 분야 ⑥ 여성복지 분야 ⑦ 문화·예술 분야 ⑧ 교통 관련 분야
⑨ 환경 분야 ⑩ 기타()

3 귀하는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3-1** 어느 분야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시길 원하십니까?

- ① 지역사회행사 ② 영유아복지 분야 ③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④ 노인복지 분야
⑤ 장애인복지 분야 ⑥ 여성복지 분야 ⑦ 문화·예술 분야 ⑧ 교통 관련 분야
⑨ 환경 분야 ⑩ 기타()

- ② 아니오

→ **3-2**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참여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서 ② 적절한 봉사 일을 찾기 어려움 ③ 바쁘고 시간이 없음
④ 같이 한 사람이 없음 ⑤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⑥ 별 관심이 없어서
⑦ 기타()

4 귀하는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5번으로**

4-1 이용경험도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5번으로**

4-2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5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부/후원(현금, 물품 포함)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5-1** 기부/후원을 하신다면 어떤 유형에 해당이 되십니까?

- ① 정기후원 ② 비정기후원

- ② 아니오

→ **5-2** 기부/후원을 하지 않는 이유 혹은 후원하기에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① 미판한 후원대상자를 찾기 어렵다 ② 후원기관을 믿기 어렵다
③ 내 형편도 어려워서 곤란하다 ④ 기부/후원의 의미를 잘 모른다
⑤ 어떤 절차로 기부/후원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 ⑥ 기부/후원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서 귀찮다
⑦ 어려움이 없다 ⑧ 기타()

XIV. 사회복지 인프라 및 복지인식

II 사회복지 인프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년(0000.0.0. ~ 0.0.)를 기준으로 이용 현황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1 다음은 귀하의 지역에 위치한 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시설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시설	1-1 인지도	1-2 이용경험	1-3 만족도					1-4 추천 이용의향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청소년 자원센터	① 알고있음	① 이 용	①	②	③	④	⑤	① 있음 ② 없음
	② 모 림	② 이용안함						
2) 지역아동센터	① 알고있음	① 이 용	①	②	③	④	⑤	① 있음 ② 없음
	② 모 림	② 이용안함						
3) 청소년수련관	① 알고있음	① 이 용	①	②	③	④	⑤	① 있음 ② 없음
	② 모 림	② 이용안함						
4) 청소년상담실	① 알고있음	① 이 용	①	②	③	④	⑤	① 있음 ② 없음
	② 모 림	② 이용안함						
5) 종합사회복지관	① 알고있음	① 이 용	①	②	③	④	⑤	① 있음 ② 없음
	② 모 림	② 이용안함						
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① 알고있음	① 이 용	①	②	③	④	⑤	① 있음 ② 없음
	② 모 림	② 이용안함						
7) 정신보건센터	① 알고있음	① 이 용	①	②	③	④	⑤	① 있음 ② 없음
	② 모 림	② 이용안함						
8) 여성(인력)개발센터	① 알고있음	① 이 용	①	②	③	④	⑤	① 있음 ② 없음
	② 모 림	② 이용안함						
9) 가족상담소	① 알고있음	① 이 용	①	②	③	④	⑤	① 있음 ② 없음
	② 모 림	② 이용안함						
10) 성폭력상담소	① 알고있음	① 이 용	①	②	③	④	⑤	① 있음 ② 없음
	② 모 림	② 이용안함						
11) 여성복지센터	① 알고있음	① 이 용	①	②	③	④	⑤	① 있음 ② 없음
	② 모 림	② 이용안함						
12) 노인대학 (노인학교/노인교실)	① 알고있음	① 이 용	①	②	③	④	⑤	① 있음 ② 없음
	② 모 림	② 이용안함						
13) 노인복지관	① 알고있음	① 이 용	①	②	③	④	⑤	① 있음 ② 없음
	② 모 림	② 이용안함						
14) 경로당	① 알고있음	① 이 용	①	②	③	④	⑤	① 있음 ② 없음
	② 모 림	② 이용안함						
15) 시니어클럽	① 알고있음	① 이 용	①	②	③	④	⑤	① 있음 ② 없음
	② 모 림	② 이용안함						

기관명 27

시설	1-1 인지도	1-2 이용경험	1-3 만족도					1-4 추후 이용의향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6) 주·단기 보호시설	① 알고있음 ② 모름	① 이 용 ② 이용안함	① ②	② ①	③	④	⑤	① 있음 ② 없음
17) 노인, 장애인 특별 교통수단(블랙시 포함)	① 알고있음 ② 모름	① 이 용 ② 이용안함	① ②	② ①	③	④	⑤	① 있음 ② 없음
18) 장애인복지관	① 알고있음 ② 모름	① 이 용 ② 이용안함	① ②	② ①	③	④	⑤	① 있음 ② 없음
1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① 알고있음 ② 모름	① 이 용 ② 이용안함	① ②	② ①	③	④	⑤	① 있음 ② 없음
20) 장애인가족지원센터	① 알고있음 ② 모름	① 이 용 ② 이용안함	① ②	② ①	③	④	⑤	① 있음 ② 없음
21)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① 알고있음 ② 모름	① 이 용 ② 이용안함	① ②	② ①	③	④	⑤	① 있음 ② 없음
22)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① 알고있음 ② 모름	① 이 용 ② 이용안함	① ②	② ①	③	④	⑤	① 있음 ② 없음

2 전반적으로 볼 때, 귀하의 지역에 위치한 사회복지관련 시설(혹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대중교통, 접근이용의 편이
- ② 환경의 청결함
- ③ 다양한 프로그램
- ④ 원하는 시간에 이용 가능
- ⑤ 저렴한 비용
- ⑥ 없음
- ⑦ 최신 시설 및 편의성
- ⑧ 접수처리, 등록, 환불 등 행정의 편이
- ⑨ 높은 서비스의 질
- ⑩ 사회복지사 및 직원의 친절
- ⑪ 기타()

3 전반적으로 볼 때, 귀하의 지역에 위치한 사회복지관련 시설(혹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대중교통, 접근이용의 불편
- ② 환경의 불결함
- ③ 정보제공부족
- ④ 이용시간대의 제한
- ⑤ 사회복지사 및 직원의 불친절
- ⑥ 본인이 바쁘고 시간부족
- ⑦ 없음
- ⑧ 시설 불편, 낙후됨
- ⑨ 접수처리, 등록, 환불 등 행정의 불편
- ⑩ 필요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
- ⑪ 낮은 서비스의 질
- ⑫ 비용부담
- ⑬ 기타()

4 귀하는 ○○시의 복지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① 여성을 위한 복지 시설 | ⑫ 취학 전 아동을 위한 복지 시설 |
| ③ 초등학생을 위한 복지 시설 | ⑭ 중·고생을 위한 복지 시설 |
| ⑤ 어르신을 위한 복지 시설 | ⑯ 장애인을 위한 복지 시설 |
| ⑦ 취업 지원을 위한 복지 시설 | ⑰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시설 |
| ⑨ 다문화 가정을 위한 복지 시설 | ⑱ 기타() |
| ⑩ 없음(지금도 충분함) | |

2. 귀하의 지역사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생활영역에 현재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 해당이 꼭 되지 않더라도, 귀하가 생각하는 전반적인 만족정도를 표기하여 주십시오.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1 경제상태(소득, 생활수준, 노후소득보장 등)	①	②	③	④	⑤
1-2 고용과 노동(취업, 직업, 고용조건 등)	①	②	③	④	⑤
1-3 주거생활(주거수준, 주거비 부담, 주거환경 등)	①	②	③	④	⑤
1-4 요보호 가족 돌봄(영유아보육,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보호와 수발)	①	②	③	④	⑤
1-5 건강과 보건(건강관리, 의료시설 이용, 의료비 부담 등)	①	②	③	④	⑤
1-6 교육(학교시설, 급식,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	①	②	③	④	⑤
1-7 여가생활(여가시설, 여가활동, 문화생활 등)	①	②	③	④	⑤
1-8 위의 사항을 모두 고려한 전반적 생활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2 다음 생활 영역에서 귀댁의 삶의 질 수준은 전년도(2016년)에 비해 개선되었습니까?

* 해당이 꼭 되지 않더라도, 귀하가 생각하는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 수준을 표기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나아지지 않았음	나아지지 않았음	비슷함	나아졌음	매우 나아졌음
2-1 경제생활	①	②	③	④	⑤
2-2 고용과 노동	①	②	③	④	⑤
2-3 주거생활	①	②	③	④	⑤
2-4 요보호 가족 돌봄	①	②	③	④	⑤
2-5 건강과 보건	①	②	③	④	⑤
2-6 교육	①	②	③	④	⑤
2-7 여가생활	①	②	③	④	⑤
2-8 위의 사항을 모두 고려한 전반적 삶의 질 수준	①	②	③	④	⑤

3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볼 때 살기에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악하다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귀하는 ○○시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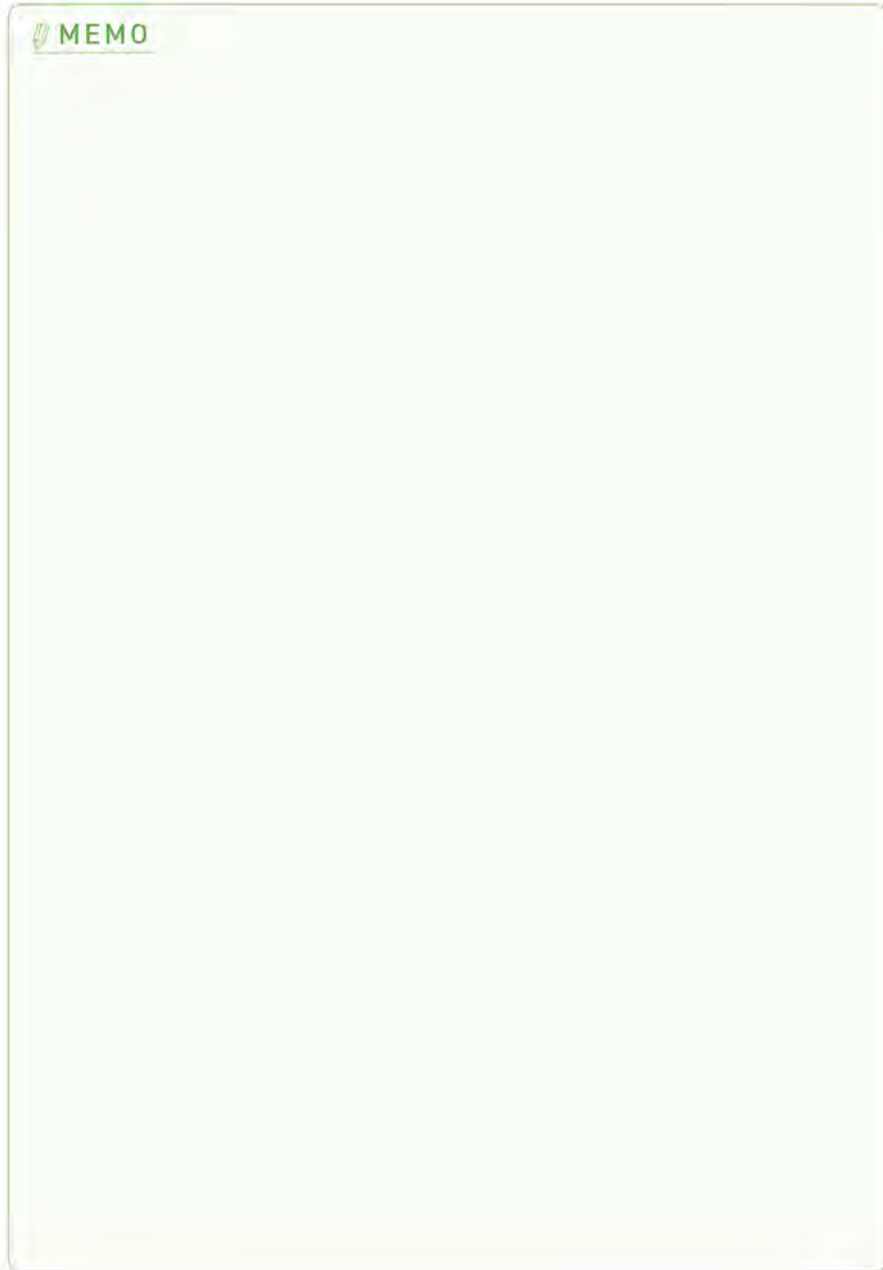
- | | |
|--------------------------|----------------------|
| ① 복지(노인복지, 기초생활보장, 보육 등) | ⑫ 경제(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등) |
| ③ 교육(학교교육, 평생교육, 직업훈련 등) | ① 보건의료, 건강분야 |
| ⑤ 여가, 문화, 예술 | ⑥ 교통(대중교통, 보행환경 등) |
| ⑦ 주택정책 | ⑧ 도시안전 |
| ⑩ 환경오염(대기, 수질 등) | ⑨ 공원, 녹지문제 |
| ⑪ 도시계획, 도시개발 | ⑫ 기타() |

5 귀하는 ○○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① 5세 이하 영유아 | ⑫ 하향기 아동청소년 |
| ③ 노인 | ④ 장애인 |
| ⑤ 저소득층 | ⑥ 자녀가 있는 취업여성 |
| ⑦ 모든 여성 | ⑧ 한부모 가정 |
| ⑨ 다문화 가정 | ⑫ 기타() |

귀중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관 CI

<http://www.○○○.go.kr>

복지실태조사 기본계획(안)

I. 추진(조사)배경

I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연혁
4. 조사기간
5. 조사주기
6. 모집단 및 표본설계
7. 조사항목
8. 조사방법 및 조사체계
9. 결과공표 및 자료제공

III. 업무별 추진일정

IV. 소요예산

V. 향후 추진일정

세종인문도시명품여주

제1회 여주시 복지실태조사 실시계획

2017. 6.



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지역민의 삶의 질적 수준, 복지 수요,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여주시 복지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지역민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여 지역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성과를 모니터링 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

2 법적근거

- 사회복지급여법 제35조 1항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3 조사연혁

- 제1회 여주시 복지실태조사 실시 : 2017. 7.

4 조사기간

- 조사기준시점 : 2017. 7. 7. 0시 기준
- 조사실시기간 : 2017. 7. 7. ~ 7. 20.(14일간)

5 조사주기

- 조사주기 : 3년

6 모집단 및 표본설계

○ 모집단

- 목표모집단 : 조사시점 기준 **여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3세 이상 모든 가구원**
- 조사모집단 : 조사하기 어려운 기숙시설 및 특수사회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제외한 **일반가구의 가구원**

○ 조사대상

- (조사대상) 표본가구에 상주하고 있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 (표본추출) 2015 인구주택총조사 모집단에서 표본가구 추출

○ 표본규모 및 목표 오차

- (표본규모) 1,000가구(100개 조사구, 조사구당 10가구)
- (신뢰수준) 95% 허용오차 $\pm 3.0\%p$ 이내

○ 표본추출방법

- (층화) 동부, 읍·면부 2개 층으로 층화
- (분류지표) 층화 후 조사구 특성을 반영하는 분류지표에 따라 조사구를 정렬한 후 계통추출방법으로 조사구를 추출

구분	분류지표
1차 분류	▣ 주택 유형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기타
3차 분류	▣ 자가비율 - 동부 : ① 57.5% 미만 ② 57.5% 이상 - 읍면부 : ① 40.0% 미만 ② 40.0이상~55.0%이하 ③ 55.0% 이상
2차 분류	▣ 65세이상 인구비율 - 동부 : ① 10.8% 미만 ② 10.8% 이상 - 읍면부 : ① 18.0% 미만 ② 18.0이상~30.0%이하 ③ 30.0% 이상

○ 표본가구 확정

- 표본조사구 내 단순임의추출 : 무작위로 추출한 시작가구를 기준으로 **10가구 선정**

7 조사항목

○ 조사표 구성 : 가구주 조사표, 가구원 조사표

○ 조사부문(13개)

- 가구, 주거, 근로상태 및 일자리, 건강, 영유아, 아동·청소년, 어르신, 여성, 다문화, 여가 및 사회참여, 사회복지인프라 및 복지 의식,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소득 및 지출

구분		조사내용	
I.가구 일반 사항	INFO	1. 가구주와의 관계 2. 성별 3. 생년월일 4. 혼인상태 5. 동거상태 6. 교육수준 6-1. 최종학교	6-2. 졸업상태 7. 국적 7-1. 구분 7-2. 국적(이전국적) 8. 장애종류 및 등급 8-1. 장애종류 8-2. 장애등급
II.주거	INFO	1. 주택 유형 2. 주택 점유형태 2-1 점유형태 2-2 가격(임대료) 3. 주택 규모 3-1 주택면적	3-2 방 개수 4. 주택 건축시기 5. 겨울철 난방 에너지원 6. 난방비 7. 난방비부담
III.근로상태 및 일자리	INFO	1. 근로능력 정도 1-1. 근로무능력 이유 2. 경제활동상태_종사상 지위 2-1. 비경제활동 이유 3. 직종 4. 근로시간 형태	5. 주당 근로시간 6. 일자리 만족도 7. 계속 근로 희망 여부 7-1. 계속 근로 희망 이유 8. 한 달 용돈
IV.건강	INFO	1. 건강상태 2. 만성질환 여부 2-1. 만성질환 치료기간 2-2. 일상생활 도움필요여부 3. 건강검진 수검여부 3-1. 건강검진 종류 4. 지방자치단체 운동프로그램 참여 여부 5. 규칙적인 운동 여부 5-1. 주간 운동횟수 5-2. 운동장소 6. 하루 수면시간 7.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	8. 스트레스로 인한 전문가 상담여부 9. 슬픔, 절망감 경험 9-1. 슬픔, 절망감으로 인한 전문가 상담여부 10. 죽고 싶다고 생각한 경험 10-1. 자살 시도 여부 10-2. 우울감, 자살 극복방법 11. 보건소 이용 경험 11-1. 보건소 이용 만족도 12. 병의원을 이용할 수 없었던 경험 12-1. 병원 이용못한 이유 13. 의료서비스 만족도
V.영유아	선택	1. 영유아 돌봄 1-1. 보육시설 이용 여부 1-2. 보육시설 이용 유형 1-3. 보육시설 이용형태 1-4. 낮 시간 양육 2. 보육시설 만족도 2-1. 보육시설 불만족 이유 3. 보육시설 이용하지 않는 이유	4. 아동대상서비스 4-1. 인지도 4-2. 이용경험 4-3. 도움정도 4-4. 추후이용의향 5. 정책의 자녀출산계획에 대한 영향 5-1. 가장 영향을 미친 정책

구분		조사내용	
VI.아동·청소년	선택	1. 학교에 다니지 않는 가구원 유무 1-1.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 2. 아동·청소년대상서비스 2-1. 인지도	2-2. 이용경험 2-3. 도움정도 2-4. 추후이용의향
VII.어르신	선택	1. 급여지급 1-1. 수급여부 1-2. 수급자수 2. 일상생활지원 사업 2-1. 인지도 2-2. 이용경험 2-3. 도움정도 2-4. 추후이용의향	3. 어르신 복지 노인지원 사업 3-1. 인지도 3-2. 이용경험 3-3. 도움정도 3-4. 추후이용의향 4. 노인복지강화 사업 5. 노인복지우선 확대사업
VIII.여성	선택	1. 생활환경 안전도 2. 필요한 안전정책 3. 여성편의시설에 대한 의견 3-1. 휴식공간 3-2. 편의시설	3-3. 돌봄시설 3-4. 출산 및 양육관련 공간 4.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것 5. 역점추진사업
IX.다문화	선택	1. 다문화 어려움 1-1. 언어 1-2. 편견 1-3. 가족갈등 1-4. 경제적 어려움 1-5. 자녀양육 2. 다문화관련 건강 및 고용지원 서비스 2-1. 인지도 2-2. 이용경험	2-3. 도움정도 2-4. 추후이용의향 3. 다문화관련 교육 및 생활지원 서비스 3-1. 인지도 3-2. 이용경험 3-3. 도움정도 3-4. 추후이용의향 4. 다문화우선 정책
X.여가 및 사회참여	선택	㉠ 여가생활 1. 참여여가활동 2. 여가활동 함께 하는 사람	
		㉡ 사회활동 1. 사회활동 참여 1-1. 참여경험 1-2. 향후 참여의사 2. 자원봉사 참여 경험 2-1. 자원봉사활동 참여 횟수 2-2. 자원봉사활동 참여분야 3. 자원봉사활동 참여 의향	3-1. 희망분야 3-2. 참여를 어렵게 하는 이유 4. 1365자원봉사포털 인지 여부 4-1. 이용 경험 4-2. 만족도 5. 기부/후원 여부 5-1. 기부/후원 유형 5-2. 기부/후원을 하지 않는 이유
XI.사회복지인프라 및 복지인식	강요	㉢ 사회복지 인프라 1. 사회복지 인프라 1-1. 인지도 1-2. 이용경험 1-3. 만족도	1-4. 추후이용의향 2. 사회복지관련 시설 이용시 좋은점 3. 사회복지관련 시설 이용시 불편한점 4. 필요한 복지시설
		㉣ 지역사회 만족도 1. 생활영역 만족도 1-1. 경제상태 1-2. 고용상태 1-3. 주거생활 1-4. 돌봄 1-5. 건강 1-6. 교육 1-7. 여가생활 1-8. 전반적 만족도 2. 삶의 질 전년도 비교	2-1. 경제생활 2-2. 고용과 노동 2-3. 주거생활 2-4. 요보호 가족 돌봄 2-5. 건강과 보건 2-6. 교육 2-7. 여가생활 2-8. 전반적 만족도 3. 거주지역 만족도 4. 역점추진 복지 분야 5. 복지우선 지원 대상

구분		조사내용	
Ⅺ. 다문화 및 장애인 에 대한 인식	자원	㉠ 외국인 1. 외국인 차별정도 2. 외국인에 대한 거리감 2-1. 외국인 근로자 2-2. 결혼 이민자 2-3. 유학생 2-4. 이주민자녀 2-5. 한국계 중국인 2-6. 전반적 외국인 3. 대중매체 접촉 3-1. 봉사활동하는 외국인 3-2. 폭력피해 결혼이주 여성 3-3. 화합하는 외국인 근로자 3-4. 불법체류 외국인 3-5. 교육하는 외국인 3-6. 부당한 대우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 3-7.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	3-8. 공익광고 및 홍보영상 3-9. 외국인 범죄자 4. 다문화 교육 여부 4-1. 교육횟수 4-2. 교육 의향 4-3. 교육 의향없는 이유 5. 외국인 참여 사회활동 5-1. 다문화 행사 5-2. 자원봉사 5-3. 동호회 활동 5-4. 기타 6. 다문화관련 활동 필요성 6-1. 다문화 교육 6-2. 다문화 행사 6-3. 자원봉사 6-4. 동호회 활동
		㉡ 장애인 1. 외국인 차별정도 2. 장애인에 대한 거리감 2-1. 신체적 장애인 2-2. 정신적 장애인 2-3. 전반적 장애인 3. 장애인 참여 사회활동 3-1. 장애인 행사	3-2. 자원봉사 3-3. 동호회 활동 3-4. 기타 4. 장애인 활동관련 필요성 4-1. 장애인 행사 4-2. 자원봉사 4-3. 동호회 활동
Ⅻ소득 지출 및	비용	㉠ 가계지출 1. 지출비중이 큰 항목 2. 비소비지출액 2-1. 경상조세 2-2. 연금 2-3. 사회보험료 2-4. 비경상조세 2-5. 이자비용	2-6. 가구간이전 2-7. 비영리단체로 이전 3. 생활비 4. 경제적 어려움 5. 생활비 5-1. 최소생활비 5-2. 적정생활비
		㉡ 가구소득 1. 가구소득 1-1. 근로소득 1-2. 사업소득 1-3. 재산소득 1-4. 정부수혜금 2. 이전소득 2-1. 사적이전소득 2-2. 사회적 현물이전 3. 비경상소득	3-1. 경조소득 3-2. 기타비경상소득 4. 노후생활대책 4-1. 공적연금 4-2. 개인연금 4-3. 퇴직금, 퇴직연금 4-4. 저축, 보험 등 금융자산 4-5. 주식, 채권 4-6. 현재 살고 있는 집 4-7. 현재 살고 있는 집 이외 부동산
		㉢ 가계부채 1.부채유무 1-1. 부채금액	1-2. 부채이유 1-3. 돈빌린 곳 1-4. 이자 가계부담 정도
		㉣ 국민기초생활보장 1.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가구 여부	

8 조사방법 및 조사체계

○ 자료수집방법

-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 조사하는 면접조사방법을 원칙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자기기입(응답자 기입)」 방법 병행

○ 조사체계



9 결과공표 및 자료제공

○ 보고서 발간을 통한 조사결과 공표('17년 11월)

- 보고서 작성 제공 : 경인청
- 조사결과 공표 : 여주시

○ 마이크로데이터 이관 및 여주시 제공('17년 11월)

- 마이크로데이터 자료정비 후 이관 및 제공

10 소요예산

- 57,973천원 [국비 49,973천원 시비 8,000천원]

부 록

표본설계보고서

여주시 복지실태조사 표본설계 보고서

2017. 6.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I

개요

- 조사명 : 「여주시 복지실태조사」
- 조사 목적
 - 지역민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여 이를 지역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성과를 모니터링 하는 근거자료로 활용
- 모집단 : 여주시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가구)
- 표본 규모 : 100개 조사구(1,000가구), 조사구당 10가구
- 조사 방법 : 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면접조사

II

모집단 정의 및 분석

- 모집단 정의
 - 목표모집단 : 조사시점 기준 여주시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모든 가구원
 - 조사모집단 : 조사하기 어려운 기숙시설 및 특수사회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제외한 일반가구의 가구원
- 조사모집단 분포
 - 가구원수별/주택유형별/자가비율 : 동부는 4인이상 가구 및 아파트 비율, 읍면부는 2인 가구 및 단독주택 비율이 높음. 자가비율은 동부지역이 높음
 - 연령별 :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동부지역이 높고 65세이상인구 비율은 읍면부 지역이 높음

<표 1> 조사모집단의 가구원수/자가비율별 가구분포

(단위 : 가구, %)

지 역	가구 ¹⁾	가구원수								자가 비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이상가구		
여주시	40,709	10,748	(26.4)	12,330	(30.3)	8,105	(19.9)	9,526	(23.4)	51.2
동부	20,167	5,010	(24.8)	5,393	(26.7)	4,329	(21.5)	5,435	(26.9)	57.5
여흥동	8,123	2,218	(27.3)	2,260	(27.8)	1,682	(20.7)	1,963	(24.2)	53.9
중앙동	6,868	1,637	(23.8)	1,711	(24.9)	1,450	(21.1)	2,070	(30.1)	55.0
오학동	5,176	1,155	(22.3)	1,422	(27.5)	1,197	(23.1)	1,402	(27.1)	66.1
읍면부	20,542	5,738	(27.9)	6,937	(33.8)	3,776	(18.4)	4,091	(19.9)	45.1
가남읍	6,135	1,699	(27.7)	1,824	(29.7)	1,216	(19.8)	1,396	(22.8)	42.5
점동면	1,805	486	(26.9)	697	(38.6)	327	(18.1)	295	(16.3)	47.1
능서면	2,293	630	(27.5)	699	(30.5)	432	(18.8)	532	(23.2)	45.5
흥천면	1,981	514	(25.9)	743	(37.5)	330	(16.7)	394	(19.9)	43.8
금사면	1,244	416	(33.4)	436	(35.0)	187	(15.0)	205	(16.5)	51.9
산북면	964	266	(27.6)	357	(37.0)	160	(16.6)	181	(18.8)	53.0
대신면	2,914	871	(29.9)	1,058	(36.3)	497	(17.1)	488	(16.7)	41.0
북내면	1,907	500	(26.2)	647	(33.9)	393	(20.6)	367	(19.2)	46.8
강천면	1,299	356	(27.4)	476	(36.6)	234	(18.0)	233	(17.9)	48.8

1) 거처기준 가구수임

<표 2> 조사모집단의 주택유형별 가구분포

(단위 : 가구, %)

지 역	가구 ²⁾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기타 ³⁾	
여주시	38,210	18,532	(48.5)	13,565	(35.5)	3,652	(9.6)	2,461	(6.4)
동부	18,517	4,225	(22.8)	10,633	(57.4)	2,546	(13.7)	1,113	(6.0)
여흥동	7,205	2,102	(29.2)	3,806	(52.8)	824	(11.4)	473	(6.6)
중앙동	5,820	1,341	(23.0)	3,255	(55.9)	871	(15.0)	353	(6.1)
오학동	5,492	782	(14.2)	3,572	(65.0)	851	(15.5)	287	(5.2)
읍면부	19,693	14,307	(72.7)	2,932	(14.9)	1,106	(5.6)	1,348	(6.8)
가남읍	6,134	2,465	(40.2)	2,804	(45.7)	564	(9.2)	301	(4.9)
점동면	1,769	1,577	(89.1)	0	0.0	75	(4.2)	117	(6.6)
능서면	2,112	1,828	(86.6)	36	(1.7)	97	(4.6)	151	(7.1)
흥천면	1,712	1,560	(91.1)	0	0.0	16	(0.9)	136	(7.9)
금사면	1,189	1,051	(88.4)	0	0.0	24	(2.0)	114	(9.6)
산북면	916	818	(89.3)	0	0.0	35	(3.8)	63	(6.9)
대신면	2,617	2,143	(81.9)	92	(3.5)	165	(6.3)	217	(8.3)
북내면	1,829	1,566	(85.6)	0	0.0	110	(6.0)	153	(8.4)
강천면	1,415	1,299	(91.8)	0	0.0	20	(1.4)	96	(6.8)

2) 주택기준 가구수임

3) 기타주택 및 주택외거처 포함

<표 3> 조사모집단의 연령별 인구분포

(단위 : 명, %)

지 역	인구	0~12세	13세 이상			
				13~14세	15~64세	65세 이상
여주시	105,238	11,769 (11.2)	93,469 (88.8)	2,162 (2.1)	73,335 (69.7)	17,972 (17.1)
동부	53,792	7,676 (14.3)	46,116 (85.7)	1,290 (2.4)	38,992 (72.5)	5,834 (10.8)
여흥동	20,478	2,686 (13.1)	17,792 (86.9)	436 (2.1)	14,798 (72.3)	2,558 (12.5)
중앙동	19,560	2,744 (14.0)	16,816 (86.0)	554 (2.8)	14,337 (73.3)	1,925 (9.8)
오학동	13,754	2,246 (16.3)	11,508 (83.7)	300 (2.2)	9,857 (71.7)	1,351 (9.8)
읍면부	51,446	4,093 (8.0)	47,353 (92.0)	872 (1.7)	34,343 (66.8)	12,138 (23.6)
가남읍	15,509	1,855 (12.0)	13,654 (88.0)	305 (2.0)	10,983 (70.8)	2,366 (15.3)
점동면	4,252	214 (5.0)	4,038 (95.0)	63 (1.5)	2,770 (65.1)	1,205 (28.3)
능서면	6,198	423 (6.8)	5,775 (93.2)	96 (1.5)	4,253 (68.6)	1,426 (23.0)
흥천면	4,955	334 (6.7)	4,621 (93.3)	66 (1.3)	3,248 (65.5)	1,307 (26.4)
금사면	2,866	177 (6.2)	2,689 (93.8)	40 (1.4)	1,830 (63.9)	819 (28.6)
산북면	2,321	185 (8.0)	2,136 (92.0)	37 (1.6)	1,431 (61.7)	668 (28.8)
대신면	6,825	392 (5.7)	6,433 (94.3)	100 (1.5)	4,446 (65.1)	1,887 (27.6)
북내면	4,894	296 (6.0)	4,598 (94.0)	112 (2.3)	3,116 (63.7)	1,370 (28.0)
강천면	3,626	217 (6.0)	3,409 (94.0)	53 (1.5)	2,266 (62.5)	1,090 (30.1)

III

표본 추출틀

- 2015년 기준 인구주택총조사의 보통조사구(1), 아파트조사구(A)
- 최종 1,462조사구를 표본 추출틀로 사용

IV

층화 및 분류지표

- 층화 : 권역별 2개 층으로 층화
 - 동부 : - 여흥동, 중앙동, 오학동
 - 읍면부 : 가남읍, 점동면, 능서면, 흥천면, 금사면, 산북면, 대신면, 북내면, 강천면
- 분류지표(부차층화)
 - 층화 후 조사구 특성을 반영하는 분류지표(보조층화지표)에 따라 조사구를 정렬한 후 계통추출방법으로 조사구를 추출하면, 보조층화지표도 사실상 층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분류지표 선정
 - 조사모집단 분포에서 확인한 변수들에 대하여 gplot 분석한 결과, 가장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변수를 분류지표로 선정
 - 자가비율과 65세이상인구 비율의 변곡점을 이용하여 구분점 결정

<표 4> 분류지표

1차 분류	각 층별 주택유형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기타
2차 분류	자가 비율* - 동부 : ① 57.5% 미만 ② 57.5% 이상 - 읍면부 : ① 40.0% 미만 ② 40.0% 이상 ~ 55.0% 이하 ③ 55.0% 초과
3차 분류	65세이상인구 비율 - 동부 : ① 10.8% 미만 ② 10.8% 이상 - 읍면부 : ① 18.0% 미만 ② 18.0% 이상 ~ 30.0% 이하 ③ 30.0% 초과

* 2015 인구주택총조사 자가비율 집계계 수치 반영('17년 11월 확정 예정)

V

표본 규모 및 배분

- 95% 신뢰수준 하($z=1.96$)에서 $p=0.5$, 오차의 한계를 $\pm 3.0\%p(e=0.03)$ 로 하여 표본의 크기 n 을 계산한 결과 최소표본규모는 약 1,000가구 임

$$n = \frac{z^2 p(1-p)}{e^2 + \frac{z^2 p(1-p)}{N}} \quad N : \text{모집단 가구수}$$

- 허용오차 사용시 유의사항
- 95% 신뢰도에서 1,000가구에 대한 오차의 한계는 $\pm 3.0\%p$ 이며, 이는 전체가구에 대한 것이고, 층별로 구분할 경우 세부적인 추정 오차는 아님
- 표본 배분
- 여주시 지역별 통계생산을 위하여 권역별 가구수를 기준으로 비례배분

<표 5> 층별 표본 배분

(단위 : 가구, %, 조사구)

지 역	가구	비례배분 구성비	표본 조사구수
여주시	40,709	100.0	100
동부	20,167	49.5	49
읍면부	20,542	50.5	51

VI

표본추출

- 표본추출방법 : 층화 2단 집락추출법(Two-stage cluster sampling)
- 표본조사구 추출
 - 조사구(PSU) 추출 시 층별 확률비례 계통추출법(PPS_SYS) 사용
- 표본가구 추출
 - 추출된 표본조사구 내 가구(USU) 추출 시 초기 시작가구를 단순임의추출(SRS)하여 시작가구로부터 10가구 조사
- 과소조사구 추출시 병합조사구 사용
- 표본조사구 추출 결과 : 붙임 참조

VII

가중값 작성 및 추정

- 가중값은 설계가중값, 사후층화 보정을 적용
 - 설계가중값 : 층별 추출확률의 역수로 작성

$$\text{설계가중값 } w_{b,hij} = \frac{M_h}{n_h M_{hi}} \times \frac{M_{hi}}{m_{hi}} = \frac{M_h}{n_h 10}$$

- M_h : h 층의 가구수
- M_{hi} : h 층 i 조사구의 전체 가구수(크기척도)
- n_h : h 층의 표본 조사구수
- m_{hi} : i 조사구 내 표본 가구수
- $h = 1, 2$: 설계층(지역), $i = 1, 2, \dots, n_h$: 조사구, $j = 1, 2, \dots, m_{hi}$: 가구

- 사후층화 보정 : 성·연령그룹별로 최신(조사기준 시점) 주민등록 인구에 맞게 보정

$$\text{사후층화가중값 조정계수}(w_{h,sa}) = \frac{X_{h,sa}}{\hat{X}_{h,sa}}$$

- sa : 성별 및 연령별 그룹(사후층)
- $X_{h,sa}$: 사후층의 모집단 크기
- $\hat{X}_{h,sa}$: 사후층별 가중값의 합

$$\text{최종 가중값}(w_{hij}) = w_{b,hij} \times \frac{X_{h,sa}}{\hat{X}_{h,sa}}$$

- w_{hij} : h 층 i 조사구 j 가구의 최종가중값
- $w_{b,hij}$: h 층 i 조사구 j 가구의 설계가중값(추출률의 역수)

○ 추정

$$\text{비율(평균)추정 : } \hat{\mu} = \bar{y} = \frac{\sum_h^2 \sum_i^{n_h} \sum_j^{m_{hi}} w_{hij} y_{hij}}{\sum_h^2 \sum_i^{n_h} \sum_j^{m_{hi}} w_{hij}}$$

- $h = 1, 2$: 층(지역)
- $i = 1, 2, \dots, n_h$: 조사구
- $j = 1, 2, \dots, m_{hi}$: 대상가구 또는 대상 가구원
- w_{hij} : h 층의 i 조사구내 j 번째 가중값

$$\text{분산추정(테일러선형근사) : } \widehat{Var}(\bar{y}) = \sum_{h=1}^2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cdot} - \bar{e}_{h\cdot\cdot})^2$$

- $e_{hi\cdot}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bar{y}) \right) / w_{\dots}$
- $\bar{e}_{h\cdot\cdot} = \left(\sum_{i=1}^{n_h} e_{hi\cdot} \right) / n_h$
- $w_{\dots} = \sum_h^2 \sum_i^{n_h} \sum_j^{m_{hi}} w_{hij}$

$$\text{표준오차 : } \widehat{SE}(\bar{y}) = \sqrt{\widehat{Var}(\bar{y})}$$

$$\text{상대표준오차 : } \widehat{RSE}(\bar{y}) = \frac{\widehat{SE}(\bar{y})}{\bar{y}} \times 100(\%)$$

VIII

표본조사구내 조사구역 선정

- 조사구 경계확인 및 요도보완
 - 표본조사구 현지 확인을 통하여 정확한 경계확인
 - 확인된 경계 및 주요 지형지물 표시 확인 및 수정보완
- 거처번호 부여 및 가구명부 작성
 - 요도 보완과 동시에 조사 순서대로 상호 인접되게 거처번호 부여
 - 부여된 거처번호에 맞게 가구명부 작성
- 조사구역 확정 및 조사 실시
 - 시작 가구번호 뒤로 연속된 가구가 10가구가 안 되는 경우는 부족한 가구 수만큼 1번부터 조사 실시
 - 단, 1번 가구와 끝 가구가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진 경우는 시작 가구 앞으로 가구번호 역순으로 나머지 가구 조사 실시
 - 예) 총가구가 40가구인데 시작 가구번호가 35인 경우
 - ☞ ① 35~40번과 1~4번을 조사하거나
 - ② 35~40번과 34~31번을 조사함

IX

조사구 교체

- 표본조사구 교체사유
 - 조사구 내 가구가 당해 년에 전체 철거 또는 철거 예정인 조사구
 - 행정구역 변동에 의한 해당 조사구 관할이 서로 다른 경우
 - 지형지물의 심한 변동으로 조사구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 조사구내 위험이나 조사장애가 생겨 조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타 기관 등에서 현 조사구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 표본조사구 교체절차

- ① 표본 조사구 교체요청(여주시→경인지방통계청)
- ② 교체사유 타당성 검토 및 교체 조사구 추출(경인지방통계청)
- ③ 요도 및 가구명부 복사(통계청 표본과)
- ④ 요도 확인 및 조사 가능성 확인(여주시)
- ⑤ 요도 보완 및 가구명부 작성(여주시)
- ⑥ 조사구 최종확정(여주시)

<표 6> 표본조사구 교체 신청양식(예시)

조사구 번호	행정구역명	교체 사유	발생연월일	비고
1234567 123-1	가나동	재개발	17년 5월	철거로 인해 조사 불가

X**유의사항**

- 여주시의 세부 특성별 자료 공표 시 상대표준오차(RSE)값 검토
-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

부록

종합실시계획

2017년 제1회 여주시
복지실태조사 종합실시계획

2017. 5. 18.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목 차

I. 추진배경 및 방향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3. 추진방향

I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연혁
4. 조사기간
5. 조사주기
6. 모집단 및 표본설계
7. 조사항목
8. 조사방법 및 조사체계
9. 결과공표 및 자료제공
10. 소요예산

III.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1. 업무 흐름도
2. 조사준비
3. 인력운영
4. 현장조사

I 추진배경 및 방향

1 추진배경

- 기초지역단위의 활용성 높은 지역통계를 생산하여 지역통계 활성화 및 비교가능성 제고
- 지역민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여 이를 지역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성과를 모니터링 하는 근거자료로 활용

2 추진경과

- (개발통계 선정) 통계청-행자부 지역통계 개발TF 및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
- (시범조사 지역 선정) 지방통계청을 통해 지자체별 희망수요를 파악하여 선정
 - ☞ 경기도 여주시 선정: '17년 지역통계 표준작성 매뉴얼 개발사업 지역선정 결과 알림(지역통계과-97, 2017.1.12.)
- (실무 TF 운영)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청 지역통계과 (주관)에서 구성하고, 매뉴얼 개발 전과정에 참여
 - ☞ 2017년 경인청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개발 TF 운영 계획(안)(지역통계과 -200, 2017.2.1.)

표준매뉴얼 개발 실무 TF 구성

- (주관) 개발 주관 지역통계과 과장(팀장) 또는 주무관
 - (필수) 개발 지원 지역통계과, 시범조사 지역 지자체, 통계개발원 연구자, 지역통계총괄과 사업총괄
 - (자문) 지역연구원 등 관련전문가, 표본과, 조정과
- ※ 운영시기 : 정기 월1회 및 수시(필요시)

3 추진방향

□ 기관간 역할

○ 본청 · 지방청 · 지자체 협업 방식으로 추진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지자체
• 사업예산 편성 및 관리 • 기본계획 수립 - 매뉴얼 개발지침 등 • 표준작성 매뉴얼 발간	• 세부실시계획 수립 - 통계별 표준매뉴얼 개발 - 현장조사 실시 등	• 통계수요 및 정책활용 계획 제출 (특화항목 등) • 현장조사 예산분담 및 현장조사 행정*지원 • 매뉴얼 활용 통계작성

* (행정지원) 조사원 채용 및 복무관리, 조사홍보, 조사관리 사무공간 지원 등

□ 기본방향

- **(개발방향 정립)** 현장조사 지역 요구사항 청취, 타 지자체 실시사례 및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TF 회의를 통하여 작성목적, 작성사항, 작성방법, 활용방안 등의 개발방향을 사전 정립
- **(통계항목 선정)** 해당통계의 작성목적 및 타 지자체 확산이 가능한 공통항목을 1차 선정하고, 현장조사 지역의 관심항목 등 지역별 · 유형별 특성항목을 추가 선정
- **(통계항목별 측정방법 선정)** 응답부담 감소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행정자료 및 기 조사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조사가 불가피한 항목만 조사
- **(통계개발원과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통계개발원 연구자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사업추진시기 및 일정, 방법론 등을 모색

I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지역민의 삶의 질적 수준, 복지 수요,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여주시 복지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지역민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여 이를 지역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성과를 모니터링 하는 근거자료로 활용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규정에 의한 승인통계
[승인번호 : 일반통계 635004호(2017. 6. 9.)]

3 조사연혁

- 제1회 여주시 복지실태조사 실시 : 2017. 7.

4 조사기간

- 조사기준 시점 : 2017. 7. 7. 0시 기준
- 조사실시기간 : 2017. 7. 7. ~ 7. 20.(14일간)

5 조사주기

- 조사주기 : 3년
- 작성주기 : 3년

6 모집단 및 표본설계

○ 모집단

- 목표모집단 : 조사시점 기준 여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3세 이상 모든 가구원
- 조사 모집단 : 조사하기 어려운 기숙시설 및 특수사회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제외한 일반가구의 가구원

○ 조사대상

- (조사대상) 표본가구에 상주하고 있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 (표본추출) 2015 인구주택총조사 모집단에서 표본가구 추출

○ 표본규모 및 목표 오차

- (표본규모) 1,000가구(100개 조사구, 조사구당 10가구)
- (신뢰수준) 95% 허용오차 $\pm 5.0\%p$ 이내

○ 표본추출방법

- (층화) 동부, 읍·면부 2개 층으로 층화
- (분류지표) 층화 후 조사구 특성을 반영하는 분류지표에 따라 조사구를 정렬한 후 계통추출방법으로 조사구를 추출

구분	분류지표
1차 분류	▣ 주택유형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기타
2차 분류	▣ 65세이상 인구비율 - 동부 : ① 10.0% 미만 ② 10.0% 이상 - 읍면부 : ① 21.0% 미만 ② 21.0~26.0% ③ 26.0 이상

○ 표본가구 확정

- 표본조사구 내 단순임의추출 : 무작위로 추출한 시작가구를 기준으로 10가구 선정

7 조사항목

- 조사표 구성 : 가구주 조사표, 가구원 조사표
- 조사부문(12개) : 주거, 근로상태 및 일자리, 건강, 영유아, 아동·청소년, 어르신, 여성, 다문화, 여가 및 사회참여, 사회복지 인프라 및 복지의식,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소득 및 지출

구분		조사내용	
Ⅰ.가구일반사항	안기 이름	1. 가구주와의 관계	7. 국적
		2. 성별	7-1. 구분
Ⅱ.주거	안기 이름	3. 생년월일	7-2. 국적(이전국적)
		4. 혼인상태	8. 장애종류 및 등급
Ⅲ.근로상태 및 일자리	안기 이름	5. 동거상태	8-1. 장애종류
		6. 교육수준	8-2. 장애등급
Ⅳ.건강	안기 이름	6-1. 최종학교	
		6-2. 졸업상태	
Ⅴ.영유아	선택	1. 주택 유형	4. 주택 건축시기
		2. 주택 점유형태	5. 겨울철 난방 에너지원
		2-1 점유형태	6. 난방비
		2-2 가격(임대료)	7. 난방비부담
		3. 주택 규모	
		3-1 주택면적	
		3-2 방 개수	
		1. 근로능력 정도	6. 일자리 만족도
		1-1. 근로무능력 이유	7. 비경제활동 이유
		2. 경제활동상태_조사상 지위	8. 계속 근로 희망 여부
		3. 직종	8-1. 계속 근로 희망 이유
		4. 근로시간 형태	9. 한 달 용돈
		5. 주당 근로시간	
		1. 건강상태	8. 스트레스로 인한 전문가 상담여부
		2. 만성질환 여부	9. 슬픔, 절망감 경험
		2-1. 만성질환 치료기간	9-1. 슬픔, 절망감으로 인한 전문가 상담여부
		2-2. 일상생활 도움필요여부	10. 죽고 싶다고 생각한 경험
		3. 건강검진 수검여부	10-1. 자살 시도 여부
		3-1. 건강검진 종류	10-2. 우울감, 자살 극복방법
		4. 지방자치단체 운동프로그램 참여 여부	11. 보건소 이용 경험
		5. 규칙적인 운동 여부	11-1. 보건소 이용 만족도
		5-1. 주간 운동횟수	12. 병의원을 이용할 수 없었던 경험
		5-2. 운동장소	12-1. 병의원 이용못한 이유
		6. 하루 수면시간	13. 의료서비스 만족도
		7.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	
		1. 영유아 돌봄	4. 아동대상서비스
		1-1. 보육시설 이용 여부	4-1. 인지도
		1-2. 보육시설 유형	4-2. 이용경험
		1-3. 보육시설 이용형태	4-3. 도움정도
		1-3. 낮 시간 양육	4-4. 추후이용의향
		2. 보육시설 만족도	5. 정책의 자녀출산계획에 대한 영향
		3. 보육시설 이용하지 않는 이유	5-1. 가장 영향을 미친 정책

구분		조사내용	
VI.아동·청소년	선택	1. 학교에 다니지 않는 가구원 유무 1-1.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 2. 아동·청소년대상서비스 2-1. 인지도	2-2. 이용경험 2-3. 도움정도 2-4. 추후이용의향
VII.어르신	선택	1. 급여자급 1-1. 수습여부 1-2. 수급자수 2. 일상생활지원 사업 2-1. 인지도 2-2. 이용경험 2-3. 도움정도 2-4. 추후이용의향	3. 어르신 복지 노인지원 사업 3-1. 인지도 3-2. 이용경험 3-3. 도움정도 3-4. 추후이용의향 4. 노인복지강화 사업 5. 노인복지우선 확대사업
VIII.여성	선택	1. 생활환경 안전도 2. 필요한 안전정책 3. 여성편의시설에 대한 의견 3-1. 휴식공간 3-2. 편의시설	3-3. 돌봄시설 3-4. 출산 및 양육관련 공간 4.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것 5. 역점추진사업
IX.다문화	선택	1. 다문화 어려움 1-1. 언어 1-2. 편견 1-3. 가족갈등 1-4. 경제적 어려움 1-5. 자녀양육 2. 다문화관련 건강 및 고용지원 서비스 2-1. 인지도 2-2. 이용경험	2-3. 도움정도 2-4. 추후이용의향 3. 다문화관련 교육 및 생활지원 서비스 3-1. 인지도 3-2. 이용경험 3-3. 만족도 3-4. 추후이용의향 4. 다문화우선 정책
X.여가 및 사회 참여	선택	㉠ 여가생활 1. 참여여가활동 2. 여가활동 함께 하는 사람 ㉡ 사회활동 1. 사회활동 참여 1-1. 참여경험 1-2. 향후 참여의사 2. 자원봉사 참여 경험 2-1. 자원봉사활동 참여 횟수 2-2. 자원봉사활동 참여분야 3. 자원봉사활동 참여 의향	3-1. 희망분야 3-2. 참여를 어렵게 하는 이유 4. 1365자원봉사포털 인지 여부 4-1. 이용 경험 4-2. 만족도 5. 기부/후원 여부 5-1. 기부/후원 유형 5-2. 기부/후원을 하지 않는 이유
XI.사회복지인프라 및 복지의식	필수	㉠ 사회복지 인프라 1. 사회복지 인프라 1-1. 인지도 1-2. 이용경험 1-3. 만족도 ㉡ 지역사회 만족도 1. 생활영역 만족도 1-1. 경제상태 1-2. 고용상태 1-3. 주거생활 1-4. 돌봄 1-5. 건강 1-6. 교육 1-7. 여가생활	1-4. 추후이용의향 2. 사회복지관련 시설 이용시 좋은점 3. 사회복지관련 시설 이용시 불편한점 4. 필요한 복지시설 2-1. 경제생활 2-2. 고용과 노동 2-3. 주거생활 2-4. 요보호 가족 돌봄 2-5. 건강과 보건 2-6. 교육 2-7. 여가생활 2-8. 전반적 만족도 3. 거주지역 만족도

구분		조사내용	
		1-8. 전반적 만족도 2. 삶의 질 전년도 비교	4. 역점추진 복지 분야 5. 복지우선 지원 대상
제.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자율	㉠ 외국인 1. 외국인 차별정도 2. 외국인에 대한 거리감 2-1. 외국인 근로자 2-2. 결혼 이민자 2-3. 유학생 2-4. 이주민자녀 2-5. 한국계 중국인 2-6. 전반적 외국인 3. 대중매체 접촉 3-1. 봉사활동하는 외국인 3-2. 폭력피해 결혼이주 여성 3-3. 화합하는 외국인 근로자 3-4. 불법체류 외국인 3-5. 교육하는 외국인 3-6. 부당한 대우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 3-7. 한구말 잘하는 외국인 ㉡ 장애인 1. 외국인 차별정도 2. 장애인에 대한 거리감 2-1. 신체적 장애인 2-2. 정신적 장애인 2-3. 전반적 장애인 3. 장애인 참여 사회활동 3-1. 장애인 행사	3-8. 공익광고 및 홍보영상 3-9. 외국인 범죄자 3-10. 오락프로그램 출연자 3-11. 귀화한 운동선수 4. 다문화 교육 여부 4-1. 교육횟수 4-2. 교육 내용 5. 외국인 참여 사회활동 5-1. 다문화 행사 5-2. 자원봉사 5-3. 동호회 활동 5-4. 기타 6. 다문화관련 활동 필요성 6-1. 다문화 교육 6-2. 다문화 행사 6-3. 자원봉사 6-4. 동호회 활동
		3-2. 자원봉사 3-3. 동호회 활동 3-4. 기타 4. 장애인 활동관련 필요성 4-1. 장애인 행사 4-2. 자원봉사 4-3. 동호회 활동	
제.소득 및 지출	선택	㉠ 가계지출 1. 지출비중이 큰 항목 2.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가구 여부 3. 비소비지출액 3-1. 경상조세 3-2. 연금 3-3. 사회보험료 3-4. 비경상조세 ㉡ 가구소득 1. 가구소득 1-1. 근로소득 1-2. 사업소득 1-3. 재산소득 1-4. 정부수혜금 2. 이전소득 2-1. 사적이전소득 2-2. 사회적 현물이전 3. 비경상소득 ㉢ 가계부채 1. 부채유무 1-1. 부채금액	3-5. 이자비용 3-6. 가구간이전 3-7. 비영리단체로 이전 4. 생활비 5. 경제적 어려움 6. 생활비 6-1. 최소생활비 6-2. 적정생활비 3-1. 경조소득 3-2. 기타비경상소득 4. 노후생활대책 4-1. 공적연금 4-2. 개인연금 4-3. 퇴직금, 퇴직연금 4-4. 저축, 보험 등 금융자산 4-5. 주식, 채권 4-6. 현재 살고 있는 집 4-7. 현재 살고 있는 집 이외 부동산 1-2. 부채이유 1-3. 돈빌린 곳 1-4. 이자 가계부담 정도

인 공통항목

선택 선택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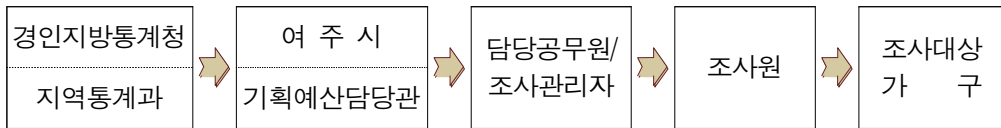
자율 자율항목

8 조사방법 및 조사체계

○ 자료수집방법

-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 조사하는 면접조사방법을 원칙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자기기입(응답자 기입)」 방법 병행

○ 조사체계



9 결과공표 및 자료제공

○ 보고서 발간을 통한 조사결과 공표('17년 11월)

- 보고서 작성 제공은 경인청, 공표는 여주시 주관

○ 마이크로데이터 이관 및 여주시 제공('17년 11월)

- 마이크로데이터 자료정비 후 이관 및 제공

10 소요예산 : 57,973천원

- 통계청·행자부·지자체 공동사업으로 기관별 예산분담

III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1 업무흐름도

사업내용	주관기관	추진일정
■ 조사표 설계	통계개발원, 경인청, 여주시	'17. 2~5월
■ 표본설계 및 표본조사구 추출	경인청	'17. 5월
■ 결과표, 조사지침서, 내검요령서 등 작성	경인청	'17. 5월
■ 입력 프로그램 개발(나라Pro) (조사항목 상관관계 검토, 내검 규칙 확인 등)	경인청	'17. 5~6월
■ 통계작성 승인 신청	여주시	'17. 6월
■ 조사표류 인쇄, 조사필수품 구입 ■ 표본 조사구 현장 확인 ■ 조사관리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 조사실시 홍보	경인청 · 여주시	'17. 6월
■ 조사원 교육 ■ 현장조사 실사지도	경인청 · 여주시	'17. 7월
■ 조사표 입력 및 내검 ■ 데이터 클리닝	경인청	'17. 7~8월
■ 결과분석 및 보고서 작성	경인청	'17. 9~10월
■ 결과공표 및 자료제공 (보고서 발간, 마이크로데이터 자료정비 및 이관)	경인청 · 여주시	2017. 11월

※ 상황에 따라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 조사준비

● 인쇄 및 조사용품 구입 종류

- 인쇄 : 조사표, 지침서, 조사안내문, 조사원증
- 구입 : 필기구류, 가방
- 업무단계별 필요 조사용품 현황

업무단계	조사용품	비 고
조사원 교 육	①조사표, 조사지침서, 가구관리명부(교육용 각 1부) ②조사원 가방 ③필기용품(조사받침대 포함)	
준비조사	①가구관리명부 ②조사표 ③조사원증 ④조사안내문 ⑤방문전 ⑥조사필수품(협조용 포함, 관련규정 준수) ⑦조사필수품 관리명부 ⑧데이타이온권	
정리용품	①조사표 편철지	

● 조사필수품

- (조사필수품) 응답가구당 1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 (협조자 사례품) 협조자(아파트 관리사무소, 통반장, 이장 등)에게 협조자 사례품으로 조사필수품의 3%이내에서 지급 가능
- (지급대장 기록·관리) 조사필수품과 협조자 사례품을 배부했을 때는 반드시 지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
- (조사필수품 지급관리 규정) 관리규정 준수

조사필수품 지급 안내문구

○○○조사에 협조해 주신 응답자(대상처)에게는 응답에 대한 사례로 소정의 답례품(□□□)을 △월 △△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조사필수품 관리양식

()년 ()월

품 목 :				담당공무원 :		
입출일자	반입/반출 현황				잔 고	비 고
	반입 (+)	반출 (-)	내 용	반입/반출자 성 명		

조사필수품 지급양식

(가구/농어가용)

()년 ()월

통 계 조 사 명 :				조 사 원 : 담당공무원 :			
조사구번호	조사대상처 고 유 번 호	지급일자	수량자 성 명	가구주와의 관 계	지급품목 (단가)	지급수량	비 고 (서명, 연락처 등)

재고필수품 관리양식

()년 ()월 ()일

담당공무원 : 부 서 장 :		
품 목(단가)	잔 고	비 고

● 사무공간 및 PC 임차

- 사무공간 및 PC는 여주시에서 자체 확보
- PC 용도 : 조사표 입력 및 내검, 조사진행 현황 파악 등

● 홍보

- 조사대상에 조사안내문 배부
- 여주시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조사실시 홍보배너 추가 등
- 여주시청 및 표본가구 주민센터 등에 현수막 및 배너 설치

● 교육

- 일시 및 장소 : '17. 7.5.(수), 10:00~18:00, 여주시 상황실
- 대상 : 여주시 담당자, 조사원, 조사관리자 등 31명
- 교관 : 경인지방통계청 담당자
- 교육내용
 - 조사원 준수사항, 현장조사 요령
 - 2017년 여주시 복지실태조사 개요 및 조사지침 등
 - 조사필수품 지급대장 기입요령 등

3 인력운영

● 조사일정

- 조사관리자 및 조사원 교육 : 7월 5일(수)
- 준비조사 : 7월 6일(목)
- 본조사 : 7월 7일(금)~20일(목)
- 조사표 내검 및 입력 마감 : 7월 24일(월)~31일(월)

● 조사인력: 총 30명

- **조사관리자 5명**(조사원 5명당 조사관리자 1명 배정)

교육	준비조사	본조사
7월 5일 (1일)	7월 6일 (1일)	7월 7일~20일 12일(주휴 유급 2일 포함)

- **도급조사원 25명**(1인당 40가구 : 1일 3가구, 조사표 단가 17,840원)

교육	준비조사	본조사
7월 5일 (1일)	7월 6일 (1일)	7월 7일 ~ 20일 (14일)

- **내검입력원 5명**(1일 업무량 35가구)

· 내검입력기간 : 7월 24일~31일(7일)

※ 조사관리자를 내검입력원으로 채용 예정

● 조사인력 모집 및 운영방식

- 모집 공고를 통한 공개 모집 및 면접
- 조사인력 수행업무

구분	주요 수행업무
도급조사원	- 조사대상을 방문하여 조사표, 조사필수품 지급대장 작성 - 조사표 내용 검토 및 보완 - 불응하는 조사대상 설득 - 완료된 조사표 내용 검토 및 정리, 제출 등 - 지도공무원의 소집에 응하며 통계상황실에 출근하여 조사관리자에게 조사표, 가구관리명부, 조사필수품 지급대장 등의 작성 현황을 점검 받음
조사관리자	- 조사원 조사지도 및 미흡한 사항 보완 요구 - 불응 가구 설득 지원 - 조사표 내용 검토 및 보완 - 조사표, 조사필수품 지급 명부 등 각종 서류 정리 등
내검입력원	- 조사표 입력 및 내검 - 입력 프로그램 내검항목에 대한 조사표 보완 조치 등

- 조사인력 운영방식

대상	수당	형태	비고
조사관리자	56,090원/1일	근로자 (근로계약)	산재, 고용보험 가입
내검입력원	51,810원/1일		주 5일 근무시 유급휴일수당 지급
도급조사원	17,840원 /조사표 (1일 3가구)	수급자 (도급계약)	- 일반 상해보험 의무 가입(조사원 부담) - 계약사항 완료여부에 따라 약정 금액 지급(교육 및 준비조사 1일 수당 53,540원)

4 현장조사

● 준비조사 및 본조사

- 기간 및 수행사항

구분	조사기간	수행사항
준비조사	7. 6. (1일)	- 조사구 적격여부 확인¹⁾ - 조사구 요도 및 가구명부 보완 - 아파트 관리사무소, 통반장 등 협조 요청 - 조사가구에 협조 안내 및 조사안내문 배부 등
본조사	7.7.~7.20. (14일)	-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표 작성 - 조사완료 가구에 조사필수품 지급 - 조사과정자료(파라데이터) 작성 - 조사표 내용검토

1) 부적격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경인지방통계청에 연락하여 조사구 대체
<부적격 조사구>

- 조사구 내 가구가 전부 철거되었거나 철거 예정인 조사구
- 지형지물의 심한 변동으로 조사구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 입력 및 내검

- 기간 및 수행사항

기 간	수행사항
7.24.~7.31. (6일)	- 내용검토, 조사표 입력 - 경인청 내검사항에 대해 확인 후 보완 - 조사표, 조사필수품 지급대장 등 각종 서류를 확인 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 실사지도

- 실사지도 기간 : 7.7. ~ 7.31

- 실사지도 체계



- 실사지도 담당자 역할

담 당	역 할
총 책임자 (지역통계과장)	· 조사관련 업무 총지휘 · 조사업무 제반사항 점검 · 순회지도
실사지도 반장 (개발지원팀장)	· 실사지도 업무총괄 · 조사전반에 관한 지침 시달 · 조사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 강구 · 순회지도
실사지도원	· 현장지도 · 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조사업무 진척도 파악 · 조사 불응가구를 설득하는 등 조사원 업무수행 지원 · 기타 조사관련 서류 및 행정사항 확인 점검 · 현장 조사 모니터링

● 안전관리 및 보안

○ 안전관리

- 조사관리자 및 업무보조원 보험가입 : 민간이전(연금지급금) 예산에서 집행
- 도급조사원 상해보험 가입 :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조사원이 부담해야 하므로 상해보험 가입을 권장
- 조사원 안전관리에 대해 수시 교육하여 조사기간 중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 조사원 등 안전 및 불의의 사고에 신속한 대처
 - 부상자 발생 시 입원 등 신속한 치료 조치
 - 추후 보고 및 행정조치 등

○ 보안

- 보안유지 서약서 작성
- 보안교육 수시 실시
- 조사표 보관 및 관리 철저

● 통계조사 검증

- 검증기간 : 7.24. ~ 7.25.
- 방법 : 전화검증 원칙, 전화검증이 불가능 할 경우 가구방문
- 담당자 : 조사관리자 및 지도공무원
- 대상 : 표본가구의 10% 내외(조사구별 1가구 검증)
- 확인내용 : 조사원 방문 사실, 주요 조사내용
(가구원수, 조사필수품 수령여부 등)
- 결과처리
 - 의심이 가는 사례 또는 부실조사 발생시 담당자는 직접 해당 조사원이 담당하는 전체 가구에 대해 검증 실시
 -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해당 조사원에게 재조사 조치
 -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조사한 경우 도급 금액 미지급 또는 감액 지급

부록

나라pro 사용설명서

NARA-Pro 주요기능 소개

NARA PRO



간편한 설문작성

객관식, 주관식 등 다양한 질문 유형 제공 및 워드 형태의 GUI 제공으로 복잡한 조사표도 쉽게 설계할 수 있음



설문작성 고급기능

이동, 항목간 연계 등 비표준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기능의 제공으로 정확한 설문 작성 가능



편리한 내용검토 작성

템플릿 기반(범위, 항목값 연계 등)의 내용검토 규칙 작성을 통하여 쉽게 오류검토를 위한 규칙 작성 가능



효율적인 자료수집

오프라인, 온라인 동시 지원으로 조사특성 및 네트워크 환경에 맞게 자료수집 업무 수행



실시간 집계 분석 기능 제공

교차분석(Pivot) 기능 제공 및 Chart 기능 제공으로 간단한 집계 분석 가능



- 1 -

NARA-Pro 주요 처리 흐름

NARA P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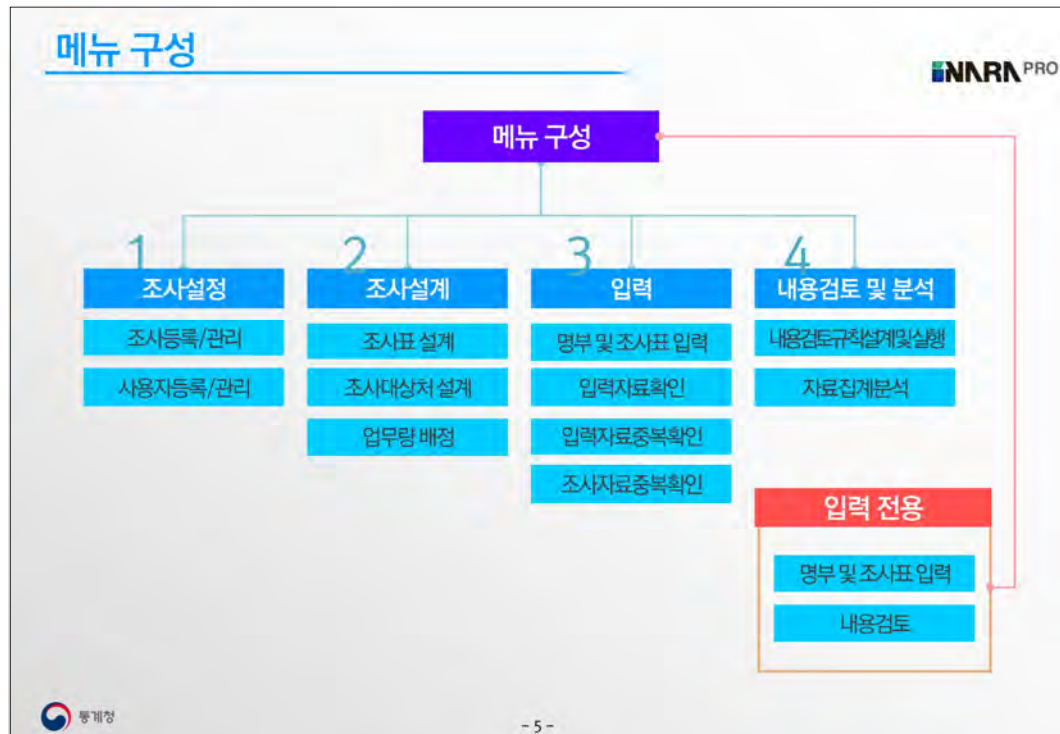


- 조사에 필요한 기능을 설계하는 조사설계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자료수집 단계로 구분



- 2 -





메뉴설명

NARN PRO

메뉴명	권한	메뉴설명
조사설정	관리자	조사에 대한 기본정보를 등록하고 사용자를 관리
조사설계	관리자	- 조사에 사용되는 명부, 명부화면, 조사표 등을 설계하고 구성 - 조사원에게 명부를 배정하는 업무량배정에 대한 설계 및 배정처리
입력	입력원	조사원 및 입력원이 사용하는 주 메뉴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명부화면과 조사표 입력 등의 기능을 제공
내용검토 및 분석	관리자	- 수집자료에 대한 오류를 검증하는 내용검토 규칙 등록 및 실행 - 기술통계분석, 교차분석 등을 활용하여 데이터 검증 및 외부 반출

- 6 -

조사설정



조사에 대한 기본정보와 사용자를 관리

조사등록/관리

- 조사에 대한 기본 정보를 등록

사용자등록/관리

- 조사를 관리할 사용자를 등록



- 7 -

주요기능 - 조사설정



메뉴 구성

조사설정

조사등록/관리

사용자등록/관리

- 조사에 대한 조사명 및 회차를 등록하며 이후 조사설계 및 조사입력기능의 기준정보의 역할





- 8 -

주요기능 - 조사설정

메뉴 구성

- 조사설정
- 조사등록/관리
- 사용자등록/관리

- 관리자 및 사용자를 등록 및 관리하며 등록된 사용자는 조사를 할당하여 사용 가능

- 9 -

조사설계

조사에 사용되는 명부, 명부화면, 조사표 등을 설계

조사표 설계

조사대상처 설계

업무량 배정

- 자료 수집에 필요한 조사표를 설계
- 명부를 생성하고 명부관리화면을 구성
- 등록된 사용자를 대상으로 명부를 배정하여 조사에 대한 설계 작업을 진행

- 10 -

주요기능 - 조사설계

메뉴 구성

조사설계

조사표 설계

조사대상처 설계

업무량 배정

- 조사표 정보 등록 관리

- 11 -

주요기능 - 조사설계

메뉴 구성

조사설계

조사표 설계

조사대상처 설계

업무량 배정

- 문서를 작성하듯이 쉽고 빠르게 조사표 작성 및 입력화면 구성
- 다양한 조사표 형태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사항목 설정 기능 제공

- 12 -

주요기능 - 조사설계

메뉴 구성

- 조사설계
- 조사표 설계
- 조사대상처 설계
- 업무량 배정

• 조사대상처를 관리하기 위한 항목 및 항목속성 설정

- 13 -

주요기능 - 조사설계

메뉴 구성

- 조사설계
- 조사표 설계
- 조사대상처 설계
- 업무량 배정

• 조사대상처 정보를 입력/수정/삭제할 수 있는 관리페이지 설계 기능 지원

- 14 -

주요기능 – 조사설계

메뉴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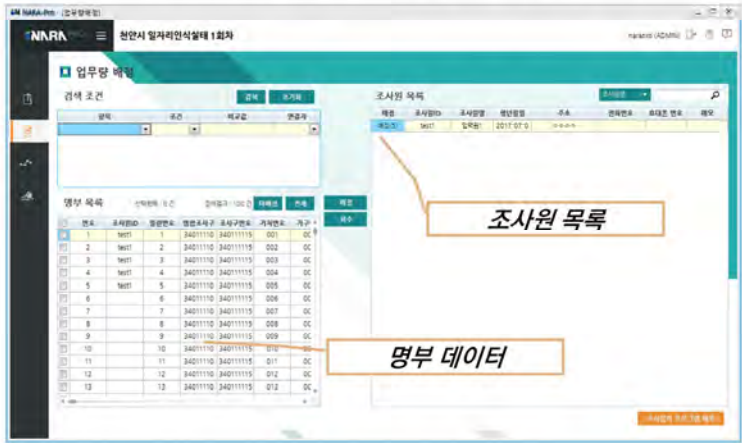
조사설계

조사표 설계

조사대상처 설계

업무량 배정

• 조사원에 대한 업무량을 배정하여 수집 진행과정 관리가 가능



- 15 -

입력

명부관리, 조사표입력 등의 자료 생산 및 수집을 위한 기능

명부 및 조사표 입력

-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명부화면, 조사표 입력 등의 기능 제공

입력자료 확인

- 자료수집 및 수집된 데이터의 자료 검증

입력자료중복 확인

- 입력된 자료의 중복자료 검증

조사자료중복 확인

- 취합된 자료의 중복자료 검증

- 16 -

주요기능 - 입력

메뉴 구성

입력

조사표 입력

입력데이터 확인

입력자료중복확인

취합자료중복확인

- 명부 및 조사표 설계정보를 활용하여 자료수집 화면 자동 제공
-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 방식을 선택하여 자료수집 가능

조사표 입력

명부 화면

- 17 -

주요기능 - 입력

메뉴 구성

입력

조사표 입력

입력데이터 확인

입력자료중복확인

취합자료중복확인

- Grid 형태의 입력화면 구성
→ 범위체크, 항목 이동 등 기본 입력 내용검토 기능 지원
- 입력된 자료는 수집자료로 자동 변환하여 저장

Grid 방식 입력

조사표 입력 설정

- 18 -

주요기능 - 입력

메뉴 구성

입력

조사표 입력

입력데이터 확인

입력자료중복확인

취합자료중복 확인

- 입력된 자료에 자료 취합 및 취합된 자료를 확인





- 19 -

주요기능 - 입력

메뉴 구성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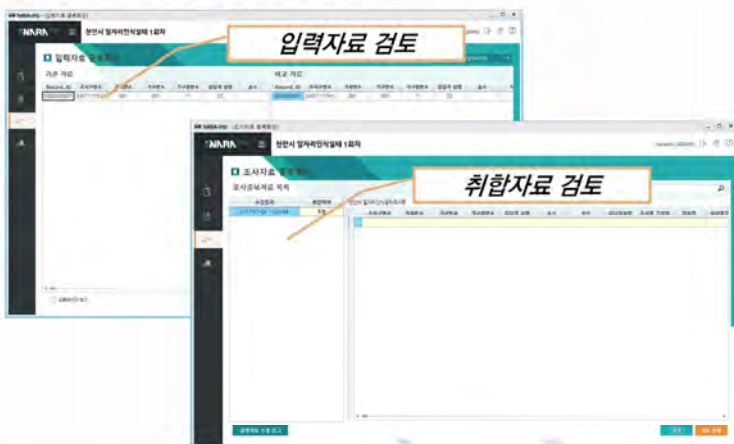
조사표 입력

입력데이터 확인

입력자료중복확인

취합자료중복 확인

- 입력자료와 비교자료를 이용하여 자료를 비교
- 각각 취합된 자료의 중복여부를 확인





- 20 -

내용검토 및 분석



수집된 자료의 오류를 검증하고 자료를 분석하는 기능입니다.

**내용검토
규칙 및 실행**

- 수집자료에 대한 오류를 검증하기 위한 기능 제공

자료집계분석

- 기술통계, 교차분석 등 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검증 가능


- 21 -

주요기능 - 내용검토및분석



메뉴 구성

내용검토및분석

내용검토규칙설계

자료집계분석

- 템플릿 형태의 내용검토 설계 기능 제공으로 누구나 쉽게 내용검토 기능
- 항목 범위 오류, 항목 연계 오류 등의 다양한 오류 등록 및 관리 기능



The screenshot shows the '내용검토 목록' (Content Review List) and '내용검토규칙 등록' (Content Review Rule Registration) screens. The list screen displays a table with columns for rule ID, name, status, and creation date. The registration screen shows a form for creating new rules, including fields for rule name, description, and a detailed error rule configuration table.


- 22 -

주요기능 - 내용검토및분석

NARA PRO

메뉴 구성

내용검토및분석

내용검토규칙설계

자료집계분석

- 등록된 내용검토규칙을 활용하여 수집자료의 오류 검토 및 수정 가능
- 조사표에서 오류 내용을 직접 확인하며 수정할 수 있는 기능 제공



통계청

- 23 -

주요기능 - 내용검토및분석

NARA PRO

메뉴 구성

내용검토및분석

내용검토규칙설계

자료집계분석

- 정형화된 일반 사용자용 분석 기능 제공
- 스크립트 기반의 전문가용 통계분석기능 제공



통계청

- 24 -

권장 사양





최소사양

O / S → Windows Xp
CPU → 인텔 Pentium DualCore 이상 / AMD Athlon64x2 이상
RAM → 2GB 이상
HDD → 10GB 이상



권장사양

O / S → Windows 7
CPU → 인텔 Pentium i3 이상 / AMD FX-4100 이상
RAM → 4GB 이상
HDD → 30GB 이상

- 25 -

부 록

지역통계 표준프로세스 준수를 점검표(조사통계)

통계작성단계	표준프로세스 점검 체크리스트	O/X
1. 조사기획	① 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작성계획을 수립했는가?	
	② 통계작성계획 수립 시 정책활용을 위한 협의회 또는 자문단을 구성하였는가?	
	③ 통계작성계획에 통계필요성, 작성목적, 조사대상, 작성주기, 작성기간, 작성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는가?	
	④ 소요예산 산출 검토내역을 참고하여 소요예산을 산출했는가?	
2. 조사표설계	①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기본항목을 반영하였는가?	
	② 관련부서 수요조사,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조사항목을 개발하였는가?	
	③ 응답자의 구분에 따라 조사문항을 배치하고, 조사항목의 색상을 구분하는 등 조사에 용이하도록 조사표를 구성하였는가?	
	④ 조사표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조사표 표지를 작성했는가?	
3. 표본설계	①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을 명확하게 정의하였는가?	
	② 정의된 모집단내의 모든 추출단위가 포함되도록 표본추출틀을 작성하였는가?	
	③ 조사목적, 예산, 조사인력 등 조사관련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표본 규모를 산정하였는가?	
	④ 조사대상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조사구 교체 사유 및 가구(사업체) 대체 사유가 적절한가?	
4. 조사준비 및 자료수집	① 실지조사를 위한 종합실시계획을 수립하였는가?	
	② 조사표를 쉽게 입력 및 내검할 수 있도록 입력프로그램을 설계 및 사용하였는가?	
	③ 통계조사에 필요한 각종 조사표류를 준비하였는가?	
	④ 표준화된 지침서를 통해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⑤ 본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준비조사를 실시하였는가?	
	⑥ 현장조사의 진행상황 점검 및 불응가구(사업체)의 설득 지원 등을 위해 현장 지도를 실시하였는가?	
	⑦ 현장조사 품질평가를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는가?	
5. 자료처리	① 조사결과를 조사내용의 특성, 질문형태에 따라 코딩하였는가?	
	② 입력요원을 채용하여 입력 및 내검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③ 단계별로 자료내검을 실시하여 오류사항을 수정하였는가?	
	④ 무응답자료를 가중치 조정, 대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였는가?	
6. 결과분석 및 보고서작성	① 결과공표 시 상대표준오차 허용범위를 제시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추정값과 더불어 추정값의 변동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는가?	
	② 조사결과를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법으로 분석하여 공표하였는가?	
	③ 이용자의 올바른 통계 해석을 위해 해석방법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였는가?	



발 행 | 2017년 12월

발 행 인 | 통계청장 황수경

편 집 인 | 조사관리국장 김현애

총괄기획 | 지역통계총괄과 조운구, 김종록, 김섿별

공동기획 | 경인지방청 지역통계과 민경삼, 고영희, 성정희
통계개발원 홍훈식

발 행 처 | 통계청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전 화 | 042-481-3608~9

홈페이지 | <http://kostat.go.kr>

디자인·인쇄 | 세종디자인기획인쇄

발 간 번 호 | 11-1240000-000960-01

